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책임연구원 :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김향초** (협성대학교 교수)

**이규미** (아주대학교 교수)

**우정자** (루터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윤진선**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결과요약

### 1. 연구목적

-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둬.

### 2. 주요 연구내용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We Start’ 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 등 국내 유사사업에 대한 비교·분석.
- 위기청소년 상담사례(총 478명)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요인,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을 밝힘.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지역 중 선정된 총 5개 지역의 안전망 참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망 참여기관의 연계협력실태, 상담지원센터 실태, 청소년동반자 실태를 분석함.
- 외국의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내용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지원체계사업’은 다른 두 사업에 비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범위 대비 투자액 규모가 작아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 청소년 동반자 상담기록지를 토대로 ‘위기청소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개인위기는 대도시 지역청소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비해 크고, 친구위기는 대도시, 중소도시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 큼. 가족위기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크며 다음이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음.
  -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는 도시규모와 지역자원의 수

보다는 '상담지원센터'의 확보의지와 역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일부 지역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긴급구조와 지역사회기관 간 협약이라는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계협력기관은 상담지원센터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기관들이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기관 간의 교류부족과 조직의 폐쇄적 분위기임.
- 시도 및 시군구(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임. 상담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규모는 지역사회 기관 중 중하위 수준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제약요인이 됨.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투자로 확보됨.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참여가 어려움. 시도와 시군구센터가 각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는 현 상태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간의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확립이 어려움.
- 안전망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청소년동반자는 계약직 신분과 짧은 임상경력 등으로 새로운 전문 인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함. 동반자 사업은 통합지원체계사업과 동일지역에서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실행과정에서 통합지원체계사업지역과 불일치하는 지역이 나타남.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 내 구성요소 간 통합이 부족함.

### 3. 정책제언

-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이념적 기초를 청소년인권에 두고 사업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하되 청소년 위기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를 만듦.
-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들어온 청소년의 정보관리, 제공된 서비스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카드제 도입.

- 청소년동반자와 통합지원체계 예산항목을 통합하고 이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 단위 대응투자 예산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사업지역과 통합지원체계사업 지역을 일치시킴.
- 위기청소년의 발견과 관리, 정보보호, 서비스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담은 위기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거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보완함.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적 발견을 위해 정규학교 15일 이상 장기 결석자에 대한 학교의 신고의무제 도입.
  - 청소년 보호처분제도의 하나로써 ‘청소년상담의무제’ 도입.
  -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지원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지원 등기부 제도, 청소년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센터의 기능 차별화 및 일원화된 전달체계 확립.
-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를 지역사회 안전망 허브기관으로 리모델링함.
- 상담지원센터의 ① 지역사회 조직화 역량 ② 전문성 강화 ③ 홍보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여야 함.
-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확충하도록 함.
- 시군구를 안전망 구축의 기본단위로 하되 인접지역끼리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의 권역화, 공동이용체계를 구축.
- 시설평가 항목에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적, 사례 공동 관리실적을 포함시켜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 기관간의 사례 교환을 촉진함.
- 청소년동반자 인력의 지속적 확충, 청소년동반자의 지역사회기관 파견배치 등을 통해 청소년동반자의 이동거리를 축소하고 활용도를 높임.

## 목 차

I. 서 론 .....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4
3. 연구방법 .....	10
II. 위기청소년과 지역 사회 안전망의 개념 .....	15
1.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정책대상 .....	15
1) 청소년기의 특성 .....	15
2) 위기청소년의 개념 .....	17
3) 위기청소년의 유형 .....	24
2.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	27
1) 지역사회의 의미 .....	27
2) 사회안전망의 개념 .....	29
3)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	31
4)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	32
5)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와 구성원칙 .....	33
III.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국내 유사 사업사례 .....	51
1.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	51
1) 사업 개요 .....	51
2) 사업 분석 .....	59
3) 향후 추진계획 .....	73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	74
1) 사업 개요 .....	74
2) 사업 분석 .....	81

3) 향후 추진계획 .....	97
3. 경기도 ‘We Start’ 사업 .....	97
1) 사업 개요 .....	97
2) 사업 분석 .....	106
3) 향후 추진계획 .....	118
4. 유사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	119
<b>IV. 위기청소년 실태 분석 .....</b>	<b>125</b>
1. 위기청소년의 위기로인과 보호요인 .....	125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31
1) 조사대상 .....	131
2) 조사방법 .....	132
3.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로인 .....	137
1) 위기청소년의 특징 .....	137
2) 위기 청소년의 개인적 위기로인과 문제행동 .....	144
3) 가정환경 및 주거환경 특징 및 위기로인 .....	153
4) 위기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 .....	161
4.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보호 요인의 차이 .....	164
1) 위기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로인 수준 차이 .....	164
2) 위기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보호요인 수준 차이 .....	169
5.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 .....	173
1)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개입상태 .....	174
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위기로인 수준 차이 .....	176
6.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기대와 지원현황 .....	180
1) 위기청소년특징 별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	181
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	186
7. 결과요약 및 시사점 .....	188
1) 위기청소년의 특징 및 학교, 친구문제 .....	188

2) 위기청소년의 정서, 정신건강 및 행동문제 .....	189
3) 가족 및 주거환경 .....	191
4)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 .....	192
5)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보호 요인의 차이 .....	193
6)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차이 .....	194
7)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	196
<b>V.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실태분석 .....</b>	<b>203</b>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203
1) 조사 대상 .....	203
2) 조사 방법 .....	204
3) 조사 내용 .....	205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 현황 .....	209
1) 조사대상 지역 현황 개관 .....	209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 현황 .....	213
3. 안전망 참여기관의 연계협력 실태 및 욕구 분석 .....	219
1)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	219
2) 조직유형별 연계협력 실태 .....	227
3) 지역별 연계협력 실태분석 .....	239
4) 참여기관의 연계협력에 대한 욕구분석 .....	262
4. 허브기관분석 .....	271
5. 지역별 동반자 실태 분석 .....	287
1) 동반자의 일반적 특성 .....	287
2) 동반자 연수 및 교육현황, 지역자원 연계능력 .....	290
3) 동반자의 업무만족도 .....	294
4)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	296
6. 요약 .....	297
1) 지역자원의 확보현황 .....	297

2)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 실태 .....	298
<b>VI. 외국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례 .....</b>	<b>307</b>
1. 영국 : 커넥션즈 사업 .....	307
1) 사업개요 .....	307
2) 사업 분석 .....	312
3) 관련 주요 법제 및 내용 .....	327
4) 향후 추진계획 .....	329
2. 일본 : 아동학대예방사업 .....	331
1) 사업 개요 .....	331
2) 사업 분석 .....	332
3)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률 .....	358
4) 향후 추진 계획 .....	360
3. 미국 : SafeFutures 사업 .....	363
1) 사업개요 .....	363
2) 사업 분석 .....	366
4. 미국 : System of Care .....	385
1) ‘System of Care’ 의 개념과 발전과정 .....	385
2) 사업사례분석 .....	393
5. OECD :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YEPP) .....	402
1) 사업개요 .....	402
2) 지역별 사업 분석 .....	406
3) 향후 추진계획 .....	420
6.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	421
<b>VII.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방안 .....</b>	<b>427</b>
1. 문제점 .....	427
1) 지역사회 안전망 개념 및 구성상의 문제 .....	427

2) 허브체계로서 상담지원센터의 문제 .....	430
3)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기관 실태와 욕구문제 .....	432
4) 동반자인력 활용문제 .....	434
5) 재정적 지원체계의 문제 .....	435
2. 발전방안 .....	436
1)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이념적 기초 및 사업구성에 대한 제언 .....	436
2) 허브체계로서 상담지원센터 개선방안 .....	438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441
4) 청소년동반자 양성 활용방안 .....	442

## 표 목 차

<표 I-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	12
<표 II-1> 사회안전망 구축체계 .....	30
<표 II-2> 사회안전망의 구분 .....	31
<표 II-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행정담당 조직 .....	36
<표 II-4> 지역사회 개별지원체계의 주요역할 .....	37
<표 II-5> 지역사회 안전망 구조에 따른 해당기관 분류 .....	38
<표 III-1> 성공요소와 주요과제 .....	55
<표 III-2> 2006년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	58
<표 III-3> 지역별 동반자 수 .....	70
<표 III-4> 20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교육기관 .....	81
<표 III-5>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교육기관 .....	82
<표 III-6> We Start 센터 인력구성 .....	109
<표 III-7> 서비스 영역별 분포 .....	112
<표 III-8> 건강사업 프로그램 분포 .....	113
<표 III-9> 보육/교육사업 프로그램 분포 .....	113
<표 III-10> 복지사업 프로그램 분포 .....	114
<표 III-11> 유사 사업 비교 .....	119
<표 IV-1> 위험요인 영역 및 하위요인 .....	129
<표 IV-2> 보호요인 영역 및 하위요인 .....	129
<표 IV-3> 청소년위기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	133
<표 IV-3> 청소년위기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	134
<표 IV-4> 보호요인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	134
<표 IV-5> 위기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	136
<표 IV-5> 위기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	137
<표 IV-6>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관련 현재 신분, 학년 .....	138

<표 IV-7> 재학생의 성적 수준 .....	139
<표 IV-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종학력 .....	140
<표 IV-9> 위기 청소년현재 개입상태 .....	142
<표 IV-10> 위기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징 .....	143
<표 IV-11> PTSD 경험의 주요 항목 .....	146
<표 IV-12> 신체적 성적 학대피해경험 .....	147
<표 IV-13> 신체적 학대자 .....	148
<표 IV-14> 성적 학대자 .....	148
<표 IV-15> 약물문제 .....	149
<표 IV-16> 폭력문제 .....	150
<표 IV-17> 자살문제 .....	151
<표 IV-18> 사법문제에 연루된 경우 .....	152
<표 IV-19> 가출문제 .....	153
<표 IV-20> 부모관련 특징 .....	154
<표 IV-21> 기타 가족적 특징 .....	155
<표 IV-22> 가족경제상황 .....	156
<표 IV-23>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과 폭언, 욕설 .....	157
<표 IV-24> 가족원 범법자 유무 .....	158
<표 IV-25> 주거환경 특징 .....	159
<표 IV-26> 주거지역 특징 .....	160
<표 IV-27> 보호요인-목표의식 있음의 구체적인 내용 .....	162
<표 IV-28> 보호요인 : 타인 혹은 환경요인 .....	163
<표 IV-29> 각 영역 별 위기 요인 평균 및 표준 편차 .....	165
<표 IV-30> 성별에 따른 영역별 위기 요인 차이 .....	166
<표 IV-31> 학교관련 신분에 따른 영역별 위기로인 차이 .....	167
<표 IV-32> 학령에 따른 영역별 위기로인 차이 .....	167
<표 IV-33> 위기수준집단구분에 따른 영역별 위기로인 차이 .....	168
<표 IV-34> 보호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	169

<표 IV-35> 각 영역별 보호요인 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	170
<표 IV-36> 성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	171
<표 IV-37> 학교관계 신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	171
<표 IV-38> 학령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	172
<표 IV-39> 위기수준집단구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	173
<표 IV-40>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	174
<표 IV-41>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	175
<표 IV-4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입상태 .....	176
<표 IV-43> 지역별 학교위기 차이 .....	177
<표 IV-44> 지역별 친구위기 차이 .....	177
<표 IV-45> 지역별 개인위기 차이 .....	178
<표 IV-46> 지역별 가족위기 차이 .....	179
<표 IV-47> 지역별 주거위기 차이 .....	179
<표 IV-48> 지역별 위기 총 점수 차이 .....	180
<표 IV-49> 권역별 지원기대와 현황 .....	200
<표 V-1>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결과 .....	205
<표 V-2> A지역과 B지역 현황 개관 .....	210
<표 V-3> C지역과 D지역 현황 개관 .....	211
<표 V-4> E, F, G 지역 현황 개관 .....	213
<표 V-5> 지역자원 유형 및 수 .....	215
<표 V-5> 지역자원 유형 및 수 .....	216
<표 V-6> 조직기능(중분류) 지역자원 확보현황 .....	217
<표 V-7> 지역별 확보자원의 조직기능·구조·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	219
<표 V-8> 지역별·조직유형별 응답기관의 수 .....	220
<표 V-9> 조직유형별 인력규모 현황 .....	222
<표 V-10> 정규직원 규모로 본 조직유형 분류 .....	223
<표 V-11> 조직유형별 연간 예산 규모 .....	224
<표 V-12> 예산 규모에 따른 조직 분류 .....	224

<표 V-13> 조직유형별 위세 순위 .....	225
<표 V-14> 수탁단체 현황 .....	227
<표 V-15> 조직유형별 협력 합의기관 현황 .....	228
<표 V-16> 조직유형별 사례의뢰 및 재배치 현황 .....	229
<표 V-17> 사례 재배치 기관 및 인원 현황 .....	231
<표 V-18> 서비스 교환 기관 현황 .....	234
<표 V-19> 교환한 프로그램 수 .....	235
<표 V-20> 조직유형별 연계협력순위 .....	237
<표 V-21> 공동대응 이슈 .....	239
<표 V-22> A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	240
<표 V-23> A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43
<표 V-23> A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43
<표 V-24> A지역 서비스 교환현황 .....	245
<표 V-25> B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	246
<표 V-26> B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48
<표 V-26> B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49
<표 V-27> B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	250
<표 V-27> B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	251
<표 V-28> C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	252
<표 V-29> C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53
<표 V-30> C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	255
<표 V-31> D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	256
<표 V-32> D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57
<표 V-33> D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	258
<표 V-34> K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	259
<표 V-35> K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	260
<표 V-36> K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	261
<표 V-37> 연계가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 .....	263

<표 V-38> 조직 유형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업무 .....	264
<표 V-39> 자기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의 인지도 .....	265
<표 V-40> 연계정도 평가 .....	265
<표 V-41> 장애요인 .....	266
<표 V-42> 조직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건 의 사항 .....	267
<표 V-43>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사업 .....	268
<표 V-44> 상담지원센터 인지도 .....	269
<표 V-45>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업무 .....	270
<표 V-46> 상담지원센터 역할요구 우선순위 .....	270
<표 V-47>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연령 .....	271
<표 V-48>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의 학력 .....	272
<표 V-49>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가 소지한 자격증 .....	272
<표 V-50>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직위 .....	273
<표 V-51> 협력담당자의 교육훈련참여정도와 비공식인맥 .....	274
<표 V-52> 상담지원센터의 주변 환경(중복응답) .....	274
<표 V-53> 상담지원센터의 인력규모 .....	275
<표 V-54> 상담지원센터의 1년 예산과 증가예산 .....	276
<표 V-55> 상담지원센터를 수탁한 단체의 성격 .....	276
<표 V-56> 센터가 현재 사용하는 기관명칭 .....	277
<표 V-57> 상담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의 변화 .....	278
<표 V-58> 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281
<표 V-59> 상담지원센터가 지원 받기 원하는 서비스 .....	282
<표 V-60> 센터 인지도 자기평가 .....	283
<표 V-61> 상담 지원센터의 연계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	284
<표 V-62> 상담지원센터가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	284
<표 V-63>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	285
<표 V-64> 동반자의 연령 .....	287
<표 V-65> 동반자의 학력 .....	288

<표 V-66> 동반자가 소지한 자격증 .....	289
<표 V-67> 동반자의 근무 기간 .....	289
<표 V-68> 동반자의 종사자 특성 .....	290
<표 V-69> 동반자가 참여한 교육을 개최한 기관 .....	291
<표 V-70> 동반자가 받은 교육 프로그램 .....	292
<표 V-71> 동반자가 참여한 교육 회수 .....	293
<표 V-72> 동반자의 친분 있는 조직 수 .....	294
<표 V-73> 동반자의 역할 만족도 .....	294
<표 V-74>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만족과 불만족 이유 .....	295
<표 V-75> 동반자 역할에 대한 인식 .....	296
<표 V-76>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	297
<표 V-77>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실태 .....	300
<표 VI-1>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특징 .....	314
<표 VI-2> PA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 .....	323
<표 VI-3> 아동학대 관련 직무내용과 주요 전문인력 .....	354
<표 VI-4> 혁신적 측면에서의 SOC의 특징 .....	391
<표 VI-5> SOC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394
<표 VI-6> SOC사업 조직체계 .....	396
<표 VI-7> 제퍼슨 카운티의 예산산출내역 .....	397
<표 VI-8> 제퍼슨카운티 SOC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황 .....	398
<표 VI-9> YEPP의 Empowerment Matrix .....	403

## 그림 목 차

<그림 I-1> 위기 연속선 .....	6
<그림 I-2> 청소년의 위기수준 .....	7
<그림 II-1>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	40
<그림 II-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서비스 체계도 .....	41
<그림 II-3>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	42
<그림 II-4>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 .....	44
<그림 III-1> 위기 청소년 개념도 .....	53
<그림 III-2> 추진전략 체계도 .....	55
<그림 III-3> CYS-NET 사업 추진 체계 .....	66
<그림 III-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목표와 전략 .....	78
<그림 III-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체제 .....	90
<그림 III-6>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	99
<그림 III-7>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방향 .....	100
<그림 III-8> 사업의 목표 : 아동 .....	101
<그림 III-9> 사업의 목표 : 부모 및 가정환경 .....	102
<그림 III-10> 사업의 목표 : 지역사회 .....	103
<그림 III-11> 추진 전략 .....	104
<그림 III-12> We Start 마을 사업추진 체제 .....	108
<그림 III-13> 사업의 내용과 방향 .....	109
<그림 V-1> 안전망 참여기관의 조직유형별 위세 .....	226
<그림 VI-1> 일본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	336
<그림 VI-2> 일본의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	339
<그림 VI-3> SOC의 8대 영역 .....	387
<그림 VI-4> SOC의 체계 .....	392

참고 문헌 .....	445
부 록 .....	453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극심한 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 등이 지적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학교생활에서의 실패로 노동과 성인생활로의 성공적 전환을 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집단이다. 즉,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성·약물·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이다.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는 90년대 후반부터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OECD 제국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 인적자원개발과 경제발전에 주는 함의가 크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통합적 정책과제로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제1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하반기에는 가출청소년 통합지원망 구축, 청소년동반자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원체제를 의미한

다. 즉, 위기청소년의 발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욕구 사정, 위기 청소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체제,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을 의미한다.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체제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폭력, 약물 등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사회대책으로 수행된 몇 개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출,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시스템, 쉼터, 그룹홈, 상담실, 선도보호시설, 대안학교, 직업훈련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시설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국내외 유사 정책사례를 수집, 비교 연구한다. 또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그리고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실태를 분석하여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 내용

앞에서 제시한 바 OECD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의 적응 여부’가 위기청소년 개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스위스나 노르웨이도 OECD의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국가 리포트를 보고하고 있다. 즉, 스위스는 위기청소년을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 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직업교육 중퇴자,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으나 실업자인 청소년 등으로 학업, 직업교육 중단과 실업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로 교육과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14-2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사업은 위기청소년을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 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나 임신한 청소년, 국제 난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청소년, 약물복용 청소년, 무단결석자, 퇴학자, 학습부진아,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낮은 자존감과 동기 등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등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습부진과 학업 중단자 뿐 아니라 요보호청소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 성, 약물, 가출 등 행동적, 심리·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적절한 학업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3-18세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적,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위기상황을 예시하고 있다.<sup>1)</sup>

영국 커넥션즈 사업이 위기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서 단순 열거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Chaim Lahav는 청소년의 위기를 생태학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정의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인은 위기의 수준이다. 위기는 연속선상에 있는 발달적·단계적 개념이다. Jeffries McWhirter 등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위기(At-Risk)란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 이라 하였다. 일례로 흡연은 음주의 위기, 음주는 마약 복용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행동장애, 공격성, 학업부진 등을 보인 학생이

---

1) Chaim Lahav(2005), ‘Children and Youth At Risk in Israel’ .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언어장애 등 교육적 위기상황, 낮은 자아존중감, 무력감, 약물복용 등의 위험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위기상황, 폭력, 범죄에 관여, 성학대 또는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는 경우 등 사회적 위기상황, 이주가족, 부모의 이혼, 한 부모, 질병, 방임, 학대, 경제적 빈곤, 부모의 역기능 등을 포함하는 가족적 위기상황이 있다.

이후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Jeffries McWhirter, Bendict T. McWhirter, Ellen Hawley McWhirter, Robert J. McWhirter, 2004:6).

Jeffries McWhirter 등은 위기가 <그림 1-1> 과 같이 연속선상에서 5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1-1> 위기 연속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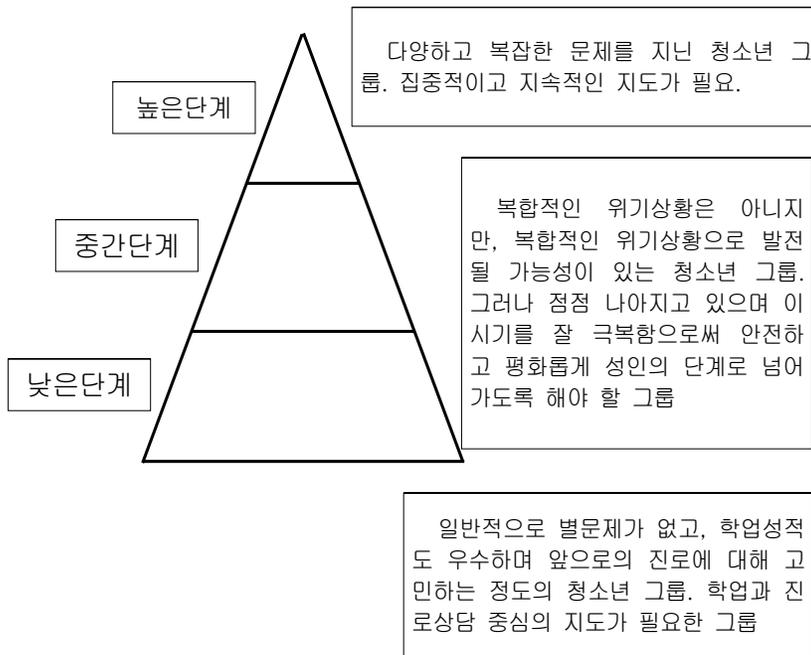
- 최저위기는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저위기는 최저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약간은 부족한 가정, 학교, 사회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 고위기는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 하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 위기행동입문은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 위기행동<sup>2)</sup>(At-risk category activity)이란 입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2) Jeffries McWhirter (2004) 등은 학업중단, 약물복용 및 중독, 10대 임신 및 위험한 성행동,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폭력 동아리 가입, 학교에서의 총기 사용, 청소년 자살 등을 위기범주행동으로 제시함.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Jeffries McWhirter, Bendict T.McWhirter, Ellen Hawley McWhirter, Robert J. McWhirter, 2004:6-9).

여러 가지 위기요인이 청소년에게 중첩적·복합적으로 작용 할수록 위기수준은 높아진다. J.Jeffries McWhirter는 위기수준을 연속선상의 5단계로 정의하면서 가장 심각한 위기수준을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총기 사용 등과 같은 범주의 행동을 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커넥션즈 사업은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그림 1-2>와 같이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sup>3)</sup>



<그림 1-2> 청소년의 위기수준

3) Connexions(2001), Introduction to Connexions: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p.16.

- 낮은 단계 : ‘별 문제가 없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청소년그룹’이다. 학업과 진로상담 정도가 필요한 수준이다.
- 중간단계 : 복합적인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인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할 그룹이다.
- 높은 단계 :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다.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개념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어느 특별한 집단이 아니며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위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의 위기청소년 규모를 추계한 바에 따르면 165만명 수준으로 고위 기군이 47만 6천, 중위기군이 117만 6천명이다. 이는 빈곤, 이혼, 학대, 북한이탈,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가족적 위기, 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 범죄·성범죄 피해, 실업 등 사회적 위기,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가해, 흡연 등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를 추계한 것이다(윤철경, 2005b: 29-32). 이것은 보건복지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자료, 기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청소년현장의 경험결과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1) 위기청소년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한국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기청소년의 선정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동반자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 대한 상세 결과는 제 3장에 소개된다.

## 2)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정의 및 실태분석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을 기초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하며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도 통합지원체계 사업시행 지역 중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업이 추진된 지 수개월에 불과하여 조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어떤 성격의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자원들 간에 어떠한 교환관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사회안전망 내의 허브체계로서 상담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욕구,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환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다.

## 3) 청소년동반자 실태분석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주요 인력인 청소년동반자 실태를 분석하였다.

## 4) 국내 유사사업 사례분석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부처에서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부처간의 사업이 사업대상과 목적에서 고유성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타 부처 사업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5) 외국의 유사사업사례 분석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유사사업 사례를 고찰하였다.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과 정확하게 동일한 사업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은 유사하리라는 전제 하에 위기청소년보호 또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위기청소년 및 지역사회 안전망, 위기청소년정책 및 관련부처 정책사례, 외국의 정책 사례 등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2) 상담기록지 분석

한국의 위기청소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 사업 대상이 되었던 위기청소년의 상담기록지를 개발된 설문문항에 맞게 코딩하는 기록지 분석방법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설문조사

2006년도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37개 지역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안전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목록을 분석하였고 이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4) 면접조사

선정된 5개 지역 상담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사업 담당자, 청소년동반자,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5) 이메일조사

선정된 5개 지역 위기청소년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 6) 외국사례연구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위기청소년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유사사업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이나 문헌자료를 기초로 하되 현지 기관 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 7)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방안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유사사업사례 분석을 위해 관련분야 국가정책 전문가가 참여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국외정책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조사결과, 안전망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장실무자, 학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 위기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	문헌연구
2. 위기청소년 실태분석	상담 기록지 분석
3.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	설문조사/면접조사/이메일조사
4. 청소년동반자 실태분석	설문조사
5. 국내 유사사업 사례 조사	문헌연구/국가정책전문가 워크숍
6. 외국의 유사사업 사례조사	문헌연구/면접조사
7.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발전방안	전문가 워크숍

## Ⅱ. 위기청소년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

1.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정책
2.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

## II. 위기청소년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

### 1.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정책대상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심리적 문제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교육자, 상담자, 그리고 많은 대인서비스를 다루는 전문가들 간에 위기(at-risk)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행동이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도전의 시기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가는 과정의 궤도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법대로 향해해가곤 한다. 즉 가치관의 형성과 직업 선택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성인기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이 사회의 통합된 구성원으로서 성공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조화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능력을 배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증가하는 가족해체 및 다양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지와 지원이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어떤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경험, 가족 내에서의 부정적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생존하면서 빈곤, 혼란한 가정, 형편없는 학교환경 등의 열악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미래에 이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으로 인식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항로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행동들에 개입하곤 한다. 즉 이들은 갱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거나, 범죄와 폭력 행동을 일삼으며, 약물을 남용하고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과 같은 위기 행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역할정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위기청소년은 아니다. 일부는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성인이 되지만 나머지 일부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청소년은 사회에서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도 한다.

Dryfoos(1990)에 의하면 미국 십대 청소년의 25% 정도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범주에 속해 있고, 또 다른 25%정도의 청소년이 중간 수준의 위기에 놓이게 하는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Burt 외, 1998). 또한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법 약물의 사용 등 위험하게 여겨지는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이들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한편 Frymier에 의하면 개인들은 위협에 놓인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Dobizl, 2002). 또한 모든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부딪칠 문제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위기를 느끼면서 적절한 지식, 긍정적 행동, 친사회적 태도, 그리고 기타 건강한 특징 등을 개발해내고 있다.

실제로 열악한 가정환경 및 사회 환경 속에서도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

소년들은 능력, 자율 및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기술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종종 성직자, 선배, 청소년 실무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함은 물론 가까운 또래 친구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반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 격려, 조언 등을 제공해주고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생존과 성공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 요인에 있어서도 사회 기술, 내적 통제력, 긍정적인 자기 고려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2) 위기청소년의 개념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조사들을 살펴보면 위기에 처한 청소년(youth at risk)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배제한 채 이 용어를 사용하여 청소년 문제를 다루곤 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교육기관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개념과 이론적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누가 위기청소년인가?’ 라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관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정책입안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용어에 관한 총체적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위기청소년과 유사한 의미로 ‘사회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탁보호체계에 놓여있는 청소년들, 사법체계에 연루된 청소년들, 자녀가 있는 십대 청소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들 그리고 공공 건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을 일컫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나 조작적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용어의 의미가 모호한

체 남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덧붙여 이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 인구 층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어려움은 위기 요인들(risk factors), 위기행동(risk behaviors)이라는 유사한 용어와도 혼용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위기(at risk)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범위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및 기타 학문 분야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의미가 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의 경우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잠재력 발달의 저해, 건강의 손상, 자아감의 손상, 성공적인 삶의 기회가 제한됨 등의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900만-1,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발전시킬 기회조차 없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이를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행동에 연루될 때까지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Johnson(Teachers in the Inner City 1997:19-27)은 잘 정립된 척도 ‘십대 임신, 학교 실패, 약물남용, 자살 및 구금(拘禁) 등’에 의거하여 전국 규모의 위기청소년을 추정한 결과 모든 학생들의 거의 1/3에서 1/2정도가 위기청소년으로 분석되었다. Kemper 외(1999)는 위기청소년의 수를 7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흑인계 아동의 51%, 라틴계 아동의 45%, 그리고 백인계 아동의 17%가 위기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코올과 약물사용, 범죄와 폭력, 문맹과 학교 중퇴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철경(2005a)은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범주화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적 위기에 속한 청소년이 93만 -110만 명, 교육적 위기에 속한 청소년이 32만 3천명-36만 4천명, 사회적 위기에 속한

청소년이 22만명- 42만 6천명, 그리고 개인적 위기에 속한 청소년이 16만 2천명-40만 9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위기청소년의 규모에 있어서 참고자료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폭력, 가정구조의 파괴, 약물남용, 놀랄만한 미디어 이미지 그리고 갱 활동들이 십대들을 위협에 빠지게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는 십대들은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범죄행동에의 개입,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관련 행동 및 자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놓여 있는 십대들은 가출하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나 청소년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을 위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어려움(빈곤, 학대, 부모의 사망과 학교실패, 십대임신, 소년비행 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기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없이 다양한 의미로 또는 모호한 용어로, 일치된 견해가 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예방과 개입노력의 효과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청소년으로 여겨지는 많은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 사회와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분명하고 공유된 이해가 결여되다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서비스 욕구가 있을 때 서비스 수혜대상 욕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중복된 개념 정의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되는가 하면 이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기 인구층을 하나의 범주로 묶게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상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 (Youth at-risk Commission, 2000).

“위기(at-risk)” 라는 용어는 종종 이미 부정적이고 매우 위험한 활동에 연루되기 시작한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통적인 아동복지체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서 성인체계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 그 밖에도 이들은 이미 서비스체계로부터 한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도 하지만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덧붙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은 책임감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노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더 큰 세상에서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이러한 청소년들은 십대부모, 복지수혜자, 수감자, 한 부모 또는 결손부모, 실직상태의 성인의 모습을 잠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극심한 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은 성공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행동, 태도 그리고 기술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종종 어린 시기의 생활과 학교생활에 있어서 행동, 인지 그리고 정서 간에 서로 얽힌 역기능적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학교에서의 실패, 약물 사용, 십대 임신, 비행 및 자살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뒤엉키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위기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실패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적응을 위협하는 무수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궤도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Schonert-Reichl, 2000). 이와 유사하게 Dryfoos(1990)도 넓은 의미의 위기를 정의하여 ‘위기’라벨을 책임감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 성숙하지 못한 개인들로 언급하고 있고, Ginzberg 외(1988)는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비효과적인 실행자(ineffective performers)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범죄활동에 개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자신이나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OECD(1995)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이란 학교에서의 실패로 노동과 성인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실패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집단이다. 즉 위기청소년이란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으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은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과 성인생활로의 전환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그 결과 적극적인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OECD의 정의에 입각해서 스위스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훈련을 마쳤으나 실업자인 청소년 등으로 학업, 직업교육 중단과 실업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14-22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에서는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을 실시하면서 학습부진과 학업 중단자 뿐 아니라 요보호청소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 성, 약물, 가출 등 행동·심리·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범주화하고 있다(윤철경c, 2005).

이들은 가족구조측면에서 가정 밖에서 거주하는 위험에 놓여있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법집행기관, 학교, 교회 등 사회의 기관들과 부정적인 접촉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병폐 측면에서 약물남용, 마구잡이식 성관련 행동, 신체적 학대 등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위기에 처해있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은 임신, 약물이나 알코올사용, 학교중퇴, 실업, 폭력에 개입,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밖에도 미국의 노동부 산하의 고용과 훈련 담당 부서에서는 위기청소년

년이란 비행행동이나 불법행동을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않지만 비행행동을 저지를 잠재성과 연관이 있는 위험요인(빈곤, 약물이나 알코올사용, 갱 개입, 지지적인 또는 안정적 가족환경의 결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행동들로는 폭력과 공격성, 성적 행동, 약물남용, 자살행동/자살기도/자살언급, 거짓말, 속임, 절도, 가출문제, 만성결석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청소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4가지 주된 위험한 요인(risk factors)으로 학교성적의 실패, 유해약물의 사용, 사법체계의 연루 및 십대 임신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미시간 주의 경우 공공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험요인들 즉, 빈곤, 건강보호체계로의 접근, 방임, 십대부모, 범죄와 비행 및 잎담배 사용을 거론하고 있다(Michigan Nonprofit Association, 2002). 이에 덧붙여 Boston Youth Network(2006)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재판에 연루, 무단결석, 갱 집단에서의 연루, 만성적 약물사용자, 노숙청소년, 그리고 임신이나 이미 부모가 되어 있는 12-21세의 청소년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주가 갖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위기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McGuirk, 2001). 현재 일반적인 정의는 자신이나 사회를 위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 정의를 적용할 경우 현 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볼 때 북유럽의 정의와 유사하게 학교에 초점을 두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좁은 의미의 위기청소년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의 워싱턴 주의 소년법정에서 사용하는 위기청소년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허락 없이 적어도 72시간을 집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아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안

정, 복지를 위협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 범죄로 여겨져 계류 중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약물남용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위기를 구체적인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McWhirter 외(2004)는 학교 중퇴, 약물남용과 중독, 십대 임신과 위험한 성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및 갱 청소년, 학교에서의 총기남발, 자살 등을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중퇴의 경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 영향은 물론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불만족,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낮은 취업 관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들 또한 낮은 경제적 수준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곤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실업,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된다. 약물 남용의 경우 개인의 현실 감각, 지적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약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각종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한 성관련 행동에의 개입, 교육 기회 추구의 실패, 미취업이나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얻곤 한다. 그 밖에도 십대 임신의 경우 사회경제적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문제, 취약한 영양과 건강, 실업 또는 저임금, 학교 중퇴, 부적절한 취업 훈련, 재정상의 의존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Robin Hood Foundation(1996)은 이러한 십대 소녀의 임신이 매년 90억 불의 예산을 소요케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폭력, 가정구조의 파괴, 약물남용, 갱 활동 등이 십대들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은 종종 사회의 주류(mainstream)에 포함되지 못한 청소년들로 학습 실패, 미래의 취업의 기회가 감소되는 학교 중퇴, 약물남용과 범죄 행동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연루되곤 한다(ERIC Digest, 2003:248).

그 밖에도 이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형편없는 사회기술을 통해 범죄, 자살, 가정에서의 학대, 약물과 알코올남용, 이른 나이에 임신, 학교결석 등

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심각한 학습상의 차이(짧은 집중력, 형편 없는 학습습관, 충분치 못한 동기화), 정서적·행동적 이슈(약물남용, 가족문제,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 학대, 정신이상), 심각한 학습 장애 및 사법체계에의 연루 등에 있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조사들은 한 가지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는 아이들은 종종 다른 위험한 행동들에게 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가정 또는 또래집단들과 함께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문화적 영향, 또래압력 그리고 종종 도전적인 생활환경들-가난, 노숙자화, 위탁보호, 부모개입의 부족,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공격, 비행체계에서의 경험 등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이란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언젠가 도 위기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기술을 제공받고, 학교의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로 인한 실패,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상태에서의 삶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3) 위기청소년의 유형

Johnson(1997)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좀 더 세분하여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 위험요인으로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으로 성적 행동, 약물사용과 남용, 학교에의 잦은 지각과 중퇴,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을 포함한다.

둘째,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감독의 결여,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무능한 부모, 방임,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이혼, 사회복지 수혜자, 가

계주가 고등학교 중퇴, 가족 경제수준의 빈곤선 이하, 가계주의 일정하지 못한 취업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 가용한 일자리의 질과 양, 임금, 떨어져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용할 훈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기초한 위험요인으로 교사의 부적절한 준비,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 관련된 교과과정의 부족, 개별교습의 실패, 적절한 프로그램의 결여, 학교폭력, 적합하지 않은 지도와 지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이스라엘의 개념정의와 유사하다. 즉 이스라엘의 Chaim Lahav는 적절한 학업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3-18세(특수교육 대상자는 21세까지) 아동·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적,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위기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언어장애 등 교육적 위기상황. 낮은 자아존중감, 무력감, 약물복용 등의 위험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적 위기상황. 폭력, 범죄에의 관여, 성학대 또는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는 경우 등 사회적 위기상황, 이주가족, 부모의 이혼, 한 부모, 질병, 방임, 학대, 경제적 빈곤, 부모의 역기능 등을 포함하는 가족적 위기상황이 있다(윤철경, 2005b).

윤철경은 한국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윤철경, 2005b).

- 가족적 위기 : 빈곤, 이혼 자녀, 소년소녀가장, 학대아동,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자녀
- 교육적 위기 : 학습부진, 학업중단
- 사회적 위기 : 폭력피해, 범죄/성범죄피해, 실업
- 개인적 위기 :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가해, 흡연

한편, 위험을 고 위험과 위험으로 구분하는 연구들도 있다.

Smith(2004)는 고 위험에 놓여있는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른 나이에 임신, 약물남용, 노숙자화, 범죄적 사법체계에 심각한 수준으로 개입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십대 중반 내지 후반의 연령층이고 학교실패 또는 학교중퇴, 한 부모가정 출신, 알코올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자이며, 일부는 폭력의 희생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의 경우 고위기군에는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학업 중단자, 학대나 오보호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중 위기군에는 빈곤과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보고서(2003)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교육, 훈련 및 고용체계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low risk - 최소한의 개입과 함께 교육/훈련/고용/생활양식 선택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필요로 함.
- moderate risk - 이탈의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깊이 있는 지지와 지도가 필요함.
- high risk - 집중적인 지지가 요구됨.

이러한 위험의 세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이러한 단계들을 이동하면서 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정의와 개념이 광범위하다보니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위기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범주화는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기청소년의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위기의 정도, 욕구의 정도, 욕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이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2.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직접적 환경요소로서 청소년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청소년이 성장하는 발달 환경으로서 지역사회는 청소년 사회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는데 필요한 좋은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의 감소나 지역의 해체 그리고 유해환경의 만연 등으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그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빈곤, 지역 사회 친밀도 및 조직화 정도, 지역의 규범, 약물이나 마약복용의 가용성 등은 청소년 문제 행동과 직접 관련되고 있어 위기청소년을 조장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는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위험요소(risk factor)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청소년의 보호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으로써 그들이 위험에 빠뜨려짐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조홍식 외, 2000).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안전망인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선 지역의 의미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 1) 지역의 의미

지역사회라는 용어처럼 다양한 상황에 응용되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갖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지역의

역사, 인구 집단의 특성과 크기, 인구 밀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의 구조적 특성 등과 같은 지역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교육 욕구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지역사회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구성원들의 욕구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욕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자원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 사회 제도, 기술과 지식 및 정보 축적 등도 포함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갖는 강점과 제한점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역량,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수용 정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oman, 1994).

또한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려면 사회 시스템 시각에서 바라보는 Fellin(1995)의 견해도 유효하다. 그는 사회 시스템 시각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하부 시스템으로는 자원활동 시스템과 구성 단체들,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보호 시스템과 구성 기관들, 지역사회 교육 시스템과 관련 조직들, 지역사회 경제 시스템과 관련 조직들, 지역사회 정치 시스템과 관련 조직들 등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시스템들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구성과 특징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역량(competencies) 및 문제와 관련된 각 부문의 역량(competencies)임을 강조한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힘, 자원 및 잠재력 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연결망(linkages)의 시각에서 각각의 연결망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Martin & O'Connor, 1989)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의 의미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강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역사회 내외의 자원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결망 구조 등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 2)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은 원래 브레튼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하였으며, 과거 약 70-80년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었었다. 그리고 일찍이 Wilensky와 Lebeaux가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잔여적인 사회복지를 ‘안전망(Safety Net)’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Wilensky and Lebeaux, 1958).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는 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공부조 대상에 의존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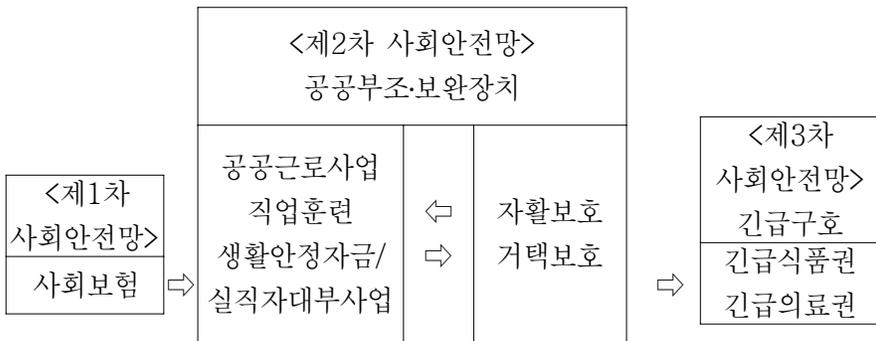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협의의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 광의의 사회안전망은 어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포괄범위가 어떻든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안전망이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보호해 주는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일시에 발생하는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가 수행하는 사회안전망, 즉 공공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완적 장치(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실직자 대부사업 등)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사회안전망은 다음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지칭하고, 제2차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를 의미하며, 제3차 사회안전망은 긴급보호제도를 지칭한다(정경배·박찬용, 1998).

<표 II-1> 사회안전망 구축체계



한편,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 사회안전망과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 사회안전망은 공공 사회안전망의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들에 의해 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공공 및 민간 사회안전망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제, 담당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그리고 주 대상계층 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사회안전망의 구분

사회안전망		제도	사회적 위험	대상계층
1차 : 예방 (사회보험)		건강보험	질병	일반국민
		국민연금	노령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	실업	
2차 : 기초생활 보장	보완적 장치	공공근로사업	실업	실직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각종대부사업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빈곤	저소득계층
3차 : 긴급구호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저소득계층
민간 사회안전망			실업, 빈곤	저소득계층

자료 : 정경배·박찬용(1998),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공동모임 편, [국정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p.277에서 재구성.

### 3)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지역사회안전망(Community Safety Net)은 한 마디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안전망과 함께 지방정부 자체의 고유한 사회안전망을 가지며, 아울러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여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마련과 평가 기능을 시·도의 경우 서비스 전달과정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각기 담당해야 하며, 통합지원체

계로서의 시·군·구 단위의 공공 지역 센터(협의체)는 기획과 간접 서비스 및 지원업무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 단위의 공공 주민복지문화센터와 민간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직접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등 상호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 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이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지역사회에서 보호해 주는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 4)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청소년 개개인이 부딪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청소년 자신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지역사회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고 공사가 협력하여 보호해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개념은 서비스 지원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진단 및 욕구사정-서비스 지원·연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위기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의 실패, 진로결정과 성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증가, 사회성의 실패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도의 감소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OECD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제 해결 노력이 실패하는 경향성이 높고 그러한 실패의 이유를 다음에서 찾는다. 첫째,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둘째,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것의 문제,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의 부재, 넷째, 서비스들의 사전 문제해결 지향이 아닌 사후 문제해결 지향, 다섯째, 서비스 노력들의 책임성 부재 등이 강조된다. 즉 과거의 해결방안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 이상 간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의 네트워킹(networking)과 통합(integration)의 개념이다(OECD,1996).

즉, 협조(cooperation), 협력(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이라는 용어로도 말해지는 이러한 대안은 이제 각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활동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즉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과 기능, 학교의 기능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기관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제각기 일부 부분 만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통합되도록 함이 강조되고 있다. 즉 네트워킹과 통합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와 구성원칙

### (1)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간, 지역 내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와 학교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

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를 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 개별지원체계 차원과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즉 위기청소년의 발견을 중심으로 하는 신고 및 의뢰체계 관련 지역사회안전망, 진단 및 욕구사정과 관련된 지역사회안전망 그리고 서비스 지원·연계체계와 관련된 지역사회안전망 등을 들 수 있다.

### ① 구조적 측면에서의 구성요소

#### 가. 중앙정부 차원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를 보면, 정부의 각 부처 즉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정부부처이며 청소년의 푸른 성장(Sky-blue Development)을 정책목표로 한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주된 시설지원 사업이며 최근에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목표인 ‘아동의 권리신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사회 보호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아동학대예방 등을 통한 아동권익신장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그룹홈 확대사업,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활성화 사업, 급식대상 아동의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위기 청소년들의 고용기회 확대에 정책

의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의 위기청소년관련 지원시설에는 종합고용안정센터와 직업전문학교가 있으며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 연수지원제)과 취업·진로상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기능사 양성과정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 저소득층 자녀, 기초학력 부진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뿐 아니라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 도시저소득층 및 도서벽지지역의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활성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은 성매매피해 여성 예방 및 보호·자활지원, 성폭력 피해자 권익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전담센터 설치 확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비행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선도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비행원인 진단의 전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제도를 확대하며, 소년원의 특성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체계적 사회복지귀를 지원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중간처우시설, 보호관찰소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행정담당조직은 <표 II-3>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위기청소년 행정 전담부서는 대부분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청소년업무만을 전담하는 청소년과를 설치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여성정책과에서, 제주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중 시의 청소년 행정 전담부서는 대부

분 여성 또는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과에서 청소년계 수준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체육청소년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구의 경우 계 수준의 조직도 아닌 직원 1명이 청소년 행정을 전담하고 있어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따른 부실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행정담당 조직

시 도	전 달 체 계		
	상위부서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수 (단위: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6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청소년과	12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가정청소년과	9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과	4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3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4
강원도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4
광주광역시	관광체육국	체육청소년과	7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6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계	4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7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6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11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	4
경상남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8
제주도	문화스포츠국	스포츠산업과 청소년육성계	3
계			98

#### 다. 지역사회 개별지원체계 차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별 민간전달체계와 학교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 개별지원체계의 각 유형과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4>과 같다.

<표 II-4> 지역사회 개별지원체계의 주요역할

유형	주요 역할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 효율적 추진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 위기청소년 대책 관련 대 국민공감대 확산 및 현장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시설 및 단체	· 위기청소년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교육 · 성(금)품 모금 및 후원자(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 DB구축 및 현장 활동 지원
종교단체	· 단위 종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참여 및 현장 활동
직능단체	· 문화, 복지관련 용역서비스 활동 · 의료, 보건관련 용역서비스 활동
기업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직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후원 활동
학교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의뢰
언론기관	· 후원자(자원봉사자)모집 홍보 · 위기청소년 대책 관련 대 국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정부기관	· 행(재)정 지원/공공근로 지원 · 위기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행정 지원

#### 라.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조

이상 구조적 측면에서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제1차, 제2차, 제3차 사회안전망 등 일반적인 사회안전망 유형과 관련하여 볼 때, 제1차 지역사회안전망은 예방적 차원을 다루며, 제2차 지역사회안전망은 치료 및 문제해결 차원을 다루고, 마지막 제3차 지역사회안전망은 일시적인 긴급적 차원을 다루는 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 산하 지역기관들이나 지방정부 기관들은

대체로 주된 활동을 하게 될 때 제1차 안전망을 기본으로 하는 제1차 지역사회안전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조 활동으로 치료 및 문제해결 활동과 긴급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엄밀하게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유형을 구분한다고 할 때 주로 하는 활동이 예방적이냐, 치료 및 문제해결 활동이냐, 아니면 긴급활동이냐 등 주된 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개별조직의 주된 활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분석자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둔 채, 여기에서는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개별조직체계들을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조화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하며 그 결과는 <표 II-5>과 같다.

<표 II-5> 지역사회 안전망 구조에 따른 해당기관 분류

구분	활동성격	해당 기관
1차 안전망	예방	학교, 교육청, 어린이집, 보육관련단체·시설, 시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 범죄예방위원,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단체, 자원봉사관련시설, 일반시민단체, 택시, 찜질방, 노래방, PC방 등 영업관련 단체
2차 안전망	치료 및 문제해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 푸드뱅크 등 복지 관련단체·시설, 대안교육센터, 대안학교,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검정고시학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요리학원 등 직업관련 학원,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자활지원관), 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고용관련단체,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공공치료시설, 의료관련 단체, 일반병원(민간, 공립), 의료관련 자영업자, 법률구조공단, 법률관련시설·단체, 변호사, 법무사 등
3차 안전망	긴급구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갱생보호공단 청소년의 집, 소년원학교, 쉼터, 그룹홈, 육아원(보육원), 미혼모센터 등 기타 보호시설

## ② 기능적 측면에서의 구성요소

### 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기능적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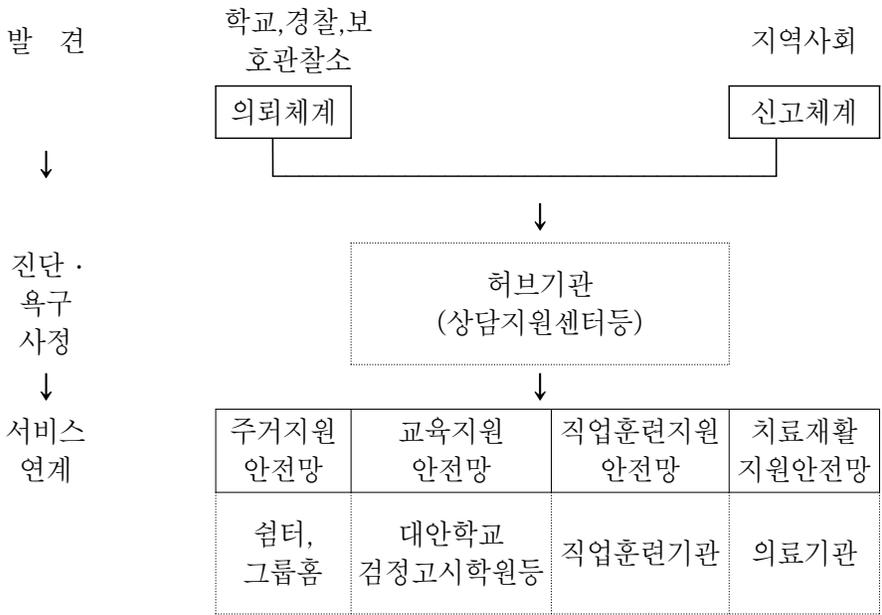
기능적 측면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위기청소년을 가능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초기에 발견,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하여서나 사회적으로 가장 좋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체계 구축이 제1 구성 요소이다.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하고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체계가 제2 구성요소이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원인에 따라 상담 외에 주거 등 생활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기관을 확보, 연계하는 연계체계 구축이 제3 구성요소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윤철경, 2005b: 187-188 ; 구본용, 2005b: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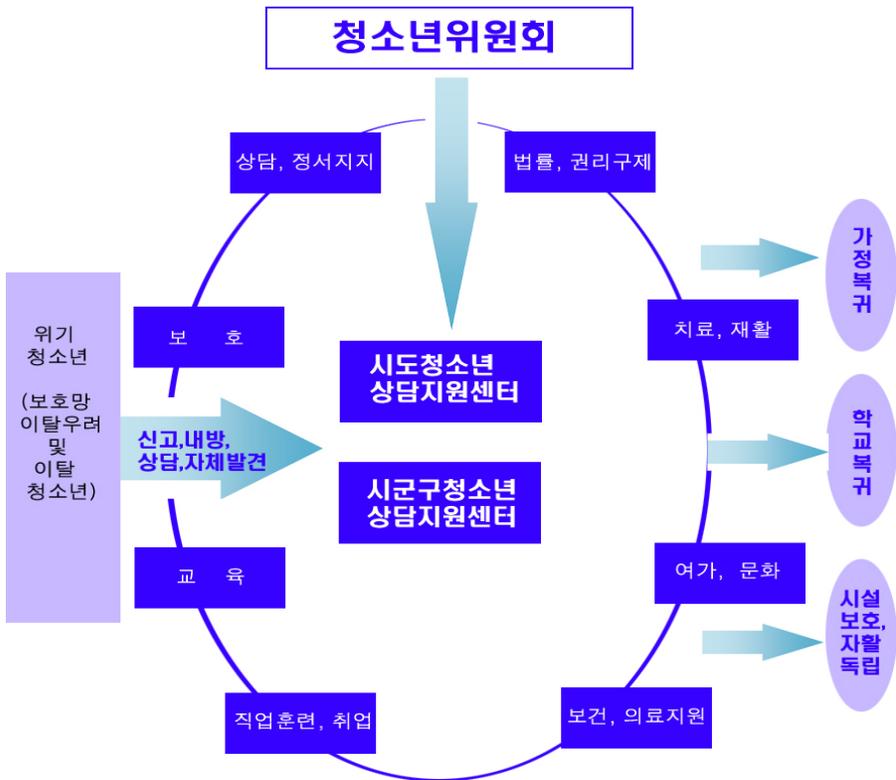
<그림 II-1>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 나.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 개개인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즉 상담, 주거, 학습 및 교육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여가문화, 치료 및 보건, 법률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그림 II-2>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일반상담과 더불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24시간 상담·구조·치료·재활 등 One-stop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리되어 운영 중이던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과 가출신고전화 ‘1588-

0924' 를 2005년 9월에 '청소년전화 1388' 로 통합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1388만 누르면 137개 상담기관과 연결되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입구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 각 지역별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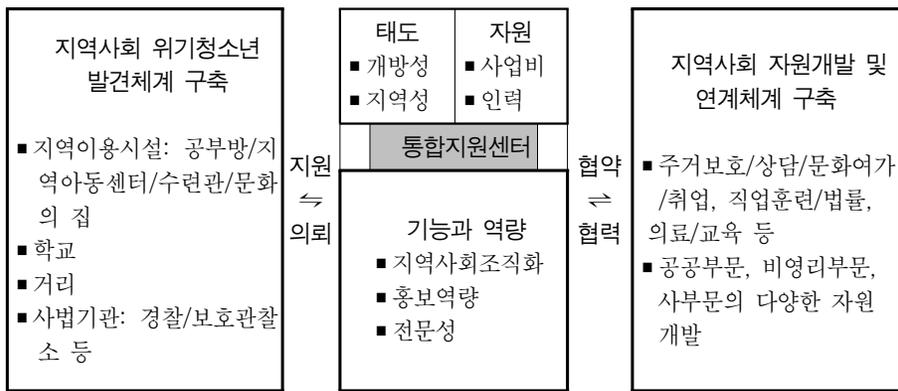
\* 위 그림에서 '시군구청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시군구지원센터' 로 수정되었음

<그림 11-2>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서비스 체계도

이러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의뢰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사업개발을 통해 위기청소년지원 지역사회시설, 단체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망 확충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심 청소년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 인력, 예산의 배분을 통해 촉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심의 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I-3>와 같다(윤철경 외, 2005b).



<그림 II-3>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 (2)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성원칙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Gilbert와 그의 동료들이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Gilbert, Specht, & Terrell, 1993)한 바, 이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성원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안전망 체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는 서비스의 분산화 또는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각종 서비스는 통합(integration)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의 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른 욕

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쉽사리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체계는 서비스의 지속성(continuity)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기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적절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은 서비스 수혜계층인 위기청소년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성(accountability)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 4가지 원칙에 맞춰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통합의 원칙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통합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상호연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 및 역할 분담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평행봉모델(parallel bars model)과 사다리모델(extension ladder model)이 있다(Kramer, 1981). 평행봉모델은 정부와 민간기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별개의 체재로 운영되고 민간복지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운영형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다리모델은 정부기관이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보충하고 확대하는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한 부분의 기관에 의해서 전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동반자(partnership)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봉모델은 현실 적용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사다리모델은 동반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이론적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서비스

망을 보면 비록 이념적으로는 사다리모델에 의한 동반자관계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민간은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체계의 연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민간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아래의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적절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기관은 특수적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적절성	형평성	
<b>&lt;정 부&gt;</b>			
일반적 (일률적)	(효과성)	(효율성)	특수적 (개별적)
			<b>&lt;민 간&gt;</b>
	다양성	전문성	

<그림 II-4>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

그리고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허브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위기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욕구를 상담센터의 자원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주거보호, 상담, 문화여가, 취업, 직업훈련, 교육, 법률, 의료서비스 등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네트워크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 뿐 아니라 영리부문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회사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기업의 물적 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안전망의 통합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원적 방식의 성급한 확대를 지양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실험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자들이 지역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자원을 개발,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 예로서 청소년역량강화 프로그램(YEPP)은 지역사회개발 전략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모형이다. 유럽 6개국을 포함, 브라질 등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새로운 학습, 일,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등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평가모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YEPP 모델의 지역적 실험을 시도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수 있다(윤철경 외, 2005b).

## ② 지속성의 원칙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의 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또 다른 욕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 접근하여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개별 청소년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교, 기업, 언론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전문 사례관리자를 상당수 배치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미 사례관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접근용이성의 원칙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접근용이성의 원칙이 지켜지면 위기청소년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 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이용시설들의 경우도 절대수의 부족으로 지역별 균형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별 시설현황 및 위기청소년 욕구를 파악하여 부족한 시설부터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단위 종합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규로 시설을 확충할 경우에도 지역별 시설분포 현황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일반적·보편적 서비스 제공시설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 특화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세울 것인지, 또는 지역 특성으로 보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화된 시설을 세울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시설설립에 따른 재원이나 인력확보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용이성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및 다양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보수집·관리를 위한 공동계획은 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시설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팀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되 통일된 포맷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지원센터에 송부하면 센터 사무국이 이를 취합·관리한다.

이러한 정보수집활동과 아울러 정보침병(information sentinel post)으

로서 위기청소년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모니터(monitor)요원으로 활용하여 수시로 수집된 정보를 관련기관이나 센터 사무국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서 수집·관리·활용해야 할 정보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대상지역의 사회적·인구학적·지리적·경제적 특성 ② 특성별 위기청소년 규모 및 분포 현황 ③ 지역 내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시설 현황 ④ 자원봉사자 현황 등 민간자원 관련 정보 등이 그것이다.

#### ④ 책임성의 원칙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책임성의 원칙은 위기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지원체계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 부족, 권위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책임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위기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연계하며,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청소년동반자로 보고 위기청소년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청소년정보문화사업에 정부가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지도자보다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할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정보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Ⅲ.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국내 유사 사업사례

1.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3. 경기도‘We Start’사업
4. 유사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 Ⅲ.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국내 유사 사업사례

#### 1.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 1) 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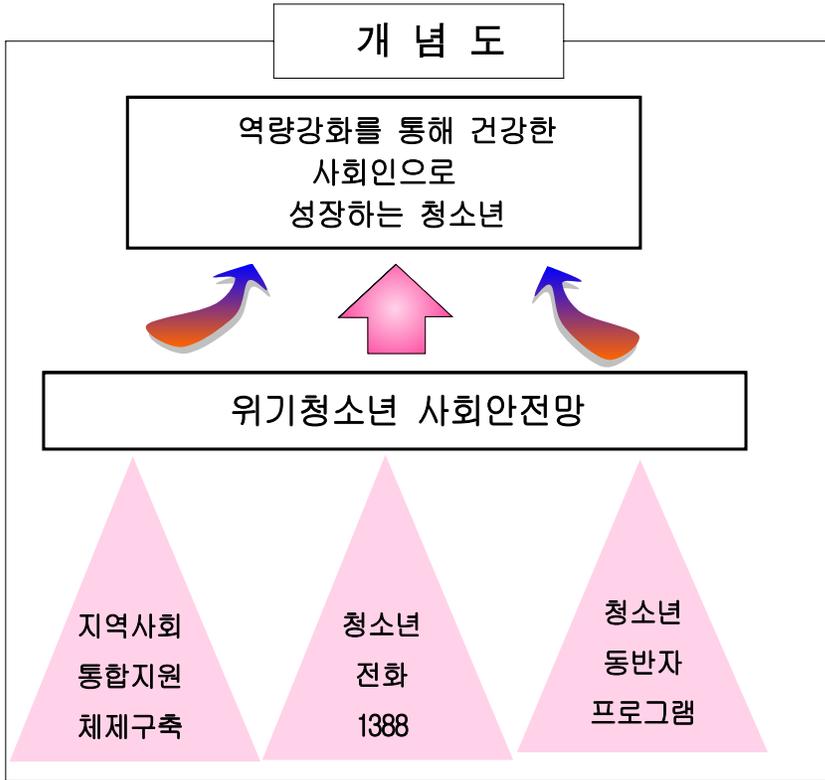
-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지속기간에 따라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심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위기청소년 170만명, 고위험군 47만명(2005 OECD 회의자료).
  - 학업중단 기간 경과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증가
    - 1~6개월 5.5% → 6개월 이후 11.0%
  - 비행청소년 교정 이후 적절한 사회서비스 부재로 재범률 증가
    - 재범률 : ‘97년 29.0%→ ‘03년 35.0%
  
-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취약
  - 위기청소년 발견 및 지원체계 미흡
    - ※ 폭력아버지를 살해한 강릉 여중생( ‘05. 4월), 가족 및 사회의 무관심으로 개에게 물려죽은 초등생( ‘05. 11월)
  - 학업중단청소년 중 지역사회 내 상담, 지원 등 공적서비스 접촉 가능 청소년 10% 미만(2005년 해밀사업 결과)
  
- 청소년의 욕구는 다양한 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문화 미흡

-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운영협의회 등 실질적 운영 미약(연 2회)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상호 연계 부족

□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2) 추진 방향

- 청소년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지역별 청소년센터 설치 확대
  - 의식주, 학습지속, 정서적 지지, 역할모델, 문화체험 등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반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 CYS-NET 서비스 관문역할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일반전화나 이동전화에서 모두 “1388” 을 누르면 CYS-NET 허브 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이 됨.
- CYS-NET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주도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함께 찾아주는 전문 서비스
  - 청소년동반자(YC)는 CYS-NET 안에서 통합지원체계의 연계망을 활 용하여 청소년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함.



<그림 III-1> 위기 청소년 개념도

(3) 목표과 전략

① 목표

비전	청소년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지원						
목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0만명 연계서비스 지원, '06~'10년) ※ 연도별 지원연계 목표 청소년수(단위 : 천명)						
	연도	'05	'06	'07	'08	'09	'10
	청소년수	3	20	40	60	80	100

## ② 추진원칙

- 지역통합성 :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
- 즉시성 :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
- 지속성 :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
- 전문성 :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
- 예방지향성 :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지원체계 구축
- 민관 협력성 : 민간기관과 정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원체계 구축

## ③ 추진전략

### □ 청소년 중심의 CYS-NET 구축 운영

- CYS-NET 연계망을 구축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필요 및 요구를 적극 고려
  -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결과 원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47.8%), 진로취업지원(42.7%), 학업지원(42.4%), 사회적 보호(41.3%), 여가 및 문화서비스(26.2%), 심리지원(25.2%), 법률자문(19.9%), 의료건강(18.3%), 약물남용예방서비스(14.7%)순이었음(구본용 외, 2005)

### □ 지역사회 중심의 CYS-NET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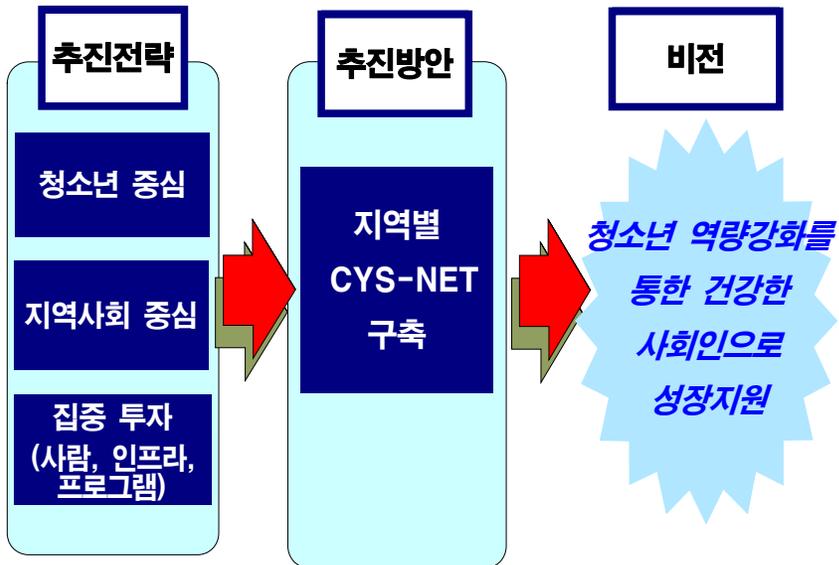
-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허브 역할 강화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청소년 관련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CYS-NET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추진단 결성, 운영
- 지역사회에 적합한 CYS-NET 모형 개발, 보급

### □ CYS-NET의 핵심성공 3요소 집중투자

- 사람(Person), 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그램(Program)

<표 III-1> 성공요소와 주요과제

핵심성 공요소	주요과제
사람	센터 인원 확대, 교육 등 역량강화 기회 제공, 직업 안정성 확보
인프라	센터 수 확대, 지역사회 자원개발계획 추진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자활·직업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 등 개발, 평가 및 보완



<그림 III-2> 추진전략 체계도

(4) 추진 경과

- 청소년위원회 출범( '05. 4.27)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을 핵심과제로 추진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반 조성(~ '05.12)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부산, 광주) 및 청소년종합상담센터 기능 확대(경기, 경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 연구 등 2건 수행(9~12월)
- 한국청소년상담원 위기청소년 총괄지원기능 수행( '05.12)
- 청소년기본법 개정, 지역사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근거 마련( '05.12.29)

□ 청소년전화 1388 통합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통합방안협의( '05.5.9)
- 전화번호 선정 관련 정보통신부 협의( '05.5.10)
- 전화통합 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 '05.6.22)
- 지방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등과의 토론회( '05.7.12)
-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시 설명회( '05.7.20)
- 지자체 의견 수렴( '05.8.3)
- 청소년긴급전화 1388과 가출청소년신고전화 1588-0924 통합( '05.9.1)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범운영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연구용역 실시( '05.9~12)
- 4개 지역(서울, 경기, 광주, 경남) 시범운영( '05.10~12)

□ CYS-NET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협약 체결( '05.9.14)

(5) 사업 추진 현황

- ① CYS-NET 구축 기반 마련( '05.9~12)

□ 청소년전화 1388 통합 및 운영

- 청소년전화 1388 통합
  - 청소년긴급전화 1388과 가출청소년신고전화 1588-0924 통합
- 청소년전화 1388의 전국 24시간 365일 운영 체제 마련
- 실적 : 일평균 178건
- 청소년전화 1388 연결
  - 일반전화로 '1388' 을 누른 경우 발신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됨
  - 휴대폰으로 '1388' 을 누르면, 발신자가 위치한 해당지역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결이 이루어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실시기간 및 실시지역
  - '05. 10~12월 : 서울(광진, 중랑, 동대문구), 경기(군포, 수원, 안양, 안산, 의정부)
  - '05. 11~12월 : 광주(시내전역), 경남(김해, 양산, 진해, 창원)
- 실적
  - 청소년 동반자 수 : 223명
  - 청소년(사례관리인원) : 1,592명
  - 상담횟수 : 10,682회

② CYS-NET 구축 추진( '06.1 ~ )

□ 기능 및 인프라 확대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청소년상담과 함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보호 등의 통합기능 수행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의 허브(Hub) 역할 수행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복합지원 중심 기관화
  -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121개)를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청소년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상담, 위기 개입·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06년 40개소 선정, 시범지역 연차적 확대)
  - ※ 비 시범지역은 신규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예산 확보노력

<표 III-2> 2006년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개소수)
서울	수서, 목동, 문래, 종량, 금천(5)
부산	영도, 부산진, 금정(3)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동구(1)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화성, 의정부, 고양(6)
강원	원주, 강릉, 영월, 철원(4)
충북	제천, 청주(2)
충남	보령, 홍성, 아산(3)
전북	-
전남	목포, 여수, 나주(3)
경북	영주, 구미, 영천, 포항, 경산(5)
경남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5)
제주	-
<b>합계</b>	<b>37</b>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3개소 내외 추가 선정 예정(2006.5.25 현재)

- 청소년전화 1388 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제고
  - 청소년전화 1388의 긴급상담, 구조, 연계 등 지원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및 국민의 체감만족도 제고

-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각 시·도별 365일 24시간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확대를 통한 청소년지원 관문(gateway) 으로서의 기능강화
  - 청소년전화 1388 전용 홈페이지 운영 및 상담지식, 사례 공유·축적
  - 청소년 긴급상담, 긴급구조, 기관연계서비스에서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으로 확대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실시 확대 및 활성화
  - CYS-NET 안에서 활동하는 인적 자원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연계능력 강화
  - 사업지역 확대( '05년 4개 지역 → '06년 8개 지역 추진)
    - 실시지역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경기, 경남
  - 활동 가능한 청소년 동반자 증원( '05년 223명 → '06년 300명 이상)
  - 사업 대상 예상 청소년 수 : 3,388명(실 인원)

## 2) 사업 분석

### (1) 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

#### ① CYS-NET

##### □ 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 대상
  - 16개 시도 및 40개 시·군·구
- 선정 기준
  - 시도 : 05년 2개 지역(경기, 경남) 시범 운영 후 06년 16개 시·도로 대상 확대

- 시·군·구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운영 형태, 지방비 확보 현황, 거점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② 청소년전화 1388

### □ 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 대상
  - 16개 시도 및 121개 시·군·구
- 선정 기준
  - 청소년전화를 통한 청소년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모두 실시

## ③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 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 대상
  - 8개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군포, 수원, 안양, 안산, 의정부), 경남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사업 관심도, 거점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 사업의 서비스 내용

### ① CYS-NET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기관, 사회복지관, 보건의료 기관, 수련시설, 드롭인센터, 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24시간 상담·구조·치료·자활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전화 1388

- 24시간, 365일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연계

□ 긴급구조 서비스

- 가출, 성매매, 가정폭력 등과 같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청소년전화 1388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찾아가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청소년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제공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서비스 제공

□ 보호 서비스

-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고 있거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보호, 휴식을 제공
- 연계 기관
  - 청소년쉼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룹홈 등

□ 교육 및 학업지원 서비스

-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 및 학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연계 기관
  - 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등
  
-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 가출,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설정을 도와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
  - 연계 기관
    -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자활지원관) 등
  
- 의료 및 건강지원 서비스
  - 가출, 학교·가정폭력 등으로 심리 및 신체적 문제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 지원 제공
  - 연계 기관
    - 국립의료원, 지역 보건소, 병원 등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및 문화활동 체험 제공
  - 연계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등
  
-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가해, 불법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경우 등 법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법률자문과 지원 제공
  - 연계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변호사 등

## ② 청소년전화 1388

### □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 상담 서비스 제공

- 일반 심리·정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자활 지원 등 서비스 연계기능, 위기 상담,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
- 일반상담 : 상담 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면접상담방법 안내
- 위기상담 : 가출, 성매매,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각 위기사례별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③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으로 기존의 멘토나 자원봉사시스템에서 부족했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모델이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서적 지원
- 연계 후 적응관리
- 가정방문/과약/개입
- 학교방문/과약/개입
- 대상청소년 평가
- 다양한 심리사회적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 동반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지역사회 연계처 발굴, 청소년/부모집단프로그램 운영, 대상청소년 심리평가, 전통적 심리상담, 길거리 아웃리치, 한 가지 단순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의료비/학비 등의 직접 지원

### (3) 사업주체 및 역할

#### ① CY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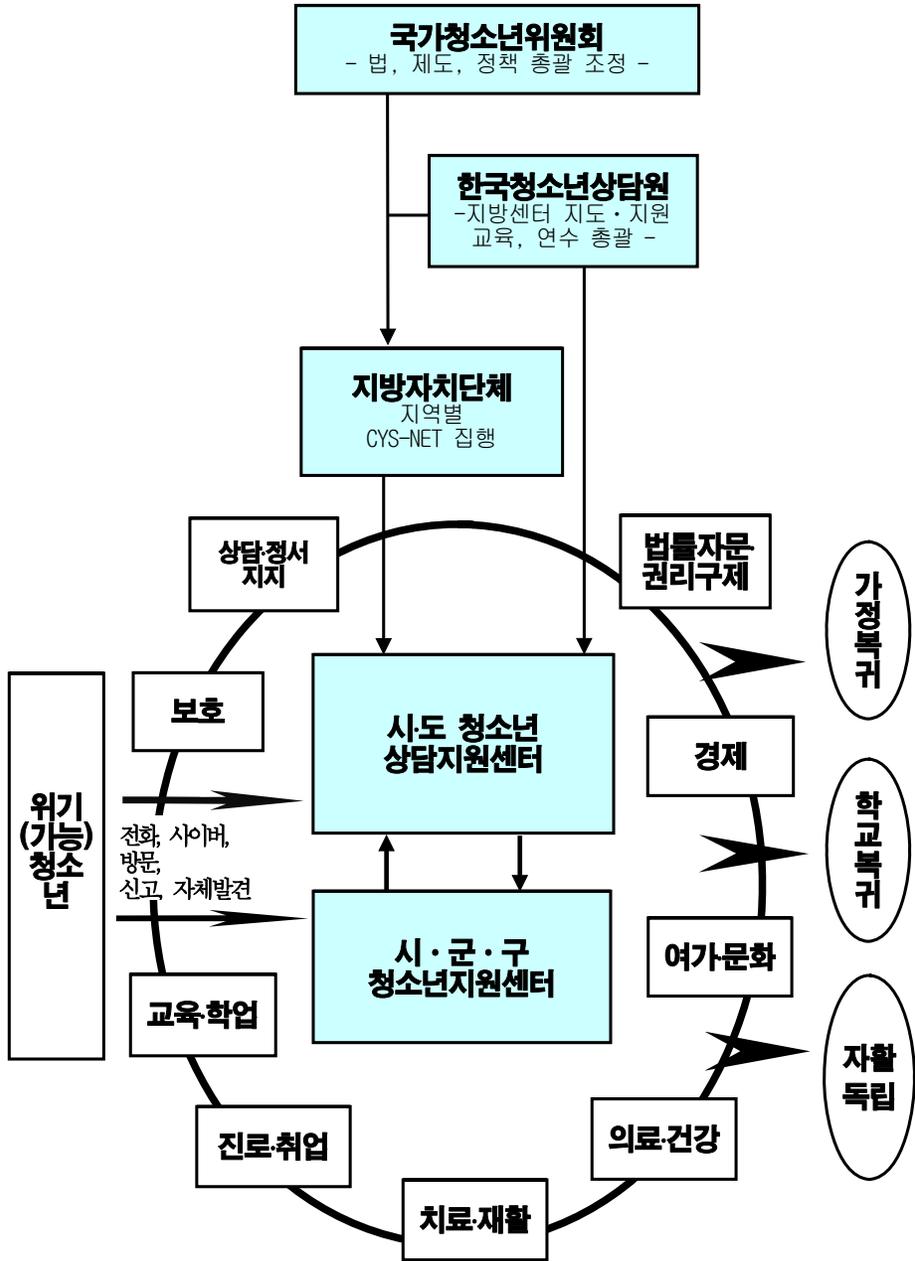
##### □ 사업주체

- CYS-NET의 주요 사업주체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이며, 사업의 허브(Hub)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상담)지원센터임.
- ※ 한국청소년상담원은 CYS-NET 추진의 협조기관이라 할 수 있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체로서 설명하고자 함.

##### □ 사업주체별 기능

- 국가청소년위원회
  - CYS-NET 정책 수립, 집행, 평가
  -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 증진
  - CYS-NET 활성화 지원
    - 지역별 CYS-NET 구축 및 운영 지도·점검, 컨설팅
    - 지역설명회 개최
  - 추진상황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CYS-NET 정책 시행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참여 및 운영지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CYS-NET 추진 총괄, 지도, 지원
  - CYS-NET 지역 추진단 운영(월1회)

- 추진단장 : 한국청소년상담원장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
- CYS-NET 연계지원청소년 사례관리총괄, 연계지원 실적 관리 및 사례집 발간 보급
- 센터 직원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상담통계시스템 운영
- CYS-NET 추진상황 모니터링, 분석, 종합보고서 발간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CYS-NET의 허브(Hub) 기능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CYS-NET 추진 지도,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연계사례 관리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연계사례 관리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림 III-3> CYS-NET 사업 추진 체계

## ② 청소년전화 1388

### □ 사업주체 및 운영주관

- 사업주체 :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운영주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 기관별 기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전화 1388 정책 수립 및 총괄
  - 청소년전화 1388 홍보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총괄기능, 청소년전화 1388 전화응대 및 위기상담기법 연구개발, 운영매뉴얼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서울 일부 지역의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 '07년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기능은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이관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전화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 서비스 연계,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
  - 센터 미 개소 지역의 발신전화 연계 수신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도, 지원
  - 관내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근무 외 시간(익일 18:00 ~ 09:00, 공휴일) 전화연계 수신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전화상담, 보호, 활동, 자원봉사 등 서비스 연계, 유해환경 신고·접수 등
- 센터 미 개소 지역의 발신전화 연계 수신

### ③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 사업주체

-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 □ 사업주체별 기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정책 수립 및 총괄
- 지방자치단체
  - 관할지역내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시·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경기도 제외), 경기도의 시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동반자(YC) 선발 및 교육, YC에 대한 슈퍼비전 및 사례관리
  - 대상청소년 확보 및 YC와의 연결, YC에 대한 이력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 내 공공기관, 청소년·사회복지전달체계와 업무연계 및 업무협약 추진
  - 기타 지역 내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굴·지원
-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 도내 사업수행지역의 사업운영에 대한 총괄 및 보고
  - 도차원의 지역 내 공공기관, 청소년·사회복지전달체계와 기관 연계 및 업무협약 추진
  - 도내 사업수행 지역에 대한 슈퍼비전 및 사례연구

#### (4) 재원

##### ① CYS-NET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사업 지원 총 예산 : 47억원(국비, 지방비 매칭)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31억원
    - 개소 당 3억 6천만원씩 16개 시도 지원(매칭펀드 : 국비 1억 8천만원, 지방비 1억 8천만원)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16억원
    - 개소당 8천만원씩 40개 시범지역 지원(매칭펀드 : 국비 4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
  
- CYS-NET 활성화 지원 예산
  - 1억7천2백만원(국비)
    - 지역별 CYS-NET 지도·컨설팅, 정책심포지움, 서비스만족도 조사, 종합보고서 발간 등

##### ② 청소년전화 1388

- 소요예산 : 2억2천만원(국비)
  - 청소년전화 1388홍보비, 청소년전화 1388홍보탑 설치, 유지·보수 등

##### ③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소요예산 : 32억원(국비 16억원, 지방비 16억원)
  - 지역, 지방비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
    - ※ 경기도 :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도비, 시청소년지원센터는 시비 확보

(5) 주요 인력

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

□ 인력 규모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센터 당 14명 내외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센터 당 4~6명

□ 역할

- 지역별 CYS-NET 사업 추진, 운영

② 청소년동반자

□ 인력 규모

<표 III-3> 지역별 동반자 수

지역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합계
동반자수	42명	29명	35명	23명	16명	57명	48명	250명

※ 부산지역 : '06년 신규사업지역으로 사업추진 중

□ 청소년동반자(YC)의 역할

- 위기(가능)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상호신뢰감 구축, 자기계발 및 동기유발,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
- 대상청소년과 상담, 공통의 생활체험·체육활동·문화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과거 및 생활환경을 분석, 대상청소년의 문제 요인 분석,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유도
- 대상청소년이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 인간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
- 장기적으로 위기(가능)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

□ 자격

- 청소년동반자는 접근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지역 내에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전일제 동반자(YC)
  -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등)을 소지하고, 청소년업무·사회복지업무·교육현장 근무 경력 1년 이상(대학원과정 포함)
- 시간제 동반자(YC)
  -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이상 등)을 소지하거나, 청소년업무·사회복지업무·교육현장 근무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관련분야(청소년·사회복지·심리학) 대학원 재학생 이상

(6) 사업에 대한 평가

□ 추진주체간 CYS-NET 개념 공유 문제

- ‘CYS-NET’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CYS-NET을 추진하기 시작한 올해 초, CYS-NET 추진주체들이 각각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현상들이 나타남.
- CYS-NET은 추진주체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이 기초가 될 때 사업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CYS-NET의 개념에 대해 공유하고 큰 그림에서 각 기

관의 역할을 파악하여 톱니바퀴가 구르듯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장 마련 등의 방안 모색 필요

□ 지역별 CYS-NET 연계 기관간 연계 협력 문제

- CYS-NET 사업의 성공은 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져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물 흐르듯 원활하고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건임. 그러나 각 기관이 기관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중심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 빈번함.
- 연계협력이 잘 되는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CYS-NET 모델 개발

- CYS-NET은 지역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 개발과 사업 추진이 수반되어야함.
- 이를 위해 표준화된 모델 개발과 함께 CYS-NET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현황,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지역별 CYS-NET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소년동반자와 센터 직원 간 업무 경계 및 관계 형성 문제

- '06년 CYS-NET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05년 10~12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과의 역할 및 업무 조정 등의 재정립 필요.
- '05년 CYS-NET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한 청소년동반자는 연계기관 발굴, 대상청소년 발굴, 연계지원 등 CYS-NET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올해

CYS- NET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 업무는 허브기관인 센터가 총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센터와 청소년동반자간 CYS-NET 운영, 연계지원을 위한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CYS-NET 추진에 어려움 있음.

- 이를 위해 CYS-NET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 시 청소년동반자 업무와 센터 업무를 분명하게 설정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비 확보 문제

- CYS-NET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예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예산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됨. 그러나 일부 기초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CYS-NET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3) 향후 추진계획

#### (1) 2007년 CYS-NET 추진 계획

□ CYS-NET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센터에게 인센티브 제공

- 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관련 기관연계공동협력사업(공모)

-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유도

#### (2) 청소년전화 1388 추진 계획

##### ① 전화서비스 질제고 및 CYS-NET으로의 연계기능 강화

##### ② 「#1388」 휴대폰 모바일 상담

- '06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후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 국가청소년위원회, 동서남북, SK 텔레콤이 연계, 협력하여 추진
  - 현재 안양지역 시범사업 실시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추진 계획

- '07년 전국 확대
  - 16개 시·도, 100개 시·군·구, 동반자 600명
-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 추진
  - '10년 이후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전역에 동반자 1,500명 활동 예정

##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 1) 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과 의의

##### ① 추진 배경

-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여건의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

## ② 의의

-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접근
  - 아동 개인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
-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교육·문화·복지의 통합 서비스망 구축
  - 학교가 지역 사회 교육·문화·복지 통합 서비스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지역 내 학교의 기능 강화
- 저소득층 자녀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조기 개입을 한 출발 점 평등 구현
  -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 해결과 문제 행동 예방
  - 학력향상, 정서발달, 심성계발, 건강증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2) 목표와 전략

### ① 정책 목표

- 저소득층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자유를 통한 학력 증진

-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개별·소집단·학급 단위의 학습지도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급식 및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
  -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특기를 신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
  -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정서 발달 도모
-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 ② 전략

### 가. 단계적 추진

- 시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아감. 대도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중소도시까지 점차 확대
  - 사업 초기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사업 역량을 강화한 후 점진적으로 지역의 역할을 증대
  - 공모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 즉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를 유도

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
  -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지식과 정보의 전달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학교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인식은 퇴색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정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

## 정책 비전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정책 목표

- ◆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 ◆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 ◆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

## 추진 전략

- ◆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 도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의 사업 역량 강화 후 점진적으로 지역 역할 증대
  -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모
-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그림 III-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목표와 전략

### (3) 추진 경과

-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대책을 수립키로 관계부처 합의 : '02년 제7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02.7.5)
-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여건개선대책 발표 ( '02.8.15)

- 중앙준비기획단 발족( '02.8.16) : 8개 부처 및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 ※ 교육인적자원부(단장:차관보),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 중앙준비기획단 1차 회의 개최( '02.8.16, 교육부 대회의실)
  - ※ 주요내용 :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 종합 대책 기본계획안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관련 검토
- 후속대책 논의 : '02년 9차 인적자원개발회의( '02.8.21)
- 시범 지역 선정 : 서울, 부산( '02.9.11)
- 후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이해영 박사 ( '02.10-11)
- 교육인적자원부 내 의견 수렴( '02.11-12)
- 중앙준비기획단 2차 회의 개최( '02.12.2, 교육부 대회의실)
  - ※ 주요내용 : 종합대책 관련 부처·자치단체별 지원 및 협력 방안 논의.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공청회 개최( '02.12.4,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최종 계획 발표( '02.12.12)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169억 배정 : 서울 113억 5천만원, 부산 55억 5천만원( '03.2.27)
  - 2003년 3월-2005년 2월까지 :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 45개 초·중학교 및 28개 유치원에서 시범 사업 실시.
- 2005년 시범 사업 지역 8개에 더하여 공모제에 의해 신규 사업 지역 7개를 추가로 선정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 실시,
- 2006년 기존의 15개 지역 이외에 신규로 15개 지역 추가 선정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 실시.

#### (4) 사업 지역 및 교육기관 현황

##### ① 시범 사업 운영 현황

- 시범 운영 기간 : 2년 (2003-2004년)
- 시범 지역과 교육기관 : 8개 지역 45개 초·중학교, 34개 유치원
  - 시범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주 교육 수준, 기초 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 서울 : 6개 지역(강서구2, 노원구2, 강북구1, 관악구1)
  - 부산 : 2개 지역(북구1, 해운대구1)

##### ② 2005년 이후

- 2005년 공모제의 도입과 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시범 지역(2003-2004) : 사업 기간 1년 연장
  - 대상 지역 추가 선정 : 시범 기간과는 달리 특별시와 광역시 대상으로 공모제 도입하여 계획서 공모를 받아 심의 후 7개 지역을 선정함.
  - 2005년 시범 사업 지역 8개와 신규 선정 지역 7개 등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 실시.
  - 사업 기간 : 기본 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함.
- 2006년 3월 15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표 III-4> 20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교육기관

단위 : 개수

지역	학교 수			유치원 수			어린이집 수	계	지역의 행정동 명	
	초	중	계	공립	사립	계				
서울	강서구1	6	3	9	1	5	6	-	15	가양 2, 3 등촌 3동
	강서구2	3	1	4	1	2	3	-	7	방화 2, 3동
	노원구1	3	2	5	1	6	7	-	12	상계 4, 중계 3, 4동
	노원구2	3	3	6	-	3	3	-	9	월계 2, 4동
	강북구	4	1	5	1	4	5	-	10	미아 1, 2 번 2, 3동
	관악구	3	1	4	1	2	3	-	7	신림 6, 7, 10, 13동
	소계	22	11	33	4	23	27	-	60	
부산	북구	3	2	5	-	2	2	20	27	덕천 1, 2, 3동
	해운대구	4	3	7	-	5	5	46	58	반송 1, 2동
	영도구*	4	4	8	-	5	5	22	35	동삼 1, 3동
	소계	11	9	20	-	12	12	88	120	
인천	연수구*	3	2	5	-	3	3	2	10	선학동, 연수 3동
	소계	3	2	5	-	3	3	2	10	
대구	수성구*	3	1	4	-	3	3	-	7	범물 1동, 지산 1동, 황금 1동
	달서구*	3	3	6	1	2	3	-	9	월성 2동, 신당동
	소계	6	4	10	1	5	6	-	16	
대전	동구*	3	2	5	-	5	5	3	13	판암 1, 2동, 대동
	소계	3	2	5	-	5	5	3	13	
광주	광산구*	2	2	4	-	2	2	2	8	우산동, 문화동
	북구*	3	2	5	-	3	3	-	8	우산동, 월곡 2동
	소계	5	4	9	-	5	5	2	16	
계	15 지역	50	32	82	5	53	58	95	235	39개동

주) \* 표한 곳은 2005년 공모제에 의해 새로 선정된 지역이며, 그 밖의 지역은 시범사업 후 사업 기간이 연장된 지역임.

<표 III-5>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교육기관

시도	지역교육청	자치구	지역의 행정동 명	대상 학교수
부산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대구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인천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광주	서부	서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대전	서부	서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울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 학생동	5교(초4,중1)
경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강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충북	청주	홍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충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전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전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경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경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제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계	15개 지역 (40개동)			79개교 (초48,중28,고3)

주)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실행계획 단계에서 조정될 예정이므로 제시하지 않았음.

## 2) 사업 분석

### (1) 사업 대상 선정 기준

#### ①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모든 동(洞)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가구주 교육수준’ ‘기초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하위 10%와 20%에 해당하

는 후보 지역을 선정

-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수준, 학업 중단기·장기 결석자·비행자 등 교육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지역 선정
- '지역(zone)'의 조건
  -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구성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는 4개 이상(초·중학교 각각 1개이상)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3개 이상 포함

## ② 2005년도 사업 지역 선정 기준

- '지역(zone)'의 조건
  -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구성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는 4개 이상(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개교 이상)
  -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3개 이상 포함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는 3천명 이상으로 구성
  - ※ 대상 지역 내 실업고와 지역 밖 인근의 개별 학교를 필요한 경우 사업 연계 형식으로 일부 포함 가능
- 공모제를 통해 지역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지표와 학교 지표를 기초로 2배수 선정
- 지역 지표 : 50점
  - 가.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洞) : 30점
  - 나. '지역' 내 일인당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洞) : 20점
- 학교 지표
  - 가. 대상 학교 중식 지원 학생 비율(학교) : 30점
  - 나. 대상 학교 결손 가정 학생 비율(학교) : 20점
    - 1차 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지역을 선정

## 한 후 현지 방문 확인 심사

### ③ 2006년도 사업 지역 선정 기준

#### ■ 신청 단위

- '지역(zone) 단위' 신청의 경우,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 '동(洞)' 으로 구성
- '지역교육청 단위' 신청의 경우, 관할 구역 내 복지 여건이 제일 어려운 지역의 행정동 2개 이상으로 구성( '06년 신설)
  -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신청 행정동은 인접 여부 관계없음.
- 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는 4개 이상(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개교 이상)
  - ※ 지역 선정 요건과 상관없이 대상 지역 밖 인근의 실업계고 등 고등학교는 필요한 경우 포함 가능( '06년 신설)
-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3개 이상 포함
  - ※ 지역 선정 요건과 상관없이 대상 지역 밖 인근의 개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한 경우 사업 연계 형식으로 일부 포함 가능
- 대상 학교(초, 중, 고)의 총 학생 수는 2,000명 이상으로 구성

#### ■ 공모제를 통해 지역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지표와 학교 지표를 기초로 2배수 선정
- 1차 심사 결과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역의 1.5배 범위 내에서 선정
- 1차 심사 점수(20% 반영)와 사업계획서 심사 점수(80% 반영)를 합한 점수(100점 만점) 순으로 선정하되, 60점미만 지역은 제외
- 1.5배 범위 내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확인 심사하여 최종지역 선정.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차순위 지역 선정

## (2) 사업의 주요 내용

### ① 학습능력 증진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누적 방지를 위한 학습동기 유발에 역량집중
  -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교사들의 공동 노력
  - 저소득층 아동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모색
-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저소득층 아동 특성 분석, 교사 간 협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지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학교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및 기관과 적절한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 제고

### ②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인성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의 제공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
- 저소득층 아동이나 학생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전체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 요구

### ③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발달 지원

- 저소득층 학생들 중 성장 과정에서 방임, 방치 등의 경험으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치유와 지원을 제공

-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개념,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

#### ④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근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교육 지원
-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지원체제를 구축
  -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 등과 연계·협력 강화

#### ⑤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영·유아의 교육·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접근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간의 협의체제 구축
-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 활성화
  - 교육여건 개선·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연수 및 프로그램 장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

### (3) 추진 및 지원 체제

#### ① 사업 추진 체제

### 가. 지역 교육청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지역사업운영협의회) 운영
  - 구성 : 교육장, (부)구청장, 관련단체·기관 대표, 학부모 대표 등
  - 기능 :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 심의 및 기관 간 연계 방안 수립
- 지역 교육청에 사업을 총괄·지원할 사업전담팀 설치·운영
  - 교육복지사업 전담팀장(과장급), 담당공무원, 프로젝트 조정자, 지역 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
  - 지역 교육청 단위의 교육복지 사업의 기획과 추진 및 단위 학교 사업 추진 지원

### 나. 학교

- 조직 : 교육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마련
  - 학생복지전담부서 설치, 교육복지 사업 담당 교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배치
- 기능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 기획 및 추진

## ② 사업 지원 체제

### 가. 사업 지원협의회

- 중앙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지원협의회
  -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분야별(교육, 문화, 복지) 민간 전문가 등

- 기능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연계 방안 협의
- 광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지원협의회
  - 구성 : 교육청(부교육감), 시청(담당 국장),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 수립 및 기관 간 연계 방안 수립 등

## 나. 연구지원 센터

### □ 중앙 연구지원 센터

- 목적
  - 동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및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조사 분석 사업
  - 운영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복지연구실을 중앙연구지원 센터로 지정
- 기능
  -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발전 방향 제시
  -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질 관리
  - 사업 추진 핵심 인력에 대한 연수
  - 시도 지원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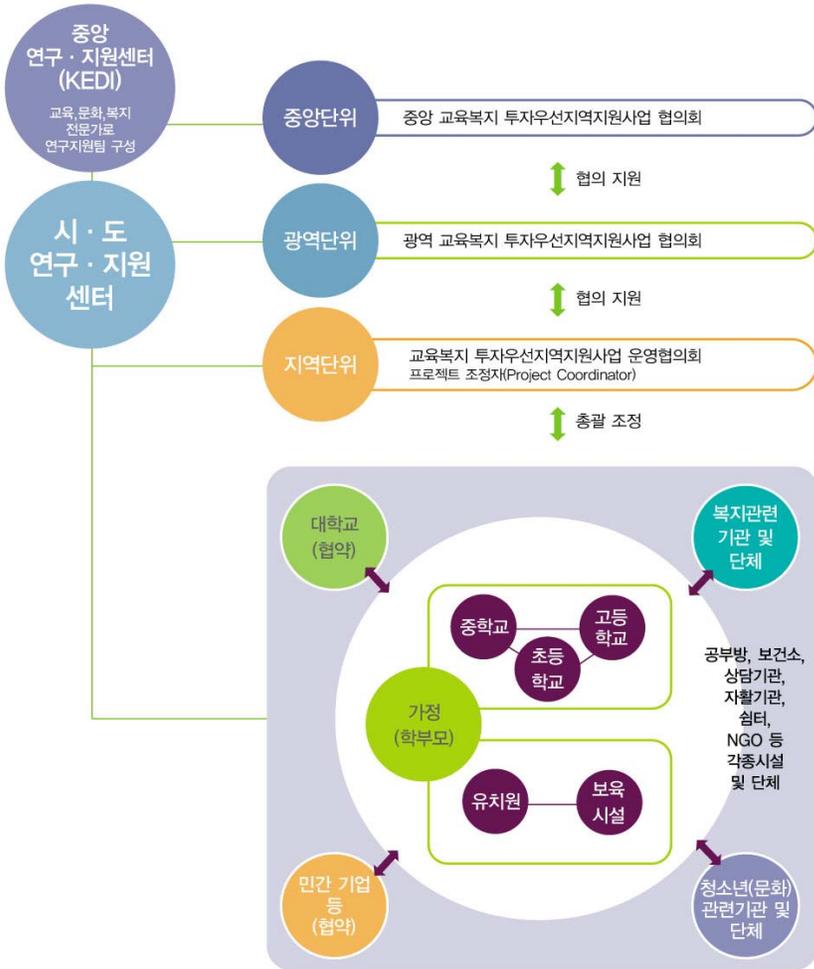
### □ 시도 (연구)지원 센터(팀)

- 목적
  - 시도 수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학의 부설기관, 연구소, 단체 등을 연구지원 센터로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운영

- 기능
  - 지역 단위 사업프로그램 수립·운영 지원
  -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 자체 평가
  - 사업 담당자 연수 지원

#### (4) 재원

- 시범 사업 기간( '03- '04) : 지방 교육 재정 특별 교부금 238억원 ( '03년 155억원, '04년 83억원)지원
- 2005년 이후 지원 기준
  - 1년차 : 지역 당 10억원 이내, 사업규모/학교수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2~3년차 : 지역 당 5억원 이내, 교육청 대응 자금 5억원 부담
  - 4~5년차 : 지역 당 3억원 이내, 교육청 대응 자금 3억원 부담
    - \* 3년차까지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 2005년 160억원 지원(대응투자 50억원 포함), 2006년 209억원 지원



<그림 III-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체제

(5) 주요 인력

① 프로젝트조정자(project coordinator)

■ 역할

- 지역사회 기관 간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자격

- 5년( '06년부터 4년)이상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활동경험 있는 자
- 해당 지역( '06년부터 해당 시도)에서 2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이 있는 자
-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관련 전공자(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우대

②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역할

-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의 문화·복지 기관과의 연계,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

■ 자격

- 2년( '06년부터 1년)이상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해당 지역( '06년부터 해당 시도)에서 1년 이상의 학교 연계 사업 경험이 있는 자
- 관련 전공자(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우대

(6) 사업에 대한 평가<sup>4)</sup>

① 3년차(기존) 사업 지역

□ 사업 효과

---

4) 2005년도 말에 이루어진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였음.

- 사업 시행 학교 모두가 본 사업이 학생의 특성이나 교육성취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식, 태도·행동 측면, 학부모의 인식·태도
  - 행동 측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징계율 측면에서는 몇 개 학교에서 계속 징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일관된 감소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 □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 시범 사업 기간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영역은 프로그램 영역이기보다는 시설 부문임.
  - 초등학교에서는 복지와 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중학교에서는 문화 활동과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학생들에게 미친 교육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효과가 큰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과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이며,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과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이, 중학교에서는 문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력 활용
  - 교사의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사업 시작 년도인 2003년 이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7.5%→ 74.3%→ 79.6%). 중학교의 경우는 2003년에 76.8%로 가장 높았고 2004년에 57.3%로

떨어졌다가 2005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 인력의 수는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 인력의 유형별 분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음. 초등학교는 3년 내내 특기 적성 강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화활동·치료프로그램 담당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는 2003년과 2004년에는 프로그램 기획이, 2005년에는 치료프로그램 담당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특기 적성 강사의 비중이 높음.

■ 추진 및 지원체제

- 지역사업운영협의회 위원 중 이전보다 교육청 관계자의 수가 줄어들었으나 모든 사업 학교의 교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존하고 있음.
- 교육청 담당자가 본 사업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조정자가 업무를 관장하고 전담팀은 행정 체계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조정자의 역할과 위상 문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
- 단위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부를 설치하여 안정된 추진체제를 유지·운영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교사가 아니라 담당부서 및 교사 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는 학교가 있음.
- 시·도 연구·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별로 지원팀을 두어 현장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사업 평가를 담당하게 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에 한계가 있음. 부산시 교육청의 연구·지원센터는 영역별 전공 교수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연구·지원센터를 교육청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 체제의 적합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 광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협의회의 지역 기관 간 연계 기능이 미흡함.
- 학교가 연계 협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업 둘째 년도인 2004년의 증가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67.5%, 중학교의 경우 63.2%임. 2005년도의 증가율 15.3%,10.6%로 2004년보다 낮아졌음.
- 지자체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은 극소수이며,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교육청의 지원
  - 서울과 부산 광역 교육청은 시범 사업 종료 이후 2005년에 50%의 대응 투자를 하였으며, 사업 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지원 하고 있음.
  - 부산시 교육청은 담당 교사에 대한 전보 가산점 부여, 표창 시 우선순위 부여, 해외 연수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유아교육 영역
  -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업 담당자의 저소득층 가정과 유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 서울과 부산의 사업 수혜 유아비율은 총 재원아의 16.5%→18.4%→20.6%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서울은 13.0%→14.5%→18.1%로 증가하였고, 부산은 30.7%→33.8%로 증가하였다가 금년도에 30.6%로 다소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계획 수립 주체는 주로 원장이며, 프로그램은 주로 종일 반운영 및 일회성 문화체험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상 원아 선정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유아교육 부문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 외부 연계 협력 비중이 낮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② 1년차(신규) 사업 지역

-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학교가 존재하여 사업에 대한 심리적 공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됨. 그러나 대부분 사업 참여 경험 속에서 사업의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
  - 공모제의 효과에 의해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 주체와 시행 주체가 관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공모계획서에 의한 예산 배분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하나 예산 변경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됨.
  - 사업비 과다, 예산 지침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 등, 시범사업 시기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
- 대상 학생 선정
  - 대상 학생 지원에 있어 기존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학생을 지원할 것인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 학교당 평균 1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영역별로 고르게 운영하고 있음.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예산(44.3%)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지(27.2%), 문화·체험(18.5%), 심성계발 및 정서 발달(10.8%) 순임.
  - 도서관 사업을 비롯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학교별로 차이가 큼.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며, 만족도가 낮은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임.
  -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모방에 의해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행착오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서비스

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으며, 프로그램의 중복과 과다, 아동 참여 유도의 어려움, 교사의 참여 미흡,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중심의 사업 운영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 학교가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다소의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연계 사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음.
- 지역교육청 주도의 공동사업은 주로 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학교 간 공동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로 활발하지는 않음.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사이의 연계 역시 주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사이에 행정 처리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추진 및 지원체제

- 많은 학교에서 사업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지역사업운영협의회, 광역교육청에 광역지원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아직 미미함.
- 연구지원센터 설치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공모에 의해 대학에 위탁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광역교육청 직영체제로 운영한 지역도 있음.
- 2005년도에는 연구지원센터의 기능이 주로 사업 평가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연수, 컨설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청의 지원

- 광역교육청 차원의 사업 담당자 연수 실시 횟수는 지역별로 3회에서 12회까지로 편차가 큼.
- 사업 담당 교사에게 인센티브로서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이 있음.

■ 유아교육 부문

- 주로 종일반 운영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간식비와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이 많았음.

- 주요 문제점으로는 특정 교재·교구를 일괄 구입하는 문제, 주입식 학습지도 및 과도한 문자교육 실시, 고가의 교재, 교구 구입 및 학습지 지도 교사 초빙, 대상 유아 외의 원아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사용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3) 향후 추진계획

- '08년까지 전국 중소 도시 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 지역의 교육·문화·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 이 사업을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통합 운영하여 '교육안전망' 구축
  -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루 '교육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1단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인프라 구축( '08년까지 100지역으로 확대 완료)

<2단계>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통합 운영( '09년부터)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00개(08년), 평생학습도시 100개 지역(10년)
- 보건복지부의 학교보건프로그램,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3. 경기도 : 'We Start' 사업

### 1) 사업의 개요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은 빈곤의 세대 간 전이에서의 인적분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정립되었다. 본 절에서는 경기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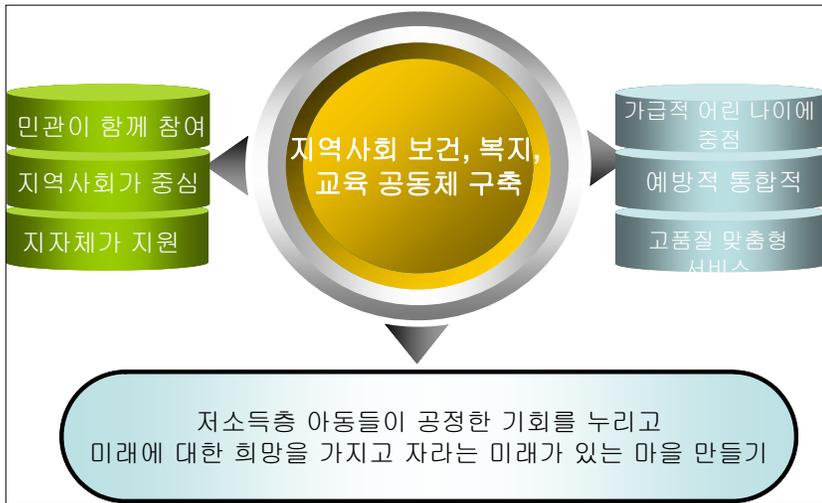
- 최근 들어 아동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1996년 절대빈곤선 기준으로 약 3.5%이었던 아동 빈곤율이 2000년에는 7.4%를 2배 이상 증가함.
- 아동기의 빈곤은 미래 아동의 발달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등한 삶의 “기회” 를 박탈함
- 빈곤과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 저소득층 아동의 인적 자본을 조기에 토주함으로써 가능
- 조기 개입이 가장 비용이 효과적임(Heckman&Lochner,2000)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 기간이 늘어남

### (2) 사업의 개념과 목적

#### □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미래가 있는 마을 만들기
-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
- 다양한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단, 치료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도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



<그림 III-6>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
- 아동발달에 있어서 어린시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업의 기본대상을 0-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로 설정
- 사업대상의 선정기준은 0-12세 저소득 아동 수 500명을 기준으로 한 동 단위 사업으로 한다. 저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



<그림 III-7>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방향

### (3)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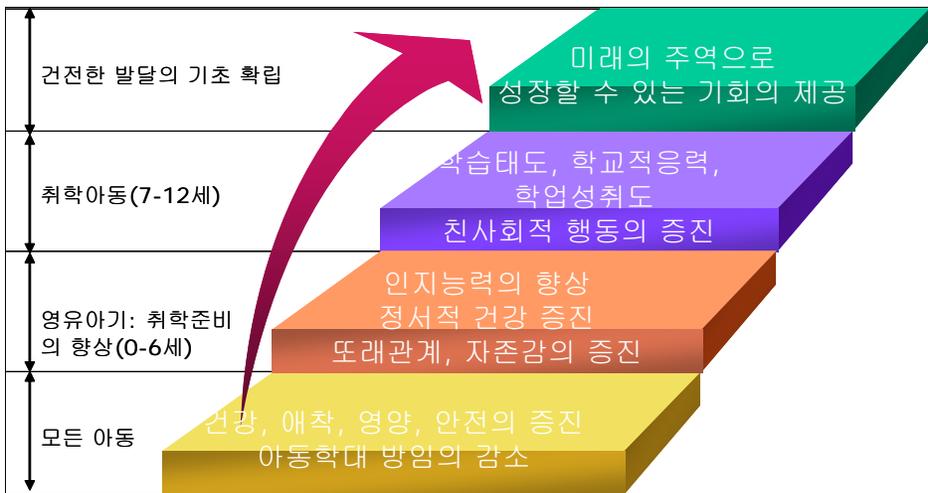
- 빈곤계층의 산모와 영유아(0세에서 2세)의 건강 및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점에서의 건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
- 건전한 사회 정서적 발달과 취학준비를 위해 가정방문 영아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
- 빈곤계층 표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사업에 주력
- 문제가 심화된 후의 문제의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의 확립에 주력
-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육구에 맞는 건강·복지·교육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의 구성에 주력

-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주력

(4) 사업의 목표

-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
  - 아동,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도모

① 아동대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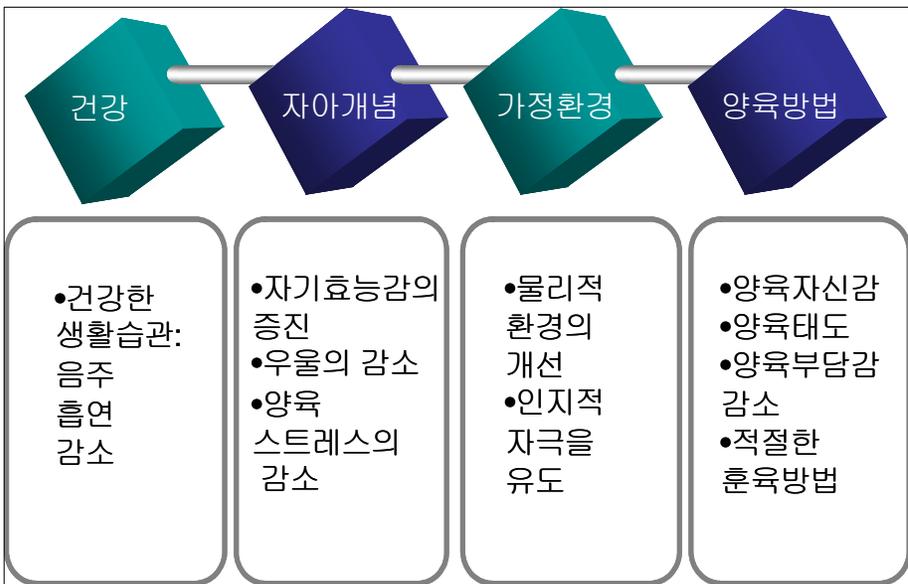


<그림 III-8> 사업의 목표 : 아동

- 0-12세 모든 아동
  - 신체적 건강 증진
  - 영양상태의 증진
  - 부모 혹은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증진
  - 안전의 증진

-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 감소
- 0-6세 영·유아기 아동
  - 인지능력의 향상
  - 정서적 건강의 증진
  - 또래관계 능력의 증진
  - 자존감의 증진
-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
  - 건전한 학습태도의 향상
  - 학교적응력의 향상
  - 학업성취도의 향상
  -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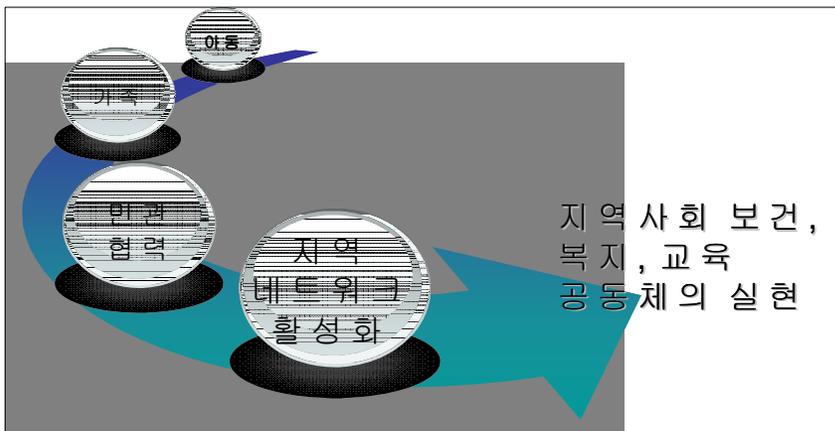
② 부모 대상 목표



<그림 III-9> 사업의 목표 : 부모 및 가정환경

- 부모의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 음주 감소
  - 흡연 감소
- 부모의 자아개념 증진
  - 자기 효능감의 증진
  - 우울증상의 감소
  -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 가정환경의 변화
  - 물리적 환경의 개선
  -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극을 유도하는 환경의 증진
- 바람직한 자녀 양육방법의 증진
  - 양육 자신감의 증진
  -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증진
  - 양육부담감의 감소
  - 적절한 훈육방법 사용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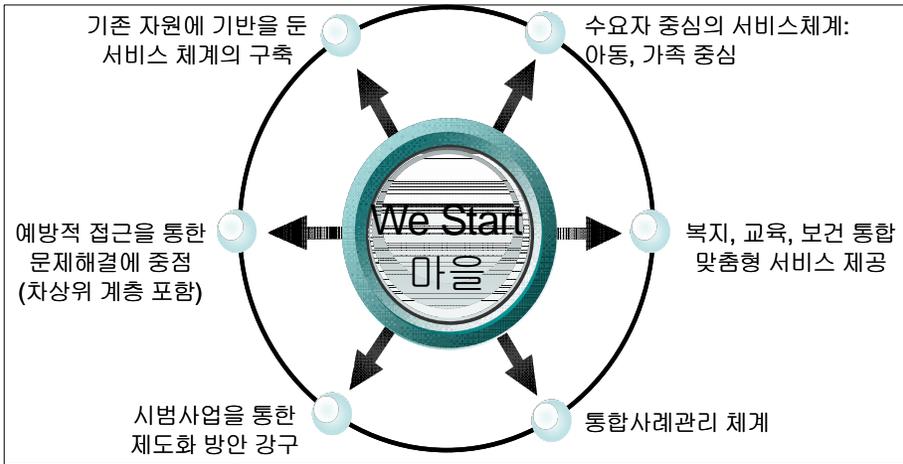
### ③ 지역사회대상 목표



<그림 III-10> 사업의 목표 : 지역사회

-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관계의 증가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성화
-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인식의 증진

(5) 추진 전략



<그림 III-11> 추진 전략

- 기존 자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의 기존자원과 아동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를 탈피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심화된 문제의 해결과 치료에 중심을 두기보다 예방적 접근을 통하여 빈곤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교육·보건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아동별·가구별 욕구에 따른 복지·교육·보건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수립
  - 지역 내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민관통합의 팀 접근으로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방안 강구
  - 시범사업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라는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강구

## (6) 추진 경과 및 실시지역

### ① 사업계획 수립

- We Start 운동본부 발족( '04.5.3)
- We Start 운동본부 운영위원 위촉(허남순 운영위원장외 10명) ( '04.5.17)
- We Start 5대 사업 발표( '04.5.19)
- 경기도 We Start 마을 사업 협약식( '04.6.3)
- 경기도 We Start 경기도마을 시범지역 선정 : 성남시 야탑3동, 군포시 산본1동, 안산시 초지동
- 경기도 We Start 마을 복지·교육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실시 :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 가톨릭 대학교 양수 교수, 연세대학교 김명수 교수( '04.7- '04.10)

### ② 시범기간과 내용

- 시범운영 기간 : 3년( '04- '06)
- We Start 센터 개소 : 각 마을별로 2004년 10월에서 2005년 3월

사이에 개소

- 지원액 : 마을 당 3억원(도 예산: 50%, 지자체 예산 50%)

### ③ 사업의 확대

- We Start 경기도마을 4개 마을 추가 확정 : 수원, 광명, 고양, 양주 ( '05.6.14)
- 경기도 We 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조례 제3430호( '05.7.25)
- 2006년 3개 마을 추가 선정

### ④ 실시 지역

- 2006년 5월 현재 경기도, 서울, 강원도의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2) 사업 분석

### (1)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① 사업대상

아동발달에 있어서 어린시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업의 기본대상을 0-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로 설정한다.

#### ② 사업대상의 선정기준은

0-12세 저소득 아동 수 500명을 기준으로 한 동 단위 사업으로 한다.

저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 (2) 추진 및 지원 체제

### ① 도 차원

지자체의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보건·복지 영역의 정책 실무자로 구성된 도 'We Start 마을 운영위원회' 를 구성, 운영

### ② 시 차원

도의 운영위원회에 상응하여 시 차원에서의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차원의 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을 단위의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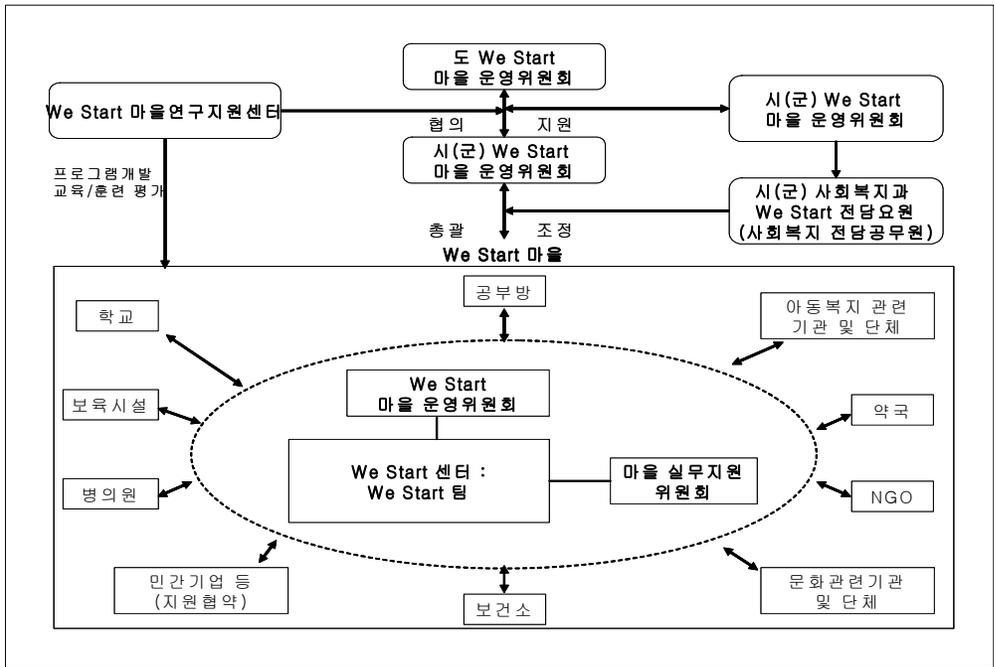
### ③ 마을 단위

마을단위에서도 마을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당 1개 마을만이 시범마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 차원의 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을 단위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함.

### ④ We Start센터

- 지역사회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추진체 설립, 운영
- 센터의 핵심 인력으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담당할 연령별·영역별 사례

관리 팀을 투입하였다. 다음에서는 We Start 마을 팀의 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림 III-12> We Start 마을 사업추진 체제

### (3) 주요 인력

- We Start 센터의 인력구성은 <표 III-6>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 기타인력 충원방법
  - <표 III-6>의 We Start 팀 기초인원에 추가로 마을별 대상 아동/가구 수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계약제·시간제 등의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음
- 인력의 선발과 배치
  - We Start 팀 인원의 선발·배치는 <표 III-6>의 기준안을 따르되 전문성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선발·배치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음

- 기존 전문분야별 담당 공무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
-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간 요원을 특채 등의 형식으로 선발하여 배치
- 지역 사정 특히 지역 자원이나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에 밝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표 III-6> We Start 센터 인력구성

인원	직급	전문영역	주요 업무
We Start 팀장 1인	6급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행정 경험자)	빈곤아동가구 총괄 사례관리 총괄책임 및 예산관리 지역 자원 발굴·연계
건강 조정자 1인	7급	간호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수행/관리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응급지원 서비스
보육/조기교육 조정자1인	7급	보육	We Start 보육/조기교육 센터 관리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복지 조정자 1인	7급	복지	학교사회복지 지원 학교 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4) 사업대상 유형별 지원서비스 내용



<그림 III-13> 사업의 내용과 방향

① 복지 : 통합적 사례관리·학교사회복지·방과후 프로그램

- 포괄적 욕구를 가진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내 아동과 가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욕구과약과 현장 접근형 서비스 증가 모색
- 분야별 서비스, 기관별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 지역 내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민관통합의 팀 접근으로 실시
- 실무자 대상 사례관리 교육실시
- 사례관리 양식개발과 지침 제공
- 사례회의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수립
- We Start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고 We Start 센터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개발된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 적용
- 표의 경우 방과 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제공

② 보건 : 가정방문간호 사업

- 목적
  - 빈곤아동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보건관리 기능 활성화
  - 건강 및 발달사정, 교육과 지지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 신혼부부와 임신부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임신, 출산 도모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하여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및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제적, 잠재적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성장발달 도모.

- 모와 상호작용 증진 및 성장발달에 대한 어머니 육아능력, 발달 촉진 가정환경 조성 능력 증진.
-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환경 조성.

### ③ 보육/교육 :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 ■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프로그램

- 대상 : 만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와 영아의 양육자.
- 내용 : 저소득층 부모에게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소재, 실시 지원 및 격려.

#### ■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소집단 프로그램

- 대상 : 만 3, 4, 5세의 취학 전 유아의 혼합연령 구성집단.
- 내용 : We Start 기관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3-7명의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

활동에 사용되었던 그림책은 유아 1명당 1권씩 가정에 제공 하므로써 가정의 교육환경을 증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격려하며 부모가 함께 유아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5) 서비스제공 실태<sup>5)</sup>

#### ① 영역별 서비스 분포

<표 III-7>은 전체 제공된 서비스를 각 영역별(사례관리, 건강사업, 보

---

5)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지역인 안산초지마을의 서비스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것임. 다른 2개 지역, 군포와 성남의 서비스 현황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We Start 수행평가 결과 보소(이봉주·양수·김명순, 2006 참조)

육/교육 사업, 복지사업, 가족지원사업)로 나눈 후 각 영역별 서비스 수혜 아동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III-7>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We Start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은 총 545명이었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건강, 보육/교육, 복지(가족지원 포함)영역의 서비스를 접한 아동의 비율이 전체 아동 중 각 80%대를 상회하여 서비스 분포가 한 영역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3개 영역의 통합된 체계의 서비스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산 초지마을은 건강, 보육, 복지사업이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8월 보육(교육)조정자를 센터 자체에서 전임계약형식으로 채용하여 센터 핵심인력 편성을 완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7> 서비스 영역별 분포

	아동 수	퍼센트
사례관리	217	39.8%
건강사업	507	93.0%
보육(교육)사업	454	83.3%
복지사업	214	39.3%
가족지원사업	481	88.3%
전체아동 수	545	100.0%

## ② 서비스 분포

### 가. 건강사업

<표 III-8>은 건강사업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형태와 분포를 보여준다. 건강사업의 상당부분은 홍보와 정보제공, 그리고 연계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8> 건강사업 프로그램 분포

건강사업	서비스 회수	퍼센트
의료비지원	75	3.1%
건강검진	28	1.1%
가정방문	141	5.8%
홍보/정보	1,449	59.4%
연계	705	28.9%
기타	42	1.7%
계	2,440	100.0%

나. 보육(교육)사업

2005년 보육부분프로그램의 분포에서 특이한 사항은 직접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보다는 부모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5년에 영아대상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유아대상기관방문 프로그램이 모두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 프로그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시행 매뉴얼이 보급단계에 있으므로 아동대상 보육/교육 서비스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9> 보육/교육사업 프로그램 분포

보육(교육)	서비스 회수	퍼센트
가족프로그램	53	8.1%
가정방문 보육	17	2.6%
기관방문 보육	79	12.1%
부모교육	454	69.5%
예비초등 준비	19	2.9%
기타	31	4.7%
계	653	100.0%

#### 다. 복지사업

복지사업 영역에 있어 안산 초지마을의 경우는 학교사회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문화활동/현장학습이 주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초지마을의 경우는 사업초기에 학교사회복지실을 안산1대학에 위탁하여 수행기관으로 설정하였고 두 곳의 마을 내 초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정도가 빨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0> 복지사업 프로그램 분포

복지사업	서비스 회수	퍼센트
공부방 지원	135	4.8%
상담	36	1.3%
문화활동	413	14.8%
현장학습	260	9.3%
정보제공/홍보	113	4.1%
특별프로그램	437	15.7%
학교사회복지	1,061	38.1%
기타	333	11.9%
계	2,788	100.0%

#### (6) 사업평가

경기도 시범사업은 2004년 7월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실제 인력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된 지는 이제 약 1년 6개월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국형 통합적, 예방적, 조기개입 아동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통합적 서비스의 가능성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국 아동서비스에서의 통합적 서

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보건·복지·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이 사례회의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아동과 가족을 중심에 둔 서비스 접근법이 시도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초물기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단계 시범 지역인 3개 지역 모두에서 영역들 간의 협동과 협조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통합적 서비스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그 실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② 예방적 조기 개입 서비스의 가능성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제가 심화된 후 개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인적자본 개발의 지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정립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열악한 저소득 지역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고위험 사례들이다. 또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면에서도 예방적인 서비스는 바로 실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예방적 서비스의 가치와 방향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무자들의 관심은 자연히 문제가 심화된 대상층에 가기 마련이다. 실제로,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초기에는 3개 지역 모두에서 고위험층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진행되었다. 이는 초기에 사업의 방향성이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실무자들은 실무자 나름대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층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3개 지역 모두에서 초기에는 주대상층이 초등학생 연령층이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영유아 대상 아동들보다는 문제가 심각해보이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는 없다. 아동서비스에서 사업별 목적에 따른 특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제 발생 위험이 크지만, 아직 문제가 심화되지는 않은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예방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다른 서비스 체계로 연계, 연결하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초기에 실무자들이 이러한 서비스 방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고, 서비스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례회의가 정착되고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시행되면서 실무자들의 의식의 변화도 따라왔다. 현재 사업 진행 상태를 살펴보면 예방적 서비스에 훨씬 무게 중심을 두는 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예방적 조기 개입 서비스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것이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또 하나의 성과이다.

### ③ 공적 전달체계의 가능성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의도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적전달체계의 형식을 도입하였다. 그렇게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 아동서비스에서 공적 전달체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아동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민간 위탁을 통하여 수행되고 공적 전달체계는 사업의 지도, 자원 배분, 감사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여왔다. 이러한 민·관 관계는 파트너십을 조성하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를 낳아 온 것도 사실이다.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민·관 협력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공적 전달체계가 직접 서비스 제공과 사례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식을 시도하였다. 둘째는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래의 방식대로 1개 민간기관에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역 내의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계, 협조 체계를 원활히 구성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칫, 그러한 위탁 방식은 통합적 서비스 체계라는 인식보다는 ‘어느 기관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체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적 전달체계를 택한 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초기에는 다

소 관료적인 접근법을 보이던 실무 공무원들이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과 훈련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와 사례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 수행기관 인력들과 함께 사례회의에 참석하고 사례관리에 파트너로 협동하는 체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적전달체계의 시도는 일단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적 전달체계 선택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적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업은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민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 자체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각종 행정 시스템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이다. 팀의 구성원이 2-3개월 간격으로 바뀌는 상황 하에서는 진정한 팀 접근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산시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내부의 의지에 의하여 현재까지 초기 팀원들이 큰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화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지역 연계를 통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We Start 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연계와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기관(lead agency)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기관들을 축으로 하는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명목적인 연계 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써의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연계체계의 구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본다. We Start 센터에서는 영역별 서비스 조정자들이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sup>6)</sup> 서비스 조정자의

6) We Start에서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라는 용어 대신 서비스 조정자(service coordinator)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그 기능에 충실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관리' 당한다는 것을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실제로 사례관리가 보편화된

주 역할은 서비스네트워크와 다양한 지역 대상 아동, 가족의 복지욕구를 연결시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관리 기능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중개 역할인 것이다.

### ⑤ 교육·훈련의 중요성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사업에서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라다. 시범사업의 진행과 함께 도에서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된 사업에서도 교육, 지원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안산시 초지 마을의 경우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영역별 혹은 통합 워크숍, 강연, 실무진 교육 등 약 20회 이상의 교육 훈련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고, 사례관리 원칙과 실천방법,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수행실천 방법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이 교육되고 공유되었다. 예방적 조기 개입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 훈련 과정의 큰 성과의 하나이었다.

### 3)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6년 현재 경기도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2015년까지 각 시·군에 1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마을 확산 계획과 더불어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으로 1차 시범지역 마을인 안산시 초지동, 성남시 야탑3동, 군포시 산본1동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평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선 조사가 2005년 12월에

---

미국에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례관리(case management)라는 용어 대신 여러 분야에서 care management, care coordination, service coordination, case coordination, service manage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루어졌고 대상 아동과 가족에 대한 추적조사가 2006년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사업의 재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50:50의 비율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100%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라도지역은 도와 민간 기업이 함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하반기 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투자국가를 설정하면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방안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즉,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델로 한 ‘희망스타트 사업’을 2007년부터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함께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국가 사업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 4. 유사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위 3개 사업을 비교하면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유사 사업 비교

	청소년위원회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사업 대상	· 전국의 위기청소년 지원	· 도시빈곤지역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 지원 · 지역의 기준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동	· 0-12세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동 단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동반자 서비스 지원, 긴급구조 및 보호, 교육, 직업훈련, 의료, 법률, 여가문화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학습지원, 문화활동, 상담, 의료, 방과 후 보호 등 복지, 영유아 교육·보육,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건강, 보육(교육), 복지, 가족지원 등

	청소년위원회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주요 인력	· 동반자, · 통합지원체계 신규인력	· 프로젝트코디네이터, 지역 사회교육전문가	· 팀장1인, 건강, 보육, 복 지조정자 각 1인씩 총 4 인
추진 체계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시도-시도상담지원센터 · 시군구-시군구지원센터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 개발원 · 시도교육청-시도 연구 지 원센터 · 지역교육청 ·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 함)	· 도-마을 운영위원회 · 시-마을운영위원회(현재 는 읍면동단위 마을운영위 원회 병행수행) · We Start 센터
재원 및 예산 규모	· 국비와 지방비 대응투자 · 통합지원체계사업: 총 91.8억원 · 시도당 3억6천 (시도대응 투자 1억8천 포함) 총59.8 억원 · 시군구당 8천만원(시군구 대응투자 4천만원 포함) 총 32억원 · 동반자사업: 32억원(지방 비 16억 포함)	· 재원 : 지방교육재정특별 교부금 -2003: 155억원 -2004: 83억원 -2005:160억원(대응투 자 50억원 포함) -2006: 209억원 · 지원기준(2005이후) -1년차: 지역당 10억원지 원 -2-3년차: 지역당 5억원 이내 지원(교육청 대응투자 5억원 부담) -4-5년차: 지역당 3억원 (교육청 대응투자 3억원 부담), 3년차까지의 추진성 과를 기초로 지원여부 판단	· 마을당 3억원(도와 지차 제 50대 50 대응투자) · 전국 10개 지역 총 30억 원.
사업 실시 지역 범위	· 16개시도, 40개 시,군,구 · 동반자사업 지역은 8개 시도	· 30개 지역 314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 경기도 10개동 · 강원도 3개읍(동) · 서울시 2개동 · 전라남도 3개읍(면) 등 총 18개 읍(면, 동)
추진 경과, 추진 단계 및 향후 계획	· 2005년 2개 지역 시범실 시 후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 향후 동반자사업 연차적으 로 확대하여 2010년 이후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전역에 동반자 1,500명 활 동예정	· 2003년 4년 시범사업 후 연차적으로 확대 · 2005년 이후 공모제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대 · 2008년까지 100개 지역 으로 확대 · 평생학습도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과 연계통합하 여 '교육안전망' 구축	· 2004-2006년간 시범마 을 실시, 시범마을 점진적 으로 확대 ·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되어 30여 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100 억원 투자 예정.

위 3개 사업은 실행방식과 실시지역은 다르지만 사업대상과 지원내역이 유사하다. 세 사업 모두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을 다른 두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된다.

첫째, 다른 두 사업에 비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We Start’는 동 단위의 ‘center’, 통합지원체계는 ‘시군구’ 단위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We Start’사업이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훨씬 앞서고 있다.

둘째, 사업범위 대비 투자액수가 적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단위별로 투입되는 재정규모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학교당 1-2억원, ‘We Start’사업은 마을(동)당 3억원이 투입되나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1개 구당 8천만원이 전부이다.

즉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사업범위는 ‘구’ 단위로 넓고 투입예산 ‘동’ 단위 투입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통합지원체계사업은 구색만 갖추고 성과는 없는 사업이 되기 십상이다.

셋째, ‘통합지원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인력이 독립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여 ‘통합지원체계’ 사업의 개념을 통일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프로젝트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We Start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조정자 등 사업을 위한 고유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전제로 사업이 계획되어 실행되었으며 광역시도와 시군구(또는 동) 단위로 연계되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통합지원체계사업은 신규인력인 시도와 시군구 지원센터의 직원과 동반자의 역할에 연계성이 없고 시도와 시군구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채 각 센터에 신규업무로 부가되어 기존 직원과 신규직원,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이 혼재되어 사업의 정체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통합지원체계사업’의 대응투자방식의 재정보호는 시도와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 실시를 어렵게 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비, 지방비 대응투자로 실시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 또한 시도단위에서 확보한 대응투자예산이 시도상담지원센터에 배분되고 있고 시군구센터는 시군구센터대로 기초자치체를 상대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현 상태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간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기 어렵다.

다섯째, 통합지원체계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재원 규모가 적어 사업의 실질적 임팩트를 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첫째에는 전액 국고로 사업을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국고지원을 줄이고 지방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한 후 국고를 다른 지역으로 순환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고로 확보한 일정 사업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성과를 유도한 후 다른 지역에 순환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섯째, 사업예산의 배분 시 청소년인구,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액을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지역 등에 가중치를 두어 예산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 IV. 위기청소년 실태 분석

1.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요인
4.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보호요인의 차이
5.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
6.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기대와 지원현황
7. 결과요약 및 시사점

## IV. 위기청소년 실태 분석

본 장은 우리나라 위기청소년들의 실제모습에 대해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청소년위원회(2005a)의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 초, 중, 고, 청소년기관 등 폭넓은 청소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행경험, 문제인식정도, 지원서비스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안전망사업은 이미 위기청소년으로 인지된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이들 실제적인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초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실제적인 위기청소년안전망 사업대상 청소년들의 실태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위기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위기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위기요인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Nopes, 2004). 즉 위기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파악하고, 개입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청소년의 위험에 대해 위험행동(risky behavior), 위험추구행동(risk-taking behavior), 심리·사회적 위험(psychosocial risk),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등의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Michaud 2006:481-483). Lipsey와 Derzon (1998)은 이전에 행해진 66개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결과 모든 연구들이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밝히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이들 연구들이 위험요

인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종합정리 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 : 성, 인종, 지능, 신체적 의학적 조건, 심리적 조건,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교에서의 수행 등

둘째, 가족특성 : 반사회적 부모 혹은 학대부모여부, 결손가족, 부모-자녀관계특징,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른 가족들의 특징

셋째, 반사회적 행동 : 공격성, 범행(폭력, 성범죄 등 대인범죄/ 재산범죄 등 일반범죄)여부, 문제행동, 약물사용

넷째, 지역사회 : 사회적 결속력, 비행친구관계

위험요인을 실제 위험행동과 관련시켜 보려는 연구들도 있는데 Blum과 Ireland(2004)는 Caribbean지역의 9개 지방에 사는 15,500명의 청소년(10-18세)을 대상으로 폭력, 성관계, 흡연, 음주행동 등 건강에 유해한 행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기요인이 무엇인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격노경험이 성별, 연령차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한 행동에 대해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고, 학교와의 결속력이 가장 큰 보호요인임을 발견하였다.

Capuzzi와 Gross(2004)는 이렇게 위험요인을 밝혀내고 위험행동과 관련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해 원인 결과적 접근(causal/effect behavior perspective)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구본용등(청소년위원회, 2005a)은 위험요인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예를 들면, 청소년 공격성과 폭력의 주요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제안한 Borum(2000)의 견해를 예로 들 수 있다.

#### ■ 개인사적 요인

- 폭력이나 비행
- 어린 시절 폭력여부
- 학교문제(학업실패, 낮은 결속 및 흥미 없음, 무단결석, 잦은 전학)

- 임상적 요인
  - 약물사용문제
  - 정신장애 혹은 행동장애
  - 정신병리
  - 위험추구/충동성(행동불안, 정서불안, 위험추구)
  - 부정적인 태도(동정심 부족, 폭력동조, 엉뚱한 대상에 대한 분노)
- 맥락적 요인
  - 부정적인 또래관계(조직가담, 비행하는 친구, 거부아, 따돌림대상)
  - 빈약한 부모/가정교육(빈약한 가족관리, 부모와 빈약한 상호작용, 극단적 훈육방법 또는 비일관된 훈육)
  - 개인적/사회적 지지의 결핍 및 스트레스와 상실
  - 이웃 범죄와 폭력(이웃의 범죄, 지역사회붕괴, 약물허용수준)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행동의 예측인자를 발견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된다.

한편 Michaud(2006)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연구관행이 위험요인은 곧 위험행동의 가담이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약물남용에 대한 중단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행동들은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즉 위기는 있었으나 위험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소위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본질적으로 실험적, 탐색적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 하면서 위험행동 예방이나 위험행동에 대해 강조하기보다 건강한 행동의 발달을 돕는 개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추구적인 청소년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세계를 탐색하는 청소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위기를 예측하는 시도 외에 이러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기 청소년은 위험요인 뿐 아니라 보호요인과 함께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Capuzzi와 Gross(2004:1-19)는 개인의 회복력(resilience)을 보호요인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기청소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청소년이 스트레스나 불운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거나 오히려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술, 능력, 개인의 좋은 특성 혹은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 연구들에서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인의 회복력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첫째, 인생문제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풀어감
- 둘째, 고통, 좌절, 부정적인 경험들을 건설적으로 지각함
- 셋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이끌어냄
- 넷째,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점을 갖고 있음
- 다섯째,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음
- 여섯째, 유머를 이해하고, 즐기고, 사용함
- 일곱째, 위험감수를 하고 책임을 수용함
- 여덟째, 미리 대책을 강구함
- 아홉째, 적응적임
- 열째, 학교, 사회,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 유능함

보호요인은 개인 외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Youngblade와 그의 동료들(2006:486-494)은 학교수, 종교기관수, 고등교육자수, 양친 가족수와 같은 지역사회 자본과 위험행동 수준 간에 역상관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Davis, Tang과 Ko(2004:489-502) 역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개인이 모두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가족결속력, 교육적 성공, 긍정적인 지역사회환경, 사회적 지지 등이 보호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다.

구본용 등(청소년위원회, 2005a)은 위기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는 가운데 위험요소, 보호요소, 위기결과에 속하는 문항을 다음의 <표 IV-1>

<표 IV-2>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V-1> 위험요인 영역 및 하위요인

영역	영역 구분	하위요인
개인	정서적 심리적 문제	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적 문제	신체적 자아
	체험 문제	흡연, 음주경험
	스트레스 대처 문제	회피중심
가족	학대부모	
	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	
	반사회적 가족구성원	
학교	학업성적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의 무관심	
또래	방과 후 시간낭비	
또래	또래의 비행여부	
지역사회	주변환경	

<표 IV-2> 보호요인 영역 및 하위요인

영역	하위요인
개인	긍정적 자존감
	분명한 장래희망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가족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지지
또래	친한 친구
	건강한 과외활동
학교	학교생활의 흥미
	학업에 대한 관심
	교사의 관심과지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

출처: 청소년위원회(2005a).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개발연구. 166-167.

연구자들은 척도개발과정에서 위험요인의 위험행동결과 예측력이 보다 강했으며 보호요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호요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결과가 낮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예측변인은 될 수 없지만 중재와 개입,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1989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행동의 발생률 조사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9-12세 청소년들에게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1992년, 1999년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증이 이루어졌다(Brener et al. 2002:336-342). 이들은 고의든, 비고의적인 것이든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행동으로 첫째, 흡연, 둘째, 음주와 다른 약물 사용, 셋째, HIV감염이나 다른 성병을 초래 할 수 있는 성행동, 넷째, 원치 않는 임신, 다섯째, 섭식행동, 여섯째, 신체적 활동의 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별 문항을 구성하여 학교장면에서 이를 실시하고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문항을 예시하면 나는 현재 담배를 핀다(흡연), 나는 전혀 혹은 거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다(폭력 혹은 손상관련행동), 나는 13세 이전에 술을 처음 마셨다(음주), 나는 13세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다(성행동), 나는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섭식행동), 나는 지난 12개월 동안 한번이상 신체활동 중 다친 적이 있다(신체활동), 나는 AIDS나 HIV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건강관련주제) 등이다. 이러한 문항들 역시 청소년들의 위기요인을 이해하는 데 참고 할만하다.

본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무엇이며, 그들이 접해 있는 위기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정책수행 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지 지역별, 권역별 위기청소년들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최근 청소년동반자 사업대상이 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을 실제적인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으로 보고, 청소년동반자들에 의한, 기록문서 분석 방법을 취할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원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응답에 있어서 객관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특징, 문제행동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특징을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의 지역적 차별화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지원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실제 받은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청소년동반자들이 계획하고 시도했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자는 A, B 등 2개의 대도시(특별·광역시) 남녀 청소년 188명, C, D 등 2개의 소도시(시) 청소년 201명, 그리고 E, F, G 등 3개의 농어촌(군) 청소년 89명 등 총 478명이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위기청소년으로 인지되어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혹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된 동반자 사업대상들이다. 일부 지역은 동반자 사업이 시범 운영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그리고 일부 일부지역은 본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5월까지의 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들은 각 지역에 근무하는 83명의 동반자(남 13명, 여 70명)들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12세 이고, 상동반

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본 사업이 시범 운영된 2005년 이후이지만 이전에 상담센터, 복지관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들이었다.

## 2) 조사방법

### (1) 조사기간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2006년도 5월에 완성되었으며,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조사는 2006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통계 및 분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 (2) 조사 질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첫째, 조사 질문지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참고로 하고 청소년상담자, 청소년복지 전문가, 교육학자 등 청소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조사항목, 청소년위기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표 IV-3>, 보호요인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표 IV-4>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각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욕구와 지원받은 서비스 그리고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쉼터로 연결, 법률자문, 문화활동 지원, 가족지원, 기타 지원 영역 등이 기초적인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 청소년위기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내용		세부항목	
개인적 특징 및 개인위기 영역	성별			
	학업관련 현재신분	재학생	학년 성적 학교위기로인: 잦은 혹은 장기간 결석, 지각 조퇴, 교사와의 갈등, 성적하락에피소드, 학 습의욕 보이나 성적 오르지 않음, 괴롭힘 피 해, 괴롭힘 가해 등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최종학력	
	친구관계	동성 친구관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줄 동성친구
				비행과 관련된 동성친구
		이성 친구관계		비행과 관련 없는 이성 친구
				비행과 관련된 이성 친구
친구 없음				
가정환경 및 가족위기 영역	가족특기 사항 및 가족 내 위기로인	부모관계 및 형제 관계 위기	부모의 감독결여, 실직, 질병, 사별, 외도, 학교중퇴형제 유무 등	
		특수한 가족형태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음, 재혼가족, 조부모 가족, 새터민 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부모의 결혼상태	좋은 관계, 부부불화, 별거, 이혼 등	
		가족경제 상황	안정, 빈곤	
		가족원간 폭력, 폭언여부 및 범법자 유무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여부 및 대상
				가족원간 폭언여부 및 대상
			가족원 중 범법자유무	
주거환경	주거환경의 안정수준	안정, 혼자 쓰는 방, 비위생적이고 협소함 등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특징	주택가, 유해환경지역, 빈곤지역, 범죄지역 등		

<표 IV-3> 청소년위기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내용		세부항목
개인위기 영역	정서 및 정신건강	정서적 문제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 적 행동 등
		정신건강 문제	
		낮은 지능	
		기타	
	약물문제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성문제		혼숙경험, 성관계경험, 성매매 경험, 성폭력 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폭력문제		조직가담, 폭력피해, 폭력가해 경험 등
	자살문제		
	학대피해	신체적 학대경험	학대피해경험, 학대로 입원경험 유무 등
		성적 학대경험	학대피해경험, 학대로 입원경험 유무 등
행동문제		인터넷 중독, 부랑, 어린시절 도벽, 절도, 금품갈취, 방화, 오토바이 폭주, 사법문제 등	
가출문제		가출경험, 현재 가출 중, 가출 중 보호시설 이용경험	

<표 IV-4> 보호요인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내용	세부항목
개인보호 영역	개인적 특징	낙천적인 성격, 유머감각, 책임의식, 변화 동 기, 자기통제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 처, 사회적 유능감, 학업 등 성취영역에서의 성공경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 등
	목표의식	목표의식 유무: 진학욕구, 취업욕구, 자격증 취득욕구 유무 등
환경 내 보호영역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	부모의 정서적 지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 서적 지지, 가족의 경제적 여유, 도움을 주는 교사, 도움을 주는 친구 등

둘째, 현재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진행 중인 대상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혹은 청소년지원센터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취한 뒤, 질문지가 각 지역으로 보내졌으며 총 83명의 각 지역의 청소년동반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기록 문서를 기초로 각 질문내용에 대해 답했으며 이러한 협조에 대해 소정의 사례금이 지불되었다. 청소년동반자 각 개인이 질문에 답한 평균 사례 수는 6명이었다.

셋째, 완성된 질문지는 연구자에게 보내졌으며 연구자 중 한사람이 질문 내용을 검토하면서 자유응답의 경우 응답내용을 유목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응답내용에 중요한 항목이 빠진 17개의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8명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성별, 학교관계, 위기요인 수준별 그리고 지역별, 권역별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를 산출하였으며 위기요인수준별, 권역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인 수준을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보고 각 요인들이 그 수준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기요인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우선 본 질문에 나타나 있는 위기요인들의 총합(총 34개)을 산출하였다. 총합점수로 0에서 10개의 위기요인을 내포하는 청소년집단을 위기수준 저 집단으로, 11에서 20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을 중 집단으로 그리고 21에서 34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을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IV-5>와 같다. 이들 고, 중, 저 집단 구분에서 각 위기요인이 갖는 상대적 심각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표 IV-5>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위기영역 구분	세부내용	요 인 수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학교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li> <li>- 재학생: 잦은 결석 혹은 장기간 결석, 지각조퇴, 자퇴생각, 교사와의 갈등, 급작스런 성적하락,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 오르지 않아 고민,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 경험 중, 학교에서 괴롭힘 가해 중, 성적(학습부진)</li> </ul>	11	478	2.10	1.53
친구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과 관련된 동성친구 있음, 비행과 관련된 이성 친구 있음, 친구 한명도 없음</li> </ul>	3	478	0.70	0.79
개인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정신건강문제 유, 낮은 지능, 기타 정서적 정신건강문제, PTSD 경험</li> <li>- 술, 담배, 본드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약물문제</li> <li>- 혼숙경험, 성관계 경험, 성매매 경험, 성폭력 경험,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 기타 성문제</li> <li>- 폭력조직가담, 폭력피해경험, 폭력가해경험, 기타 폭력문제</li> <li>- 자살계획 혹은 자살기도, 가족 중 자살한 사람 유, 기타 자살문제</li> <li>- 신체적 학대피해경험</li> <li>- 성적 학대피해경험</li> <li>- 인터넷 중독, 부랑, 어린 시절 도벽, 절도, 금품갈취, 방화, 오토바이 폭주, 사법문제</li> <li>- 가출경험 있거나 현재 가출 중</li> </ul>	39	478	5.16	3.91
가족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실직상태, 부모의 질병, 학교중퇴형제, 재혼 가족, 부모 중 사별경험,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음, 부모의 외도 경험, 조부모 가정</li> <li>- 부부불화 혹은 별거 혹은 이혼 에 해당함</li> <li>- 가족경제빈곤</li> <li>- 가족원 간 폭력</li> <li>- 가족원 간 폭언과 욕설</li> <li>- 가족원 중 범법자 유</li> </ul>	13	478	3.68	2.34
주거환경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 비위생적이거나 협소함</li> <li>- 주거지역: 유해환경지역 혹은 빈곤지역 혹은 범죄 지역 혹은 떠돌이 생활에 해당</li> </ul>	2	478	0.61	0.76

<표 IV-5>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위기영역		세부내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위기요인 총수	478	12.24	6.50
위기 수준	저	1-10개 포함	222	6.82	2.47
	중	11-20개 포함	197	14.63	2.71
	고	21개-34개 포함	59	24.63	3.39

### 3.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요인

#### 1) 위기청소년의 특징

조사결과를 통하여 현재 청소년동반자사업대상이 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관계별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위기청소년들이 어떻게 의뢰되어 청소년동반자 사업대상이 되었는지와 현재 개입상태를 알아보았다. 끝으로 이들의 친구관계를 성별, 학교관계별, 위기요인수준 별 특징에 따라 살펴보았다.

##### (1) 위기청소년의 성별, 학교관계별 특징

우선 본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관련 현재 신분, 학년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관련 현재 신분, 학년

단위: 빈도(%)

구분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성별	남	288 (60.3)	478 (100.0)		
	여	190 (39.7)			
학교 관계	재학생	초등	127 (26.6)	403 (84.3)	
		중	중1		66 (13.8)
			중2		75 (15.6)
			중3		58 (12.1)
		고	고1		29 (6.1)
			고2		30 (6.3)
	고3		18 (3.8)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 중	13 (2.7)	75(15.7)	
		대안학교	15 (3.1)		
		실업상태	27 (5.6)		
기타		20 (4.2)			
				478 (100.0)	

조사대상 청소년은 남자가 288명(60.3%)이고 여자가 190명(39.7%)이며, 이들 중 학생이 403명(84.3%), 학교(공교육) 밖 청소년이 75명(15.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보다 학교 내에 위기 청소년들이 많다는 의미 보다 학교 내 위기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기회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측된다. 중학생이 전체대상자의 41.5%, 초등학생이 26.6%, 그리고 고등학생이 16.2%로 나타났으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전체대상자의 3.1%, 2.7% 이었으나 전체의 5.6%는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들의 학교관련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의 경우는 성적수준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최종학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7>, <표 IV-8>과 같다.

<표 IV-7> 재학생의 성적 수준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높은 성적	중간성적	학습부진	성적에 대한 언급 없음	계
성별	남자	11 (4.6)	48 (20.3)	156 (65.8)	22 (9.3)	237 (100.0)
	여자	7 (4.2)	48 (28.9)	95 (57.2)	16 (9.6)	166 (100.0)
학령별	초등학생	9 (7.1)	30 (23.6)	74 (58.3)	14 (11.0)	127 (100.0)
	중학생	5 (2.5)	48 (24.1)	131 (65.8)	15 (7.5)	199 (100.0)
	고등학생	4 (5.2)	18 (23.4)	46 (59.7)	9 (11.7)	77 (100.0)
위기수준	저	13 (6.5)	68 (34.2)	94 (47.2)	24 (12.1)	199 (100.0)
	중	5 (3.1)	24 (14.8)	121 (74.7)	12 (7.4)	162 (100.0)
	고	0 (0.0)	4 (9.5)	36 (85.7)	2 (4.8)	42 (100.0)
계		18 (4.5)	96 (23.8)	251 (62.3)	38 (9.4)	403 (100.0)

재학생의 65.8%가 학습부진으로 나타나 청소년위기와 학습부진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4.6%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학습부진은 남녀에 관계없이, 학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부진비율도 높게 나타나 학습부진이 청소년들의 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종학력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초등자퇴	중졸	중학교 자퇴	고졸	고등학교 자퇴	무응답	계
성별	남자	1 (2.0)	4 (7.8)	18 (35.3)	4 (7.8)	20 (39.2)	4 (7.8)	51 (100.0)
	여자	0 (0.0)	1 (4.2)	8 (33.3)	1 (4.2)	9 (37.5)	5 (20.8)	24 (100.0)
위기 수준	저	0 (0.0)	0 (0.0)	4 (17.4)	3 (13.0)	10 (43.5)	6 (26.1)	23 (100.0)
	중	0 (0.0)	2 (5.7)	15 (42.9)	2 (5.7)	14 (40.0)	2 (5.7)	35 (100.0)
	고	1 (5.9)	3 (17.6)	7 (41.2)	0 (0.0)	5 (29.4)	1 (5.9)	17 (100.0)
계		1 (1.3)	5 (6.7)	26 (34.7)	5 (6.7)	29 (38.7)	9 (12.0)	75 (100.0)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중 38.7%가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했으며, 34.7%가 중학교 자퇴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학력의 낮음보다 자퇴가 위기요인으로 의미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 (2) 위기청소년 의뢰과정 및 개입상태

조사 결과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 동반자에게 의뢰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IV-1>와 같다.

위기청소년들이 청소년동반자에게 의뢰되는 과정을 전체 순위별로 살펴보면 학교(28.2%),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14.6%), 청소년기관(10.9%) 등이 가장 많아서 청소년들의 생활권시설과의 연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법기관(8.8%), 상담센터(7.1%) 순인데 상담센터는 동반자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일반 내담자들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을 동반자 사업대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변

수에 따라 순위를 살펴보면, 우선 남자 청소년은 학교(29.5%), 청소년기관과 사법기관(각각 11.5%), 공부방 등 지역센터(9.0%), 상담센터(8.3%) 순이고, 여자 청소년은 학교(26.3%), 공부방(23.2%), 청소년기관(10.0%) 부모(6.9%), 상담센터(5.3%) 순으로, 약간의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구분해 살펴보면 재학생은 학교, 공부방, 청소년기관 순인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법기관, 학교/상담센터, 그리고 경찰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법기관, 경찰서, 상담센터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해결을 요하는 상태에서 동반자에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별로도 초등과 중등은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부방, 학교, 청소년기관이 주 의뢰기관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학교, 경찰서, 부모/사법기관 등 보다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의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수준 별로 살펴볼 때 고 집단은 사법기관이나 부모, 종교기관 순으로 의뢰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교가 위기청소년 발견과 의뢰처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4.2%는 초기개입단계에 있고, 50.2%는 개입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 대상자의 54.4%가 현재 동반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로 나타났다. 이들 중 22.2%는 이미 계획된 종결을 거두었지만, 21.1%는 조기종결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다 조기종결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한편 위기수준 고 집단이 저,중 집단보다 조기종결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교 등 다양한 생활현장 내 기관들이나 부모 등의 개인을 통해 의뢰되었으며 현재 개입중이거나 종결된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반자 사업이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청소년들과 계획된 상담과정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9> 위기 청소년현재 개입상태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개입 초기	개입 중기	계획된 종결	조기 종결	기타	계	
성별	남자	11 (3.8)	142 (49.3)	64 (22.2)	64 (22.2)	7 (2.4)	288 (100.0)	478 (100.0)
	여자	9 (4.7)	98 (51.6)	42 (22.1)	37 (19.5)	4 (2.1)	190 (100.0)	
학교관계	재학생	20 (5.0)	206 (51.1)	94 (23.3)	76 (18.9)	7 (1.7)	403 (100.0)	478 (100.0)
	학교 밖 청소년	0 (0.0)	34 (45.3)	12 (16.0)	25 (33.3)	4 (5.3)	75 (100.0)	
학령별	초등학생	9 (7.1)	65 (51.2)	38 (29.9)	13 (10.2)	2 (1.6)	127 (100.0)	403 (100.0)
	중학생	8 (4.0)	109 (54.8)	39 (19.6)	39 (19.6)	4 (2.0)	199 (100.0)	
	고등학생	3 (3.9)	32 (41.6)	17 (22.1)	24 (31.2)	1 (1.3)	77 (100.0)	
위기수준	고	3 (5.1)	37 (62.7)	10 (16.9)	9 (15.3)	0 (0.0)	59 (100.0)	478 (100.0)
	중	8 (4.1)	117 (59.4)	35 (17.8)	36 (18.3)	1 (0.5)	197 (100.0)	
	저	9 (4.1)	86 (38.7)	61 (27.5)	56 (25.2)	10 (4.5)	222 (100.0)	
계		20 (4.2)	240 (50.2)	106 (22.2)	101 (21.1)	11 (2.3)	478 (100.0)	

(3) 위기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징

위기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동성친구관계, 이

성 친구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친구가 한명도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위기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징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도움 줄 동성친구 있음	비행관련 동성친구 있음	친한 친구 한명도 없음	비행과 무관한 이성친구 있음	비행관련 이성친구 있음	계
성별	남자	110 (38.2)	111 (38.5)	40 (13.9)	52 (18.1)	47 (16.3)	288 (100.0)
	여자	82 (43.2)	67 (35.3)	25 (13.2)	35 (18.4)	44 (23.2)	190 (100.0)
학교관계	재학생	170 (42.2)	134 (33.3)	52 (12.9)	68 (16.9)	63 (15.6)	403 (100.0)
	학교 밖 청소년	22 (29.3)	44 (58.7)	13 (17.3)	19 (25.3)	28 (37.3)	75 (100.0)
학령별	초등학생	58 (45.7)	20 (15.7)	15 (11.8)	13 (10.2)	5 (3.9)	127 (100.0)
	중학생	83 (41.7)	76 (38.2)	28 (14.1)	40 (20.1)	35 (17.6)	199 (100.0)
	고등학생	29 (37.7)	38 (49.4)	9 (11.7)	15 (19.5)	23 (29.9)	77 (100.0)
위기수준	저	101 (45.5)	42 (18.9)	20 (9.0)	22 (9.9)	5 (2.3)	222 (100.0)
	중	77 (39.1)	88 (44.7)	34 (17.3)	43 (21.8)	45 (22.8)	197 (100.0)
	고	14 (23.7)	48 (81.4)	11 (18.6)	22 (37.3)	41 (69.5)	59 (100.0)
계	192 (40.2)	178 (37.2)	65 (13.6)	87 (18.2)	91 (19.0)	478 (100.0)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각 친구관계 특성에서 남녀 차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비행관련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행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암시하는 비행관련 동성친구 혹은 이성친구가 있다는 항목에서 재학생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령별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위기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왔다. 한편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것 또한 중요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성별, 학교관계, 학령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기수준집단에서는 고, 중, 저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서 다른 위기요인과 관련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2) 위기 청소년의 개인적 위기요인과 문제행동

### (1) 재학생의 학교위기

재학생 403명(남237, 여166)의 학교위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출결상황을 포함하는 관련문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표 IV-2>와 같다.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26.3%의 청소년이 잦은 결석과 장기결석을, 그리고 28.3%의 청소년이 지각조퇴를 하는 등 학교출결상황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교사와의 갈등 27.8%로 약 26~28%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의욕 보이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청소년도 26.8%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고,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 혹은 결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잦은 결석 혹은 장기결석, 지각조퇴, 자퇴생각, 교사와의 갈등은 학령이 높을수록,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내 괴롭힘 가해, 피해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초, 중등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괴롭힘은 저 연령층 청소년들의 문제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작스런 성적 하락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2) 위기청소년의 정서 및 정신건강문제

위기청소년들의 정서 및 정신건강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정서관련 항목과 정신건강문제, 낮은 지능, PTSD 등의 정신건강관련항목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각 대상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지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부표 IV-3>과 같다.

우선 정서관련항목의 결과를 보면 남녀차이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충동적 행동(전체 청소년 478명중 59.8%),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50%), 불안(44.6%), 우울(37.7%)로 전반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51.1%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 보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38.7%, 불안이 49.3%, 충동적 행동이 68.0%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의 학령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위기수준별로 살펴 볼 때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불안, 충동적 행동은 고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울은 중집단에서 많이 나타났다.

정신건강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13.4%가 정신건강문제가 있으며 8.8%가 PTSD를 경험했고, 8.2%가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신건강문제의 경우 남자(16.3%)가 여자(8.9%)에 비해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위기수준 집단별 결과에서는 고집단이 정신건강문제, 낮은 지능, PTSD 세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외에 나타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무기력 전체 4명, 내성적 성향 4명, 표현력 부족 3명, 언어장애, 정서적 자각 없음 각 2명 이외에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부표 IV-3>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밝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DHD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대인기피증, 행동장애, 공격성, 피해의식, 정신분열, 측두열 간질, 선택적 함묵증, 범불안 장애, 뇌파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 혼자 있기를 두려워함, 품행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PTSD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42명(남 22, 여 20)이 경험한 주요외상 경험에 대해 응답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PTSD 경험의 주요 항목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사망사고 충격경험	폭행	사고	화재	계
성별	남자	7 (31.8)	10 (45.5)	4 (18.2)	1 (4.5)	22 (100.0)
	여자	11 (55.0)	5 (25.0)	2 (10.0)	2 (10.0)	20 (100.0)
학교 관계	재학생	15 (42.9)	12 (34.3)	5 (14.3)	3 (8.6)	35 (100.0)
	학교 밖 청소년	3 (42.9)	3 (42.9)	1 (14.3)	0 (0.0)	7 (100.0)
학령 별	초등학생	5 (55.6)	3 (33.3)	1 (11.1)	0 (0.0)	9 (100.0)
	중학생	8 (42.1)	8 (42.1)	1 (5.3)	2 (10.5)	19 (100.0)
	고교생	2 (28.6)	1 (14.3)	3 (42.9)	1 (14.3)	7 (100.0)
위 기 수 준	저	6 (75.0)	2 (25.0)	0 (0.0)	0 (0.0)	8 (100.0)
	중	10 (47.6)	5 (23.8)	4 (19.0)	2 (9.5)	21 (100.0)
	고	2 (15.4)	8 (61.5)	2 (15.4)	1 (7.7)	13 (100.0)
계		18 (42.9)	15 (35.7)	6 (14.3)	3 (7.1)	42 (100.0)

PTSD를 경험한 42명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내용은 사망사고로 인한 충격경험(42.9%), 폭행(35.7%), 사고(14.3%), 화재(7.1%) 순이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폭행, 사망사고, 사고, 화재 순으로, 여자는 사망사고, 폭행, 사고 및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체적 성적학대 피해 경험 유무와 그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신체적, 성적 학대피해경험은 <표 IV-12>과 같았다.

<표 IV-12> 신체적·성적 학대피해경험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신체적 학대 피해 경험	신체적 학대로 입원 경험	성적 학대 피해 경험	성적 학대로 치료 경험
성별	남자	53 (18.4)	4 (1.4)	5 (1.7)	2 (0.7)
	여자	30 (15.8)	1 (0.5)	4 (2.1)	0 (0.0)
학교 관계	재학생	63 (15.6)	3 (0.7)	8 (2.0)	2 (0.5)
	학교 밖 청소년	20 (26.7)	2 (2.7)	1 (1.3)	0 (0.0)
학령별	초등학생	22 (17.3)	0 (0.0)	1 (0.8)	0 (0.0)
	중학생	31 (15.6)	1 (0.5)	4 (2.0)	1 (0.5)
	고등학생	10 (13.0)	2 (2.6)	3 (3.9)	1 (1.3)
위기 수준	저	11 (5.0)	1 (0.5)	0 (0.0)	0 (0.0)
	중	38 (19.3)	0 (0.0)	3 (1.5)	0 (0.0)
	고	34 (57.6)	4 (6.8)	6 (10.2)	2 (3.4)
계		83 (17.4)	5 (1.0)	9 (1.9)	2 (0.4)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며, 계는 전체 청소년 478에 대한 비율임.

전체 청소년 중 17.4%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학대피해경험이 있으며, 1.9%가 성적 학대피해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한 1.0%의 청소년이 신체적 학대로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위기수준 고집단이 저, 중집단에 비해 신체적 피해경험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적, 성적 학대자가 누구인지 하는 조사결과는 <표 IV-13>, <표 IV-14>와 같이 나타났다. 즉 부모가 신체적 학대자인 경우는 학대피해청소년 83명중 61.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친구선배(9.6%), 친족

(7.2%) 순이었으며 성학대자는 다양하였다.

<표 IV-13> 신체적 학대자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부모	친구/선배	친족	형제/자매	교사	집단성폭력	기타	무응답	계
성별	남자	27 (50.9)	6 (11.3)	5 (9.4)	2 (3.8)	2 (3.8)	1 (1.9)	1 (1.9)	9 (17.0)	53 (100.0)
	여자	24 (80.0)	2 (6.7)	1 (3.3)	0 (0.0)	0 (0.0)	0 (0.0)	1 (3.3)	2 (6.7)	30 (100.0)
계		51 (61.4)	8 (9.6)	6 (7.2)	2 (2.4)	2 (2.4)	1 (1.2)	2 (2.4)	11 (13.3)	83 (100.0)

<표 IV-14> 성적 학대자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부모	친구/선배	집단성폭력	무응답	계
성별	남자	0 (0.0)	0 (0.0)	1 (20.0)	4 (80.0)	5 (100.0)
	여자	1 (25.0)	1 (25.0)	0 (0.0)	2 (50.0)	4 (100.0)
계		1 (11.1)	1 (11.1)	1 (11.1)	6 (66.7)	9 (100.0)

### (3) 위기청소년의 행동문제

다음은 비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 약물문제, 성문제, 폭력문제, 자살문제, 행동문제, 가출문제에 대해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록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위기청소년들의 행동문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약물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약물문제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술	담배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성별	남자	72 (25.0)	80 (27.8)	4 (1.4)
	여자	52 (27.4)	50 (26.3)	0 (0.0)
학교 관계	재학생	81 (20.1)	81 (20.1)	3 (0.7)
	학교 밖 청소년	43 (57.3)	49 (65.3)	1 (1.3)
학령별	초등학생	2 (1.6)	3 (2.4)	0 (0.0)
	중학생	49 (24.6)	45 (22.6)	1 (0.5)
	고교생	30 (39.0)	33 (42.9)	2 (2.6)
위기수준	저	20 (9.0)	22 (9.9)	1 (0.5)
	중	61 (31.0)	63 (32.0)	1 (0.5)
	고	43 (72.9)	45 (76.3)	2 (3.4)
계		124 (25.9)	130 (27.2)	4 (0.8)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며, 계는 전체 478명에 대한 비율임.

전체 478명의 청소년 중 25.9%가 술을, 27.2%가 담배를, 그리고 0.8%가 본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은 남자의 경우 25.0%, 여자의 경우 27.4%로, 담배는 남자의 경우 27.8%, 여자는 26.3%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20.1%가 술을, 20.1%가 담배문제를 나타내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57.3%가 술을, 65.3%가 담배문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학령이 올라갈수록 위기수준이 높아질수록 술, 담배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로써 위기청소년들의 술, 담배 사용빈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표 IV-4>를 보면 성문제 중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낸 것은 혼숙경험으로 전체 478명의 청소년 중 16.1%였고, 그 다음은 성관계 경험으로 11.5%로 나타났다. 혼숙을 한다고 모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나 많은 청소년이 무책임한 성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성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혼숙(21.6%), 성관

계(15.8%), 성매매, 성폭력, 임신, 성병 등 각종 성문제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위기수준이 저, 중, 고로 높아지면서 혼숙경험, 성관계경험, 성매매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 접속 등에서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IV-16> 폭력문제(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조직 가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폭력 가해 경험	기타
성별	남자	15(5.2)	42(14.6)	64(22.2)	1(0.3)
	여자	13(6.8)	15(7.9)	29(15.3)	0(0.0)
학교 관계	재학생	20(5.0)	44(10.9)	72(17.9)	1(0.2)
	학교 밖 청소년	8(10.7)	13(17.3)	21(28.0)	0(0.0)
학령별	초등학생	2(1.6)	6(4.7)	7(5.5)	1(0.8)
	중학생	13(6.5)	32(16.1)	45(22.6)	0(0.0)
	고등학생	5(6.5)	6(7.8)	20(26.0)	0(0.0)
위기 수준	저	3(1.4)	8(3.6)	15(6.8)	0(0.0)
	중	10(5.1)	25(12.7)	41(20.8)	0(0.0)
	고	15(25.4)	24(40.7)	37(62.7)	1(1.7)
계		28(5.9)	57(11.9)	93(19.5)	1(0.2)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478명의 청소년 중 비율임.

전체 청소년 중 19.5%가 폭력가해 경험이 있었고, 11.9%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5.9%는 조직에 가담함 경험이 있었다. 남자들은 22.2%가, 여자는 15.3%가 폭력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령이 올라갈수록 폭력가해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위기수준 저, 중, 고 순으로 폭력문제 전체항목에서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V-17> 자살문제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자살계획 혹은 자살기도 경험	가족 중 자살한 사람 있음
성별	남자 288명중	11 (3.8)	2 (0.7)
	여자 190명중	15 (7.9)	5 (2.6)
학교 관계	재학생 403명중	20 (5.0)	4 (1.0)
	학교 밖 청소년 77명중	6 (8.0)	3 (4.0)
학 령 별	초등학생 127명중	0 (0.0)	1 (0.8)
	중학생 199명중	15 (7.5)	1 (0.5)
	고등학생 77명중	5 (6.5)	2 (2.6)
위기 수준	저 222명중	5 (2.3)	0 (0.0)
	중 197명중	11 (5.6)	4 (2.0)
	고 59명중	10 (16.9)	3 (5.1)
계		26 (5.4)	7 (1.5)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전체 위기청소년 478명 중 5.4%가 자살계획이나 자살기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5%는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자살계획 혹은 자살기도경험 역시 위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부표 IV-5>를 보면 위기청소년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문제 중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인터넷 중독(전체 청소년 478명 중 24.9%), 절도(15.3%), 사법문제(15.1%), 금품갈취(14.6%), 어린시절 도벽(13.2%) 등이었으며, 오토바이 폭주나 부랑 역시 약 8%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중독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 중독, 절도, 사법문제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그런가 하면 절도, 사법문제들은 학령이 높아지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었고

거의 모든 행동문제 항목에서 위기수준 저, 중, 고 순으로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V-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법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즉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된 청소년이 72명(15.1%)으로 나타났는데, 앞의 <표 IV-9>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의 8.8%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사법문제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시기를 분석해 보았다.

<표 IV-18> 사법문제에 연루된 경우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진행 중	과거경험	계
성별	남자	31 (57.4)	23 (42.6)	54 (100.0)
	여자	9 (50.0)	9 (50.0)	18 (100.0)
학교관계	재학생	22 (55.0)	18 (45.0)	40 (100.0)
	학교 밖 청소년	18 (56.3)	14 (43.8)	32 (100.0)
학령별	초등학생	1 (100.0)	0 (0.0)	1 (100.0)
	중학생	12 (50.0)	12 (50.0)	24 (100.0)
	고등학생	9 (60.0)	6 (40.0)	15 (100.0)
위기수준	저	11 (64.7)	6 (35.3)	17 (100.0)
	중	13 (44.8)	16 (55.2)	29 (100.0)
	고	16 (61.5)	10 (38.5)	26 (100.0)
계		40 (55.6)	32 (44.4)	72 (100.0)

남자 청소년의 경우 57.4%가 현재 사법문제가 진행 중이고, 42.6%가 과거경험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경우와 과거경험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중 반 정도가 현재 사법문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반자에게 의뢰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음은 이들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가출문제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가출경험	현재 가출 중	가출 시 보호시설 이용 경험
성별	남자	94 (32.6)	11 (3.8)	21 (7.3)
	여자	59 (31.1)	11 (5.8)	14 (7.4)
학교관계	재학생	103 (25.6)	14 (3.5)	17 (4.2)
	학교 밖 청소년	50 (66.7)	8 (10.7)	18 (24.0)
학령별	초등학생	17 (13.4)	1 (0.8)	3 (2.4)
	중학생	56 (28.1)	10 (5.0)	11 (5.5)
	고등학생	30 (39.0)	3 (3.9)	3 (3.9)
위기수준	저	28 (12.6)	1 (0.5)	2 (0.9)
	중	74 (37.6)	13 (6.6)	13 (6.6)
	고	51 (86.4)	8 (13.6)	20 (33.9)
계		153 (32.0)	22 (4.6)	35 (7.3)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478명의 청소년에 대한 비율임.

전체 청소년 478명 중 32.0%가 가출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현재 가출 중인 경우는 4.6%였고 7.3%가 가출 시 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가출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기수준 고, 중, 저 순으로 가출경험, 현재 가출 중, 보호시설 이용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정환경 및 주거환경 특징 및 위기요인

다음은 위기청소년들의 가정환경, 가족구성원의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의 특징 및 위기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가정환경의 특징 및 위기요인

여기서는 가족환경의 특징을 부모와 관련된 특징과 가족의 특기사항, 부

모의 결혼상태, 가족경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20> 부모관련 특징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부모감독 결여	부모의 실직 상태	부모의 질병	부모 중 사별 경험	부모의 외도경험
성별	남자	154(53.5)	66(22.9)	56(19.4)	54(18.8)	23(8.0)
	여자	115(60.5)	40(21.1)	23(12.1)	29(15.3)	19(10.0)
학교 관계	재학생	225 (55.8)	91 (22.6)	70 (17.4)	67 (16.6)	36 (8.9)
	학교 밖 청소년	44 (58.7)	15 (20.0)	9 (12.0)	16 (21.3)	6 (8.0)
학령별	초등 학생	83 (65.4)	31 (24.4)	21 (16.5)	22 (17.3)	13 (10.2)
	중학생	112 (56.3)	49 (24.6)	32 (16.1)	33 (16.6)	19 (9.5)
	고등 학생	30 (39.0)	11 (14.3)	17 (22.1)	12 (15.6)	4 (5.2)
위기 수준	저	86 (38.7)	29 (13.1)	23 (10.4)	27 (12.2)	6 (2.7)
	중	137 (69.5)	59 (29.9)	41 (20.8)	43 (21.8)	21 (10.7)
	고	46 (78.0)	18 (30.5)	15 (25.4)	13 (22.0)	15 (25.4)
계		269 (56.3)	106 (22.2)	79 (16.5)	83 (17.4)	42 (8.8)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동반자의 지각이긴 하지만 부모의 감독결여 상태인 청소년이 전체의 56.3%에 달했다. 특히 위기수준 고 집단은 78.0%나 부모의 감독결여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분석되었다. 그런가 하면 전체의 22.2%가 부모의 실직상태를, 17.4%가 부모의 사별을, 그리고 16.5%가 부모의 질병을 경험했으며, 부모의 외도를 경험한 경우도 8.8%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애정, 지도, 감독상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시사한다.

<표 IV-21> 기타 가족적 특징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학교 중퇴 형제	재혼가족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음	조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족
성별	남자	10 (3.5)	31 (10.8)	98 (34.0)	28 (9.7)	10 (3.5)
	여자	8 (4.2)	26 (13.7)	63 (33.2)	20 (10.5)	3 (1.6)
학교 관계	재학생	14 (3.5)	40 (9.9)	129 (32.0)	45 (11.2)	9 (2.2)
	학교 밖 청소년	4 (5.3)	17 (22.7)	32 (42.7)	3 (4.0)	4 (5.3)
학령별	초등학생	3 (2.4)	11 (8.7)	45 (35.4)	18 (14.2)	3 (2.4)
	중학생	10 (5.0)	24 (12.1)	69 (34.7)	24 (12.1)	4 (2.0)
	고교생	1 (1.3)	5 (6.5)	15 (19.5)	3 (3.9)	2 (2.6)
위기 수준	저	1 (0.5)	6 (2.7)	55 (24.8)	21 (9.5)	2 (0.9)
	중	13 (6.6)	36 (18.3)	80 (40.6)	23 (11.7)	10 (5.1)
	고	4 (6.8)	15 (25.4)	26 (44.1)	4 (6.8)	1 (1.7)
계		18 (3.8)	57 (11.9)	161 (33.7)	48 (10.0)	13 (2.7)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9명에 대한 비율임.

본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체 청소년 중 33.7%의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매우 불안정한 가족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치이다. 그밖에도 재혼가족이 11.9%였으며 소년소녀 가족이 2.7%였다. 학교를 중퇴한 형제가 있는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한편 조부모가족은 10.0%로 나타났다. 이외에 고아원생활(2명), 새터민 가족(1명), 외국인 노동자 가족(1명), 입양아(1명)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표 IV-6>의 부모 결혼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 33.1%가 부모가 이혼한 가족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화인 경우 15.7%, 별거인 경우 7.3%로 불화, 이혼, 별거 등의 부모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79.1%에 달해서 부부관계문제가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좋은 관계로 언급된 경우도 20.3%로 나타났다. 참고로 언급없음이란 항목은 동반자와 청소년 간의 언급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무응답은 동반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가족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경우 29.1%가 안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59.6%가 빈곤한 상태로 답변을 했다. 언급없음은 이에 대해 다루어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무응답은 동반자의 답변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IV-22> 가족경제상황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안정	빈곤	언급 없음	무응답	계
성별	남자	84(29.2)	172(59.7)	27(9.4)	5(1.7)	288(100.0)
	여자	55(28.9)	113(59.5)	20(10.5)	2(1.1)	190(100.0)
학교 관계	재학생	119(29.5)	238(59.1)	40(9.9)	6(1.5)	403(100.0)
	학교 밖 청소년	20(26.7)	47(62.7)	7(9.3)	1(1.3)	75(100.0)
학령 별	초등학생	31(24.4)	86(67.7)	9(7.1)	1(0.8)	127(100.0)
	중학생	58(29.1)	116(58.3)	22(11.1)	3(1.5)	199(100.0)
	고등학생	30(39.0)	36(46.8)	9(11.7)	2(2.6)	77(100.0)
위기 수준	저	90(40.5)	99(44.6)	28(12.6)	5(2.3)	222(100.0)
	중	31(15.7)	147(74.6)	17(8.6)	2(1.0)	197(100.0)
	고	18(30.5)	39(66.1)	2(3.4)	0(0.0)	59(100.0)
계		139 (29.1)	285 (59.6)	47 (9.8)	7 (1.5)	478 (100.0)

(2) 가족구성원 관련 위기요인

다음은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위기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우선 가족원간의 신체적 폭력과 폭언, 욕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V-23>와 같다.

<표 IV-23>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과 폭언, 욕설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가족원간의 폭언, 욕설		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별	남자	194 (67.4)	94 (32.6)	168 (58.3)	120 (41.7)	288 (100.0)
	여자	118 (62.1)	72 (37.9)	107 (56.3)	83 (43.7)	190 (100.0)
학교 관계	재학생	265 (65.8)	138 (34.2)	233 (57.8)	170 (42.2)	403 (100.0)
	학교 밖 청소년	47 (62.7)	28 (37.3)	42 (56.0)	33 (44.0)	75 (100.0)
	학령별					
	초등학생	85 (66.9)	42 (33.1)	73 (57.5)	54 (42.5)	127 (100.0)
	중학생	125 (62.8)	74 (37.2)	114 (57.3)	85 (42.7)	199 (100.0)
	고등학생	55 (71.4)	22 (28.6)	46 (59.7)	31 (40.3)	77 (100.0)
위기 수준	저	183 (82.4)	39 (17.6)	176 (79.3)	46 (20.7)	222 (100.0)
	중	118 (59.9)	79 (40.1)	93 (47.2)	104 (52.8)	197 (100.0)
	고	11 (18.6)	48 (81.4)	6 (10.2)	53 (89.8)	59 (100.0)
계		312 (65.3)	166 (34.7)	275 (57.5)	203 (42.5)	478 (100.0)

전체 청소년 중 34.7%의 청소년에게서 가족원간의 신체적 폭력이 나타났으며, 42.5%의 청소년에게서 가족원간 폭언과 욕설이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신체적 폭력 및 폭언과 욕설 두 항목 모두에서 위기수준이 높아지면

서 비율이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및 폭언, 욕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부표 IV-7>, <부표 IV-8> 과 같다.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것은 부모와 청소년간의 신체적 폭력으로,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66명의 35.5%에게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 간 폭력이 18.1%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60.7%에게서 부모와 청소년 간 신체적 폭력이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중복응답결과를 보였다. 가족원간 폭언과 욕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203명중 47.3%가 부모와 청소년 간에 있는 일로, 23.6%가 부모간 있는 일로, 그리고 14.8%는 청소년과 형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간의 폭언, 욕설은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생, 위기수준 고집단에서 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폭언과 욕설의 대상으로 청소년과 부모사이 가 많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청소년들로부터 수집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표 IV-24> 가족원 범법자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없다	있다	계
성별	남자	276 (95.8)	12 (4.2)	288 (100.0)
	여자	181 (95.3)	9 (4.7)	190 (100.0)
학교관계	재학생	384 (95.3)	19 (4.7)	403 (100.0)
	학교 밖 청소년	73 (97.3)	2 (2.7)	75 (100.0)
학령별	초등학생	121 (95.3)	6 (4.7)	127 (100.0)
	중학생	190 (95.5)	9 (4.5)	199 (100.0)
	고등학생	73 (94.8)	4 (5.2)	77 (100.0)
위기수준	저	219 (98.6)	3 (1.4)	222 (100.0)
	중	187 (94.9)	10 (5.1)	197 (100.0)
	고	51 (86.4)	8 (13.6)	59 (100.0)
계		457 (95.6)	21 (4.4)	478 (100.0)

가족원 중 범법자유무 항목에 대해서 전체의 4.4%가 있다고 답했으며 위기수준 고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3) 주거 환경의 특징 및 위기요인

위기청소년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지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V-25>, <표 IV-26>과 같다.

<표 IV-25> 주거환경 특징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안정된 편	혼자 쓰는 방 있음	비위생적이거나 협소함	기타
성별	남자	129(44.8)	96(33.3)	108(37.5)	19(6.6)
	여자	70(36.8)	56(29.5)	72(37.9)	15(7.9)
학교 관계	재학생	17 (44.2)	127(31.5)	146(36.2)	27(6.7)
	학교 밖 청소년	21(28.0)	25(33.3)	34(45.3)	7(9.3)
학 령 별	초등학생	60(47.2)	26(20.5)	47(37.0)	7(5.5)
	중학생	82(41.2)	67(33.7)	82(41.2)	12(6.0)
	고등학생	36(46.8)	34(44.2)	17(22.1)	8(10.4)
위기 수준	저	124(55.9)	79(35.6)	50(22.5)	18(8.1)
	중	58(29.4)	53(26.9)	98(49.7)	11(5.6)
	고	17(28.8)	20(33.9)	32(54.2)	5(8.5)
계		199(41.6)	152(31.8)	180(37.7)	34(7.1)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전체 위기청소년 중 41.6%는 주거환경이 안정된 편으로, 31.8%는 혼자 쓰는 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7.7%는 위생적이거나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의견에는 친척집(10명), 떠돌이 생활(5명), 친구자취방(2명)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 IV-26> 주거지역 특징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주택가	유해환경 지역	빈곤지역	떠돌이 생활	기타	무응답	계
성별	남자	210 (72.9)	10 (3.5)	55 (19.1)	3 (1.0)	3 (1.0)	7 (2.4)	288 (100.0)
	여자	142 (74.7)	3 (1.6)	34 (17.9)	3 (1.6)	1 (0.5)	7 (3.7)	190 (100.0)
학교 관계	재학생	303 (75.2)	9 (2.2)	73 (18.1)	2 (0.5)	3 (0.7)	13 (3.2)	403 (100.0)
	학교 밖 청소년	49 (65.3)	4 (5.3)	16 (21.3)	4 (5.3)	1 (1.3)	1 (1.3)	75 (100.0)
학령 별	초등학생	93 (73.2)	4 (3.1)	25 (19.7)	0 (0.0)	1 (0.8)	4 (3.1)	127 (100.0)
	중학생	146 (73.4)	5 (2.5)	40 (20.1)	0 (0.0)	2 (1.0)	6 (3.0)	199 (100.0)
	고등학생	64 (83.1)	0 (0.0)	8 (10.4)	2 (2.6)	0 (0.0)	3 (3.9)	77 (100.0)
위기 수준	저	188 (84.7)	2 (0.9)	21 (9.5)	3 (1.4)	0 (0.0)	8 (3.6)	222 (100.0)
	중	130 (66.0)	8 (4.1)	50 (25.4)	1 (0.5)	3 (1.5)	5 (2.5)	197 (100.0)
	고	34 (57.6)	3 (5.1)	18 (30.5)	2 (3.4)	1 (1.7)	1 (1.7)	59 (100.0)
계		352 (73.6)	13 (2.7)	89 (18.6)	6 (1.3)	4 (0.8)	14 (2.9)	478 (100.0)

전체 위기청소년들의 73.6%는 평범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가 빈곤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명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유기술로 표시되어 있었다. <표 IV-25>, <표 IV-26>의 기타응답 종합해 보면 주거환경이 일정치 않은 위기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위기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

현재는 이들이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이라 해도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며, 보호요인이 그중의 한 가지가 되어 여러 가지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보호요인 중 몇 가지 개인적 특성, 태도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항목에 대해 청소년동반자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조사는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동반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항목만 선정하여 포함하였다.

우선 보호요인 중 개인의 성격 및 태도에 대한 결과는 <부표 IV-9>와 같다.

전체 위기청소년의 54.6%가 목표의식이 있고 40.0%가 낙천적인 성격이며 39.3%가 변화동기를 갖고 있으며, 33.1%는 책임의식이 있으며, 24.7%는 유머감각이, 그리고 23.2%는 자기통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적극대처(13.2%), 사회적 유능감(18.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스트레스 적극대처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기수준 고 집단에서 책임의식(16.9%), 자기통제성(5.1%),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10.2%) 등의 특징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은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27>와 같다.

<표 IV-27> 보호요인-목표의식 있음의 구체적인 내용(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진학욕구	취업욕구	자격증 취득욕구
성별	남자	116(40.3)	66(22.9)	37(12.8)
	여자	101(53.2)	47(24.7)	24(12.6)
학교 관계	재학생	174(43.2)	80(19.9)	44(10.9)
	학교 밖 청소년	43(57.3)	33(44.0)	17(22.7)
학령별	초등학생	37(29.1)	3(2.4)	0(0.0)
	중학생	107(53.8)	50(25.1)	27(13.6)
	고등학생	30(39.0)	27(35.1)	17(22.1)
위기수준	저	99(44.6)	40(18.0)	24(10.8)
	중	95(48.2)	48(24.4)	25(12.7)
	고	23(39.0)	25(42.4)	12(20.3)
계		217(45.4)	113(23.6)	61(12.8)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위기청소년 중 45.4%는 진학욕구를, 23.6%는 취업욕구를, 그리고 12.8%는 자격증 취득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57.3%가 진학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외에 기타항목으로 사교적이라는 사례수가 3명 있었다.

<표 IV-28> 보호요인 : 타인 혹은 환경요인(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부모의 정서적 지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경제적 여유	도움을 주는 교사	도움을 주는 친구	기타
성별	남자	137 (47.6)	95 (33.0)	56 (19.4)	131 (45.5)	74 (25.7)	22 (7.6)
	여자	76 (40.0)	58 (30.5)	34 (17.9)	86 (45.3)	71 (37.4)	12 (6.3)
학교 관계	재학생	184 (45.7)	141 (35.0)	77 (19.1)	198 (49.1)	126 (31.3)	28 (6.9)
	학교 밖 청소년	29 (38.7)	12 (16.0)	13 (17.3)	19 (25.3)	19 (25.3)	6 (8.0)
학령별	초등학생	57 (44.9)	50 (39.4)	20 (15.7)	68 (53.5)	40 (31.5)	7 (5.5)
	중학생	86 (43.2)	65 (32.7)	36 (18.1)	101 (50.8)	65 (32.7)	14 (7.0)
	고등학생	41 (53.2)	26 (33.8)	21 (27.3)	29 (37.7)	21 (27.3)	7 (9.1)
위기 수준	저	122 (55.0)	96 (43.2)	55 (24.8)	102 (45.9)	68 (30.6)	12 (5.4)
	중	72 (36.5)	41 (20.8)	22 (11.2)	95 (48.2)	62 (31.5)	12 (6.1)
	고	19 (32.2)	16 (27.1)	13 (22.0)	20 (33.9)	15 (25.4)	10 (16.9)
계		213 (44.6)	153 (32.0)	90 (18.8)	217 (45.4)	145 (30.3)	34 (7.1)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전체 위기청소년 중 45.4%가 도움을 주는 교사가 있고, 44.6%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32.0%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

를 받고, 30,3%가 도움을 주는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적보호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여유는 18.8%로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IV-22>의 가정경제상황에서도 빈곤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청소년의 59.6%인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4.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보호 요인의 차이

청소년의 특징 즉 성별(남, 여), 학교관계(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령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위기수준(고, 중, 저) 등의 특징에 따라 각 영역별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별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다음 이들 특징에 따른 차이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1) 위기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요인 수준 차이

###### (1) 각 영역별 위기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질문지에 포함된 각 영역별 위기요인 내용 및 요인 수는 <표 IV-5>에 제시한 바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위기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IV-28>과 같다.

<표 IV-29> 각 영역 별 위기 요인 평균 및 표준 편차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점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n=288	2.14	1.56	0.69	0.76	5.35	3.90	3.65	2.42	0.61	0.76	12.44	6.56
	여자 n=190	2.04	1.49	0.72	0.83	4.86	3.92	3.72	2.21	0.59	0.77	11.93	6.41
학교관계	재학생 n=403	2.30	1.59	0.62	0.76	4.63	3.46	3.63	2.32	0.57	0.75	11.75	6.24
	학교 밖 청소년 n=75	1.00	0.00	1.13	0.81	7.99	4.88	3.93	2.46	0.79	0.79	14.84	7.24
학령별	초등학생 n=127	1.89	1.40	0.31	0.57	3.33	2.48	3.90	2.18	0.61	0.78	10.04	5.02
	중학생 n=199	2.49	1.62	0.70	0.78	5.08	3.77	3.73	2.40	0.64	0.77	12.64	6.81
	고등학생 n=77	2.48	1.67	0.91	0.81	5.62	3.43	2.92	2.20	0.35	0.64	12.29	6.01
위기수준	저 n=222	1.33	1.00	0.30	0.51	2.54	1.72	2.32	1.83	0.34	0.60	6.82	2.47
	중 n=197	2.55	1.42	0.85	0.79	5.87	2.42	4.56	2.05	0.80	0.81	14.63	2.71
	고 n=59	3.46	1.94	1.69	0.56	12.6	3.06	5.86	1.86	0.95	0.84	24.63	3.39

(2)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agy요인 차이

각 특징에 따른 위agy요인의 차이검증 결과와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0> 성별에 따른 영역별 위기 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학교위기	남	2.14	1.56	.69
	여	2.04	1.49	
친구위기	남	0.69	0.76	-.38
	여	0.72	0.83	
개인위기	남	5.35	3.90	1.35
	여	4.86	3.92	
가족위기	남	3.65	2.42	-.33
	여	3.72	2.21	
주거위기	남	0.61	0.76	.28
	여	0.59	0.77	
위기총점수	남	12.44	6.56	.84
	여	11.93	6.41	

학교위기( $t(476)=.69, ns$ ), 친구위기( $t(476)=-.38, ns$ ), 개인위기( $t(476)=1.35, ns$ ), 가족위기( $t(476)=-.33, ns$ ), 주거위기( $t(476)=.28, ns$ ) 각 영역 위기점수와 위기 총 점수( $t(476)=.84, ns$ )에서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관련 신분에 따른 각 영역별 위기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31>와 같다.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가 현재의 생활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위기 영역에 대한 차이분석은 제외하였다.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위기를 제외한 친구위기(재학생  $M=0.62$ , 학교 밖 청소년  $M=1.13$ ,  $t(476)=-5.35, p<.001$ ), 개인위기(재학생  $M=4.63$ , 학교 밖 청소년  $M=7.99$ ,  $t(476)=-7.17, p<.001$ ), 주거위기(재학생  $M=0.57$ , 학교 밖 청소년  $M=0.79$ ,  $t(476)=-2.23, p<.05$ ), 위기 총 점수(재학생  $M=11.75$ , 학교 밖 청소년  $M=14.84$ ,  $t(476)=-3.83, p<.001$ )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각 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보다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학교관련 신분에 따른 영역별 위기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친구위기	재학생	0.62	0.76	-5.35***
	학교 밖 청소년	1.13	0.81	
개인위기	재학생	4.63	3.46	-7.17***
	학교 밖 청소년	7.99	4.88	
가족위기	재학생	3.63	2.32	-1.03
	학교 밖 청소년	3.93	2.46	
주거위기	재학생	0.57	0.75	-2.23*
	학교 밖 청소년	0.79	0.79	
위기총점수	재학생	11.75	6.24	-3.83***
	학교 밖 청소년	14.84	7.24	

\* $p < .05$ , \*\* $p < .01$ , \*\*\* $p < .001$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학령에 따른 영역별 위기요인 점수 차이는 <표 IV-32>과 같다.

<표 IV-32> 학령에 따른 영역별 위기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검증
학교위기	초등학생	1.89	1.40	6.38**	초<중,고
	중학생	2.49	1.62		
	고등학생	2.48	1.67		
친구위기	초등학생	0.31	0.57	18.40***	초<중,고
	중학생	0.70	0.78		
	고등학생	0.91	0.81		
개인위기	초등학생	3.33	2.48	14.76***	초<중,고
	중학생	5.08	3.77		
	고등학생	5.62	3.43		
가족위기	초등학생	3.90	2.18	4.73**	고<초, 중
	중학생	3.73	2.40		
	고등학생	2.92	2.20		
주거위기	초등학생	0.61	0.78	4.28*	고<중
	중학생	0.64	0.77		
	고등학생	0.35	0.64		
위기총점수	초등학생	10.04	5.02	7.31**	초<중,고
	중학생	12.64	6.81		
	고등학생	12.29	6.01		

\* $p < .05$ , \*\* $p < .01$ , \*\*\* $p < .001$

초등, 중등, 고등학생은 학령에 따라 학교위기( $F_{(2,400)}=6.38, p<.01$ ), 친구위기( $F_{(2,400)}=18.40, p<.001$ ), 개인위기( $F_{(2,400)}=14.76, p<.001$ ), 가족위기( $F_{(2,400)}=4.73, p<.01$ ), 주거위기( $F_{(2,400)}=4.28, p<.05$ ), 위기 총 점수( $F_{(2,400)}=7.31, p<.01$ )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차이검증 결과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총 위기점수에서는 중, 고생이 초등학생보다 점수가 높고 가족위기에서는 초등,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주거위기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위기수준별 집단구분에 따라 각 영역별 위기요인 점수 차이를 살펴해보았는데 여기서는 각 위기영역점수 중 위기 총 점수는 제외하였다.

<표 IV-33> 위기수준집단구분에 따른 영역별 위기요인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검증
학교위기	위기 저집단	1.33	1.00	79.87***	저<중<고
	위기 중집단	2.55	1.42		
	위기 고집단	3.46	1.94		
친구위기	위기 저집단	0.30	0.51	117.01***	저<중<고
	위기 중집단	0.85	0.79		
	위기 고집단	1.69	0.56		
개인위기	위기 저집단	2.54	1.72	501.45***	저<중<고
	위기 중집단	5.87	2.42		
	위기 고집단	12.66	3.06		
가족위기	위기 저집단	2.32	1.83	114.20***	저<중<고
	위기 중집단	4.56	2.05		
	위기 고집단	5.86	1.86		
주거위기	위기 저집단	0.34	0.60	28.67***	저<중, 고
	위기 중집단	0.80	0.81		
	위기 고집단	0.95	0.84		

\* $p<.05$ , \*\* $p<.01$ , \*\*\* $p<.001$

결과는 위기 고, 중, 저 위기수준에 따라 학교위기( $F_{(2,475)}=79.87, ***p<.001$ ), 친구위기( $F_{(2,475)}=117.01, p<.001$ ), 개인위기( $F_{(2,475)}=501.45, p<.001$ ), 가족위기( $F_{(2,475)}=114.20, p<.001$ ), 주거위기

( $F_{(2,475)}=28.67, p<.001$ )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영역에서는 고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그리고 중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높은 위기점수를 나타내고 주거위기에서는 중, 고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2) 위기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보호요인 수준 차이

### (1) 각 영역별 보호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질문지에 포함된 보호요인의 내용 및 요인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4> 보호요인 내용 및 요인 수, 평균, 표준편차

N=478

보호영역구분	세부내용	요인 수	평균	표준 편차
보호-개인요인	- 보호요인-개인의 성격 및 태도 : 낙천적인 성격, 유머감각, 책임의식, 변화 동기, 자기 통제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사회적 유능감, 학업 등 성취영역에서의 성공경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 기타 - 목표의식 있음	11	3.27	2.82
보호-환경요인	- 부모의 정서적 지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경제적 여유, 도움을 주는 교사, 도움을 주는 친구, 기타	6	1.77	1.31
보호-기타	- 성적요인: 높거나 중간정도의 성적 혹은 성적 위기요인 없음 - 친구요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움 줄 동성친구가 있거나 친구위기요인이 없음 - 부모 결혼상태: 부부사이가 좋은 관계이거나 부모 결혼 상태관련 위기요인이 없음 - 가족경제: 가족경제가 안정되어 있거나 빈곤에 대한 응답 없음 - 주거환경: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있거나 혼자 쓰는 방이 있음. 주거환경위기요인이 없음 - 주거지역: 주택가에 살고 있고, 이 영역에서의 위기 요인 없음.	6	5.04	3.57
보호요인 총수		23	7.43	4.48

(2)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보호요인 차이

각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보호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특징별 보호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표 IV-35> 각 영역별 보호요인 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세부항목	보호-개인		보호-환경		보호-기타		보호요인 총 점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n=288	2.87	2.55	1.79	1.32	2.40	1.63	7.06	4.26
	여자 n=190	3.20	2.45	1.77	1.30	2.39	1.53	7.36	4.17
학교관계	재학생 n=403	3.00	2.54	1.87	1.32	2.49	1.57	7.37	4.23
	학교 밖 청소년 n=75	3.00	2.38	1.31	1.11	1.85	1.57	6.16	4.06
학령별	초등학생 n=127	2.64	2.37	1.91	1.27	2.39	1.49	6.94	3.96
	중학생 n=199	3.14	2.54	1.84	1.31	2.45	1.57	7.43	4.25
	고등학생 n=77	3.25	2.75	1.88	1.46	2.78	1.71	7.91	4.59
위기수준	저 n=222	3.25	2.64	2.05	1.32	3.01	1.54	8.31	4.22
	중 n=197	2.81	2.42	1.54	1.26	1.90	1.37	6.25	3.94
	고 n=59	2.71	2.25	1.58	1.25	1.73	1.65	6.02	4.19

성별, 학교관계별, 학령별, 위기수준 등 각 특징에 따른 보호요인의 차이 검증 결과와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6> 성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보호-개인	남	2.87	2.55	-1.40
	여	3.20	2.45	
보호-환경	남	1.79	1.32	.12
	여	1.77	1.30	
보호-기타	남	2.40	1.63	.04
	여	2.39	1.53	
보호요인 총 점수	남	7.06	4.26	-.78
	여	7.36	4.17	

보호-개인 ( $t_{(476)} = -1.40, ns$ ), 보호-환경 ( $t_{(476)} = .12, ns$ ), 보호-기타 ( $t_{(476)} = .04, ns$ ), 보호요인 총 점수 ( $t_{(476)} = -.78, ns$ ) 등 보호요인 점수에서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7> 학교관계 신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보호-개인	재학생	3.00	2.54	.01
	학교 밖 청소년	3.00	2.38	
보호-환경	재학생	1.87	1.32	3.47**
	학교 밖 청소년	1.31	1.11	
보호-기타	재학생	2.49	1.57	3.23**
	학교 밖 청소년	1.85	1.57	
보호요인 총 점수	재학생	7.37	4.23	2.28*
	학교 밖 청소년	6.16	4.06	

\* $p < .05$ , \*\* $p < .01$ , \*\*\* $p < .001$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요인 영역 중 보호-개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재학생  $M=3.00$ , 학교 밖 청소년  $M=3.00$ ,  $t_{(476)}=01, ns$ ), 그러나 보호-환경(재학생  $M=1.87$ , 학교 밖 청소년  $M=1.13$ ,  $t_{(476)}=3.47, p<.01$ )에서, 보호-기타(재학생  $M=2.49$ , 학교 밖 청소년  $M=1.85$ ,  $t_{(476)}=3.23, p<.01$ )에서, 그리고 보호요인 총 점수(재학생  $M=7.37$ , 학교 밖 청소년  $M=6.16$ ,  $t_{(476)}=2.28, p<.05$ ) 등에서는 재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보다 보호요인점수가 의미 있는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8> 학령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보호-개인	초등학생	2.64	2.37	1.97
	중학생	3.14	2.54	
	고등학생	3.25	2.75	
보호-환경	초등학생	1.91	1.27	.09
	중학생	1.84	1.31	
	고등학생	1.88	1.46	
보호-기타	초등학생	2.39	1.49	1.61
	중학생	2.45	1.57	
	고등학생	2.78	1.71	
보호요인 총 점수	초등학생	6.94	3.96	1.31
	중학생	7.43	4.25	
	고등학생	7.91	4.59	

\* $p<.05$ , \*\* $p<.01$ , \*\*\* $p<.001$

학령에 따라서는 보호-개인( $F_{(2,400)}=1.97, ns$ ), 보호-환경( $F_{(2,400)}=.09, ns$ ), 보호-기타( $F_{(2,400)}=1.61, ns$ ), 보호요인 총 점수 등 전체 보호요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9> 위기수준집단구분에 따른 영역별 보호요인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검증
보호-개인	위기 저집단	3.25	2.64	2.03	-
	위기 중집단	2.81	2.42		
	위기 고집단	2.71	2.25		
보호-환경	위기 저집단	2.05	1.32	8.93***	중, 고<저
	위기 중집단	1.54	1.26		
	위기 고집단	1.58	1.25		
보호-기타	위기 저집단	3.01	1.54	35.92***	중, 고<저
	위기 중집단	1.90	1.37		
	위기 고집단	1.73	1.65		
보호요인 총 점수	위기 저집단	8.31	4.22	15.77***	중, 고<저
	위기 중집단	6.25	3.94		
	위기 고집단	6.02	4.19		

\* $p<.05$ , \*\* $p<.01$ , \*\*\* $p<.001$

위기수준 저, 중, 고 집단 별 보호요인 각 영역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보호-개인 영역에서는 위기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F_{(2,475)}=2.03, ns$ ). 그러나 보호-환경 ( $F_{(2,475)}=8.93, p<.001$ ), 보호-기타 ( $F_{(2,475)}=35.92, p<.001$ ), 보호요인 총 점수 ( $F_{(2,475)}=15.77, p<.001$ )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각각의 영역에서 위기 저집단이 중, 고집단에 비해 보호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간 보호요인은 차이가 없으나 환경이나 기타의 보호요인이 이들의 위기수준을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5.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

여기서는 각 지역별, 권역별로 위기요인, 보호요인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

년들의 특징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 B, C, D, E,F,G 5개 지역과 이 지역의 특성을 대도시(A, B), 중소도시(C, D), 농어촌(E,F,G-실제는 3개 지역)의 권역별로 나누어 이를 독립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 권역별 위기청소년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여기서는 권역별 차이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것이다.

### 1)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개입상태

본 조사 대상이 된 위기청소년 중 대도시 청소년은 188명(남 112명, 여 176명)으로 전체의 39.3%이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201명(남 130명, 여 71명)으로 42.1%,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은 89명(남 46명, 여 43명)으로 18.6% 였다. 각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표 IV-40>과 같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특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지역 간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단위: 빈도(%)

구분	세부내용	성별			학교관계			학력			
		남	여	계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지역	A	50 (56.2)	39 (43.8)	89 (100.0)	75 (84.3)	14 (15.7)	89 (100.0)	22 (29.3)	42 (56.0)	11 (14.7)	89 (100.0)
	B	62 (62.6)	37 (37.4)	99 (100.0)	77 (77.8)	22 (22.2)	99 (100.0)	28 (36.4)	37 (48.1)	12 (15.6)	99 (100.0)
	C	61 (58.7)	43 (41.3)	104 (100.0)	89 (85.6)	15 (14.4)	104 (100.0)	31 (34.8)	31 (34.8)	27 (30.3)	104 (100.0)
	D	69 (71.1)	28 (28.9)	97 (100.0)	73 (75.3)	24 (24.7)	97 (100.0)	14 (19.2)	37 (50.7)	22 (30.1)	97 (100.0)
	E,F,G	46 (51.7)	43 (48.3)	89 (100.0)	89 (100.0)	0 (0.0)	89 (100.0)	32 (36.0)	52 (58.4)	5 (5.6)	89 (100.0)

<표 IV-41>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단위: 빈도(%)

구분	세부 내용	성별			학교관계			학령			
		남	여	계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권역별	대도시	112 (59.6)	76 (40.4)	188 (100.0)	152 (80.9)	36 (19.1)	188 (100.0)	50 (32.9)	79 (52.0)	23 (15.1)	188 (100.0)
	중소도시	130 (64.7)	71 (35.3)	201 (100.0)	162 (80.6)	39 (19.4)	201 (100.0)	45 (27.8)	68 (42.0)	49 (30.2)	201 (100.0)
	농어촌	46 (51.7)	43 (48.3)	89 (100.0)	89 (100.0)	0 (0.0)	89 (100.0)	32 (36.0)	52 (58.4)	5 (5.6)	89 (100.0)

<부표 IV-10>을 통해 각 권역별로 위기청소년 의뢰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대도시의 경우 학교(33.0%),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16.5%), 청소년기관(11.2%), 종교기관(8.5%), 사법기관(6.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학교(26.9%), 사법기관(14.4%), 경찰서(11.4%), 상담센터(10.8%), 부모(9.5%) 순이었고, 농어촌은 청소년기관(32.6%),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27.0%), 학교(21.3%), 상담센터(4.5%), 부모(4.5%) 순을 나타냈다. 이는 각 권역별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제상의 차이나 각 지역 내 연계활동의 성격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는 학교와 연계를 활발히 갖고 있는가 하면 농어촌은 청소년기관이 중요한 접촉창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소도시는 사법기관, 경찰서 등과 연계를 갖고 사법적인 문제와 연루된 청소년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개입상태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개입초기	개입 중	계획된종결	조기종결	기타	계
지역별	A	0 (0.0)	65 (73.0)	11 (12.4)	13 (14.6)	0 (0.0)	89 (100.0)
	B	0 (0.0)	48 (48.5)	40 (40.4)	10 (10.1)	1 (1.0)	99 (100.0)
	C	6 (5.8)	47 (45.2)	25 (24.0)	24 (23.1)	2 (1.9)	104 (100.0)
	D	7 (7.2)	16 (16.5)	20 (20.6)	46 (47.4)	8 (8.2)	97 (100.0)
	E,F,G	7 (7.9)	64 (71.9)	10 (11.2)	8 (9.0)	0 (0.0)	89 (100.0)
권역별	대도시	0 (0.0)	113 (60.1)	51 (27.1)	23 (12.2)	1 (0.5)	188 (100.0)
	중소도시	13 (6.5)	63 (31.3)	45 (22.4)	70 (34.8)	10 (5.0)	201 (100.0)
	농어촌	7 (7.9)	64 (71.9)	10 (11.2)	8 (9.0)	0 (0.0)	89 (100.0)
계		20 (4.2)	240 (50.2)	106 (22.2)	101 (21.1)	11 (2.3)	478 (100.0)

대도시의 경우 본 조사 대상이 된 청소년은 개입 중(60.1%)이거나 계획된 종결 사례(27.1%)가 대부분이었으며 조기 종결 비율은 12.2% 정도였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는 개입중인 경우 31.3%, 계획된 종결 22.4%였고, 조기 종결 비율이 34.8에 이르렀다. 중소도시 중 D시는 조기종결이 47.4%로 이들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속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소도시의 경우 사법기관에 인지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어촌은 71.9%가 현재 개입 중인 청소년이고 11.2%가 조기 종결된 경우였다.

## 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 차이

다음은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위기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즉 각 지역별, 권역별로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3> 지역별 학교위기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지역	A	2.28	1.57	1.93
	B	1.86	1.54	
	C	2.05	1.57	
	D	1.96	1.41	
	E,F,G	2.38	1.53	
권역	대도시	2.06	1.56	1.97
	중소도시	2.00	1.49	
	농어촌	2.38	1.53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위기 영역에서는 지역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F_{(4,437)}=1.93, ns$ ), 권역별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F_{(2,475)}=1.97, ns$ ).

<표 IV-44> 지역별 친구위기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검증
지역	A	0.84	0.88	4.59**	E,F,G<A, B
	B	0.83	0.80		
	C	0.76	0.77		
	D	0.62	0.74		
	E,F,G	0.43	0.69		
권역	대도시	0.84	0.83	8.36***	농어촌<대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0.69	0.76		
	농어촌	0.43	0.69		

\* $p < .05$ , \*\* $p < .01$ , \*\*\* $p < .001$

친구위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F_{(4,437)}=4.59, p<.001$ ), 권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F_{(2,475)}=8.36, p<.001$ ).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A, B지역이 농어촌 지역인 E,F,G에 비해 친구위기수준이 큰 것으로 그리고 권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친구위기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지역별 개인위기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검증
지역	A	6.12	4.71	3.82**	D<A
	B	5.60	4.27		
	C	5.37	3.78		
	D	4.33	2.69		
	E,F,G	4.37	3.64		
권역	대도시	5.85	4.48	5.37**	중소도시, 농어촌<대도시
	중소도시	4.87	3.33		
	농어촌	4.37	3.64		

\* $p<.05$ , \*\* $p<.01$ , \*\*\* $p<.001$

개인위기는 지역별( $F_{(4,437)}=3.82, p<.01$ ), 권역별( $F_{(2,475)}=5.37, p<.01$ )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A가 중소도시인 D에 비해, 권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개인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개인위기가 크고, D와 같이 지역 크기와 무관하게 개인위기가 작은 곳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6> 지역별 가족위기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검증
지역	A	4.20	2.18	14.41***	D<A,B,C,E,F,G E,F,G<B,C
	B	3.67	2.42		
	C	3.53	2.37		
	D	2.40	2.20		
	E,F,G	4.73	1.82		
권역	대도시	3.92	2.32	20.38***	중소도시<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	2.99	2.35		
	농어촌	4.73	1.82		

\* $p<.05$ , \*\* $p<.01$ , \*\*\* $p<.001$

가족위기수준 역시 지역별( $F_{(4,437)}=14.41$ ,  $p<.001$ ), 권역별( $F_{(2,475)}=20.38$ ,  $p<.001$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인 D시가 대도시 A, B, 그리고 중소도시인 C, 농어촌 지역 E,F,G에 비해 가족위기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역별로는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가족위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어촌 지역의 가족위기수준이 심각하고, 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같은 권역 내에서도 D시와 같이 차별화가 되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7> 지역별 주거위기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 검증
지역	A	0.60	0.73	4.25**	B<E,F,G
	B	0.42	0.64		
	C	0.51	0.72		
	D	0.70	0.84		
	E,F,G	0.83	0.82		
권역	대도시	0.51	0.69	5.63**	대도시<농어촌
	중소도시	0.60	0.79		
	농어촌	0.83	0.82		

\* $p<.05$ , \*\* $p<.01$ , \*\*\* $p<.001$

지역별주거위기 역시 지역별( $F_{(4,437)}=4.25, p<.01$ ), 권역별( $F_{(2,475)}=5.63, p<.01$ )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역별차이 검증에서 E,F,G시와 B시 간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어촌의 주거환경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V-48> 지역별 위기 총 점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검증
지역	A	14.04	7.04	4.87**	D<A
	B	12.37	7.18		
	C	12.21	6.17		
	D	10.01	5.30		
	E,F,G	12.74	6.12		
권역	대도시	13.16	7.15	5.09**	중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11.15	5.86		
	농어촌	12.74	6.12		

\* $p<.05$ , \*\* $p<.01$ , \*\*\* $p<.001$

위기 총 점수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F_{(4,437)}=4.87, p<.01$ ), 이러한 차이는 A와 D간의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역별 차이가 나타났고( $F_{(2,475)}=5.09, p<.01$ )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 6.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기대와 지원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종결된 사례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한 지원과 실제 제공된 지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못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위기청소년들의 욕구와 실제 지원현황,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개발되고 보충되어야 할 지원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 위기청소년특징 별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청소년동반자들이 각 조사대상 위기청소년들이 기대한 지원항목이라고 답한 결과는 <부표 IV-11>와 같다.

우선 전체 청소년들이 기대한 지원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① 개인상담(63.6%)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8.9%) ③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23.2%) ④ 심리검사(23.0%)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1%) ⑤ 관람기회제공(15.1%) ⑦ 친구들과의 면담(13.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조사지에서 구분한 지원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심리상담 영역이 응답 수 545회로 가장 많고 교육지원이 응답 수 159회로 두 번째로 많으며, 문화, 활동지원(150회), 가정지원(138회), 경제적 지원(132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청소년들의 특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남자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66.3%)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7.4%) ③ 심리검사(21.9%)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1.5%)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6%) ⑥ 관람기회제공(13.9%)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3.5%) 등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59.5%)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31.1%)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5.8%) ④ 심리검사(24.7%) ⑤ 친구들과의 면담(17.9%) ⑥ 관람기회제공(16.8%)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4.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관계별 특징, 즉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따라 그 순위를 구분해 보면 우선 재학생들은 ① 개인상담(60.5%)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8.5%)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5.3%) ④ 심리검사(20.3%)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4%) ⑥ 관람기회제공(14.9%)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13.4%) 순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80.0%) ② 심리검사(37.3%) ③ 부모교육 부모상담(30.7%) ④ 검정고시지원(26.7%) ⑤ 진학지원(25.3%) ⑥ 취업알선(25.3%) ⑦ 취업정보제공(24.0%)순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이 특히 검정고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관계된 지원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① 개인상담(61.4%)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7.0%) ③ 부모교육 부모상담(30.7%) ④ 집단상담(17.3%) ⑤ 심리검사(16.5%) ⑥ 친구들과의 면담(16.5%)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6.5%)순으로, 중학생은 ① 개인상담(62.8%)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9.6%)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5.6%) ④ 심리검사(24.6%) ⑤ 관람기회제공(16.6%) ⑥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1%)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4.6%)순으로, 고등학생은 ① 개인상담(53.2%)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2.1%) ③ 심리검사(15.6%) ④ 취업정보제공(15.6%)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4.3%)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1.7%) ⑦ 관람기회제공(11.7%)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수준 별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위기 저 집단의 경우 ① 개인상담(59.9%)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5.7%) ③ 부모교육 부모상담(25.7%) ④ 심리검사(18.0%) ⑤ 관람기회제공(12.6%) ⑥ 친구들과의 면담(11.3%)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지원(10.4%)순으로, 중 집단은 ① 개인상담(64.0%)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27.4%)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4.9%) ④ 심리검사(22.3%)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8.8%)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6.8%) ⑦ 관람기회제공(15.2%)순으로, 그리고 고 집단은 ① 개인상담(76.3%)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45.8%) ③ 심리검사(44.1%) ④ 친구들과의 면담(30.5%) ⑤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23.7%) ⑥ 관람기회제공(23.7%)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0.3%) ⑧ 취업정보제공(20.3%) 나타났다. 고 집단에서는 교육지원 항목이 순위에서 밀려났으며 대신 취업알선 항목 중 취업정보제공이 순위에 들어온 것에서 차이가 났다.

앞에서 살펴본 전체적인 경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 검정고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관계된 지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위기 고 집단에서는 교육지원항목이 순위에서 벗어난 점 등이 눈에 띄이는 결과였다.

위기청소년특징별로 실제 지원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이다.

<부표 IV-12>를 보면 우선 전체 청소년들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① 개인 상담(85.6%)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49.8%) ③ 심리검사(45.2%) ④ 방과 후 개별 학습지원(29.7%) ⑤ 관람기회제공(21.3%) ⑥ 친구들과의 면담(21.1%)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0.7%) 순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지원 영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심리상담 영역이 응답수 843회로 가장 많았고, 가정지원이 249회, 문화활동 지원(194회), 교육지원(182회) 그리고 경제적 지원(157회)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기청소년 특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자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84.0%)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51.7%) ③ 심리검사(45.8%)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29.2%)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1.2%) ⑥ 관람기회제공(21.2%)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20.8%) 순이고, 여자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87.9%)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46.8%) ③ 심리검사(44.2%)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0.5%) ⑤ 친구들과의 면담(26.8%) ⑥ 관람기회제공(21.6%)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0.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① 개인상담(84.6%)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53.1%) ③ 심리검사(43.9%)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2.8%)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2.8%) ⑥ 관람기회제공(21.8%) ⑦ 친구들과의 면담(21.1%) 순으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① 개인상담(90.7%) ② 심리검사(52.0%) ③ 부모교육 부모상담(32%) ④ 취업정보제공(26.7%) ⑤ 진학지원(25.3%) ⑥ 친구들과의 면담(21.3%) ⑦ 관람기회제공(18.7%) 순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들과 달리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이 순위에 들지 않은 대신 진학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의 진로지도를 위한 지원이 순위에 들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다시 학령별로 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① 개인상담(88.2%)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59.1%)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52.8%) ④ 심리검사(34.6%)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8.3%) ⑥ 집단상담(26.0%)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24.4%) 순으로, 중등학생은 ① 개인상담(84.4%)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52.3%) ③ 심리검사(50.3%)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0.7%) ⑤ 친구들과의 면담(22.6%) ⑥ 관람기회제공(21.1%)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0.6%) 순으로, 고등학생은 ① 개인상담(79.2%)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45.5%) ③ 심리검사(42.9%) ④ 관람기회제공(20.8%)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9.5%)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8.2%) ⑦ 친구들과의 면담(14.3%)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상담이 순위에 든 점과,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이 순위에서 벗어나고 대신 취업정보제공이 순위에 든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위기수준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저 집단은 ① 개인상담(82%)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44.6%) ③ 심리검사(39.2%)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0.2%) ⑤ 관람기회제공(17.6%) ⑥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4.9%) ⑦ 친구들과의 면담(15.3%) 순으로, 중 집단은 ① 개인상담(87.8%)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51.3%) ③ 심리검사(48.7%)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33.5%)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27.9%)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25.4%) ⑦ 관람기회제공(21.3%) 순으로, 그리고 고 집단은 ① 개인상담(91.5%)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64.4%) ③ 심리검사(55.9%) ④ 친구들과의 면담(45.8%) ⑤ 관람기회제공(35.6%)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25.4%) ⑦ 취업 정보 제공(20.3%) 순으로 나타나 위기 고집단의 경우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이 순위에서 벗어나는 차이를 보였다.

<부표 IV-13>를 보면는 위기청소년특징 별로 필요하지만 지원이 안된 서비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우선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청소년의 순위를 보면 ① 부모교육상담(15.7%) ②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2.8%)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2.6%) 순이었다. 한편 각 항목을 영역별로 묶어서 보면 심리상담(응답수 139회), 문화활동지원(127회), 그리고 경제적 지원(117회)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위기청소년 지원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미흡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부모와의 연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이 실제 지원된 횟수도 많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제 지원된 통계에서 순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적 지원이 상위순위에 들은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워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청소년특징별로 필요하지만 지원이 안 된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①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3.9%) ② 부모교육상담(12.8%) ②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2.8%) 순이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20.0%)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4.7%) ③ 심리검사(13.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관계 별로 보면 재학생은 ① 부모교육상담(14.4%)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3.9%) ③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2.7%) 순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① 부모교육상담(22.7%) ②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3.3%) ③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9.3%) ③ 기초 생활비 지원(9.3%) 순으로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령별 순위는 초등학교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14.2%) ② 심리검사(11.8%)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1.0%) 순으로, 중학교의 경우 ①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6%)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5.1%) ③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4.6%) 순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 부모교육상담의 세 항목이 동등한 비율(15.6%)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시 위기수준 집단 별 순위를 보면 저 집단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13.5%) ②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12.6%) ③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2.2%) 순으로, 중 집단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17.3%) ②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7%) ③ 기초생활비지원(13.7%) 순으로, 그리고 고집단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18.6%) ② 심리교육서비스(16.9%) ③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15.3%) ③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15.3%) 순으로 나타났다.

## 2)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앞에서 살펴본 지원기대와 지원현황을 지역별, 권역별로 분류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권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반응순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 영역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① 개인상담(85.1%) ② 부모교육상담(42.0%) ③ 심리검사(33.5%) ④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28.2%) ⑤ 친구면담(26.6%) ⑥ 관람기회 제공(22.3%) ⑦ 집단상담(13.3%)의 순이었고, 영역별로 보면 ① 심리상담(반응수 317회) ② 가정지원(79회) ③ 교육지원(77회)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① 개인상담(47.3%) ② 부모교육상담(19.9%) ③ 심리검사(18.9%) ④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14.4%) ⑤ 관람기회제공(11.4%) ⑥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10.4%) ⑦ 기초생활비 지원(10.4%) ⑧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0.4%)순이었으며, 영역별로는 ① 심리상담(반응수 155회) ② 교육지원(139회) ③ 경제적 지원(74회)이었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의 각 항목별 순위는 ① 개인상담(55.1%) ② 방과후 개별학습지원(41.6%) ③ 교육문화 활동비지원(22.5%) ④ 부모교육상담(21.3%) ⑤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8.0%) ⑥ 집단상담(13.5%) ⑦ 기초생활비 지원(11.2%)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① 심리상담(반응수 73회) ② 교육지원(38회) ③ 경제적 지원(38회) 순이었다. 이로써 각 권역 모두에서 심리상담과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는 공통적이지만 대도시에서는 가정지원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더 기대됨을 알 수 있었다.(<부표 IV-13>참조)

위기청소년에 대해 실제 지원된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① 개인상담(88.8%) ② 부모교육상담(48.9%) ③ 심리검사(38.8%) ④ 친구면담(31.9%) ⑤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28.7%) ⑥ 관람기회제공(28.2%)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4.4%) 순이었고, 이를 영역별로 보면 ① 심리상담(반응수 341회) ② 교육지원(80회) ③ 문화활동지원(80회)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① 개인상담(82.6%) ② 심리검사(54.7%) ③

부모교육상담(45.3%) ④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21.9%) ⑤ 관람기회제공(21.4%)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7.9%) ⑦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16.9%) 순이고, 영역별로는 ① 심리상담(반응수316회) ② 가정지원(97회) ③ 문화·활동지원(79회) 순이었다. 농어촌은 ① 개인상담(85.4%) ② 부모교육상담(61.8%)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60.7%) ④ 심리검사(37.1%) ⑤ 교육문화 활동비지원(34.8%) ⑥ 집단상담(32.6%)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32.6%)순이었고 영역별로는 ① 심리상담(186회) ② 가족지원(60회) ③ 교육지원(54회) 순이었다(<부표 IV-14>참조).

권역별로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못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대도시를 살펴보면 각 서비스 항목별로는 ① 부모교육상담(16.0%) ②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13.3%) ③ 심리교육서비스(11.2%)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① 심리상담(반응수 63회) ② 문화·활동지원(47회) ③ 가족지원(39회) 순이었다. 영역별로 경제적 지원(38회)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4번째 순위에 있었다. 실제 지원현황 상 심리상담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아쉬움이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중도탈락 되거나 상담인력부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항목별로 ①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20.9%) ②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16.9%) ② 부모교육상담(16.9%)순이고, 영역별로는 ① 경제적 지원(응답수 152회) ② 심리상담(139회) ③ 문화·활동지원(127회)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항목별로는 ① 기초생활비지원(12.4%) ② 부모교육상담(12.4%) ③ 심리검사(11.2%) ③ 교육문화 활동비지원(11.2%)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① 경제적 지원(반응수 28회) ② 가정지원(21회) ② 문화·활동지원 (21회) 순이었다(<부표 IV-15>참조).

## 7. 결과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에는 현재 사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상반기 청소년동반자사업대상 청소년 478명(남288명, 여1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방식은 이들 청소년 각각에 대해 그들을 만나서 지원활동을 펼쳤고, 그들에 대해 기록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이 질문지에 답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조사에는 첫째, 위기청소년의 특징 둘째, 개인적 위기요인과 문제 셋째, 가정환경 및 가족위요인 넷째,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 다섯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별, 권역별 특징과 차이들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청소년의 특징 및 학교, 친구문제

첫째, 조사대상자의 84.3%는 재학생이며 15.7%는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재학생들이 사업대상자로 발견될 기회가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청소년 중 28.2%가 학교에서 의뢰되었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14.6%가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 10.9%가 청소년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등 생활권 시설 및 기관의 연계가 대상자 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법기관, 경찰서, 상담센터 등 보다 심각한 문제수준에서 동반자들에게 연결되고 있었다.

둘째, 본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50.2%가 개입중간 단계에 있고, 22.2%는 이미 계획된 종결을 거두었지만 21.1%는 조기종결 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조기종결이 많았지만, 위기수준 고 집단이 저, 중 집단보다 조기종결이 더 높지는 않았다.

셋째, 재학생들의 65.8%가 학습부진의 문제를 갖고 있고, 남녀에 관계없이, 학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부

진비율도 높게 나타나 학습부진이 청소년들의 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재학생의 26.3%의 청소년이 잦은 결석과 장기결석을, 그리고 28.3%의 청소년이 지각조퇴를 하는 등 학교출결상황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교사와의 갈등이 27.8%로 약 26~28%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청소년도 26.8%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고,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 혹은 결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잦은 결석 혹은 장기결석, 지각조퇴, 자퇴생각, 교사와의 갈등은 학령이 높을수록,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내 괴롭힘 가해, 피해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초, 중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괴롭힘은 저 연령층 청소년들의 문제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작스런 성적 하락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75명 중 38.7%가 고등학교를 자퇴 했으며, 34.7%가 중학교 자퇴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학력의 낮음보다 자퇴가 위기상황과 상호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비행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암시하는 비행관련 동성친구 혹은 이성친구가 있다는 항목에서 재학생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령별로는 학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위기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왔다. 한편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것 또한 중요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성별, 학교관계, 학령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기수준집단에서는 고, 중, 저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서 다른 위기요인과 관련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2) 위기청소년의 정서, 정신건강 및 행동문제

첫째, 위기청소년들은 충동적 행동(전체의 59.8%),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50%), 불안(44.6%), 우울(37.7%)로 전반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었다. 재학생의 경우 51.1%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 보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38.7%, 불안이 49.3%, 충동적 행동이 68.0%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의 학령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위기수준별로 살펴 볼 때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불안, 충동적 행동은 고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울은 중 집단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13.4%가 ADHD와 다양한 정신건강문제가 있으며 8.8%가 PTSD(사망사고경험, 폭행, 사고, 화재 등)를 경험했고, 8.2%가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위기수준 집단별 결과에서는 고집단이 정신건강문제, 낮은 지능, PTSD 세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전체 청소년 중 17.4 %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학대피해경험이 있으며, 1.9%가 성적 학대 피해경험을 갖고 있었다. 부모가 신체적 학대자인 경우는 학대피해청소년 83명중 61.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친구전배(9.6%), 친족(7.2%) 순이었으며 성학대자는 다양하였다.

셋째, 전체 478명의 청소년 중 25.9%가 술을, 27.2%가 담배를, 그리고 0.8%가 본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 중 20.1%가 술을, 20.1%가 담배문제를 나타내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57.3%가 술을, 65.3%가 담배문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학령이 올라갈수록 위기수준이 높아질수록 술, 담배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로써 위기청소년들의 술, 담배 사용빈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문제 중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낸 것은 혼숙경험으로 전체 478명의 청소년 중 16.1%였고, 그 다음은 성관계 경험으로 11.5%로 나타났다. 혼숙을 한다고 모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나 많은 청소년이 무책임한 성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성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혼숙(21.6%), 성관계(15.8%), 성매매, 성폭력, 임신, 성병 등 각종 성문제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위기수준이 저, 중, 고로 높아지면서 혼숙경험, 성관계경험, 성매매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 접속 등에서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전체 청소년 중 19.5%가 폭력가해 경험이 있었고, 11.9%가 폭

력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5.9%는 조직에 가담함 경험이 있었고 전체 중 5.4%가 자살계획이나 자살기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5%는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여섯째, 행동문제 중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인터넷 중독(전체 청소년 478명 중 24.9%), 절도(15.3%), 사법문제(15.1%), 금품갈취(14.6%), 어린 시절 도벽(13.2%) 등이었으며, 오토바이 폭주나 부랑 역시 약 8% 수준에 이렀다. 인터넷 중독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 중독, 절도, 사법문제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청소년 중 32.0%가 가출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현재 가출중인 경우는 4.6%였고 7.3%가 가출 시 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일곱째, 남자 청소년의 경우 57.4%가 현재 사법문제가 진행 중이고, 42.6%가 과거경험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경우와 과거경험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중 반 정도가 현재 사법문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반자에게 의뢰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3) 가족 및 주거환경

첫째, 동반자의 지각이긴 하지만 부모의 감독결여 상태인 청소년이 전체의 56.3%에 달했다. 특히 위기수준 고 집단은 78.0%나 부모의 감독결여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분석되었다. 그런가 하면 전체의 22.2%가 부모의 실직상태를, 17.4%가 부모의 사별을, 그리고 16.5%가 부모의 질병을 경험했으며, 부모의 외도를 경험한 경우도 8.8%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애정, 지도, 감독상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임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청소년 중 33.7%의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이들이 매우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 청소년들 중 33.1%가 부모가 이혼한 가족의 자녀였고, 부모가 불화상태인 경우 15.7%, 별거인 경우 7.3%로 불화, 이혼, 별거 등의 부모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79.1%에 달해서 부부관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29.1%가 안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59.6%가 빈곤한 상태라고 답했다. 전체 청소년 중 41.6%는 주거환경이 안정된 편으로, 31.8%는 혼자 쓰는 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7.7%는 위생적이거나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

첫째, 전체 위기청소년의 54.6%가 목표의식이 있고 40.0%가 낙천적인 성격이며 39.3%가 변화 동기를 갖고 있으며, 33.1%는 책임의식이 있으며, 24.7%는 유머감각이, 그리고 23.2%는 자기통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위기청소년도 나름의 성격적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청소년 들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스트레스 적극대처(13.2%), 사회적 유능감(18.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스트레스 적극대처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위기수준 고 집단에서 책임의식(16.9%), 자기통제성(5.1%),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10.2%) 등의 특징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위기청소년 중 45.4%는 진학욕구를, 23.6%는 취업욕구를, 그리고 12.8%는 자격증 취득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57.3%가 진학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전체 위기청소년 중 45.4%가 도움을 주는 교사가 있고, 44.6%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32.0%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30.3%가 도움을 주는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적보호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

정의 경제적 여유는 18.8%로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임을 알 수 있었다.

##### 5) 위기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위기·보호 요인의 차이

첫째,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주거위기 각 영역 위기점수와 위기 총 점수에서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위기를 제외한 친구위기, 개인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 점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각 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보다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 중, 고등학생의 학령에 따라,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 점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차이검증 결과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총 위기점수에서는 중, 고생이 초등학생보다 점수가 높고 가족위기에서는 초등,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주거위기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위기 고, 중, 저 위기수준에 따라,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 점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차이검증 결과 학교위기, 친구위기, 개인위기, 가족위기 영역에서는 고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그리고 중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높은 위기점수를 나타내고 주거위기에서는 중, 고 집단이 저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보호-개인, 보호-환경, 보호-기타, 보호요인 총 점수 등 보호요인 전체 영역에서 남녀 간, 그리고 학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요인 영역 중 보호-개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호-환경, 보호-기타, 그리고 보호요인 총 점수 등에서 재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보다 보호요인점수가 의미 있는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위기수준 저, 중, 고 집단별 보호요인 각 영역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보호-개인 영역에서는 위기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호-환경, 보호-기타, 보호요인 총 점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각각의 영역에서 위기 저 집단이 중, 고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간 보호요인은 차이가 없으나 환경이나 기타의 보호요인이 이들의 위기수준을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위기수준이나 보호요인에서의 성차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학교관계, 학령, 복합적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위기수준 등은 각 위기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고, 학교관계, 위기수준은 보호요인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령에 따른 보호요인의 차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 6)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차이

첫째, 본 조사 대상이 된 위기청소년 중 대도시 청소년은 188명(남 112명, 여 76명)으로 전체의 39.3%이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201명(남 130명, 여 71명)으로 42.1%,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은 89명(남46명, 여43명)으로 18.6% 이었다.

둘째, 각 권역별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는 학교와 연계를 활발히 갖고 있는가 하면 농어촌은 청소년기관이 중요한 접촉창구 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소도시는 사법기관, 경찰서 등과 연계를 갖고 사법적인 문제와 연루된 청소년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도시의 경우 개입 중(60.1%)이거나 계획된 종결 사례(27.1%)가 대부분이었으며 조기 종결 비율은 12.2%정도 이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는 개입중인 경우 31.3%, 계획된 종결 22.4%였고, 조기 종결 비율이 34.8%에 이르렀다. 중소도시 중 D시는 종기종결이 47.4%로 이들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속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소도시의 경우 사법기관에 인지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어촌은 71.9%가 현재 개입 중인 청소년이고 11.2%가 조기 종결된 경우였다.

넷째, 학교위기 영역에서는 지역별, 권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친구위기는 지역별,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권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친구위기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개인위기는 지역별, 권역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A가 중소도시인 D에 비해, 권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개인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개인위기가 크고, D와 같이 지역 크기와 무관하게 개인위기가 작은 곳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가족위기 수준 역시 지역별, 권역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인 D시가 대도시 A, B 그리고 중소도시인 C, 농어촌 지역 E, F, G에 비해 가족위기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가족위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지역별 주거위기 역시 지역별, 권역별로 차이를 나타나 지역별차이 검증에서 E, F, G시와 B시 간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어촌의 주거환경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위기 총 점수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A와 D간의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역별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 보다 개인위기, 친구위기, 위기총점수가 더 크고, 농어촌은 가족위기, 주거환경의 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위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7)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 (1) 위기청소년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첫째,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 이를 순위별로 보면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 ③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④ 심리검사 ⑤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 ⑥ 관람기회제공 ⑦ 친구들과의 면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조사지에서 구분한 지원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심리상담 영역이 가장 많고, 교육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정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는 검정고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관계된 지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위기 고 집단에서는 교육 지원항목이 순위에서 벗어난 점 등이 눈에 띄이는 결과였다.

둘째, 위기 청소년의 실제 지원현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 부모상담 ③ 심리검사 ④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 ⑤ 관람기회 제공 ⑥ 친구들과의 면담 ⑦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 등이다. 이를 다시 지원 영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심리상담 영역이 가장 많았고, 가정지원, 문화활동 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위는 기대와 실제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필요하지만 지원이 안 된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전체 청소년의 순위를 보면 ① 부모교육상담 ②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 ③ 방과 후 개별학습지원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천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항목을 영역별로 묶어서 보면 심리상담, 문화활동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 순이었다. 즉 부모와의 연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상담이 실제 지원된 횟수도 많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지금까지 실제 지원된 통계에서 순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적 지원이 상위순위에 들은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워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위

기청소년 지원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미흡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2) 지역별 권역별 지원기대 및 지원현황

첫째, 위기청소년의 지원기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상담 ③ 심리검사 ④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⑤ 친구면담 ⑥ 관람기회 제공의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가족지원, 교육지원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상담 ③ 심리검사 ④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⑤ 관람기회제공 ⑥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⑥ 기초생활비 지원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순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교육지원, 경제적 지원이었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의 각 항목별 순위는 ① 개인상담 ②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③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④ 부모교육상담 ⑤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⑥ 집단상담 ⑦ 기초생활비 지원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교육지원, 경제적 지원 순이었다. 이로써 각 권역 모두에서 심리상담과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는 공통적이지만 대도시에서는 가족지원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더 기대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제 지원된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상담 ③ 심리검사 ④ 친구면담 ⑤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⑥ 관람기회제공 ⑦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순이었고, 이를 영역별로 보면 심리상담, 교육지원, 문화활동지원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① 개인상담 ② 심리검사 ③ 부모교육상담 ④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관람기회제공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⑦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순이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가족지원, 문화활동지원 순이었다. 농어촌은 ① 개인상담 ② 부모교육상담 ③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④ 심리검사 ⑤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⑥ 집단상담 ⑥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가정지원, 교육지원 순이었다.

셋째, 필요하지만 지원을 못한 서비스를 권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① 부모교육상담 ② 문화예술 스포츠 시설 이용지원 ③ 심리교육서비스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상담, 문화활동지원, 가정지원 순이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한 사례 차이로 4번째 순위에 있었다. 실제 지원현황 상 심리상담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아쉬움이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중도탈락 되거나 상담인력부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항목별로 ①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② 방과 후 개별학습 지원 ③ 부모교육상담 순이고, 영역별로는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문화활동지원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항목별로는 ① 기초생활비 지원 ② 부모교육상담 ③ 심리검사 ③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순이었고, 영역별로는 경제적 지원, 가족지원 및 문화활동지원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동반자 사업 대상자는 이들을 위기요인 수에 의해 고, 중, 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기 청소년 집단 내 분류일 뿐 이들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위기청소년들임을 알 수 있다. 행동문제와 관련된 지표만 보더라도 약물문제(술 25.9%, 술 27.2%, 향정신성 의약품 0.8%), 폭력가해경험(19.5%), 가출문제(32.0%), 인터넷 중독(24.9%), 부랑(7.9%), 어린시절 도벽(13.2%), 절도(15.3%), 금품갈취(14.6%) 오토바이 폭주(7.7%), 사법문제(15.1%)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학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들을 쉽게 발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학생들 역시 학습부진, 결석, 조퇴,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괴롭힘 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기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친구위기, 개인위기, 주거위기, 위기 총 점수에서 재학생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더 많은 비율로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을, 그리고 술, 담배문제를, 인터넷 중독, 절도, 사법문제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은 학교가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해 더 폭넓은 사

회적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넷째, 위기청소년들은 정서, 정신건강, 약물, 성, 행동문제, 사법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감독결여, 이혼, 실직, 사별, 질병 뿐 아니라 불화, 별거, 경제적 곤란 등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위기청소년지도는 심리상담, 교육 지원, 가족지원, 취업지도, 활동지도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구축단계를 넘어서 진일보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기요인의 저, 중, 고 집단 분류가 각 위기요인, 문제, 영역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위기요인이 중첩될수록 각 위기요인, 문제, 위기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들을 지도 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기요인 수에 의한 분류 방식은 단지 양에 의한 것일 뿐 이들 위기요인의 질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위기요인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위기청소년들 역시 발견하고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외 보호요인이 위기수준 차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자신이 갖고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 확장해 줄 뿐 아니라 주변에서의 보호요인을 발견하고 확장시켜 주는 것 또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보호요인의 유무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반자를 통한 자료수집이라는 한계로 인해 위기요인에 보다 비중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일곱째, 위기청소년 지도를 위해 지역별, 권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권역별로 위기청소년의 상황이 요구되거나 미흡한 지원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같은 권역이라 해도 D시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한편, 각 영역별로 지원기대와 현황을 요약해 보면 <표 IV-49>와 같다. 지원이

미흡한 영역에서 하위순위에 속하는 서비스 내용의 빈도가 적어서 3순위까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IV-49> 권역별 지원기대와 현황(지원영역별)

구분	지원기대영역			실제적인 지원영역			지원이 미흡한 영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지원 내용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가정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가정지원	가정지원	문화· 활동지원	심리상담	가정지원
	교육지원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문화· 활동지원	문화· 활동지원	교육지원	가정지원	문화· 활동지원	문화· 활동지원

<표 IV-49>에서와 같이 대도시는 가정지원이 더 많이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청소년 지도를 위해 가정의 협력이 요구되나 이러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중소도시, 농어촌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나 이를 도와줄 자원이 부족함을 반영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실제적인 지원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심리상담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자신의 기대이기 보다 청소년동반자들의 지각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동반자는 보다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권역에서 문화·활동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기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되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대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실태분석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자원 확보 현황
3.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의  
연계협력 실태 및 욕구 분석
4. 허브기관분석
5. 지역별 동반자 실태 분석
6. 요약

## V.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실태분석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 조사 대상

본 장은 2006년부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사업의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해당지역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사회안전망 참여조직, ② 통합지원체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시도 (상담)지원센터, ③ 해당지역 동반자, ④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먼저,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참여한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유형화하여 각각 2곳, 2곳, 3곳씩 총 7개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 하였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어 해당지역 도 상담지원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조사대상 조직은 A지역이 52개, B지역 159개, C지역 210개, D지역 53개, K지역이 12개로 총 486개이다.<sup>7)</sup>

조사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에 비교적 빨리 착수한 지역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통합지원

7) 이것은 해당지역 상담지원센터가 2006년 5월말을 기준으로 제출한 연계기관목록에 따른 것임.

체계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안전망 허브기관으로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7개 지역 (상담)지원센터 뿐 아니라 통합지원체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7개 (상담)지원센터 (2006년 5월말 현재)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사업담당 공무원 1인씩 총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의 현황과 자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특성과 서비스관련기관 현황, 소관 행정부처의 특성과 활동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선정된 7개 지역 (상담)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동반자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의 주요 인력으로서 이들의 현황과 의견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조사 방법

### (1) 조사 방법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조직과 (상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응답자는 해당 조직의 연계협력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 협력담당자 1인으로 하였다. 응답자가 개인 경험에 의거한 제한된 내용을 응답하지 않고 조직의 서류를 찾아서 객관적 사실을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무원에게는 이메일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동반자에게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자료수집 결과를 종합하면 <표 V-1>과 같다.

<표V-1>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결과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수집결과
안전망 참여조직 (상담)지원센터	우편설문조사	기관용 설문지	51개
공무원	이메일조사	공무원용 설문지	6개
청소년동반자	우편설문조사	청소년동반자용 설문지	94개

기관용 설문조사의 응답지 회수율은 총 524개 중 69개로 13.2%이다. 조사내용이 응답자가 서류기록을 참조해서 기입해야 하는 응답이 어려운 설문지였다는 점과 조사대상기관이 지역사회에 분포된 응집력이 약한 매우 다양한 성격의 조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문지 회수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up>8)</sup> 또한 조사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전화를 통한 수차례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 상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조사 기간

지역사회 기관대상 설문조사는 당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되었다. 그러나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 상담지원센터에 조사지원 요청 등을 하면서 7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 3) 조사 내용

### (1) 지역사회안전망 기관용 조사지

8) 리서치기관에서 예상하는 우편설문조사 회수율은 7% 선임.

① 조직의 특성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조직 특성	조직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직원 수, 계약직 인원수, 자원봉사자 수</li> <li>■ 1년 예산액</li> <li>■ 수용인원</li> </ul>
	조직의 운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운영주체</li> <li>■ 운영기간</li> </ul>
	서비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의 수</li> <li>■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원받기 원하는 서비스 종류의 수</li> </ul>

②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조직 구성원의 특성	연계협력담당자 개인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학력</li> <li>■ 자격증 소지여부</li> <li>■ 근무기간</li> <li>■ 직책</li> <li>■ 6개월 동안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회수</li> <li>■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 참여로 친분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분야 조직의 수</li> <li>■ 위기청소년 서비스 조직 연계협력에 대한 인식</li> </ul>
	최고책임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서비스 조직 연계협력에 대한 인식</li> </ul>

### ③ 조직간 연계 현황

구 분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사회적 안전망 조직간 연계	의 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동안, 사회안전망 내의 적합한 기관 소속으로 재배치시킨 아동청소년의 수 및 의뢰기관</li> <li>■ 6개월 동안, 사회안전망 내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의 퇴 받아 귀 기관의 소속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수 및 의뢰기관</li> </ul>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동안, 사회안전망 내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받은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 및 제공기관</li> <li>■ 6개월 동안, 사회안전망 내의 다른 조직에 제공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종류의 수 및 제공받은 기관</li> </ul>
	공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동안, 사회안전망 내의 조직들과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의논 및 대응했거나 하고 있는 이슈</li> </ul>
	연계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필요성 인식</li> <li>■ 연계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li> </ul>
	연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정도 평가</li> <li>■ 사후관리정도</li> <li>■ 연계조정기관의 역할</li> <li>■ 연계의 장애요인</li> </ul>
	상담 지원센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지원센터에 관한 정보</li> <li>■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li> <li>■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의 비중</li> <li>■ 위기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li> </ul>
	상담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와 시구군 상담지원센터의 역할 분담</li> <li>■ 위기청소년 관련하여 상담지원센터 증가예산</li> <li>■ 위기청소년 관련하여 상담지원센터 조직체계와 업무</li> </ul>

(2) 공무원 조사내용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환경특성	지역 사회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체인구</li> <li>■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수</li> <li>■ 지역의 특성</li> <li>■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서비스 시설 종류와 수</li> <li>■ 지역사회 기업의 수</li> <li>■ 지역 내 가구당 소득 평균</li> <li>■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수</li> <li>■ 지역 내 위기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수</li> </ul>
	소관 행정부처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관련 예산</li> <li>■ 담당공무원의 수</li> <li>■ 지역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모임 및 교육 개최 현황</li> </ul>

(3) 동반자 조사내용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동반자	동반자 개인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학력</li> <li>■ 자격증 소지여부</li> <li>■ 근무기간</li> <li>■ 직책</li> <li>■ 6개월 동안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회수</li> <li>■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 참여로 친분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분야 조직의 수</li> </ul>
	동반자의 역할,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대한 만족도</li> <li>■ 동반자 업무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li> <li>■ 위기청소년을 위해 개발·지원되어야 할 서비스</li> </ul>

##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 현황

### 1) 조사대상 지역 현황 개관

#### (1) 대도시

##### ① A지역

A지역의 현황은 <표 V-2>와 같다. 2006년 현재 A지역은 전체 인구가 10,344,440명에 이르고 25개 구와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1,239개교에 이른다. 기업체는 740,779개에 이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08,320원 정도이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A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2,466,000명이고 시청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의 수는 27명이다. 이 시청의 위기청소년 관련부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위기청소년 관련 조직모임을 1회 가졌으며 실무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시청의 2005년도 위기 청소년 1년 예산은 662,000,000원이었다.

##### ② B지역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B지역의 전체 인구는 1,401,745 명 정도이고, 5개구와 9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수는 159개교이고, 기업 수는 95,950개에 이른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이 지역 청소년 인구는 375,000명이다.

<표 V-2> A지역과 B지역 현황 개관

구 분	세 부 항 목	A지역	B지역
지 역 특 성	전체인구(명)	10,344,440	1,401,745
	구와 동	25개522동	5개91동
	지역성격	일반주택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	일반주택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
	초,중,고등학교수(개교)	1,239	274
	청소년서비스 시설 수	-	28
	기업수(개소)	740,779	2,717
	가구당 소득월평균(원)	3,008,320	2,478,600
	청소년인구 (2000년기준, 명)	2,466,000	357,545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 수(명)	27	2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모임(회)	연 1	연 6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실무자 교육(회)	연 1	연 2
	위기청소년 1년 예산(원)	662,000,000	-

(2) 중소도시

① C지역

C지역은 <표 V-3>에서처럼 전체인구가 679,011명이고, 2개의 구와 2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주유형은 일반주택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의 분포를 이룬다. 초·중·고등학교는 97개교가 있으며, 청소년서비스 시설은 12개가 있다. 기업은 4,492개가 있으며, 가구당 월 소득 평균은 2,080,000원 정도이다. 이 지역 청소년 인구는 166,984명이고, 이 시의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시는 위기청

소년 관련조직 모임이나 실무자교육을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지역 관련센터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② D지역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지역의 전체인구는 1,070,448명이고, 지역은 4개의 구와 2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주택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특성을 보인다. 이 시내의 초·중·고등학교는 170개교이고, 청소년서비스 시설은 28개이다. 청소년 인구는 203,521명이고,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시는 위기청소년 관련 조직의 모임을 2005년에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관련조직 실무자 교육을 개최한 바는 없다.

<표 V-3> C지역과 D지역 현황 개관

구 분	세 부 항 목	C지역	D지역
지 역 특 성	전체인구(명)	679,011	1,070,448
	구와 동	2구 24동	4구 24동
	지역성격	일반주택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	일반주택지역 일반아파트 상업지역
	초,중,고등학교수(개교)	97	170
	청소년서비스 시설 수	12	28
	기업수(개소)	4,492	N.A.
	가구당 소득월평균(원)	2,083,000	N.A.
	청소년인구(2000년기준, 명)	166,984	203,521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 수(명)	1	1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모임(회)	지역 센터에서 시행	연 1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실무자 교육(회)	"	N.A.	
위기청소년 1년 예산(원)	280,000,000	N.A.	

### (3) 농어촌지역

K지역의 전체인구는 2,970,929명(2000년 기준)으로 10개시 10개군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2006년도에 5개시가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군이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반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3개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E지역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전체인구가 67,000명이고, 1읍11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주택지역,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지역,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내의 기업은 95개가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17개교이며, 청소년인구는 14,000명이고, 청소년서비스 시설은 2개가 있다. 이 지역의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은 1명이고, 이 담당자는 2005년 한 해 동안 관련조직의 모임을 1회 개최하였고 관련 조직 실무자 교육을 4회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도 이 지역의 위기청소년 1년 예산은 50,000,000원이었다.

#### ② F지역

이 군의 전체인구는 31,095명이고, 이 지역은 1개의 읍과 1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도 일반주택지역,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8개의 기업이 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는 25개교이며 청소년인구는 5,015명이다. 이 지역의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은 1명이며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실무자 교육을 2회 개최한 바 있다.

#### ③ G지역

이 지역의 전체인구는 24,274명이고, 이 지역은 1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도 일반주택지역, 농어촌산간지역, 일반아파트지

역,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는 32개가 있다. 그리고 3,989개의 기업이 있다.

<표 V-4> E, F, G 지역 현황 개관

구분	세부항목	E지역	F지역	G지역
지역특성	전체인구(명)	67,000	13,810	24,274
	구와 동	1읍11면	1읍12면	1읍9면
	지역성격	일반주택 농어촌산간 일반아파트 상업	일반주택 농어촌산간 일반아파트 상업	일반주택 농어촌산간 일반아파트 상업
	초,중,고등학교수(개교)	17	25	32
	청소년서비스 시설 수	2	N.A.	
	기업수(개소)	95	88	3,989
	가구당 소득월평균(원)	N.A.	N.A.	
	청소년인구 (2000년 기준, 명)	14,000	5,016	
	위기청소년 담당공무원 수(명)	1	1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모임(회)	1	N.A.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실무자 교육(회)	4	2	
	위기청소년 1년 예산(원)	50,000,000원	N.A.	

##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 현황

### (1) 지역자원의 유형 및 수

#### ① 분류기준

조사 대상지역 상담지원센터에서 보내 온 연계협력기관 목록을 기초로 지역자원을 유형화하였다. 먼저 목록상의 조직을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총 57개 유형으로 세분류하였다.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조직의 성격

이 다른 경우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세분류에서는 이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였다.

세분류된 조직을 지역사회 안전망 상의 기능, 즉 발견의뢰, 허브, 서비스 지원 등 대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배치하였다. 해당 조직의 기능이 발견기능과 서비스 지원 기능, 허브기능과 서비스지원 기능 등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도 현재 안전망 수준에서 어떤 기능이 더 중점적인가를 기준으로 발견의뢰체계와 서비스지원체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기능분류는 해당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의견과 조사결과 나온 조직의 기능에 대한 응답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세분류된 조직을 크게 대분류 기준에 따라 배치한 후 조직성격과 기능에 따라 발견체계는 교육기관, 지역이용시설, 자영업단체, 상담시설, 공공기관 등 5개 유형으로, 서비스지원기관은 학습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보호(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복지지원 등 7개 유형을 묶어 총 12개 유형으로 중분류하였다.

## ② 지역자원의 유형과 수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조사대상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확보현황은 <표 V-5>와 같다.<sup>9)</sup>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으로 A지역은 총 284개 기관, B지역은 159개 기관, C지역은 210개 기관, D지역은 53개 기관, K지역은 21개 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A와 B지역은 광역시이지만 A지역의 도시규모가 B지역의 6-7배를 상회한다. 이러한 도시규모를 감안할 때 A지역의 자원 확보가 불충분해 보인다.<sup>10)</sup> B와 D지역은 행정구역상

9) 본 표의 지역자원 분포는 2006년 5월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상담지원센터에서 보낸 협력기관 목록을 기초로 하였다. 단, A지역과 K지역의 경우, 2006년 7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설문지 응답을 기초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10) 도시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A와 B지역의 상담지원센터 예산과 인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 관리능력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분류되었지만 도시인구의 차이는 40만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B지역에 비해 D지역의 지역자원 확보가 부족해 보인다.

C지역은 D지역보다 인구가 30만 정도 적은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은 4배 수준으로 확보되어 지역규모에 비해 많은 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K지역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이다. 통합지원체계사업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를 상담지원센터로 중심으로 확보된 자원을 조사하였다. 21개의 지역자원은 E, F, G지역이 소속하여 있는 도 상담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자원 현황이다. 청소년인구가 작지만 행정단위 면적이 넓은 것을 감안할 때 확보된 지역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에 있다.

<표 V-5> 지역자원 유형 및 수

단위: 개소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A	B	C	D	K		
발견 의뢰 체계	교육 기관	학교	47	45	54			146
		교육청	7		1		1	9
	지역 이용 시설	어린이집			15			15
		지역아동센터	4	3	24	10		41
		사회복지관	8	7	5	4	1	25
		보육시설단체			2			2
	자영 업 단체	택시조합				1	1	2
		찜질방,노래방,PC방협회	4				2	6
		상인 연합회	1					1
	상담 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	2	3		1		6
		건강가정지원센터	4	10	10	4	1	29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14					14
		기타 상담소	29					29
	공공 기관	보호관찰소	2	1			1	4
		경찰서	11	1		2	1	15
		소년분류심사원	1	1				2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1				3	

<표 V-5> 지역자원 유형 및 수

단위: 개소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A	B	C	D	K		
서 비 스 지 원 체 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교육센터	1				1	
		대안학교	17	5			1	23
		방과후 교실·아카데미	2	5				7
		공부방	1		6			7
		대학					2	2
		검정고시학원	1			1		2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기관	평생교육원						0
		직업전문학교		3	2			5
		직업훈련학원, 기타단체	2		1			3
		고용안정센터	5	1		1		7
		자활지원관	6	3	1			10
		인력개발센터		2	1			3
		여성발전센터 복지회관	2		2			4
	고용관련단체			1			1	
	보호시설	갱생보호공단청소년의집		1				1
		소년원 학교	2	1				3
		쉼터	33	10	1	1	2	47
		그룹홈	1		14	2		17
		육아원(보육원)		1		2	1	4
		기타 보호시설	3	3		3		9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9	5		2		16
		보건소		1				1
		공공치료시설		1		1		2
의료관련 단체			5		2	1	8	
일반병원(민간, 공립)		8	14	5	2	2	31	
의료관련 자영업자		1		1			2	
법률기관 단체	법률구조공단	1	1		1	1	4	
	법률관련시설 단체				1	1	2	
	변호사, 법무사		10	1			11	
	범죄예방위원협의회						0	
활동기관 단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34	2		3	1	40	
	자원봉사센터	1	5		1		7	
	청소년단체	7	1		7		15	
	자원봉사관련시설		1	59			60	
	일반시민단체	7	5	2			14	
	인성개발컨설팅업체	1					1	
복지단체	복지관련단체시설		1	2		1	4	
	경제적 후원단체				1		1	
	종교기관 및 기타	3					3	
계		284	159	210	53	21	727	

(2) 지역별 확보자원의 특성 분석

<표 V-5>를 조직기능별 중분류 기준에 따라 분포시킨 것은 <표 V-6>이며 안전망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분포시킨 것이 <표 V-7>이다.

<표 V-6> 조직기능(중분류) 지역자원 확보현황

단위 : 개수(%)

조직 기능	A	B	C	D	K	계	
발견체계	교육기관	54(19.0)	45(28.2)	55(26.2)	-	1(4.7)	155(21.3)
	지역시설	12(4.3)	10(6.3)	46((21.9)	14(26.4)	1(4.7)	83(11.4)
	자영업체	5(1.7)	-	-	1(1.9)	3(14.2)	9(1.2)
	상담센터	49(17.3)	13(8.2)	10(4.8)	5(9.4)	1(4.7)	78(10.8)
	공공기관	16(5.6)	4(2.4)	-	2(3.8)	2(9.5)	24(3.3)
소 계	136(48.0)	72(45.0)	111(52.0)	22((41.0)	8(38.0)	349(48.0)	
지원체계	학습기관	22(7.7)	10(6.3)	6(2.9)	1(1.9)	3(14.2)	42(5.7)
	직업훈련	15(5.3)	9(5.7)	8(3.7)	1(1.9)	-	33(4.5)
	보호시설	39(13.7)	16(10.4)	15(7.2)	8(15.1)	3(14.2)	81(11.1)
	의료기관	18(6.3)	26(16.2)	6(2.8)	7((13.2)	3(14.2)	60(8.3)
	법률기관	1(0.4)	11(6.9)	1(0.5)	2(3.8)	2(9.5)	17(2.3)
	활동기관	50(17.6)	14(8.8)	61(29.0)	11(20.8)	1(4.7)	137(18.9)
	복지단체	3(1.1)	1(0.6)	2(1.0)	1(1.8)	1(4.7)	8(1.1)
소 계	148(62.0)	87(55.0)	99(48.0)	31(59.0)	13(62.0)	378(52.0)	
계	284(100.0)	159(100.0)	210(100.0)	53(100.0)	21(100.0)	727(100.0)	

<표 V-6>에 의하면 D지역과 K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체계에서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다. A지역은 교육기관 외에 상담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습지원기관,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의 비중이 높고 쉼터 등 보호시설의 비중이 높다.

B지역은 상당히 다양한 조직기능을 가진 기관을 지역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발견체계보다는 지원체계의 비중이 높다. 조직기능 별로 볼 때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동사무소, 소년분류심사원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법률지원을 위한 개인과 단체, 경제적 후원을 위한 민간단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다. B지역안전망은 구조상으로 2차 안전망이 더 강하다.

C지역은 발견체계로 확보된 지역자원이 전체의 52.9%로 절반을 넘는다. 이는 C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학교 외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이용시설을 지역자원으로 확보, 발견체계의 1차안전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는 자원봉사관련시설이 많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활동 시설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그룹홈,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을 약간씩 확보하고 있다.

D지역은 발견체계에 있어서 지역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6.4%로 가장 높다. C지역과는 달리 청소년단체나 문화의 집 등을 청소년활동시설로 확보하고 있다. D지역 안전망 구조의 특성은 2차 안전망이 강하다는 점이다.

K지역은 발견체계에 있어서 자영업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지역실정에 맞춘 자원개발이라 볼 수 있다.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학습지원기관, 보호, 의료기관 등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V-7>에 의하면 K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안전망 구조에 있어 3차 안전망이 강한 편이다.

<표 V-7>에 따라 응답한 각 기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A, B, C지역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비영리 민간기관, 영리기관의 순이다. B지역은 영리기관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K지역도 영리기관이 비중이 높다. 영리기관에 대한 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B지역과 K지역은 영리기관을 지역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 V-7> 지역별 확보자원의 조직기능·구조·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단위: 개수(%)

구 분		A	B	C	D	K
전 체		284(100.0)	159(100.0)	210(100.0)	53(100.0)	21(100.0)
조직기능 (대분류)	발견체계	136(47.9)	72(45.3)	111(52.9)	22((41.5)	8(38.1)
	지원체계	148(52.1)	87(54.7)	99(47.1)	31(58.5)	13((61.9)
조직구조	1차	169(59.5)	71(44.7)	143(68.1)	19(35.8)	9(42.7)
	2차	73(25.7)	70(44.0)	52(24.8)	26(49.1)	7(33.3)
	3차	42(14.8)	18(11.3)	15(7.1)	8(15.1)	5(24.0)
운영주체 의 성격	공공기관	191(67.3)	91(57.2)	117(55.7)	19(35.8)	8(38.0)
	비영리기관	78(27.5)	41(25.8)	83((39.5)	31(58.5)	8(38.0)
	영리기관	15(5.2)	27(17.0)	10(4.8)	3(5.7)	5(23.8)

### 3.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의 연계협력 실태 및 욕구 분석

#### 1)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 (1) 응답기관의 유형과 수

조사대상인 A, B, C, D, K지역에서 총 61개의 기관이 응답하였다. A지역에서 8개 기관, B지역에서 24개 기관, C지역에서 13개 기관, D지역에서 10개 기관, K지역 6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응답기관을 지역별·조직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V-8>과 같다. 조직유형별로 볼 때 학교가 11개, 시도 및 시군구 상담지원센터가 10개, 쉼터 등 보호시설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이용시설이 8개, 활동기관단체가 7개, 의료기관이 5개로 많다. 이 외 학습지원기관 3개, 직업훈련기관 2개, 법률관련단체 1개가 응답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자원 확보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조직인 상담지원센터, 쉼터의 참여가 높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자활지원관 등 복지부 관련 조직의 응답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역자원 확보 현황에서 상담시설

들의 수가 27개로 많은 편이었으나 응답은 1개로 매우 적었다. 이는 민간상담시설들의 조직이 영세하여 참여가 저조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조직 중 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활동시설의 응답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러한 조직이 현재까지 위기청소년관련 사업을 해오지 않아 관련이 없다고 느껴서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표 V-8> 지역별·조직유형별 응답기관의 수

단위: 개소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K지역	계		
		A	B	C	D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9	2		11	11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1		1	8
		지역아동센터			1	2	1	4	
		사회복지관		1	1			1	
	자영업관련 단체	택시, 찜질방, 노래방, PC방 협회					1	1	1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2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1				1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1			1	1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1	1		1	4	10
		시군구지원센터		2		1	1	2	
서비스 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1	1			2	3
		공부방				1		1	
	직업훈련	자활지원관			2			2	2
	보호시설	쉼터		1	4	1		1	7
그룹홈					2	2			
육아원(보육원)					1	1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1	1			2	5	
	공공 치료시설			1			1		
	의료관련 단체					1	1		
	일반병원(민간, 공립)						1		1
법률기관단체	범죄예방위원회			1			1	1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1	1	7	
	청소년단체					1	1		
	자원봉사관련시설				3		3		
	일반시민단체			1	1		2		
계		8	24	13	10	6	61		

## (2) 조직유형별 인력규모 실태

응답한 기관들의 인력규모는 <표 V-9>와 같이 나타났다. <표 V-9>에 의하면 정규직원 수가 40명 이상인 조직은 학교, 소년분류심사원, 육아원(보육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공공 치료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 수가 20명이상인 조직은 자원봉사 관련시설이었으며 10명 이상인 조직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시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이었다. 5명 이상인 조직은 시군구지원센터, 쉼터,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센터로 나타났으며 이외 조직은 정규직원 수가 5명 미만으로 매우 작은 조직이다. 정규직원 수에 따라 조직유형을 분류한 것은 <표 V-10>과 같다.

계약직 직원의 수는 시도상담지원센터가 23.0명, 시군구지원센터가 7.7명으로 여러 조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동반자의 고용에 따른 것이다. 다른 조직은 모두 5명 미만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자 수는 사회복지관이 250명, 자원봉사센터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30명 이상 활용하는 조직으로는 시도상담지원센터가 53.0명, 의료관련단체가 47.0명, 자활지원관이 32.5명, 육아원(보육원)이 30.0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쉼터나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과 청소년단체와 일반시민단체가 평균 10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직원의 규모가 큰 조직인 학교,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치료시설 등에서는 계약직이나 자원봉사자 활용이 적다.

사회복지관, 육아원, 자활지원관, 쉼터,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들은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도나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직 직원 수로 볼 때 중간규모의 조직이며 계약직 직원 수가 많고, 자원봉사자 활용이 많은 편인 조직으로 평가된다.

<표 V-9> 조직유형별 인력규모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규상근직원수	계약직 직원수	자원봉사자 수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40.7	4.1	3.2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13.0	0.0	0.0
		지역아동센터	2.8	0.0	9.8
		사회복지관	15.5	3.0	250.0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4.0	1.0	0.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2.0	1.0	0.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41.0	0.0	0.0	
허브 체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12.5	23.0	53.0
		시군구지원센터	8.3	7.7	19.0
서비 스 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12.0	3.0	35.0
		공부방	1.0	4.0	8.0
	직업훈련, 고용지원기관	자활지원관	2.0	2.0	32.5
	보호시설	쉼터	6.1	0.6	10.1
		그룹홈	2.5	0.5	10.0
		육아원(보육원)	23.0	0.0	30.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5.0	1.5	7.5
		공공치료시설	43.0	0.0	3.0
		의료관련 단체	3.0	0.0	47.0
		일반병원(민간, 공립)	-	-	-
	법률기관 단체	범죄예방위원협의회	3.0	0.0	0.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6.0	0.0	150.0
청소년단체		2.0	0.0	14.0	
자원봉사관련시설		21.3	1.5	-	
일반시민단체		2.0	1.5	12.5	

<표 V-10> 정규직원 규모로 본 조직유형 분류

정규직원 수	해당 조직 유형
40명 이상	학교, 소년분류심사원, 육아원(보육원), 공공 치료시설
20명이상-40명 미만	자원봉사 관련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10명 이상-20명 미만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시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5명 이상-10명 미만	시군구지원센터, 쉼터,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센터
5명 미만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공부방, 자활지원관, 그룹홈, 의료관련단체,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청소년단체, 일반시민단체

### (3) 조직유형별 연간 예산규모 실태

조직유형별 연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표 V-11>와 같다. 연간 예산 규모가 10억 이상 되는 가장 큰 조직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연간예산이 25억원이었다. 연간 예산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직은 먼저 학교와 육아원이 있다. 연간 예산이 9억7천만원이다. 또한 대안학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로 대안학교는 7억 7천, 사회복지관은 6억 2천, 자원봉사센터는 5억 6천만원선으로 연간예산이 연간 예산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다.

연간 예산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조직은 쉼터(4억1천만원), 시도상담지원센터(2억9천만원), 정신보건센터(2억8천만원), 시군구지원센터(1억5천만원), 의료관련단체(1억5천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1억원)이다.

자원봉사관련시설(7천2백만원), 자활지원관(5천5백만원), 지역아동센터(4천4백만원), 그룹홈(4천2백만원), 청소년단체(4천만원), 일반시민단체(3천5백만원), 공부방(1천2백만원) 등은 연간 예산이 1억원이 안되는 매우 영세한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안전망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조직유형별 연간 예산 규모

단위: 만원

조직 유형		연간 예산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97,333.3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4,460.0
		사회복지관	62,900.0
	자영업체	택시, 노래방, PC방 협회	-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10,000.0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250,000.0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29,299.5
		시군구지원센터	15,029.6
서비스 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77,469.5
		공부방	1,270.0
	직업훈련	자활지원관	5,500.0
		쉼터	41,503.9
		그룹홈	4,200.0
	보호시설	육아원(보육원)	97,892.0
		정신보건센터	28,899.0
		공공치료시설	-
	의료기관	의료관련 단체	15,260.0
		일반병원(민간, 공립)	-
		법률기관	범죄예방위원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56,000.0
		청소년단체	4,000.0
		자원봉사관련시설	7,200.0
		일반시민단체	3,500.0
계		41,9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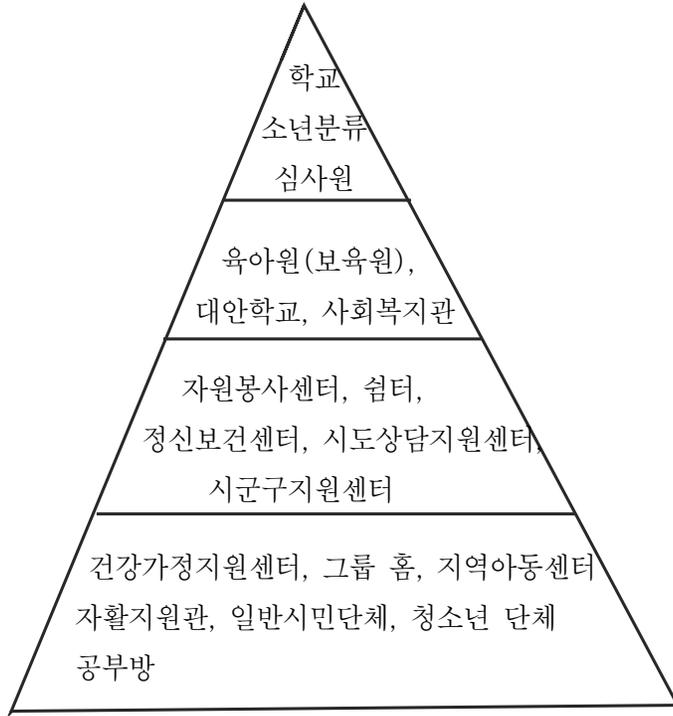
<표 V-12> 예산 규모에 따른 조직 분류

연간 예산규모	해당 조직 유형
10억 이상	소년분류심사원
1억 - 10억 미만	학교, 육아원, 대안학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1억원 - 5억원 미만	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시군구지원센터, 의료관련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원 미만	자원봉사관련시설, 자활지원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단체, 일반시민단체, 공부방

전체 평균값을 0, 분산을 1로 하여 안전망 참여기관의 정규직 인력과 예산규모를 정규화한 결과는 <표 V-13>과 같다. <표 V-13>에 의하면 평균값이 1이상인 조직 위세순위가 높은 조직은 소년분류심사원과 학교, 육아원이다. 평균값이 0-1이상인 중상수준의 조직은 대안학교, 사회복지관이다. 자원봉사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쉼터, 정신보건센터, 시군구지원센터는 0과 -1사이에 속하는 안전망에서 위세수준이 중하위인 조직이다. 안전망 내에서 위세가 가장 낮은 조직은 공부방,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자활지원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이다. 조직의 위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다.

<표 V-13> 조직유형별 위세 순위

조직 유형	사례수	기관인원 정규화 평균	기관인원+결산액 정규화 평균
소년분류심사원	(1)	1.53	5.34
학교	(11)	1.51	2.54
육아원(보육원)	(1)	0.53	1.60
대안학교	(2)	-0.09	0.62
사회복지관	(3)	0.11	0.55
자원봉사센터	(1)	-0.42	-0.10
시도상담지원센터	(4)	-0.06	-0.22
쉼터	(7)	-0.41	-0.35
정신보건센터	(2)	-0.48	-0.64
시군구 지원센터	(6)	-0.29	-0.95
의료관련 단체	(1)	-0.59	-1.00
건강가정지원센터	(1)	-0.53	-1.04
자원봉사관련시설	(3)	0.43	-1.09
그룹홈	(2)	-0.61	-1.14
지역아동센터	(4)	-0.60	-1.21
자활지원관	(2)	-0.64	-1.23
일반시민단체	(2)	-0.64	-1.26
청소년단체	(1)	-0.64	-1.26
공부방	(1)	-0.70	-1.36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	-0.64	.
어린이집	(1)	-0.03	.
택시, 찜질방, 노래방, PC방협회	(1)	.	.
일반병원(민간, 공립)	(1)	-0.70	.
공공치료시설	(1)	1.64	.
범죄예방위원회	(1)	-0.59	.



<그림 V-1> 안전망 참여기관의 조직유형별 위세

#### (4) 조직의 운영주체

조직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이 55.7%로 가장 많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하는 조직이 24.6%이다. 이외 사회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조직이 각각 9.9%, 8.2%로 나타났다.

<표 V-14> 수탁단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빈도(%)
국가·지방자치단체직영	15 (24.6)
법 인	34 (55.7)
사 회 단 체	6 (9.9)
개 인	5 (8.2)
무 응 답	1 (1.6)
계	61 (100.0)

## 2) 조직유형별 연계협력 실태

### (1) 조직유형별 협력합의기관 현황

조직유형별로 협력합의 기관수를 살펴보면 <표 V-15>와 같다. <표 V-15>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 상담지원센터가 협력 합의하기로 한 기관 수가 각각 58.3개소, 53.3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시도 및 시군구 (상담)지원센터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지원체계사업을 맡으면서 의욕적으로 연계합의기관 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연계합의기관 수가 많은 조직은 대안학교(10개), 육아원(8개), 쉼터(7.4개)이다. 조직의 기능상 타 기관과 많이 연계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일반시민단체의 협력합의기관은 각각 7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와 유사하게 공공조직적 성격을 갖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각각 6개와 6.5개로 상담지원센터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상담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자원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 조직유형별 협력 합의기관 현황

단위: 개소

안전망 참여 기관			연계 합의기관수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n=9)	5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n=1)	5
		지역아동센터 (n=3)	4.3
		사회복지관 (n=3)	5
	자영업단체	택시조합 (n=1)	2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n=1)	4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n=1)	6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n=4)	58.3
		시군구지원센터 (n=6)	53.3
서비스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n=1)	10
		공부방 (n=1)	4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기관	자활지원관 (n=1)	4
	보호시설	쉼터 (n=7)	7.4
		그룹홈 (n=1)	5
		육아원(보육원) (n=1)	8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n=2)	6.5
		공공치료시설 (n=1)	2
		의료관련 단체 (n=1)	5
		일반병원 (n=1)	1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n=1)	7
		자원봉사관련시설 (n=2)	2
		청소년단체 (n=1)	2
일반시민단체 (n=2)		7	

(2) 조직유형별 사례 의뢰 및 재배치 실태

지난 6개월간 조직유형별 사례의뢰 및 재배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V-16>과 같다.

<표 V-16> 조직유형별 사례의뢰 및 재배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스스로	지인소개	타기관수	타기관소개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n=11)	0.8	0.2	0.4	1.4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n=1)	0.0	0.0	0.0	0.0
		지역아동센터 (n=4)	3.5	8.0	1.8	5.0
		사회복지관 (n=3)	0.0	1.0	0.3	3.3
	자영업체	택시, PC방 협회 (n=1)	0.0	0.0	0.0	0.0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n=1)	0.0	0.0	1.0	3.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n=1)	103.0	24.0	1.0	93.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n=1)	0.0	0.0	1.0	250.0	
허브 체계	청소년상담	시도상담지원센터(n=4)	21.5	23.5	9.5	119.3
	지원센터	시군구지원센터 (n=6)	2.8	38.2	7.0	88.0
서비 스 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n=2)	4.0	2.0	1.0	2.0
		공부방 (n=1)	24.0	0.0	0.0	0.0
	직업훈련	자활지원관 (n=2)	7.5	1.5	5.0	150.5
	보호시설	쉼터 (n=7)	29.7	3.4	3.0	18.6
		그룹홈 (n=2)	0.0	0.0	0.0	0.0
		육아원(보육원) (n=1)	0.0	0.0	2.0	9.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n=2)	0.0	0.0	0.5	1.5
		공공치료시설 (n=1)	7.0	1.0	1.0	7.0
		의료관련 단체 (n=1)	0.0	0.0	4.0	23.0
		일반병원 (n=1)	0.0	0.0	2.0	7.0
법률기관	범죄예방위원협의회(n=1)	0.0	0.0	0.0	0.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n=1)	0.0	0.0	0.0	0.0	
	자원봉사관련시설 (n=3)	0.0	0.0	0.0	0.0	
	청소년단체 (n=1)	0.0	0.0	0.0	0.0	
	일반시민단체 (n=2)	0.0	0.5	1.5	7.0	
계 (n=61)		8.1	6.8	2.3	31.0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가 많은 조직은 소년분류심사원(250명), 자활지원관(150.5명), 시도상담지원센터(119.3명),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93.0명), 시군구지원센터(88.0명)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사례를 의뢰한 기관은 법원 1개 기관이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된 사례는 모두 학교로부터 온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과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는 각각 사법체계와 교육체계 속에서 사례를 의뢰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은 없다.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의 경우 의뢰되는 전체사례 중 지인이나 스스로 찾아오는 사례가 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사례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평균적으로 9.5개의 기관에서 사례를 의뢰받고 있으며 타기관에서 의뢰받는 사례가 스스로, 또는 지인의 소개로 의뢰받는 사례보다 2배 이상 되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 역시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 7.0개의 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의뢰 받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의뢰받은 수가 스스로 오거나 지인소개로 오는 사례 수의 2배가 넘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외부기관에서 사례를 의뢰받는 조직은 의료관련단체이다. 이 조직은 지난 6개월 동안 4개의 기관으로부터 평균 23.0명의 사례를 의뢰받았다.

보호시설 중에는 쉼터가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례수가 많다. 쉼터는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3.0개의 조직으로부터 18.6명의 사례를 의뢰 받고 있다. 쉼터의 경우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29.7명)나 지인소개로 온 경우(3.4명)가 더 많다. 그룹홈이나 육아원은 쉼터에 비해 타기관에서 사례의뢰를 받는 경우가 적다. 육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2개 조직에서 9명을 의뢰 받았지만, 그룹홈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사례를 전혀 의뢰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은 장기보호시설로 새로운 사례를 추가해서 받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례를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결과를 조직유형별로 살펴본 것이 <표 V-17>이다.

<표 V-17> 사례 재배치 기관 및 인원 현황

안전망 참여 기관		기관수 (개소)	인원수 (명)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n=11)	0.8	11.4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n=1)	0.0	0.0
		지역아동센터 (n=4)	1.0	2.5
		사회복지관 (n=3)	0.7	1.0
	자영업체	택시, PC방 협회 (n=1)	0.0	0.0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n=1)	0.0	0.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n=1)	3.0	16.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n=1)	0.0	0.0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n=4)	10.8	32.8
		시군구지원센터 (n=6)	3.2	13.0
서비스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n=2)	3.0	23.0
		공부방 (n=1)	0.0	0.0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기관	자활지원관 (n=2)	0.5	4.0
	보호시설	쉼터 (n=7)	2.3	3.4
		그룹홈 (n=2)	0.0	0.0
		육아원(보육원) (n=1)	0.0	0.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n=2)	3.5	6.5
		공공치료시설 (n=1)	0.0	0.0
		의료관련 단체 (n=1)	0.0	0.0
		일반병원 (n=1)	0.0	0.0
	법률기관 단체	범죄예방위원협의회 (n=1)	0.0	0.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n=1)	0.0	0.0
		자원봉사관련시설 (n=3)	0.0	0.0
청소년단체 (n=1)		0.0	0.0	
일반시민단체 (n=2)		1.5	2.0	

<표 V-17>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사례를 다른 기관에 많이 재배치한 조직은 시도상담지원센터(32.8명), 대안학교(23.0)명,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16.0명), 시군구지원센터(13.0명)로 나타났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평균 10.8개의 기관에 재배치하여 연계협력기관이 다양하다. 그러나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지원센터, 대안학교는 각각 3개정도의 기관에 재배치한 것을 보아 재배치기관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재배치기관 수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다른 기관에 사례를 재배치한 조직은 학교(11.0명)이다.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있고 이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이 학교의 필요하다고 할 때 학교의 학생규모에 비해서는 사례를 의뢰한 수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리고 의뢰재배치하는 기관도 0.8개로 매우 적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 단 1명이라도 지난 6개월간 타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사례가 있는 조직은 정신보건센터(6.5명), 자활지원관(4.0명), 쉼터(3.4명), 지역아동센터(2.5명), 일반시민단체(2.0명), 사회복지관(1.0명) 등이다. 이 중 정신보건센터는 3.5개의 기관, 쉼터는 2.3개의 기관에 사례를 의뢰재배치하고 있다. 이외 다른 조직들은 다른 기관에 사례를 의뢰한 경우가 없었다.

### (3) 조직유형별 서비스 교환 프로그램 수

#### ① 조직유형별 서비스 교환 기관 수

<표 V-18>은 지난 6개월 동안 서비스를 교환한 기관수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서비스 교환기관이 많은 조직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지원센터 등이다. 교육청 상담지원센터는 서비스를 받은 기관보다 제공한 기관이 훨씬 더 많다. 즉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서비스를 받은 기관과 제공한 기관수가 각

각 8.0기관, 7.8기관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기관과 활발하게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다. 허브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시군구지원센터는 서비스를 받은 기관보다 제공한 기관이 2배 이상 많다. 이는 시군구지원센터의 본래 기능이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이었다는 점과 통합지원체계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주기보다 받은 기관이 더 많은 조직은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소년분류심사원, 대안학교, 공부방, 쉼터, 그룹홈, 육아원 등이다. 이들 시설의 공통점은 청소년이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서비스를 받은 기관보다 준 기관이 더 많은 조직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료관련단체, 일반시민단체 등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문성을 기초로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자활지원관은 서비스를 주고받는 기관수가 유사하다. 자활지원관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기관은 각각 3.5개, 3.0개로 시도상담지원센터에 비해 적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도상담지원센터가 가장 서비스 교환기관 수가 많아 허브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② 서비스 교환현

<표 V-18> 서비스 교환 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안전망 참여 기관		서비스를 받은 기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n=11)	2.3	0.1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n=1)	1.0	0.0
		지역아동센터 (n=4)	2.3	0.3
		사회복지관 (n=3)	0.0	0.3
	자영업체	택시, PC방 협회 (n=1)	0.0	2.0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n=1)	0.0	0.0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n=1)	2.0	11.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n=1)	3.0	0.0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n=4)	8.0	7.8
		시군구지원센터 (n=6)	4.3	8.5
서비스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n=2)	2.0	0.0
		공부방 (n=1)	3.0	1.0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기관	자활지원관 (n=2)	3.0	3.5
	보호시설	쉼터 (n=7)	3.6	0.1
		그룹홈 (n=2)	1.5	0.0
		육아원(보육원) (n=1)	1.0	0.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n=2)	1.0	3.0
		공공치료시설 (n=1)	0.0	0.0
		의료관련 단체 (n=1)	1.0	4.0
		일반병원 (n=1)	0.0	0.0
	법률기관	범죄예방위원협의회 (n=1)	0.0	0.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n=1)	0.0	0.0
		자원봉사관련시설 (n=3)	0.0	0.0
		청소년단체 (n=1)	0.0	0.0
일반시민단체 (n=2)		0.5	4.0	

③ 조직유형별 교환 프로그램 수

<표 V-19>는 조직유형별로 교환한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V-19> 교환한 프로그램 수

단위 : 개수

안전망 참여 기관		제공받은 프로그램	제공한 프로그램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n=11)	3.2	0.5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n=1)	3.0	0.0
		지역아동센터 (n=4)	4.0	0.8
		사회복지관 (n=3)	0.0	0.3
	자영업체	택시, PC방 협회 (n=1)	0.0	2.0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n=1)	0.0	0.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n=1)	2.0	9.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n=1)	4.0	0.0	
허브 체계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n=4)	6.0	5.8
		시군구지원센터 (n=6)	5.0	8.0
서비스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n=2)	2.0	0.0
		공부방 (n=1)	3.0	1.0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기관	자활지원관 (n=2)	3.0	2.0
	보호시설	쉼터 (n=7)	4.4	0.1
		그룹홈 (n=2)	1.5	0.0
		육아원(보육원) (n=1)	1.0	0.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n=2)	1.0	2.0
		공공치료시설 (n=1)	0.0	0.0
		의료관련 단체 (n=1)	1.0	2.0
		일반병원 (n=1)	0.0	0.0
	법률기관 단체	범죄예방위원협의회 (n=1)	0.0	0.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n=1)	0.0	0.0
		자원봉사관련시설 (n=3)	0.0	0.0
청소년단체 (n=1)		0.0	0.0	
일반시민단체 (n=2)		0.5	2.0	

<표 V-19>에 의하면 제공한 프로그램 수가 많은 조직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9.0개), 시군구지원센터(8.0개), 시도상담지원센터(5.8개)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 제공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 되는 조직으로는 택시 등 자영업관련단체, 자활지원관, 정신보건센터, 의료관련단체, 일반시민단체이다.

제공받은 프로그램 수가 많은 조직은 시도상담지원센터(6.0개), 시군구지원센터(5.0개) 외에 쉼터(4.4개), 지역아동센터(4.0개), 소년분류심사원(4.0개)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조직으로는 학교(3.2개), 어린이집(3.0개), 공부방(3.0개), 대안학교(2.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2.0개) 등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나 시군구지원센터는 제공한 프로그램 수와 제공받은 프로그램 수가 모두 많다. 그런데 비해 교육청 상담지원센터는 제공받은 프로그램 보다는 제공한 프로그램 수가 더 많다.

#### (4) 조직유형별 연계협력 수준

조직유형별 사례의뢰 및 재배치 기관수, 의뢰 및 재배치 사례수, 서비스 교환 기관 수 및 서비스 교환 프로그램 수를 종합하여 조직유형별 연계협력 순위를 산출하였다. <표 V-20>는 조직유형별 사례의뢰 및 재배치 기관수 및 사례수, 프로그램 교환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를 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을 1로 하여 정규화한 점수이다.

25개 조직유형의 연계협력 수준 평균을 0으로 볼 때 시도상담지원센터의 점수는 10.35점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시군구 지원센터는 5.98점으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계협력 수준이 평균 이상인 조직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자활지원관이다. 전체적인 연계협력수준 값의 분포를 볼 때 평균값이 0이상인 조직은 안전망 내에서 연계협력수준이 높은 기관이다.

연계협력수준 값이 0에서 -1 사이에 속하는 조직은 쉼터, 대안학교, 의

료관련단체, 정신보건센터, 소년분류심사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다. 평균 이하이기는 하지만 이 조직들도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연계수준이 높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공부방, 어린이집, 육아원, 자영업관련단체, 그룹홈 등은 연계수준 값이 -2에서 -4에 속하는 중하위조직이다.

범죄예방위원협의회, 청소년단체, 자원봉사관련시설, 공공치료시설,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병원 등은 안전망 내에 사례의뢰나 재배치, 서비스 교환 등에서 조직간 연계수준이 가장 낮은 조직이다. 조직간 연계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표 V-20> 조직유형별 연계협력순위

	사례수	기관실적 정규화평균
시도상담지원센터	4	10.35
시군구지원센터	6	5.98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	3.84
자활지원관	2	0.71
쉼터	7	-0.75
대안학교	2	-1.15
의료관련 단체	1	-1.48
정신보건센터	2	-1.48
소년분류심사원	1	-1.52
지역아동센터	4	-1.69
학교	11	-1.99
일반시민단체	2	-2.18
공부방	1	-2.45
어린이집	1	-3.56
육아원보육원	1	-3.58
택시, 짬질방, 노래방, PC방 협회	1	-3.76
그룹홈	2	-3.88
일반병원민간, 공립	1	-4.19
사회복지관	3	-4.28
건강가정지원센터	1	-4.49
자원봉사센터	1	-4.79
공공치료기관	1	-4.79
자원봉사관련시설	3	-4.79
청소년단체	1	-4.79
범죄예방위원	1	-4.79

### (5) 조직유형별 공동대응 이슈

서로 다른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조직의 협력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공동으로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들과 공동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 응답한 조직은 5개 지역에서 모두 10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역사회 조직들이 그 만큼 공동 대응할 만한 사안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조직유형별로 볼 때 시도상담지원센터 1곳, 시군구지원센터 3곳이 공동 대응 이슈에 대해 응답하였다. (상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대응한 이슈는 통합지원체계 운영, 상단지원센터협의회 운영, 위기청소년 사례회의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상담)지원센터와 협의한 것이며 지역사회 타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후원, 아동학대, 청소년 진로 등 사안을 놓고 다른 단체, 교회, 공공기관 동아리, 그룹홈, 시청, 고용안정센터 등 유사기관과 협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학교는 2개 기관이 응답하였다. 이슈는 교육복지 발전방향이었으며 사회복지관 협의회, 지역협의회와 공동 대응하였다.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다른 사회복지관,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였다.

동일지역에 있는 쉼터와 시민단체는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다른 단체와 공동 대응한 바가 있다.

자활지원관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에 관한 토론에 공동 대응한 바가 있다.

각 기관들이 공동 대응한 사안을 분석해 볼 때 한 기관의 이슈에 다른 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 협조하는 수준이거나 토론회나 워크숍을 같이 하는 수준에 있다. 서로 다른 지역기관들이 공동의 당면과제를 놓고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사회 내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는 수준에 있지는 않다.

<표 V-21> 공동대응 이슈

	이슈	공동대응조직
시도상담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회의</li> <li>■ 상담 센터 명칭에 관한 의견제출</li> <li>■ 상담실·상담원 연합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시 지원센터</li> <li>■ 센터협의회</li> <li>■ 관련기관</li> </ul>
시군구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S-NET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지원센터협의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후원문제</li> <li>■ 아동학대방임문제</li> <li>■ 청소년진로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 교회 ■ 그룹홈</li> <li>■ 공공기관동아리</li> <li>■ 아동보호기관, 시청</li> <li>■ 고용안정센터 ■ 유관기관</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현안</li> <li>■ 교육복지발전방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관</li> <li>■ 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복지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li> </ul>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인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 단체</li> </ul>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단체</li> </ul>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협의회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li> </ul>
자활지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원센터 및 상담센터</li> </ul>

### 3) 지역별 연계협력 실태분석

#### (1) A지역

##### ① 협력 합의기관 실태

A지역 상담지원센터가 보고한 연계협의 기관수는 총 284개이다. 이 중 200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A지역에서 보고한 연계협의기관 목록은 총 52개의 기관이었다. 52개 기관 중 본 조사에 응답한 8개 기관의 응답결과는 <표 V-22>과 같다. 8개 기관 중 정신보건센터 1곳만이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합의를 맺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와 지역기관의 연계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응답기관 중에는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개 시군구 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시군구 센터와 시도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허브체계로서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센터가 연계되지 않은 채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2> A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응답구분	교육기관		지역시설		상담센터		공공기관		학습지원		보호시설		의료기관		활동기관				기타	계	
	학교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	경찰서	정부구청	보호관찰소	학원	방과후아카데미	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원	자원봉사센터	문화센터	인성교육	수련관	청소년단체	교회		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관	4					1								1	1				1		8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1	1	1						1			1		1						6
대안학교						4					1	1					1	3			10
쉼터					1	1		1			1	1									5
정신보건 센터						1					1	1							1		4
시군구 지원센터1	14	1			1	1															17
시군구 지원센터2	10	3				2			2	3	1		4								25
시도상담 지원센터	지역자원 유형과 수 참조																			284	

## ②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사례 의뢰 및 재배치 현황을 보고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V-23>과 같다. <표 V-23>을 보면 5개 기관 중 어느 기관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받거나 재배치한 경우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각 기관의 사례는 청소년 스스로 오거나 부모 등 지인의 소개로 온 경우가 많았다. 기관소개로 온 경우 학교에서 의뢰한 경우가 가장 많아 학교가 가장 강력한 의뢰기관이자 발견체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쉼터는 학교로부터, 시군구지원센터는 보육원으로 부터 사례를 의뢰받았다.

8개 조직 중 비교적 활발하게 사례를 의뢰받고 재배치하는 조직은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이 지역 허브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쉼터는 각각 220사례 중 16사례, 208사례 중 9사례만 타 기관에 의뢰 재배치한 반면,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는 295사례 중 62사례, 290사례 중 48사례를 재배치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는 병원, 복지관, 건강강정지원센터 3개 기관에, 쉼터는 다른 쉼터 1곳에 사례를 재배치하고 있다. 다른 쉼터는 단기쉼터로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장기쉼터에 재배치하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는 학교, 병원, 복지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4개 기관에, 시도상담지원센터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원, 대안학교, 쉼터, 그룹홈, 기타보호시설,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10개 기관에 사례재배치를 했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을 토대로 할 때 시도상담지원센터의 허브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대안학교는 의뢰 받은 수에 비해 재배치한 사례가 약 3배가량 된다. 의뢰 받은 사례수 대비 가장 많은 사례를 재배치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원, 다른 대안학교 등 5개 기관에 다양하게 사례를 재배치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에는 활동프로그램, 보건소에는 체력검증서비스, 청소년상담원에는 집단상담, 정신보건센터에는 가

족상담과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관련 프로그램을 의뢰하였다. 대안학교는 자기 학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여러 기관으로 재배치의뢰를 받은 조직은 병원이다. 7개 조직 중 4개 조직이 병원으로 재배치 의뢰를 하고 있다. A지역 안전망에서 의료기관이 서비스지원체계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기관간의 연계성은 사례의뢰 및 재배치를 통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의 광범위한 연계망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가진 매우 큰 도시이다. 그러나 이 지역 지역사회 안전망은 발견체계로서는 학교, 서비스지원체계로서는 의료기관이 작동하고, 상담지원센터가 허브기관으로 작동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응답기관이 7개 기관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 기관간의 사례의뢰 및 재배치를 위한 연계망은 역시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표 V-23> A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응답구분 조직유형	개인적의뢰		교육기관		지역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학습기관		
	청소년스스로온 경우	지인의 소개온 경우	학교	교육청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원	성폭력상담소	경찰서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대안교육센터
사회복지관			10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03	24	93		(2)		(5)								
대안학교	8	4							(7)			(1)			1
쉼터	147	1	37							23					
정신보건센터															
시군구 지원센터	8	30	136(5)		27(30)					2				65(5)	
시도상담 지원센터	34	60	68	2	(1)	(3)		(3)	(1)		19	16	6(2)		
계	300	119	344(5)	2	27(33)	(3)	(5)	(3)	(8)	2	42	16	6(3)	65(5)	1

<표 V-23> A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연속 표)

단위: 명

응답구분 조직유형	직업훈련 지원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활동기관				계	
		쉼터	그룹홈	보육원	기타 보호시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원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일반시민단체	기타		
사회복지관														10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9)						220(16)
대안학교						(14)	(10)		(14)		3			16(46)
쉼터		(9)												208(9)
정신보건센터							(5)	(6)						(11)
시군구 지원센터				12				(8)						290(48)
시도상담 지원센터	2	11(46)	(3)		(1)		1	1(1)	67	(1)		8		295(62)
계	2	11(55)	(3)	12	(1)	(14)	1(15)	1(24)	67(14)	(1)	3	8		1,039((192))

\* ( ) 없는 수자- 의뢰받은 수

( ) 수자 -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수

### ③ 서비스교환실태

A지역에서 6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와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표 V-24>과 같이 응답하였다. 교육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주로 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관련 상담, 또래상담교육, 폭력예방교육, 진로교육, 리더십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제공하였다. 학교청소년을 주요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나 쉼터는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았으며 시민단체와 여성발전센터로부터 미디어교육과 진로교육을 제공받았다. 정신보건센터는 초등학교에 연수와 조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서비스 교환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시군구지원센터는 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관련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기관에 비하면 이 센터들은 중,고등학교에 매우 많은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군구지원센터 2는 수련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복지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다른 기관에 다시 연계한 서비스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군구지원센터2는 센터1과 다르게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원센터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기관에 청소년을 의뢰재배치하는 건수가 적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을 미루어 보아 이 센터는 서비스 제공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4> A지역 서비스 교환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프로그램(건강가정지원센터)</li> <li>■ 부적응학생프로그램(복지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가해자상담프로그램</li> <li>■ 또래상담교육 ■ 폭력예방교육</li> <li>■ 진로탐색교육 ■ 리더십교육</li> <li>■ 성희롱</li> <li>■ 예방 교육 (다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li> </ul>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교육(시민단체)</li> <li>■ 건강검진, 심리검사(정신보건센터, 보건소)</li> </ul>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검사(정신보건센터)</li> <li>■ 진로교육(여성발전센터)</li> <li>■ 진료(병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봉사프로그램(중고등학교)</li> </ul>
정신보건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교사직무연수</li> <li>■ ADHD선별조사실시(초등학교)</li> </ul>
시군구 지원 센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험캠프(국가청소년위원회)</li> <li>■ 청소년공부방(학교)</li> <li>■ 문신제거(학교)</li> <li>■ 비보이즈공연초청(시민단체)</li> <li>■ 파랑새어린이기금(병원)</li> <li>■ 위기청소년의료지원(서울의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 ■ 심리검사</li> <li>■ 품성개발 ■ 개인상담&amp;수퍼비전</li> <li>■ 진로탐색(다수의 중고등학교)</li> <li>■ 왕따 예방(서울대)</li> <li>■ 의사소통(대안학교)</li> <li>■ 푸른교실(수련관)</li> <li>■ 부모교육(청소년지원센터)</li> <li>■ 상담사례연구모임(상담실협의회)</li> <li>■ 자원봉사자교육</li> </ul>
시군구 지원 센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사회봉사지도,생활지도(수련관)</li> <li>■ 금연교육 ■ 의료(보건소)</li> <li>■ 자원봉사(자원봉사센터)</li> <li>■ 방과후교실(복지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 ■ 부적응학생특별지도</li> <li>■ 부모교육 ■ 순회상담</li> <li>■ 집단놀이치료 ■ 미술치료</li> <li>■ 양육상담(다수의 중학교, 고등학교, 보육원, 방과 후 아카데미)</li> </ul>

(2) B지역

① 협력합의기관 실태

B지역에서 협력합의기관 현황에 대해 응답한 기관은 모두 18개 기관이며 그 결과는 <표 V-25>과 같다.

18개 기관 중 시도상담지원센터를 뺀 17개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협력합의기관으로 지목된 기관은 상담지원센터(9개 기관), 청소년단체(9개 기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6개 기관)이다. 안전망 내 청소년관련시설·단체의 비중이 높다. 안전망 내 또 하나의 특징은 쉼터는 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학교는 청소년단체, 수련관, 복지관과 연계하고 있다. 안전망 구조로 볼 때 1차기관은 1차 기관과 2차기관은 2차 기관과 연계가 강하다.

<표 V-25> B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응답구분	교육 기관		지역 시설	상담 기관	공공 기관		직업 훈련	보호 시설	의료 기관		활동 기관		기타	계								
	학교	교육청	복지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경찰서	정부구청	보호관찰소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관련기관	쉼터	병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센터	문화센터	인성교육	수련관	청소년단체	교회	상담지원센터	
교육 기관	학교1			2																	2	
	학교2	1	1															2			4	
	학교3	4		1		1	4					1			1	1	2			1	16	
	학교4																1	1	2		4	
	학교5		1			1			1												7	
	학교6			2	1								1								1	5
	학교7															3						3
지역 시설	사회복지관		1							1	2							1		1	6	
	지역아동센터					1						1	3							1	6	
직업	자활지원관			1				2												1	4	
보호 시설	쉼터1							1	3								1			2	7	
	쉼터2			1				1	3											1	6	
	쉼터3			1					2	1	1	1									6	
	쉼터4			1		1						1		1	3					1	8	
의료 시설	정신보건센터		1	1						2	2						2			1	9	
	공공치료시설				1						1											
단체	일반단체	10																2			12	
	시도상담 지원센터	지역자원 유형과 수 참조																		158		

## ②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

B지역에서 15개 기관이 의뢰재배치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V-26>과 같다. 지난 6개월간 사례를 250명 이상 많이 의뢰받은 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 자활지원관, 시도상담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자활지원관은 학교 1개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고 있는 안전망 내에 기능이 뚜렷한 특성화된 조직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지방가정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을 의뢰받아 보호하면서 심사 분류하여 평가내용을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기관이 다루는 청소년은 범죄청소년, 촉범청소년, 우범청소년들로 고위험군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부터 청소년을 의뢰받고 있다.

자활지원관1은 생활보호수급권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교육, 가족기능사업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이 기관은 빈곤계층의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기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활지원관2는 제과제빵 실습과 도자기제작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청소년이 대거 의뢰되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는 학교공부방, 복지관 등 지역이용시설,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사법시설, 시청, 구청, 공공기관 등 지역시설로부터 사례를 의뢰받고 있다. 안전망 내 허브기관으로서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담지원센터의 사례재배치 실적은 3개 기관에 3개 사례로서 아주 미미하다. 이것은 상담지원센터가 의뢰된 사례를 모두 조직 내에서 수용,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A지역과 달리 학교로부터 사례를 의뢰받았다고 응답한 조직은 불과 3개에 불과하다. B지역에서는 학교가 발견체계로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보호종합지원센터(5개 기관 응답), 경찰서(4개 기관), 소년분류심사원(1개 기관), 소년원(1개 기관), 보호관찰소(1개 기관) 등 사법시설이 발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B지역의 발견체계는 학교라는 1차안전망과

더불어 긴급구조시설, 사법시설 등 3차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례재배치를 많이 받은 기관은 상담지원센터(4개 기관)와 장기쉼터(4개 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안전망 내에서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B지역 안전망은 조직구조로 볼 때 1차에서 3차에 속하는 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위기청소년을 안전망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안전망 내에서 사례재배치를 하는 허브체계가 약하다는 점이다. 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확고한 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타 기관에 사례를 재배치하는 허브체계의로서의 기능은 약하다. 이는 지역자원의 부족으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26> B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응답구분 조직유형		개인적의뢰		교육기관		지역 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학습 기관	
		스스로 경우	지인 의소개로	교육 청	학 교	복 지 관	아 동 학 대 예 방 센 터	청 소 년 중 합 지 원 센 터	분 류 심 사 원	법 원	보 호 관 찰 소	경 찰 서	구 청	소 년 원	공 부 방
교육 기관	학교1			(13)		(6)									
	학교2														
지역 시설	사회복지관		3			(1)									
	지역아동센터	1	26												
법률 단체	소년분류심사원								250						
직업	자활지원관	15	3		295										1
보호 시설	쉼터1	22	5				6				8				
	쉼터2	22	5				(1)	6			8				
	쉼터3	16	7					1							
	쉼터4		5					3		14					
의료 단체	정신보건센터			3				(2)							
상 담 센 터	일반단체				10						1				
	시도상담지원센터	29	51	2	53 (1)	14			24	15		3	64	3	45
	계	105	105	5 (13)	358 (1)	14 (7)	(1)	16 (2)	24	265	14	20	64	3	46

<표 V-26> B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조직유형	응답구분	직업훈련			보호시설		의료기관	활동기관				상담지원센터	계
		자활지원관	직업학교	고용안정센터	장기쉼터	보육원	병원	인성교육	수련관	청소년단체	일반시민단체		
교육기관	학교1							(3)	(6)	(4)			(32)
	학교2									(*)			
지역시설	사회복지관											(2)	3(3)
	지역아동센터										(17)	(3)	27(20)
법률단체	소년분류심사원												250
직업	자활지원관				1								315
	쉼터1				(5)	1							42(5)
보호시설	쉼터2				(5)	1							42(6)
	쉼터3				(2)							(1)	24(1)
	쉼터4												22
의료	정신보건센터												3(2)
단체	일반단체						(1)					3(2)	14(3)
상담센터	시도상담지센터		1	(1)	(1)								301(3)
계			1	(1)	1(13)	2	(1)	(3)	(6)	(4)	(17)	3(8)	1,046(75)

\* ( ) 없는 수자- 의뢰받은 수

( ) 수자 -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수

### ③ 서비스교환실태

B지역 서비스 교환현황은 아래 <표 V-27>과 같다. <표 V-27>에 의하면 학교, 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소년분류심사원, 자활지원관 등은 지역 내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다. 청소년보호시설, 교육시설 등은 지역사회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B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신보건센터, 시도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단체 등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학교 등에 자아존중 프로그램 등 심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단체는 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가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V-27> B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학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 생활적응(수련관)</li> <li>■ 개별상담(교육청) ■ 집단 상담</li> <li>■ 학교폭력 예방(소년분류심사원)</li> </ul>	
학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청소년단체)</li> </ul>	
학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교육(소방서)</li> <li>■ 학교폭력예방(단체) ■ 체험(복지관)</li> <li>■ 집단 및 개인상담(교육청)</li> </ul>	
학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적응교육(복지관)</li> </ul>	
지역 아동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li> <li>■ 문화 활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련관, 일반단체)</li> </ul>	
시도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활동 ■ 진료</li> <li>■ 문화체험, 진료 ■ 심리평가</li> <li>■ 게임중독치료 ■ 금연프로그램</li> <li>■ 학습(복지관, 쉼터, 수련관, 병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대안학교, 공부방, 직업전문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 또래상담</li> <li>■ 자아성장프로그램 ■ 음악치료</li> <li>■ 심리검사 ■ 부모교육</li> <li>■ 품성개발 ■ 심리극상담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분류심사원, 복지관,</li> </ul>
소년 분류 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전문프로그램(상담지원센터)</li> <li>■ 성폭력상담(여성단체)</li> <li>■ 학교 폭력상담(청소년단체)</li> </ul>	
대안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성개발훈련(수련관)</li> </ul>	
자활 지원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지원</li> <li>■ 문화활동지원(일반시민단체)</li> </ul>	
자활 지원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생활 ■ 부식제공 ■ 멘토링</li> <li>■ 간식후원(고용안정센터, 일반 시민 단체, 푸드뱅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활동</li> <li>■ 체험학습지원(초중고등학교)</li> </ul>

<표 V-27> B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컴퓨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연교육</li> <li>■ 치료레크리에이션(보건소),</li> <li>■ 예술치료(국악단) ■ 검정고시</li> </ul>	
컴퓨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 ■ 심리검사</li> <li>■ 모래 및 푸드 치료(보건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대학교)</li> </ul>	
컴퓨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공예</li> <li>■ 홈페이지(여성인력개발센터)</li> <li>■ 성상담 및 성공부(성폭력상담소)</li> </ul>	
정신 보건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예방교육(협의회)</li> <li>■ 좋은 부모 되기(병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프로그램</li> <li>■ 중동조절교육 (보육원, 초등학교)</li> </ul>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청소년상담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li> <li>■ 학교 폭력 예방 워크숍,</li> <li>■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초중고등학교, 시설)</li> </ul>

### (3) C지역

#### ① 협력합의기관 실태

조사에 참여한 C지역 13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 협력합의기관현황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표 V-28>와 같다.

11개 기관 중 시군구지원센터와 협력합의를 했다고 응답한 기관 3개, 시도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합의를 했다고 응답한 조직은 1개로 미미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 학교(3개), 복지관(3개), 시청(3개)과 유사한 수준이다.

C지역에서는 시군구지원센터와 지역기관간의 연계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8> C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응답구분	교육기관	지역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학습기관	보호기관	의료기관	활동기관			기타	계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성상담소	청소년지원센터	정부구청동사무소 보건소 경찰서	대안학교	평생교육원 쉼터	그룹홈	병원	자원봉사센터	보육정보센터		일반단체 청소년단체 교회	상담지원센터
교육	학교1				1								1	2
	학교2			1	1									2
지역시설	지역아동센터	1						2	2			1		6
	어린이집	1			1	1				1	1			5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2									4
학습	공부방	1						1			1	1		4
보호	쉼터			1	1					2		2		6
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1	1	1		1									3
	자원봉사단체2									1				1
	시민단체				1				1					2
시군구지원센터	지역자원 유형과 수 참조											206		

②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

<표 V-29> C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응답구분	개인적 의뢰		교육기관	지역시설		공공기관				학습기관		직업훈련	보호시설			의료기관	계
	스스로 온 경우	지인의 소개로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구청동사무소	법률기관	청소년지원센터	경찰서	대안학교	공부방	직업훈련시설	쉼터	그룹홈	미혼모시설	병원	
조직유형																	
교육	학교							(5)									(5)
지역시설	지역아동센터1	10		*	*			(4)									10 (4)
	지역아동센터2	3	6			3							(1)	(2)			12 (3)
상담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3													3
보호	쉼터	*	*		* (*)			*	*			(*)	(*)	(*)	(*)		
단체	시민단체		1					(1)									1 (1)
시군구지원센터				25	33	5	4	(5)		(3)	6		(6)		(*)	(3)	73 (17)

\* -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음  
 ( ) 없는 수자 - 의뢰받은 수  
 ( ) 수자 -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수

C지역에서 청소년을 의뢰받거나 다른 기관에 재배치한 연계협력 사실은 7개 기관에서 나타났다. C지역의 의뢰재배치현황은 <표 V-29>와 같다.

C지역에서 사례의뢰 재배치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시군구지원센터이다. 5개 기관으로부터 73명을 의뢰받아 4개 기관에 17명을 재배치하였다. 이

지역의 경우 206개의 지역자원에 55개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로부터 사례를 의뢰받은 수는 25명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관에서 의뢰 받은 수가 33명으로 더 많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가 발견체계로 뚜렷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기타 다른 조직도 없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재배치를 했다고 응답한 조직은 4개 기관이다. 청소년지원센터 외에 사례를 재배치 받은 조직은 쉼터(1개기관), 그룹홈(1개기관) 뿐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내에 뚜렷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발견되지 않으며 청소년지원센터가 유일해 보인다. 참고로 청소년지원센터가 사례를 병원, 쉼터, 대안학교, 법률지원단체 등 4개 기관에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안전망 기관 내에 다른 조직들과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

C지역 의뢰재배치 현황을 통해 볼 때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사회안전망 내 유일한 허브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안전망에서는 발견체계, 지원체계로 작동하는 조직이 아직 확고하지 않으며 청소년지원센터가 유일하게 허브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 ③ 서비스 교환 실태

C지역의 7개 기관이 서비스 교환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표 V-30>와 같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직은 학교, 어린이집,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쉼터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학교는 청소년활동 관련기관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주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받았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센터로부터 운영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쉼터는 단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지역에서는 대학교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응답기관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시군구지원센터로 나타났으며 심리진단, 집단상담,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을 타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표 V-30> C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검사, 또래상담(청소년지원센터)</li> <li>■ 방과후프로그램(수련관), 학습지원,</li> <li>■ 가사도우미(복지관), 심성훈련(교육청)</li> </ul>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프로그램, 도서관운영(보육센터)</li> </ul>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청소년상담지원센터)</li> <li>■ 학습지원</li> <li>■ 예능활동(대학교)</li> </ul>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여가, 학습지도(시민단체, 대학교)</li> </ul>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청소년지원센터)</li> <li>■ 성교육(성상담소)</li> </ul>	
시군구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관리, 문화활동(기업)</li> <li>■ 방과후프로그램(수련관, 문화의집)</li> <li>■ 도시락배달(동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프로그램</li> <li>■ 심리진단</li> <li>■ 집단 프로그램, 또래상담</li> <li>■ 아웃리치, 품성개발, 학교 폭력예방</li> <li>■ 소외청소년사업(수련관, 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수의 중 고등학교)</li> </ul>

(4) D지역

① 협력합의기관 실태

D지역 조사 참여 10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협력합의기관 현황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표 V-31>와 같다.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합의를 했다고 응답했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2개 기관이 협력합의를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기관의 시군구지원센터와의 협력합의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다.

<표 V-31> D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응답구분 조직유형	교육기관	지역시설	자영업체	공공기관				학습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활동기관		기타		시군구지원센터	계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업	택시조합	검찰	보호관찰소	경찰서	구청	학원	보호시설	병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단체			자원봉사단체	푸드뱅크	협의회	교회
지역아동센터																		1	1	
택시조합			1																1	2
그룹홈								1		1					1		1		1	5
보육원	1			2			1		3										1	8
의료단체	*				1	1	1			1		1								6
청소년단체												1							1	2
자원봉사센터		1								1		1	5	4		2				14
시도상당지원센터				1							6					1				8
시군구지원센터	지역자원 유형과 수 참조															54				

②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

D지역에서 사례의뢰 및 재배치 현황에 대해 응답한 기관은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다. 응답결과는 <표 V-32>과 같다.

<표 V-32>에 의하면 시군구지원센터는 7개 기관으로부터 92사례를 의뢰받고 4개 기관에 7사례를 재배치하고 있다. 사례를 의뢰 받은 수는 응답기관 중 가장 많지만 재배치한 수는 적다. 아직 허브체계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D지역 기관들은 학교와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다. 학교와 경찰이 주요 발견체계이다.

D지역 안전망의 특성은 시도상담센터나 시군구지원센터가 성폭력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같은 유사상담시설과 사례를 의뢰받고 재배치하는 사례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쉼터, 병원 등에 재배치하고 있다. 시도나 시군구지원센터가 다른 유사상담기관과 기능상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V-32> D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응답구분 조직유형	개인적 의뢰		교육기관	지역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학습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활동기관	기타	상담지원센터	계	
	스스로온경우	지인의 소개로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서	학원	공부방	쉼터	보육원	아동일시보호시설	병원	수련관			청소년단체
지역아동센터																*		
보육원												6	3				9	
의료단체			22	1													23	
시도상담지원센터	1	14			(1)	(4)	21			(39)							10	46 (44)
시군구지원센터	5	7	42		9	(1)	3 (1)	14	2	9			(4)	1			(1)	92 (7)

\* -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음

( ) 없는 수자 - 의뢰받은 수

( ) 수자 -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수

### ③ 서비스교환실태

D지역에서는 6개 기관이 서비스교환에 대하여 <표 V-33>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V-33>에 의하면 택시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며 그룹홈과 보육원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직이다. 의료단체, 시도 및 시군구

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조직이다. 시군구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심리상담, 집단상담, 약물남용 예방교육 등 상담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역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V-33> D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택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지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li> </ul>
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 및 운동(기업)</li> </ul>	
보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집단상담 (청소년상담지원센터)</li> </ul>	
의료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고시지원(복지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양성자교육,</li> <li>■ 약물남용예방(중고등학교)</li> </ul>
시도 상담 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성폭력상담소), 무료</li> <li>■ 진료(의료원), 보호(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웃리치,</li> <li>■ 실무자간담회(시군구지원센터)</li> </ul>
시군구 지원 센터	아동쉼터와 그룹홈 연결 (아동학대에 방센터), 후원연결(단체, 학교), 직장체험(고용안정센터), 미술교육(학원), 피아노 레슨(지역아동센터), 무료진료(의료원, 병원), 긴급보호(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심리상담, 집단상담, 진로특강, 교사 상담교육, 학교폭력예방(지역아동센터, 다수의 초중고등 학교)

## (5) K 지역

### ① 협력합의기관 실태

K지역에서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며 이 기관 모두 협력합의기관현황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표 V-34>과 같다.

<표 V-34>을 보면 시도상담지원센터 15개, 쉼터가 14개 기관과 협력합의를 맺고 있다. 복지관, 쉼터, 병원 등 응답에 임한 3개 지역기관 모

두 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합의를 맺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지역은 지역자원이 부족하여 연계기관 수가 많지 않다. 센터는 10개 이상의 다른 조직유형과 연계를 맺는 등 상담지원센터 이상으로 지역기관들과 연계협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연계협력 경험이 없는 기관이다.

이 지역 협력합의 기관의 특징은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단체이라는 점이며 이 외에 일반시민단체, PC방 등 자영업관련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에서 발굴가능한 자원의 한계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V-34> K지역 연계합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응답구분 조직유형	교육기관			지역시설		자영업체		공공기관			학습기관		직업훈련		보호기관		의료기관		활동기관		상 담 지 원 센 터	계
	교육청	대학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택시 PC 노 래방	기업	보호관찰소	구청	경찰서	방과 후공부방	학원	자 활 지 원 관	센터	병원	보건소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복지관																					1	1
센터		2					1		1	1	1	2		2		1				2	1	14
병원																					1	1
시도상담 지원센터	1	2				3		1		1				2	3					2		15
시군구 지원센터1	1				1					1	1		1			1	2	1				9
시군구 지원센터2	1		3		2								1							1		9

②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

K지역에서 응답한 기관의 의뢰재배치 현황은 <표 V-35>와 같다. 시도나 시군구 상담지원센터는 지난 6개월 동안 40-50사례를 의뢰받았다. 이 중 시도상담지원센터는 16사례를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였지만 시군구 센터는 1/4 정도인 4-5사례만을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였다. 시도에 비해서 마땅한 연계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있어서 주요한 발견체계는 교육청과 경찰서이다. 3개 상담지원센터 모두 교육청으로부터 사례를 의뢰받은 바 있다. 쉼터와 시도상담센터, 시군구지원센터 1곳이 경찰서로부터 사례를 의뢰받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이 주요 발견체계이자 지원체계이다. 시군구 지원센터1은 48사례 중 39사례를, 지원센터2는 54사례 중 16사례를 방과 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받고 있으며 또 이곳에 사례를 의뢰재배치하고 있다. 도 차원에 있는 시군구지원센터의 지역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35> K지역 의뢰재배치 현황

단위: 명

응답구분	개인적 의뢰		교육기관	지역시설		자영업체	상담기관		공공기관		학습기관	보호시설		활동기관	상담지원센터	계
	스스로온경우	지인의 소개로	교육청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택시 PC노래방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서	소년원	방과후공부방	보육원	쉼터	청소년단체		
쉼터	1	1				4	4		1	1						12
병원													7			7
시도상담지원센터	22		3	(1)			(4)	(1)	14			(1)	(5)	(2)	4 (2)	43 (16)
시군구지원센터1	1	2	1		1 (2)				4		39 (2)					48 (4)
시군구지원센터2		4	34		16								(5)			54 (5)

\* -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음

( ) 없는 수자 - 의뢰받은 수

( ) 수자 - 다른 기관에 의뢰재배치한 수

### ③ 서비스 교환 실태

K지역에서는 서비스교환 현황에 대하여 4개 기관이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표 V-36>와 같다. 쉽터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며 시군구지원센터 및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집단상담, 또래상담 부모교육 등을 초,중,고등학교나 지역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 중 1곳은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단체,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청소년에 연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V-36> K지역 서비스 교환 현황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쉽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교육(종합상담실)</li> <li>■ 성교육(대학)</li> <li>■ 지역연계프로그램(기업)</li> </ul>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지역아동센터)</li> <li>■ 밑반찬 지원 (자원봉사센터)</li> <li>■ 인터넷중독예방(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 및 성교육</li> <li>■ 인터넷중독예방</li> <li>■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교육</li> <li>■ 자원봉사자교육(다수의 초 중 고등학교, 자활지원관, 단체)</li> </ul>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상담 ■ 진로상담</li> <li>■ 자기성장프로그램</li> <li>■ 품성개발 ■ 리더십교육</li> <li>■ 부모교육(다수 초 중 고등학교)</li> </ul>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교사 ■ 상담 교육(단체)</li> </ul>

각 지역 기관들의 서비스 교환 현황을 통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가 다수의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한 기관들 중에서 상담지원센터와 지원센터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년관련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상담센터는 거의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상담센터가 기존의 상담실 업무를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담지원센터 중에 일부센터는 청소년을 의뢰받아서 다른 기관에 의뢰 배치하는 허브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의뢰 재배치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뢰 받은 청소년 중 소수만을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담지원센터는 의뢰받은 대다수의 학교와 관련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에서 허브기관의 역할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쉼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주로 정신보건센터, 여성발전센터, 병원,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상담소, 대학, 종합상담실, 기업 등 다양하다.

또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서비스 교환을 보면, 대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서는 대학교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대학은 복지서비스 관련학과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상담관련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학생들의 학습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4) 참여기관의 연계협력에 대한 욕구분석

##### (1) 연계협력에 대한 욕구 분석

##### ① 연계가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

지역사회기관간의 연계 시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V-37>과 같다.

<표 V-37> 연계가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중복응답)

단위 : 개소(%)

구분	상담지원센터	쉼터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대안학교	경찰서	사회봉사시설	법률구조기관	직업알선기관	기타
계 (n=61)	38 (62.3)	21 (34.4)	21 (34.4)	16 (26.2)	15 (24.6)	14 (23.0)	9 (14.8)	8 (13.1)	8 (13.1)	7 (11.5)	7 (11.5)	10 (16.5)

<표 V-37>에 의하면 연계의 우선순위에 오른 기관은 상담지원센터, 쉼터,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의 순이다.

② 조직유형별 위기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

연계를 하려면 각 조직이 다른 조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각 조직이 지역사회 안전망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조사한 결과는 <표 V-38>과 같다. <표 V-38>에 의하면 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년분류심사원, 자활지원관, 일반시민단체는 위기청소년 발견, 의뢰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기관과의 연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육아원 등 4개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자기 기관청소년 사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찾아 연계지원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택시조합은 위기청소년 수송인도 업무,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은 심리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결연금 제공, 대안학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재정적 학업지원, 공부방은 학습지원, 자활지원관은 방과후 공부방 지원, 쉼터와 그룹홈, 육아원은 주거보호, 의료관련단체는 약물예방 프로그램, 일반병원은 의료지원, 범죄예방위원협의회는 법률상담 지원, 자원봉사세터는 각종활동기회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사회안전망 내의 각 조직은 조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서로 교환하

면서 안전망 내의 자기 역할을 확고히 해나갈 수 있다.

<표 V-38> 조직 유형별 위기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

단위 : ( )은 응답회수

기 관	향후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지원(3),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2), 성 상담 지원센터 등, 적절한 외부기관간의 연계 서비스 지원(3), 학습지원(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대안학교와의 연계(1), 부모 교육 및 가족상담(1)</li> </ul>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1), 성 상담 지원센터 등, 적절한 외부기관간의 연계 서비스 지원(1), 학습지원(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1),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참여 확대(1), 관련기관 협조하에 체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1)</li> </ul>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지원(1), 위기청소년 발견하여 의뢰(1), 개별상담(1),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1), 사회복지서비스제공(1), 결연금 지원 서비스 제공(1)</li> </ul>
택시, 노래방,PC방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제공 및 위기 청소년 수송 인도 업무(1)</li> </ul>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검사 지원(1), 심리상담 지원(1),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1)</li> </ul>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지원(1), 성 상담 지원센터 등 적절한 외부기관간의 연계 서비스 지원(1)</li> </ul>
소년분류집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발견하여 의뢰(1), 전문기관의뢰(1)</li> </ul>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제공(1), 재정적 학업 지원(1)</li> </ul>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1)</li> </ul>
자활지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발견하여 의뢰(1), 교육프로그램 제공(1), 방과 후 공부방 지원(1)</li> </ul>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지원(3), 교육프로그램 제공(3), 학습지원(1), 재정적 학업지원(1), 의료 지원 서비스(2), 대안학교와 연계(1), 개별 상담(1),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1), 쉼터제공(1), 가출 청소년 단기보호(1), 문화적 서비스 제공(1)</li> </ul>
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적 접근을 통한 교화역할(1)</li> </ul>
육아원(보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상담 지원센터 등, 적절한 외부기관간의 연계 서비스 지원(1), 가족프로그램 참여기관(1)</li> </ul>
정신보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지원(1), 위기청소년 사례관리(1),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다양화(1),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쉽게 접근하는 상담 센터제공(1), 예방 프로그램지원(1)</li> </ul>
의료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 예방 프로그램실시(1), 약물의존 청소년 개인상담(1)</li> </ul>
일반병원(민간,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원 서비스(1)</li> </ul>
범죄예방위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교류 상담지원(1), 법률적인 상담지원(1)</li> </ul>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학업지원(1), 각종프로그램 참여기회(1),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참여확대(1)</li> </ul>
자원봉사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이슈, 정책수립에 공동으로 기여(1)</li> </ul>
일반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청소년 발견하여 의뢰(1), 학교, 청소년단체, 정부, 지역 사회와의 상호 네트워크의 역할(1)</li> </ul>

(2) 연계협력에 대한 평가 및 발전에 대한 제안

① 자기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

자기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표 V-39>에서 나타나듯이 대체로 업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도시 59.4%, 중소도시 78.3%, 농어촌 66.7%가 모두 업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기관명을 아는 정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V-39> 자기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기관명 아는 정도	업무내용 인지	업무내용 이해	무응답
대도시	8(25.0)	19(59.4)	4(12.5)	1(3.1)
중소도시	3(13.0)	18(78.3)	2(8.7)	0(0.0)
농어촌	2(33.3)	4(66.7)	0(0.0)	0(0.0)
계(n=61)	13(21.3)	41(67.2)	6(9.8)	1(1.6)

② 연계정도 평가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기관과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V-40>과 같다. 연계정도 평가에 대한 1-5척도에서 대도시가 3.5점, 중소도시가 3.2점 농어촌이 3.8점으로 농어촌이 다른 기관과 가장 잘 연계를 하고 있었다.

<표 V-40> 연계정도 평가

단위: 개소(%)

구분	세부항목	다른 기관과 연계 정도
권역별	대도시	3.5
	중소도시	3.2
	농어촌	3.8
평균(n=61)		3.5

### ③ 장애요인

조직간 협력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는<표 V-41>와 같다. 장애요인으로 제일 먼저 조직간 교류부족이다. 정보공유가 안되고 실무자간의 상호이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 조직 간의 경쟁적 분위기와 폐쇄성,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세 번째, 인력 부족 넷째, 서비스 내용과 지원이 미비하고 지역사회 내 마땅한 연계기관이 없다. 다섯째, 기관별업무일정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 여섯째,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이외에 예산부족 등의 요인이 지적되었다.

<표 V-41> 장애요인 (중복응답)

단위: 빈도 (%)

요 인	빈 도
교 류 부 족	30 (32.9)
조직간 경쟁적 및 폐쇄적 분위기	12 (13.2)
인 력 부 족	12 (13.2)
서비스 내용과 지원 미비 연계 기관 부족	10 (11.0)
기관별 업무 일정의 차이	4 (4.4)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2 (2.2)
예 산 부 족	8 (8.8)
기 타	2 (2.2)
무 응 답	11 (12.1)
계 (n=61)	93 (100.0)

### ④ 건의사항

조직간 연계협력을 위한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은 <표 V-42>이다.

### ⑤ 지역사회기관간의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대한 제안을 정리한 것이 <표 V-43>이다.

<표 V-42> 조직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건의 사항

단위 : ( )은 응답회수

기 관	건의 사항
학교	■ 영역별 전담반 또는 인력을 구성하여 수시협의(1)
지역아동센터	■ 전문 인력필요(2),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필요(1), 급식 관련자 파견(1), 연계조직의 연락망 구축하여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1)
사회복지관	■ 전문 인력필요(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정관련상담소	■ 조직간 가능한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정보 및 Sheet(1)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의 모임필요(1)
소년분류심사원	■ 프로그램 별로 특화된 기관 양성(1)
시도상담지원센터	■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추진(2), 좀 더 많은 경제적 지원(1), 각 기관별 역할 및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 해소보완(1), CYS-NET홍보(1), 모임과 활동을 위한 지원(1),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필요(1)
시군구지원센터	■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추진(1), 내담자 중심의 상담보다는 가족 상담을 고려한 접근필요(1), 국가단위와 경제행정 사항에 관련하여 협약을 맺어서 지원(1), CYS-NET을 광역단위로 구축하고 각시군구에서 이용 및 지원(1), 구축된 CYS-NET을 타 도에서도 지원(1), 담당자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과 담당자 필요(1), 국가적인 차원의 워크숍 확대(1),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서비스 제공(1), 각 센터의 주 기능과 역할 프로그램 등으로 정부공유 기회마련(1), 각 센터의 사업홍보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공동회의 개최(1)
대안학교 및 야학	■ 기관별 사업 특화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달(1), 다양, 포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려는 조직기관의 운영방안 수정(1)
공부방	■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1)
자활지원관	■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의 모임필요(1), 연계협력 기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1)
쉼터	■ 연계기관 실무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임필요(1), 각 기관별 역할 및 개념에 대한 이해차이 해소보완(1), 내담자 중심의 상담보다는 가족 상담을 고려한 접근필요(1), 연계협력 기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1), 흥미유발 및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단기프로그램 활성화(1), 협력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1), 단기쉼터에서 일회적인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임(1)
육아원(보육원)	■ 정부시책으로 강력하게 진행(1)
정신보건센터	■ 기관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배포(1),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1)
의료관련 단체	■ 연계기관 실무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임필요(1)
일반병원(민간, 공립)	■ 전문 인력필요(1)
자원봉사센터	■ 영역별 전담반 또는 인력을 구성하여 수시협의(1)
일반시민단체	■ 연계기관 실무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임필요(1), 실무자의 마인드 중요(1), 관련담당실무자 교육실시(1), 지역에 맞는 공동사업개발(1)

<표 V-43>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사업

단위 : ( )는 응답회수

기 관	공 동 사 업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기관과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시스템 필요(1), 기관에 대한 대표, 담당자 모두 워크숍실시(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체험(1), 요가, 검도등의 인성프로그램 활용(1), 권장만화, 독서등 읽고 토론하기(1), 학교축제와 연계된 지역축제(1), 청소년 진료 지도 프로그램(1)</li> </ul>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인적 물적 공유(1), 예산/운영비 부족(1), 캠프를 통한 사회성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2), 놀이치료 및 상담사업을 체계적, 구체적(1)</li> </ul>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청소년 발굴 즉시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 사회 자원 활용(1),</li> </ul>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대 받는 아이들을 위한 실태파악 및 지원(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1),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 등 제공(1)</li> </ul>
시도상담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및 환경 생태체험 활동(1), pc문화협회의 청소년 유해물 차단 cd 제공 사업(1), 학교연계 예방사업 교육청주관, 학교, 상담지원센터 협조(1), CYS -NET 청소년 축제(1), 청소년복지, 놀이, 문화시설 등 박람회(1),</li> </ul>
시군구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개발프로그램,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1), 지역사회의 학교 가정 관련기관 실무자를 위한 청소년 관련 교육(1),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공동의 지도 관리(1),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활성화(1), 예산/운영비 부족(1), 캠프를 통한 사회성 및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1),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및 환경 생태체험 활동(1),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업(1), 도가 협력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 체결(1)</li> </ul>
자활지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휴무일 및 대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추진(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1)</li> </ul>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알선기관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연계기관 개발 프로그램(1), 청소년 원 가정 상담의 지원 사업(1),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1)</li> </ul>
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체능 능력 개발 프로그램(1)</li> </ul>
육아원(보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체능 능력 개발 프로그램(1)</li> </ul>
일반병원(민간, 공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청소년만을 위한 요양병원 차원의 상담요원 및 시설 필요(1)</li> </ul>
범죄예방위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활성화(1)</li> </ul>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에 대한 대표 담당자 모두 워크숍실시(1)</li> </ul>
일반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카데미(1), 전국 단위의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하여 홍보 및 캠페인(1), 홍보물 발간하여 청소년에게 배포하고 홍보(1)</li> </ul>

(3) 지역기관의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역할에 대한 의견

① 상담지원센터 인지도

상담지원센터를 제외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기관에게 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고, 그 결과는 <표 V-44>와 같다. 모든 지역에서 응답기관 절반 이상이 업무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관명을 아는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시 업무내용인지에 각각 57.1%, 70.0%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내용은 기관명 아는 정도가 33.3%로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차이를 보였다.

<표 V-44> 상담지원센터 인지도

단위: 개(%)

구분	세부항목	기관명 아는 정도	업무내용 인지	업무내용 이해	전혀 인지못함	무응답	계
권역별	대도시	6(21.4)	16(57.1)	4(14.3)	1(3.6)	1(3.6)	28(100.0)
	중소도시	5(25.0)	14(70.0)	0(0.0)	0(0.0)	1(5.0)	20(100.0)
	농어촌	2(66.7)	1(33.3)	0(0.0)	0(0.0)	0(0.0)	3(100.0)
계(n=51)		13(25.0)	31(61.0)	4(8.0)	1(2.0)	2(4.0)	51(100.0)

②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업무

상담지원센터를 제외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관에게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물은 결과는 <표 V-45>와 같다.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31.4%,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원을 지원받음이 27.5%, 위기청소년 발견의뢰가 25.3%로 나타났다.

<표 V-45>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업무(중복응답)

단위 : 개소(%)

구분	서비스 제공	자원을 지원받음	발견 및 의뢰	공동 대응	공동사업 개발 및 홍보 실시	해당사항 없음	무응답
교육	학교	1(9.1)	4(36.4)	2(18.2)	2(18.2)	1(9.1)	0(0.0)
지역 시설	어린이집	0(0.0)	1(100.0)	0(0.0)	0(0.0)	0(0.0)	0(0.0)
	지역아동센터	1(25.0)	0(0.0)	2(50.0)	0(0.0)	0(0.0)	1(25.0)
	사회복지관	0(0.0)	1(33.3)	2(66.7)	0(0.0)	0(0.0)	0(0.0)
자영업체	택시, 노래방, PC방 등	1(100.0)	0(0.0)	1(100.0)	0(0.0)	0(0.0)	0(0.0)
공공	소년분류집사원	0(0.0)	0(0.0)	1(100.0)	0(0.0)	0(0.0)	0(0.0)
합습 지원	대안학교	0(0.0)	2(100.0)	0(0.0)	0(0.0)	0(0.0)	0(0.0)
	공부방	0(0.0)	1(100.0)	1(100.0)	0(0.0)	0(0.0)	0(0.0)
직업 훈련	자활지원관	0(0.0)	1(50.0)	0(0.0)	0(0.0)	0(0.0)	1(50.0)
보호 시설	쉼터	2(28.6)	3(42.9)	3(42.9)	0(0.0)	0(0.0)	0(0.0)
	그룹홈	1(50.0)	0(0.0)	0(0.0)	0(0.0)	0(0.0)	1(50.0)
	육아원(보육원)	1(100.0)	1(100.0)	0(0.0)	0(0.0)	0(0.0)	0(0.0)
의료 기관	정신보건센터	2(100.0)	0(0.0)	0(0.0)	0(0.0)	0(0.0)	0(0.0)
	공공치료시설	1(1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관련 단체	1(0.0)	0(0.0)	0(0.0)	0(0.0)	0(0.0)	0(0.0)
	일반병원	0(0.0)	0(0.0)	0(0.0)	1(100.0)	0(0.0)	0(0.0)
법률	범죄예방위원	1(100.0)	0(0.0)	0(0.0)	0(0.0)	0(0.0)	0(0.0)
활동 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1(100.0)	0(0.0)	0(0.0)	0(0.0)	0(0.0)	0(0.0)
	청소년단체	1(100.0)	0(0.0)	0(0.0)	0(0.0)	0(0.0)	0(0.0)
	자원봉사관련시설	0(0.0)	0(0.0)	0(0.0)	0(0.0)	0(0.0)	2(66.7)
	일반시민단체	1(50.0)	0(0.0)	1(50.0)	1(33.3)	0(0.0)	0(0.0)
계(n=51)	16 (31.4)	14 (27.5)	13 (25.3)	4 (7.8)	1 (2.0)	4 (7.8)	2 (3.9)

<표 V-46> 상담지원센터 역할요구 우선순위(중복응답)

단위 : 개소(%)

구분	사례 관리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지원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전문 인력 지원	행. 재정적 지원	공동사업 개발	프로그램 지원	무응답
계 (n=51)	48 (78.7)	41 (67.2)	34 (55.7)	27 (44.3)	16 (26.2)	8 (13.1)	1 (1.60)	2 (3.3)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지역기관들의 역할 요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것이

<표 V-46>이다. <표 V-46>에 따르면 상담센터의 역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사례관리와 정보교류 등의 실질적 지원, 위기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전문인력지원,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 4. 허브기관분석

##### 1) (상담)지원센터 현황 분석

###### (1) 응답자(협력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 ① 연령

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협력담당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V-47>와 같이 연령을 분석하였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30대(66.7%)가 40대(33.3%)보다 많았고, 시군구 지원센터는 40대(50.0%)가 20대(25.0%), 30대(25.0%)보다 더 많았다.

<표 V-47>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연령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계
시도상담지원센터	0(0.0)	4(66.7)	2(33.3)	6(100.0)
시군구 지원센터	3(25.0)	3(25.0)	6(50.0)	12(100.0)
계	3(16.7)	7(38.9)	8(44.4)	18(100.0)

###### ② 학력

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협력담당자의 학력수준은 <표 V-48>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석사졸업이 83.3%, 대졸이 16.7%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시군구 지원센터의 경우도 석사졸업이 75.0%이며 대졸이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센터나 시군구센터 모두에 있어서,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수가 석사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학력

단위: 명(%)

구분	대졸	석사졸	계
시도상담지원센터	1(16.7)	5(83.3)	6(100.0)
시군구 지원센터	3(25.0)	9(75.0)	12(100.0)
계	4(22.2)	14(77.8)	18(100.0)

### ③ 자격

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협력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내용은 <표 V-49>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사 순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시군구 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75.0%가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가 58.3%, 청소년 상담사 16.7%, 성폭력전문상담원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9>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가 소지한 자격증(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성폭력전문상담원	중등정교사자격증	레크레이션자격증	임상심리사	인터넷중독상담사	상담심리사	또래교육상담원	무응답
시도상담지원센터(n=6)	3(50.0)	1(16.7)	1(16.7)	0(0.0)	0(0.0)	0(0.0)	0(0.0)	0(0.0)	1(16.7)	0(0.0)	1(16.7)
시군구 지원센터(n=12)	9(75.0)	7(58.3)	2(16.7)	2(16.7)	1(8.3)	1(8.3)	1(8.3)	1(8.3)	0(0.0)	1(8.3)	0(0.0)
계 (n=18)	12(66.7)	8(44.4)	3(16.7)	2(11.1)	1(5.6)	1(5.6)	1(5.6)	1(5.6)	1(5.6)	1(5.6)	1(5.6)

#### ④ 근무경력 및 직위

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협력담당자의 직위 내용은 <표 V-50>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83.3% 일반직원이 16.7%를 차지하였으며, 시군구지원센터는 관리책임자가 66.7%, 일반직원이 33.3%의 응답을 보였다.

<표 V-50>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직위

단위: 명(%)

구분	관리 책임자	일반 직원	계
시도상담지원센터	5(83.3)	1(16.7)	6(100.0)
시군구 지원센터	8(66.7)	4(33.3)	12(100.0)
계	13(72.2)	5(27.8)	18(100.0)

#### ⑤ 교육훈련참여정도, 비공식인맥

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협력담당자의 교육훈련 참여정도와 비공식 인맥은 <표 V-51>와 같다. 지난 5개월 상반기 (2006년 1월~5월)동안,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의,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여 정도에 있어서,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평균 4.8회이며, 시군구 지원센터의 경우 평균 4.0회의 수치를 보였다.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시군구 지원센터보다 교육훈련참여정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협력담당자들에게 있어서, 현재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참여 등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분야 조직의 수를 알아보았다. 시도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는 평균 94.2개의 조직과 친분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시군구 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경우, 평균 41.8개의 조직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시군구 지원센터보다 더 많은 조직과 친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1> 상담지원센터 협력담당자의 교육훈련참여정도와 비공식인맥

단위: 명(%)

구분	교육훈련참여정도	비공식인맥
시도상담지원센터(n=6)	4.8	94.2
시군구 지원센터(n=12)	4.0	41.8
평균(n=18)	4.3	59.2

(2) (상담)지원센터의 운영현황

① 주변 환경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가 위치한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은 <표 V-52>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상업지역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주택지역이 33.3%, 일반아파트 단지 16.7%로 나타났다. 시군구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주택지역이 4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상업지역이 33.3%, 저소득 주택지역이 16.7%였다. 그러므로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시군구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상담지원센터의 주변 환경(중복응답)

단위: 개(%)

구분	상업 지역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아파트 단지	저소득 주택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농촌, 어촌, 산간지역	무응답
시도상담 지원센터(n=6)	4(66.7)	2(33.3)	1(16.7)	0(0.0)	0(0.0)	0(0.0)	0(0.0)
시군구 지원센터(n=12)	4(33.3)	5(41.7)	1(8.3)	2(16.7)	1(8.3)	1(8.3)	1(8.3)
계(n=18)	8(44.4)	7(38.9)	2(11.1)	2(11.1)	1(5.6)	1(5.6)	1(5.6)

## ② 인력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은 <표 V-53>와 같다.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시도상담지원센터 정규상근직원 수는 평균 12.3명, 시군구 지원센터의 정규상근직원 수는 평균 6.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 수를 보면, 시도상담지원센터는 평균 10.3명이었고, 시군구 지원센터는 평균 5.3명이었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정규상근직원이나 자격증 소지자가 시군구지원센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시도 상담지원센터가 평균 19.2명, 시군구 지원센터가 평균 5.3명으로 나타났고, 시도센터가 시군구센터보다 더 많은 계약직 직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시도센터 평균 38.7명이고, 시군구센터는 평균 42.2명으로, 시군구센터가 시도센터보다 조금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상담지원센터의 인력규모

단위: 명

구분	정규 상근직원	자격증 소지 정규직원	계약직	자원 봉사자
시도상담 지원센터(n=6)	12.3	10.3	19.2	38.7
시군구 지원센터(n=12)	6.3	5.3	5.3	42.2
평균(n=18)	8.3	7.0	9.9	41.0

## ③ 예산 : 1년 예산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의 1년 예산과 2006년 위기청소년 관련 증가예산의 내용은 <표 V-54>와 같다. 2005년 총결산에 있어서, 시도상담지원센터는 평균 27,439만원이고, 시군구지원센터는 평균 13,577만원이었다.

위기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증가된 예산은 시도상담지원센터가 평균 47,675만원, 시군구지원센터가 평균 10,369만원이었다. 예산 내역을 구체

적으로 보면, 국가보조에 있어서 시도상담지원센터는 22,75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군구지원센터는 4,180만원이 증가되었다. 지방비에 있어서, 시도상담지원센터는 24,925만원이 증가되었고, 시군구지원센터는 6,179만원이 증가되었다. 시도상담지원센터나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모두 평균적으로 국가보조금 이상의 지방비 증가가 이루어졌다.

<표 V-54> 상담지원센터의 연간 예산과 증가예산

단위: 만원

구분	2005년 총결산	2006년 증가예산		
		국가보조비	지방비	계
시도상담 지원센터(n=6)	27,439	22,750.0	24,925.0	47,675.0
시군구 지원센터(n=12)	13,577	4,180.8	6,179.9	10,369.8
평균(n=18)	17,909	9,132.6	11,178.6	20,317.9

#### ④ 수탁단체의 성격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를 수탁한 단체의 성격은 <표 V-55>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사단법인이 33.3%를 차지하였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사회복지, 재단법인, 종교 법인이 각각 16.7%였다. 시군구지원센터의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이 50.0%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사단법인이 25.0%, 사회복지가 16.7%, 등록된 사회단체 8.3%로 나타났다.

<표 V-55> 상담지원센터를 수탁한 단체의 성격

단위: 개(%)

구분	국가·지 방자치 단체 직영	사단 법인	사회 복지	재단 법인	종교 법인	등록된 사회단체	계
시도상담지원센터	1(16.7)	2(33.3)	1(16.7)	1(16.7)	1(16.7)	0(0.0)	6(100.0)
시군구지원센터	6(50.0)	3(25.0)	2(16.7)	0(0.0)	0(0.0)	1(8.3)	12(100.0)
계	7(38.9)	5(27.8)	3(16.7)	1(5.6)	1(5.6)	1(5.6)	18(100.0)

⑤ 현재 사용하는 기관명칭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의 현재 기관 명칭을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V-56>와 같다. 응답한 시도상담지원센터의 83.3%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6.7%가 청소년 긴급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응답한 시군구지원센터의 58.4%가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6.7%는 청소년상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원센터가 각각 8.3%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관련 조직이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상담실을 통해 다양하게 호칭되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V-56> 센터가 현재 사용하는 기관명칭

단위: 개소(%)

구 분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청소년 긴급지원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원센터	계
시도상담 지원센터	5(83.3)	1(16.7)						6(100.0)
시군구 지원센터			7(58.4)	2(16.7)	1(8.3)	1(8.3)	1(8.3)	12(100.0)
계	5(27.7)	1(5.6)	7(38.8)	2(11.1)	1(5.6)	1(5.6)	1(5.6)	18(100.0)

⑥ 조직 : 위기청소년 업무관련 조직체계 변화

위기청소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화된 조직체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V-57>과 같다. 새로 만들어진 팀명은 목적 상담팀, 위기지원팀, 청소년 동반자팀, 긴급구조팀, 상담지원팀, 자활상담팀,

활동지원팀, 긴급 구호팀, 사후관리팀, 청소년지원팀 등으로 다양하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센터별로 1-3개의 팀을 신설하였고 센터별로 4-7명을 충원하였다.

시군구지원센터는 센터별로 1-2개 팀을 신설하였고 센터별로 1-5명의 인원을 충원하였다.

위기청소년 관련업무로 새로 추가된 업무는 사례관리, 청소년상담 및 자활활동지원, 긴급구조, CYS-NET 구축운영, 행정관리 업무,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봉사자관리, 연계지원기관업무 등이다.

<표 V-57> 위기청소년 관련 상담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팀명	인원수
시도상담지원센터1	위기지원팀	4
시도상담지원센터2	긴급구조팀	3
	자활상담팀	2
	대외협력팀	2
시도상담지원센터3	사후관리팀	3(동반자 45)
	긴급구호팀	3
시군구 지원센터1	목적상담팀	1
시군구 지원센터2	위기지원팀	2
	동반자팀	13(동반자 포함)
시군구 지원센터3	청소년동반자팀	12(동반자 포함)
시군구 지원센터4	상담지원팀	2
	활동지원팀	1
시군구 지원센터5	위기지원팀	1
시군구 지원센터6	상담지원팀	-
	활동지원팀	-
시군구 지원센터7	청소년지원팀	2
시군구 지원센터8	상담지원팀	3
	활동지원팀	2

### (3) (상담)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및 욕구 현황

#### ① 제공하는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비교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표 V-58>, <표 V-59>와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80%이상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①위기청소년발견과 의뢰, ②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③개인상담, ④⑤집단상담, ⑥심리검사, ⑦친구들과의 면담, ⑧심리교육서비스, ⑨심리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⑩취업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제공, ⑪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등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50%이상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 ①검정고시지원, ②신체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③교육 및 문화활동비 지원, ④의료비·검사비·치료비·약품비 등의 지원, ⑤취업아르바이트포함 알선, ⑥직업훈련지원, ⑦법률소송지원, ⑧문화예술스포츠활동 시설이용 지원, ⑨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⑩영화 및 음악회 등의 관람기회 제공 등 이다.

시군구지원센터의 80%이상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①위기청소년발견, ②개인상담, ③집단상담, ④심리검사, ⑤친구들과의 면담, ⑥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이다.

시군구지원센터의 50%이상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①위기청소년 의뢰, ②심리교육서비스, ③취업아르바이트포함 정보제공 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시도센터는 2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구센터는 9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도센터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만 시군구센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보면, 검정고시 지원, 심리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신체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교육 및 문화 활동비 지원, 의료비·검사비·치료비·약품비 등의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 알선, 직업훈련지원, 문화예술스포츠활동 시설이용 지원,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영화 및 음악회 등의 관람기회 제공이다. 시군구지원센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치료,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취업 관련 서비스를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상담지원센터가 지원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보면 <표 V-59>과 같다.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 모두 상담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다른 조직으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표 V-58> 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단위: 개(%)

영역	서비스종류	시도상담센터 (n=6)	시군구지원센터 (n=12)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5(83.3)	10(83.3)
	위기청소년의뢰	5(83.3)	9(75.0)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2(33.3)	3(25.0)
	검정고시지원	3(50.0)	1(8.3)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5(83.3)	3(25.0)
심리 상담	개인상담	6(100.0)	12(100.0)
	집단상담	6(100.0)	12(100.0)
	심리검사	6(100.0)	12(100.0)
	친구들과의 면담	5(83.3)	12(100.0)
	심리교육서비스	6(100.0)	8(66.7)
	기타심리상담	0	5(41.7)
의료 지원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6(100.0)	1(8.3)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4(66.7)	1(8.3)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1(5.6)	0
	교육및 문화활동비지원	4(66.7)	4(33.3)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3(50.0)	3(25.0)
진로,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5(83.3)	7(58.3)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4(66.7)	4(33.3)
	직업훈련지원	3(50.0)	1(8.3)
사회적 보호	단기쉼터	1(16.7)	0
	장기쉼터6개월이상	1(16.7)	0
	그룹홈	1(16.7)	0
	위탁가정 연결	1(16.7)	0
법률 자문	법률소송지원	3(50.0)	0
	법률상담	2(33.3)	1(8.3)
여가문화 활동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4(66.7)	3(25.0)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4(66.7)	2(16.7)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4(66.7)	3(25.0)
가족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6(100.0)	11(91.7)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0	1(8.3)
	가사도움활동	0	1(8.3)
기타	기타서비스	1(16.7)	0

응답구분

80.0% 이상
50.0% 이상
50.0% 미만

<표 V-59> 상담지원센터가 지원 받기 원하는 서비스

단위: 개(%)

영역	서비스종류	시도상담센터 (n=6)	시군구 지원센터 (n=12)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4(66.7)	6(50.0)
	위기청소년의뢰	4(66.7)	6(50.0)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2(33.3)	8(66.7)
	검정고시지원	3(50.0)	11(91.7)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3(50.0)	11(91.7)
심리 상담	개인상담	0	1(8.3)
	집단상담	0	1(8.3)
	심리검사	0	1(8.3)
	친구들과의 면담	0	2(16.7)
	심리교육서비스	1(16.7)	5(41.7)
	기타심리상담	0	2(16.7)
의료 지원	심리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1(16.7)	11(91.7)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4(66.7)	10(83.3)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5(83.3)	12(100.0)
	교육및 문화활동비지원	3(50.0)	10(83.3)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4(66.7)	9(75.0)
진로,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5(83.3)	8(66.7)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5(83.3)	10(83.3)
	직업훈련지원	6(100.0)	12(100.0)
사회적 보호	단기쉼터	4(66.7)	12(100.0)
	장기쉼터6개월이상	5(83.3)	12(100.0)
	그룹홈	5(83.3)	11(91.7)
	위탁가정 연결	4(66.7)	11(91.7)
법률 자문	법률소송지원	4(66.7)	11(91.7)
	법률상담	4(66.7)	12(100.0)
여가문화 활동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3(50.0)	9(75.0)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3(50.0)	10(83.3)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4(66.7)	9(75.0)
가족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1(16.7)	3(25.0)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5(83.3)	12(100.0)
	가사도움활동	4(66.7)	12(100.0)
기타	기타서비스	0	3(25.0)

응답구분

80.0% 이상
50.0% 이상
50.0% 미만

(4)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역할에 대한 의견

① 자기평가

가. 기관인지도

조사에 응답한 상담지원센터에게 다른 기관이 상담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현황은 <표 V-60>와 같다. 센터 인지도에 대한 응답에서 시도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을 알고 있음에 50.0%,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33.3%, 기관명을 아는 정도일 것이다.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센터에서는 업무내용을 알고 있을 것에 8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기관명을 아는 정도일 것과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가 각각 8.3%였다.

<표 V-60> 센터 인지도 자기평가

단위: 명(%)

구분	기관명을 아는 정도일 것이다	업무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계
시도센터	1(16.7)	3(50.0)	2(33.3)	.	6(100.0)
시군구센터	1(8.3)	10(83.3)	1(8.3)	.	12(100.0)
계	2(11.1)	13(72.2)	3(16.7)		18(100.0)

나. 지역사회연계 필요성과 연계정도 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 연계정도에 대한 상담지원센터의 응답결과는 <표 V-61>과 같다.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1-5점 척도에서 상담지원센터가 5.0, 시군구지원센터가 4.8점이 나와 연계의 필요성을 대단히 공감하

고 있었다. 현재의 연계정도에 대해서는 시도상담지원센터가 4.3점, 시군구 지원센터가 3.7점으로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V-61> 상담 지원센터의 연계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단위: 개소(%)

구분	연계의 필요성	연계의 정도
시도상담지원센터(n=6)	5.0	4.3
시군구지원센터(n=12)	4.8	3.7
평균(n=18)	4.9	3.9

다. 연계가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

상담지원센터가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V-62>와 같다.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쉼터, 직업훈련기관, 경찰서 등의 순이다.

<표 V-62> 상담지원센터가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의료기관	쉼터	직업훈련기관	경찰서	학교	법률구조기관	대안학교	상담지원센터	교육기관	그룹홈	협력기관	문화시설	무응답
시도센터	4 (66.7)	4 (66.7)	4 (66.7)	1 (16.7)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1 (16.7)	0 (0.0)	1 (16.7)
시군구센터	8 (66.7)	6 (50.0)	4 (33.3)	4 (33.3)	4 (33.3)	4 (33.3)	11 (8.3)	1 (8.3)	1 (8.3)	1 (8.3)	0 (0.0)	1 (8.3)	0 (0.0)
계(n=51)	12 (66.7)	10 (55.6)	8 (44.4)	5 (27.8)	4 (22.2)	4 (22.2)	2 (11.1)	1 (5.6)	1 (5.6)	1 (5.6)	1 (5.6)	1 (5.6)	1 (5.6)

라. 상담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인식

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연계조정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V-63>과 같다.

<표 V-63>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단위: 개소(%)

구분	정보공유, 자원개발, 전문성 향상 등 실질적 지원	위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배치, 사후관리	연계 기관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연계 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공동 사업 개발	CYS-NET 구축	위기 청소년 발견
시도 상담센터	4(66.7)	8(66.7)	4(66.7)	2(33.3)	3(25.0)	1(16.7)	0(0.0)	1(8.3)
시군구 센터	9(75.0)	5(83.3)	8(66.7)	4(33.3)	2(33.3)	2(16.7)	1(8.3)	0(0.0)
계 (n=51)	13(72.2)	13(72.2)	12(66.7)	6(33.3)	5(27.8)	3(16.7)	1(5.6)	1(5.6)

<표 V-63>에 의하면 상담지원센터는 상담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①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나 자원개발, 전문성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 ②위기청소년관련기관간의 공동대응, ③위기청소년사정, 서비스 연계배치 및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장애요인

조직간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 된 것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기관간의 교류의 부족이다. 조직간 교류부족으로 정보공유가 적어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실무자간 상호 이해도 부족하다.

둘째,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조직간 경쟁심과 폐쇄성, 기관장의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기관 간 협력을 막는다.

셋째, 조직간 협력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이다. 협력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이 있어야 하나 부족하고 잦은 직원교체로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넷째, 기관 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딱히 연계할 만 기관이 없다.

다섯째,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여섯째, 예산이 부족하다.

일곱째, 접근성과 회의 장소 등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있다.

### ③ 건의사항

조직간 연계협력을 위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YS-NET 홍보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CYS-NET을 광역단위로 구축하고 각 시군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과 타 도에 구축된 CYS-NET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타 지역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서 실무자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며 각 센터의 주요기능과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각 센터의 사업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회의 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협력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와 연계협력기관에 대한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적 차원의 워크숍 개최 등으로 연계협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여섯째,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공동사업에 대한 제안

공동사업에 대한 주요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학교, 가정, 관련기관 실무자를 위한 위기청소년관련 연수

둘째, 청소년복지, 놀이, 문화시설 박람회,

셋째, CYS-NET 청소년축제 또는 청소년문화체험 활동, 환경생태체험 활동

넷째,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이동상담실 공동 운영

다섯째,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공동의 지도관리

여섯째, 교육청주관 학교, 상담지원센터 협조 학교연계 예방사업 추진

### 5. 지역별 동반자 실태 분석

#### 1) 동반자의 일반적 특성

##### (1) 연령

동반자의 연령에 대한 분포는 <표 V-64>와 같다. 대도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동반자들은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룬다.

<표 V-64> 동반자의 연령

단위: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대도시(n=54)	24(44.4)	16(29.6)	14(25.9)
중소도시(n=23)	7(30.4)	13(56.5)	3(13.0)
농어촌(n=17)	3(17.6)	7(41.2)	7(41.2)
계(n=94)	34(36.2)	36(38.3)	24(25.5)

## (2) 학력

동반자의 학력은 <표 V-65>와 같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51.9%와 78.3%로 석사학위소지자가 가장 많았고, 농어촌은 70.6%로 대졸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51.1%로 가장 많았고, 대졸 출신이 45.7%이었으며 고졸 출신은 3.2%로 대졸과 석사학위 소지자에 비해 매우 적었다.

<표 V-65> 동반자의 학력

단위: 명(%)

구 분	고졸	대졸	석사졸
대도시(n=54)	0	26(48.1)	28(51.9)
중소도시(n=23)	0	5(21.7)	18(78.3)
농어촌(n=17)	3(17.6)	12(70.6)	2(11.8)
계(n=94)	3(3.2)	43(45.7)	48(51.1)

## (3) 자격

동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V-66>와 같다. 대도시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가 29.6%, 청소년 지도사가 2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26.1%였다. 또한 농어촌은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은 76.5%였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장 많아 23.5%를 차지하였다.

<표 V-66> 동반자가 소지한 자격증

단위: 명(%)

구분	사회 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 교육사	직업 상담가	교원 자격증	특수 교사	기타	없음
대도시 (n=54)	16(29.6)	17(31.5)	15(27.8)	2(3.7)	2(3.7)	1(1.9)	0(0.0)	10(18.5)	8(14.8)
중소도시 (n=23)	7(30.4)	7(30.4)	2(8.7)	2(8.7)	2(8.7)	0(0.0)	1(4.3)	6(26.1)	6(26.1)
농어촌 (n=17)	4(23.5)	0(0.0)	1(5.9)	0(0.0)	0(0.0)	0(0.0)	0(0.0)	1(5.9)	13(76.5)
계 (n=94)	27(28.7)	24(25.5)	18(19.1)	4(4.3)	4(4.3)	1(1.1)	1(1.1)	17(18.1)	27(28.7)

(4) 경력

동반자의 근무경력은 <표 V-67>와 같다. 동반자의 경력을 보면, 전체 적으로 과거에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기간이 31.4개월로 3년이 좀 안되었 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순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길다. 동반자로 서 의 업무경력은 대도시 8.4개월, 중소도시 6.5개월, 농어촌 3.9개월로 나 타났다.

<표 V-67> 동반자의 근무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현재 기관에서 근무기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대도시(n=54)	8.4	34.1
중소도시(n=23)	6.5	30.7
농어촌(n=17)	3.9	24.5
계(n=94)	7.1	31.4

(5) 종사자의 특성

동반자의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종사자 특성은 <표 V-68>와 같이 나타났다. A지역은 시간제 68.8%, 전일제 31.3%로 나타났고, B지역은 시간제 72.77%, 전일제 27.3%였으며, C지역은 시간제 69.27%, 전일제 23.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D지역은 전일제 70.0%, 시간제 30.0%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V-68> 동반자의 종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세부항목	전일제 동반자	시간제 동반자	기타(무응답)
지역별	A	10(31.3)	22(68.8)	0(0.0)
	B	6(27.3)	16(72.7)	0(0.0)
	C	3(23.1)	9(69.2)	1(7.7)
	D	7(70.0)	3(30.0)	0(0.0)
	K	3(17.6)	14(82.4)	0(0.0)
계(n=94)		29(30.9)	64(68.1)	1(1.1)

2) 동반자 연수 및 교육현황, 지역자원 연계능력

(1) 동반자 연수 및 교육경력

① 관련조직

동반자가 참여한 연수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을 제공한 기관을 보면 <표 V-69>와 같다. 조사결과, 상담지원센터가 100.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동반자는 상담지원센터의 교육을 모두 다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60.5%, 무응답 11.1%, MBTI본

부 9.9%, 한국심리연구소 7.4%순으로 나타났다.

<표 V-69> 동반자가 참여한 교육을 개최한 기관(중복응답, 없음 제외)

단위: 명(%)

조직명	사례 수	%	조직명	사례 수	%
상담센터	81	100.0	미술치료연구소	2	2.5
국가청소년위원회	49	60.5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	1	1.2
무응답	9	11.1	한국원예치료사협회	1	1.2
MBTI본부	8	9.9	YWCA가정폭력상담소	1	1.2
한국심리연구소	6	7.4	HIS대학	1	1.2
한국교류분석협회	5	6.2	한국사이코드라마연구원	1	1.2
금연운동협의회	5	6.2	교육부	1	1.2
지방교육청	4	4.9	한국상담학회	1	1.2
숙명여대학생활연구소	4	4.9	성동사회복지관	1	1.2
가톨릭대	3	3.7	마음사랑심리센터	1	1.2
가족치료학회	2	2.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	1.2
연우심리연구소	2	2.5	청소년문화의집	1	1.2
한국인간교육원	2	2.5	청소년학회	1	1.2
한국성상담연구소	2	2.5	성우상담심리연구소	1	1.2
가이던스	2	2.5	계	81	100.0

## ② 관련 프로그램

동반자가 받은 연수 및 교육의 내용은 <표 V-70>와 같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동반자활동사례 슈퍼비전 82.7%, 경제이미지메이킹교육 22.2%, 진로탐색 프로그램 9.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MBTI, 교류분석, 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 양성과정, 금연전문교육사, 동반자 발대식 및 전문교육, 부모교육지도자 자격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표 V-70> 동반자가 받은 교육 프로그램(중복응답)

단위: 개소(%)

조직명	사례수	%	조직명	사례수	%
청소년동반자활동사례 슈퍼비전	67	82.7	에니어그램	2	2.5
기타 경제이미지메이킹교육	18	22.2	원예치료	2	2.5
진로탐색 프로그램	8	9.9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1	1.2
MBTI	7	8.6	개인 및 집단상담	1	1.2
교류분석	7	8.6	상담교육	1	1.2
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 양성과정	7	8.6	Change 대화기법	1	1.2
금연전문교육사	7	8.6	MMPI/ 홀랜드 검사	1	1.2
동반자 발대식 및 전문교육	7	8.6	미술치료사 교육과정	1	1.2
부모교육지도자 자격과정	7	8.6	놀이치료 슈퍼비전	1	1.2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6	7.4	사이코드라마 중급 고급	1	1.2
무응답	6	7.4	방문심리치료전문가 양성교육	1	1.2
해결중심, 인지행동 집단상담	5	6.2	ADHD전문가과정	1	1.2
성교육	5	6.2	학습클리닉 전문가과정	1	1.2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5	6.2	청소년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	1	1.2
위기상담세미나	4	4.9	불안과 자기조절	1	1.2
청소년 동반자교육	3	3.7	YP 청소년 유해매체	1	1.2
대학생자원봉사자 아카데미	3	3.7	청소년상담자 대학과정	1	1.2
워크숍 및 회의참석	3	3.7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신규 및 보수교육	1	1.2
학교사회복지 자격연수	2	2.5	청소년지도자직무연수	1	1.2
MMTIC	2	2.5	전체	81	100.0

### ③ 횃수

동반자가 참여한 교육 회수에 대한 결과는 <표 V-71>와 같다. 교육참여 횃수에 대한 응답에는 C지역이 9.2회로 가장 높았으며, A지역이 5.3회, K지역이 4.1회, B지역이 2.6회, D지역이 2.1회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1회 참석이 34.8%로 가장 많았고, 2회 26.1%. 5회 이상 17.4%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1회와 5회 이상 참여율이 같았는데 그 수는 44.4%이다. 또한 농어촌은 3회 41.2%, 4회 29.4%, 5회 이상 23.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회 참석율이 30.9%로 가장 많았고, 4회 참석이 12.3%로 가장 적었다.

<표 V-71> 동반자가 참여한 교육 회수

단위: 개소

구 분	평균(회)
대도시(n=54)	4.0
중소도시(n=23)	6.4
농어촌(n=17)	4.1
계(n=94)	4.8

### (2) 지역자원 연계능력

#### ① 친분 있는 조직 수

동반자가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 참여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는 조직의 수를 <표 V-72>와 같이 알아보았다. 중소도시 평균 5.8개, 대도시 평균 5.7개, 농어촌 평균 4.0개 순이었고, 전체적으로 동반자의 친분 있는 분이 근무하는 조직의 수가 평균 5.4개로 나타났다.

<표 V-72> 동반자의 친분 있는 조직 수

단위: 개소

구 분	평균(회)
대도시(n=54)	5.7
중소도시(n=23)	5.8
농어촌(n=17)	4.0
계(n=94)	5.2

### 3) 동반자의 업무만족도

#### (1) 동반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동반자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V-73>는 매우 불만족은 1, 매우 만족은 5로 하는 5점 척도로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대도시는 3.67, 중소도시는 2.83, 농어촌은 3.29점이다. 대도시와 농촌이 만족도 평균이 높고 중소도시가 낮다.

평균으로 구분하여 보면 지역 중 B(3.86)가 가장 높고, D(3.60), A(3.53), K(3.29), C(2.23) 순이다. 중소도시의 동반자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한 지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온 때문이다.

<표 V-73> 동반자의 역할 만족도

단위: 평균(점)

구 분	평균(점)
대도시(n=54)	3.67
중소도시(n=23)	2.83
농어촌(n=17)	3.29
계(n=94)	3.39

(2) 만족도/불만족 사유

동반자로서의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해 만족한 이유를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V-74>와 같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도시는 77.1%, 중소도시는 57.1%, 그리고 농어촌은 85.7%가 적합한 서비스여서 만족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여서 동반자로서의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동반자로서의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A지역에서는 연계시설 불충분이란 응답이 나왔고, B지역에서는 연계시설 불충분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그 외 C, D 지역에서는 행정업무과다에 대한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75.0%가 연계시설 불충분으로, 중소도시는 이를 81.8%가 행정상업무 과다로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74>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만족과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 분	적합한 서비스여서	의미있고 보람있어서	무응답		
만족	대도시(n=35)	27(77.1)	4(11.4)	5(14.3)		
	중소도시(n=7)	4(57.1)	1(14.3)	2(28.6)		
	농어촌(n=7)	6(85.7)	0(0.0)	1(14.3)		
	계(n=50)	37(75.5)	5(10.2)	8(14.3)		

	구 분	행정업무과다	연계시설 불충분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제공부족	동반자에 대한 지원부족	무응답
불만족	대도시(n=4)	0	3(75.0)	1(25.0)	0	0
	중소도시(n=11)	9(81.8)	0	0	1(9.1)	1(9.1)
	농어촌(n=2)	1(50.0)	0	1(50.0)	0	0
	계(n=17)	10(58.8)	3(17.6)	2(12.0)	1(5.8)	1(5.8)

### (3) 동반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동반자의 역할에 대한 10개 항목 중 동의 점수가 4점이 넘는 높은 것은 <표 V-75>과 같다. 부모,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청소년에 대한 사정 및 계획, 실행, 평가, 청소년에게 전문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기 평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 수집, 검토 등이다.

<표 V-75> 동반자 역할에 대한 인식

동반자 역할	동의점수 (평균)
⑥ 부모,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4.30
④ 청소년에 대한 사정 및 계획, 실행 및 평가	4.20
② 청소년에게 전문서비스에 대한 접근제공	4.16
⑩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기평가	4.01
⑤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 수집, 검토	4.01
③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동료와 공조업무 수행	3.99
⑧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수준 평가	3.95
① 청소년과 효과적인 업무협력관계 구축	3.94
⑦ 청소년에게 기회의 균등 및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	3.85
⑨ 연계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점 파악	3.70

### 4) 동반자가 인식한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로 인식한 것은 <표 V-76>과 같다. <표 V-76>에 의하면 지역별도 응답경향에 차이가 있다. 각 지역별 1, 2로 꼽힌 것을 살펴보면 A지역에서는 연계기관구축(40.6%), 동반자 서비스 확대(21.9%)가 우선적이라고 한 반면, B지역에서는 동반자서비스확대(22.7%)와 경제적 지원(22.7%)이 우선적이다. C지역에서는 연계기관구축(23.1%), 동반자 서비스확대(22.7%), D지역에서는 경제적지원

(50.0%), 가족적 개입(40.0), E지역에서는 보호(52.9%)가 우선적이다.

<표 V-76> 동반자가 인식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단위: 빈도(%)

	사례수	연계 기관 구축	동반자 서비스 확대	경제적 지원	보호	가족 적 개입	무응 답	문화	상담	기타 생활 환경등	진로 개발및 기회 제공
지역별	A	32 (40.6)	7 (21.9)	3 (9.4)	1 (3.1)	3 (9.4)	6 (18.8)	1 (3.1)	3 (9.4)	2 (6.3)	1 (3.1)
	B	22 (13.6)	5 (22.7)	5 (22.7)	3 (13.6)	2 (9.1)	1 (4.5)	4 (18.2)	2 (9.1)	2 (9.1)	1 (4.5)
	C	13 (23.1)	3 (23.1)	0 (0.0)	0 (0.0)	1 (7.7)	4 (30.8)	1 (7.7)	0 (0.0)	0 (0.0)	1 (7.7)
	D	10 (10.0)	0 (0.0)	5 (50.0)	0 (0.0)	4 (40.0)	1 (10.0)	1 (10.0)	0 (0.0)	0 (0.0)	1 (10.0)
	E,F,G	17 (11.8)	0 (0.0)	1 (5.9)	9 (52.9)	2 (11.8)	0 (0.0)	2 (11.8)	0 (0.0)	1 (5.9)	0 (0.0)
권역별	대도시	54 (29.6)	12 (22.2)	8 (14.8)	4 (7.4)	5 (9.3)	7 (13.0)	5 (9.3)	5 (9.3)	4 (7.4)	2 (3.7)
	중소 도시	23 (17.4)	3 (13.0)	5 (21.7)	0 (0.0)	5 (21.7)	5 (21.7)	2 (8.7)	0 (0.0)	0 (0.0)	2 (8.7)
	농어촌	17 (11.8)	0 (0.0)	1 (5.9)	9 (52.9)	2 (11.8)	0 (0.0)	2 (11.8)	0 (0.0)	1 (5.9)	0 (0.0)
계	94 (23.4)	15 (16.0)	14 (14.9)	13 (13.8)	12 (12.8)	12 (12.8)	9 (9.6)	5 (5.3)	5 (5.3)	4 (4.3)	

## 6. 요약

### 1) 지역자원의 확보현황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는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상담지원센터가 기존에 구축해 온 자원에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시행되면서 신규로 다양한 지역기관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5월말 현재 확보한 지역자원 현황을 볼 때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도시규모보다는 센터의 확보 역량과 의지가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규모가 커서 지역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센터의 규모와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지역자원의 확충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 준다. 농어촌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의 경우는 확보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확보자원의 특성을 볼 때 발견체계에서는 학교, 지역이용시설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해 1차안전망을 통한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발견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 지역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이 낮 으면서 PC방, 찜질방 등 자영업체를 지역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위기청소년 발견체계에 대한 의미를 긴급구조 등에 초점을 둔 협애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 중 한 지역의 경우 발견체계에 있어서 상담센터의 비중이 높다. 허브기관으로서 상담지원센터와 어떻게 역할을 분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견체계와 지원체계가 균형 있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기관과의 상시적이고도 원활한 연계체계 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조사된 지역사례 중 B, D지역은 발견체계와 지원체계 기관, 1,2,3차 기관 등이 비교적 균형 있게 확보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 있어 공공자원을 축으로 하되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B지역은 공공기관을 축으로 비영리, 영리기관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안전망 사례로 볼 수 있다.

## 2)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 실태

### (1) 조직유형별 연계협력실태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 중 총 61개 기관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지역사

회 안전망 참여조직 중 조직의 위세(안정도)가 높을수록 타 기관과 연계협력을 하기 용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학교, 육아원 등은 조직위세가 가장 높은 조직이며 대안학교, 사회복지관이 비교적 조직 위세가 높고 자원봉사센터, 시도 및 시군구(상담)지원센터, 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그 다음 순위이다. 그룹 홈, 지역아동센터, 자활지원관, 청소년단체, 공부방 등이 가장 취약한 조직으로 드러났다.

사례의뢰 및 재배치 기관수와 사례 수, 서비스교환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를 종합하여 조직유형별 연계협력순위를 산출한 결과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의 연계협력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자활지원관이 높으며 쉼터, 대안학교, 의료관련단체, 정신보건센터, 소년분류심사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비교적 연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어린이집, 육아원, 자영업관련단체, 그룹 홈 등은 연계협력 수준이 낮은 편이며 범죄예방위원협의회, 청소년단체,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병원 등이 가장 낮은 조직으로 평가된다.

## (2) 지역별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실태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실태를 보면 <표 V-77>과 같다.

<표 V- 77>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협력실태

구 분	허브체계	발견체계	지원체계
A	시도 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쉼터 등이 사례의뢰 재배치가 활발한 기관이며 이 중 시도와 시군구(상담)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함.	학교의 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경찰서, 복지관 순임.	병원 등 의료 기관으로 재배치가 가장 많으며 쉼터 등 보호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대안학교 등 학습지원시설로 재배치됨.
B	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여러 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의뢰 받고 있으나 다른 기관으로 사례 재배치하는 실적은 미미함.	학교의 의뢰가 적은 편이며 보호 종합 지원센터, 경찰서 등 사법기관의 비중이 높은 편임.	쉼터에서 쉼터로 재배치되는 경우 외에 기관 간 사례재배치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 지원체계의 연계가 취약하며 상담 지원 센터가 자원을 개발 직접 지원하는 기능이 강함.
C	시군구 지원센터가 가장 여러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례를 의뢰받고 재배치하고 있음.	발견체계 수에 학교는 많았으나 실제로 학교보다는 사회 복지관에서 의뢰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발견 체계로서의 기능이 약함.	상담지원센터 외에 사례를 재배치 받은 조직은 쉼터와 그룹 홈 뿐임. 상담지원센터는 병원, 쉼터, 대안학교, 법률지원단체 등에 사례를 재배치함.
D	시군구지원센터가 가장 여러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례를 의뢰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사례를 재배치하고 있음. 재배치 실적은 미미함	학교, 경찰서가 주요 발견체계임.	쉼터, 병원 등이 재배치 시설임.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지역 내 유사상담시설과의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음.
E	시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지원센터	교육청, 경찰서, 시군구 지원센터는 방과 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쉼터가 주요 지원체계이며 시군구지원센터는 방과후 공부방 등이 발견체계이자 재배치 시설이 되는 등 지원체계가 매우 제한적임. 병원이 협력합의기관이기는 하나 재배치 사례는 없음

지역사회안전망 참여기관의 연계협력에 대한 욕구를 분석해보면 필요로 하는 연계협력기관은 상담지원센터(62.3%), 쉼터(34.4%), 의료기관(34.4%), 직업훈련기관(26.2%), 학교(24.6%), 청소년수련시설(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성에 있어 지역기관들이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지원센터의 개방적 자세, 지역기관과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계협력을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성에 있어 연계의 우선순위에 오른 기관은 쉼터 등 보호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기관 들이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기관 간의 교류부족과 조직의 폐쇄적 분위기이다.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자원의 부족 등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기관 간 교류의 활성화와 개방성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기관들이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업무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지역이용시설, 택시·노래방 등 자영업체, 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하는 발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쉼터, 그룹 홈 등 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의료기관, 법률기관, 활동기관, 단체 등은 서비스지원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지역이용시설, 대안학교, 자활지원관, 쉼터 등은 상담지원센터의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지원센터는 이러한 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례발견과 의뢰, 서비스 연계라는 틀을 넘는 조직간 자원의 이전과 지원이라는 다른 형식의 연계망 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쉼터는 발견체계, 보호지원체계로서 뿐 아니라 상담지원센터의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조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조직으로 나타났다.

### (3) 허브기관 분석

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을 시작한 2006년도에 연간예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2005년 결산액이 2억 7천만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약 4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이 7억5천으로 급증하였다. 시군구지원센터는 2005년 결산액이 1억 3천 수준이었으나 2006년 약 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이 2억 3천만원 규모가 되었다.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인력도 충원되었다. 지역마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시도상담지원센터는 4-7명, 시군구지원센터는 1-5명이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배치되었다.

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명칭인 청소년상담실의 개칭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이 청소년상담실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관명이 요청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기관 명칭을 조사한 결과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83.3%는 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청소년 긴급지원센터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시군구지원센터의 경우 응답기관의 58.4%만이 청소년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16.7%는 청소년상담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외부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기초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쉼터 등 사회보호 서비스 지원이다. 또한 부모 고용 지원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는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외한 전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시도에 비해 지역사회자원이 부족한 시군구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많은 지역자원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 (4) 청소년 동반자 실태분석

청소년동반자는 연령은 30대와 40대, 학력은 대졸이상이 주류를 이룬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도 있다. 청소년동반자가 소지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 순이며 관련 경력은 3년 이내이며 농어촌 지역 동반자의 경력이 가장 짧아 2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동반자의 약 30%는 전일제, 나머지 70%정도가 시간제 동반자로 일하고 있다.

동반자의 업무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을 5로 하는 척도에서 3.39 정도로 중간정도의 만족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자의 만족 사유로는 동반자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불만족 사유로는 행정업무가 과다하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다.

동반자들이 위기청소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연계기관 구축과 동반자서비스 확대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지원과 보호, 가족적 개입이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52.9%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가족적 개입과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중소도시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지원과 가족적 개입에 대한 필요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 VI. 외국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례

1. 영국 : 커넥션즈 사업
2. 일본 : 아동학대예방사업
3. 미국 : SafeFutures사업
4. 미국 : System of Care
5. OECD : 청소년역량강화사업  
(YEPP)
6.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 VI. 외국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례

### 1. 영국 커넥션즈 사업

#### 1) 사업개요

영국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은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16-19세의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업도 갖지 않은 청소년(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을 가장 중심적인 정책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목적과 유사하므로 영국 커넥션즈 사업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커넥션즈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사업시행지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추진배경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과 성적인 문제, 가출, 무단결석, 퇴학이나 자퇴 등 청소년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영국이 1990년대 말에 EU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10대 임신율과 최저 학력수준을 보여준다는 OECD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상황과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그리고 16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과 실업 청소년의 비율은 1994년 이래로 거의 변함없이 약 9%대(17만 3천명)를 차지하는 등 위기청소년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해결책들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이 결과, 영국 정부는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공교육의 부재와 허실이라는 비판적 자각으로부터 1988년에 교육법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법 개혁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는 물론 후에 1990년 대 말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으며, 코넥션즈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었다. 1998년 교육개혁법은 영국교육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영국 교육제도와 청소년정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개혁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지침이고, 그에 따라 10개의 기초 필수과목이 선정된 것과 더불어 전문 평가기관(Ofsted)이 설립된 것이다. 국가 교과과정 가운데 개별 사회적 건강교육(Personal Social Health Education:PSHE),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성교육(Sex Education),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영역들은 최근 영국의 청소년보호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과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의 문제가 더욱 제기됨으로써 영국 중앙정부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DfES)는 새롭고 구체적인 청소년보호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16-18세 학교중도탈락 청소년과 실업 청소년(NEET)의 경우, 자라서 성인이 되어도 실업은 물론, 저소득, 편부모,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며, 또한 16세 이후가 되면 정규교육의 기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기회와 다른 보조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 거기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전후의 시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범죠타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하거나, 스포츠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자기 계발을 하도록, 그리고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정부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10대를 거치는 동안 성인의 시기로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Popham, 2003).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사업이다. 코넥션즈는 평등법에 따라 청소년이면 누구나 혜택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누구에게도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유엔의 아동권리보호조약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코넥션즈 사업은 13세에서 19세의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의 청소년보호정책이자 청소년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써, 이 사업의 성패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넥션즈 사업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소년이 처한 문제 상황 파악과 문제해결이나 개선을 위한 실제로의 조언과 안내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전달과정 그리고 서비스 후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넥션즈 사업은 중앙정부 6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민간자원 활동 영역들과 기존의 청소년 서비스와 공조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코넥션즈 사업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청소년 서비스임을 내포하는데, 특별히 약물남용, 가출, 미혼부모, 범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치료나 발달과업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나 예술 활동, 자원 활동까지 지원하게 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개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어지지만, 개인 정보의 노출을 막

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2) 추진경과

코넥션즈 사업의 기원은 1999년의 지속학습<sup>11)</sup>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기인 16세 이후에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인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2000년부터 코넥션즈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코넥션즈 사업은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코넥션즈 발전 비전(Vision for 2006)을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2006년까지 청소년들에게 코넥션즈 사업이 좀 더 가시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코넥션즈 사업이 청소년을 돕는 사업으로 이해되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사업을 늘려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코넥션즈사업은 2005년 청소년녹서(Youth Green Paper: Youth Matters)에 의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2005년 7월 18일 영국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기술부(DfES)는 2003년 아동녹서(Child Green Paper : Every Child Matters)에 이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청소년녹서를 제시하였다. 이 녹서에서 제안하는 5가지의 중요한 목표 역시 2003년도에 발표된 아동녹서의 목표들을 그대로 계승하여 건강, 안전, 즐겁고 보람된 학습, 긍정적인 사회 참여, 경제적인 웰빙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 청소년녹서는 특별히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그 목적으

---

11) 6세 이후 학습을 위한 새로운 틀(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 16 learning)

로 하며 위기청소년이나 소외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아동 가구와 학교와 지역 직업학교 등과 연대하여야 하고, 특별히 코넥션즈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과 정보제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더 많이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늘려야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시설들을 고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러셀위원회<sup>12)</sup>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호 활동에 전국적인 기준을 세우고, 지방정부에게 2년에 걸쳐 4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시설확충 및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런 활동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할인카드를 시범 실시하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기회자금(opportunity funds)’이라는 재원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조언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위기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위기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반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DfES, 2004).

12) the Russell Commission: 2004년 5월에 내무부장관 주도하에 청소년 활동과 참여의 국가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이 위원회는 특별히 정부주도하에 청소년의 지원활동과 사회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 개의 자문위원회와 평가팀, 그리고 자원활동, 경제, 방송 분야 등의 대표들로 모인 독립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자문위원회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3) 사업 시행지역

코넥션즈 사업시행지역은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은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국가로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갖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코넥션즈 서비스는 각각의 지방정부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넥션즈는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47개의 파트너십 지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학습·기술자치협의회(Learning and Skill Council)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코넥션즈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구체적이고 폭넓게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사업 분석

코넥션즈 사업을 목적, 대상, 선정기준, 내용, 전달체계, 재원, 주요 인력,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목적

코넥션즈 사업의 5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과 요보호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개인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을 얻게 함으로써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한다.

둘째,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배움과 고용에 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한다.

넷째,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코넥션즈 사업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한다.

## (2) 사업대상과 선정기준

원칙적으로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사업의 대상이 된다. 즉 코넥션즈 사업은 모든 청소년을 청소년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이 대상을 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이나 청소년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간에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코넥션즈는 위기청소년을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자세하게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업도 갖지 않은 16-19세 위기청소년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범죄자나 이미 전과가 있는 청소년, 10대 미혼부모인 청소년, 요보호아동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청소년, 노숙자 생활을 하는 청소년, 청소년 가장,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 자신의 잠재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주 사업대상이 된다.

한편, 주 사업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은 위기 상황과 처한 상황에 따른 청소년의 3가지 분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3가지 집단 분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 VI-1>과 같다.

<표 VI-1>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특징

필요의 정도 (우선순위; Priority)	특징
최소(Minimum) 집단 (우선순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학업성취도</li> <li>■ 일반적인 조언과 지도 필요</li> <li>■ 진로지도 필요</li> <li>■ 이미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조언을 받고 있는 경우</li> </ul>
지원 (Supported)집단 (우선순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학교 졸업자격 시험(GCSE)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li> <li>■ 16세 이후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큼</li> <li>■ 취업을 하고자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가이드와 지원 필요</li> <li>■ 능력/현실과는 무관한 꿈을 가짐</li> <li>■ 학교 출석율이 저조</li> <li>■ 학습 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확률이 큼</li> <li>■ 학업성적이 매우 낮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감을 느낌</li> <li>■ 위의 모든 특징들은 기본적인 원인제공을 하는 개인적 문제가 존재</li> </ul>
중점(Intensive) 집단 (우선순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되어있고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의 신속한 지도가 필요</li> <li>■ 자격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 지식 능력이 거의 없음</li> <li>■ 문해 능력과 산수능력이 떨어짐</li> <li>■ 퇴학이나 저조한 학교 출석률로 이미 중요한 교육의 시기를 놓침</li> <li>■ 낮은 자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취도가 결여됨</li> <li>■ 대인관계,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음</li> <li>■ 도발적인 행동양식을 갖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 함</li> <li>■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도움 필요</li> </ul>

코넥션즈 사업에서 위기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지도하고 보살피는 맞춤형 지도는 필수적이므로 개별청소년지도자(Personal Adviser:PA)라는 전문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개인적 조언과 자문을 하기 때문에 PA가 행하는 우선순위 분류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할 때 PA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 편견 등을 불식시켜야 하며, 위기청소년을 가려내고 그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도움을 받고 학교와 협력하는 작업을 갖는다. 예를 들어, PA는 위탁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 내의 코넥션즈 조정자(Coordinator)나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 특수교육담당교사(SENCO), 학년주임, 양호교사, 종교부장, 특별학습담당 지도교사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접수를 하며 학기마다 검토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사된 정보는 전산작업으로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다.

### (3) 사업 내용

#### ① 중앙정부 사업

중앙정부에서 코넥션즈 사업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배움과 취업에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청소년 비행행동과 범죄율의 예방과 감소, 둘째, 흑인 청소년 및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교육과 사회 참여율 확대 및 학업성취도 향상, 셋째, 청소년들의 개인적이고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의 향상 등에 있다.

중앙정부는 코넥션즈 사업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여 코넥션즈 사업을 확장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넥션즈 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연계시키고, 2006년까지 전국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복지나 정책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

나 절차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부처간의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8세 미만 미혼부모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범죄의 전과가 있는 청소년들을 각각의 해당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도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및 비행행동 예방에도 코넥션즈 사업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데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코넥션즈 서비스는 각 지역 간에 파트너십을 이루며 지역 개발과 전국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배움의 자리나 일자리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왜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실업의 상태로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여 청소년 개인의 삶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학교 중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청소년 개인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코넥션즈 서비스는 객관성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갖도록 연구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있다.

## ② 지역서비스

코넥션즈 사업은 잉글랜드 전국에 총 47개의 파트너십, 즉 지부를 가지고 있다. 대도시를 기점으로 1개나 2개, 또는 3개의 작은 도시들을 통합하여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내부의 운영원리와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코넥션즈 사업의 지역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청소년들과 신속하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구축하고 있다. 즉 코넥션즈 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

런 지역사회 내의 풀뿌리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영국 청소년들이 정보와 조언을 얻는 곳은 부모나 학교친구들에게서 인데,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사업의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IT시설들을 이용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정부는 13세부터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코넥션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부모와 교사와 학교들도 코넥션즈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공통의 주제와 계획안에 파트너십 협력단체들이 지역단체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세분화된 목표와 대상을 선별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성취와 발달을 돕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 시스템과 정책과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각각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을 묶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③ 코넥션즈 카드

코넥션즈 카드(Connexions card)는 16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되는 카드로서 포인트 점수가 쌓이면 제휴업체들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고, 학생증의 대용이나 청소년의 신분증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16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원하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코넥션즈 센터에서 학교나 직업학교, 또는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포인트 점수는 활동별로 받게 되는데,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립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등에 재학 중, 혹은

회사, 기타 산업시설에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 정해진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에 출석을 함으로써 하루에 100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청소년봉사단(Millennium Volunteer)에 속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에 하루에 5점씩, 최대한 1년에 1,000점까지 적립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청소년이 코넥션즈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주거나, 특별행사 기간에는 포인트 점수를 돈처럼 활용하여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 (4) 사업주체와 전달체계

영국의 행정부에는 총 19개의 부가 있고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주로 교육기술부(DfES)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부총리산하에 있는 사회 배제실(Social Exclusion Unit)이나 내무부, 보건부 등도 역시 긴밀하게 협조하며, 교육은 물론 청소년복지정책 등을 함께 공유하기도 한다.

영국의 교육기술부 내에는 7개의 국이 있는데, 고등교육국, 학교국, 아동·청소년·가족국, 협동서비스개발국, 전략커뮤니케이션국, 재정국, 평생교육국이 그것이다. 이중 2000년에 처음 소개된 코넥션즈 사업은 아동·청소년·가족국의 아동·청소년지원과 산하의 코넥션즈 정책프로그램 운영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잉글랜드지역에 47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까지 150개의 지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47개의 코넥션즈 지부들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교육기술부(DfES)에 속해 있긴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된다. 그 구조와 지원방식이나 예산은 각각의 지방정부별로 다르며,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지역적인 코넥션즈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코넥션즈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 산하 청소년서비스국의 국장이 주로 맡아 청소년 서비스를 총괄한다. 일반적으로 코넥션즈

위원회는 코넥션즈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 지역의 모든 청소년 서비스 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하는데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존 코넥션즈 사업과 지역의 민간 자원활동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행정적 지원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5) 재원

코넥션즈 사업에 드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함께 지방정부가 알아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마다 재정 규모가 다르다. 그리고 코넥션즈 사업에 드는 재원은 8-19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적극적 활동(Positive Activities for Young People: PAYP)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PAYP 프로그램에 드는 재원은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기술부와 내무부 예산과 영국의 로또기금(the Big Lottery Fund:BLF)과 새로운 기회기금(New Opportunities Fund:NOF)의 통합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2003-2004년 첫 해에 드는 재원은 약 4,500만 파운드이며, 3년간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

#### (6) 주요 인력

코넥션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청소년지도자(Personal Adviser: PA)라는 전문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개인적 조언과 자문을 행한다는 점으로 이 PA의 활동 여부에 따라 코넥션즈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이 PA의 역할은 코넥션즈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PA가 코넥션즈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으로는 ①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② 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과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③ 청소년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더 적합한 PA와 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뢰받는 일을 함으로써 ④ 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코넥션즈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간접적으로는 ① 청소년들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공공 서비스나, 자원 활동단체나, 커뮤니티 그룹 등이 포함되며, ② PA는 청소년들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년 코넥션즈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 ① PA의 역할

PA의 역할은 기존의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s)들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코넥션즈 센터나, 학교, 다른 청소년단체, 지역사회단체들에 배치되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조언하며, 아울러 교육지원, 생활지원으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과 다리를 놓는 연계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PA의 역할은 첫째, 학교 및 교육기관, 다른 부서나 기관,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주로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과 둘째, 직접적으로 평가와 계획, 개입을 하고,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일을 하는 역할 셋째,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넥션즈 사업은 APIR이라는 과정에 따라 청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APIR의 단계에 따라 PA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APIR은 서비스를 받아가는 각각의 단계를 의미하는데 첫째, 사정(Assessment)단계 둘째, 계획(Planning)단계, 셋째, 실행(Implementation)단계, 마지막으로 평가(Review)단계 로서

각 단계별 과정에서 PA 역할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APIR의 단계별 서비스와 PA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사정 (Assessment)

이 단계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위기청소년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존중하며 좋은 점과 어려운 점들을 분류하여 성공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끄는 기본단계이다.

사정은 단순히 한 번의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PIR이 진행되는 동안 위기청소년이 소속한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등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류를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된다.

PA가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청소년이 자신의 현재상황이 어떠하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는 일이다. 사정은 PA가 코넥션즈 사업부 직속이건, 아니면 학교나 기관(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 예방서비스팀, 사회복지팀)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건 간에, PA는 위기청소년을 담당하게 되면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업무이다. 그리고 PA는 이 모든 과정을 청소년의 입회하에 문서로 기록해 남겨야 한다.

#### 나. 계획 (Planning) 과 실행 (Implementation)

사정단계를 통해 파악된 위기청소년의 문제점들은 행동계획의 수립단계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이 계획들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건 코넥션즈 사업의 전체 목표와 방향을 늘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활동에의 참여나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다. 평가(Review)

평가단계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코넥션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점검의 단계이다. 이 점검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기에 부모 혹은 보호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해야 한다. 이 때 평가되어야 할 부분들은 처음 단계인 사정에서 이루어졌던 요인들에 대한 재확인이다.

위기청소년 중에서 중점(Intensive)집단 수준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하고, 지원(Supported)집단 수준인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공식적인 점검을 해야 하며, 위기청소년이 아닌 경우는 질문지를 통해서, 혹은 집단 인터뷰나 다른 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PA의 자격

PA는 교육과 건강, 사회복지 그리고 범죄 정의 등의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PA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청소년을 모든 계획과 실행의 중심에 두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은 <표 VI-2>와 같다.

<표 VI-2> PA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

중요한 기술과 지식	역할차원에서의 자질	개인차원에서의 자질	업무차원에서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연능력</li> <li>• 청소년과 어울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능력</li> <li>• 효과적인지원 능력</li> <li>• 평가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부여 능력</li> <li>• 자질 개발능력</li> <li>• 전략개발가능성</li> <li>• 공명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성</li> <li>• 추진력</li> <li>• 공감하는 능력</li> <li>• 자신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할 수 있는 기술</li> <li>• 업무의 효율성</li> <li>• 커뮤니티참여성</li> <li>• 변화가능성</li> </ul>

이러한 PA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학 졸업자이거나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수준 가운데 4급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학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것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미 있는 사람들도 PA로 지원할 수 있고 학교의 교사들도 지원 자격이 된다. PA들은 각각의 코넥션즈 지부에 배치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청소년 센터,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배치될 수도 있고, 이들 중에서도 인턴과 정식직원으로 구분하여 얼마간의 수습과 훈련기간을 거친 후에 배치하여 정식직원이 된 뒤에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학교 안에 배치되어 있던 직업상담사(Career Advisor)가 PA훈련과정을 거친 후 교사에서 PA로 역할을 바꾸어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다.

PA 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코넥션즈 지부 자체 내의 6개월에서 9개월간의 양성 및 훈련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또한 각 지방의 대학과 연계하여 위탁 양성하는 1년 과정의 디플로마(Diploma) 학위과정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코넥션즈 지부는 좀 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PA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넥션즈 직통 라인은 아침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무료전화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무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이 전화 라인을 통하여 PA와 상담하고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7) 사업에 대한 평가

코넥션즈 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성과나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코넥션즈 사용자인 청소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영국 코넥션즈 사업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넥션즈 사업은 영국의 13-19세에 속한 모든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상으로 정하고, 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이나 청소년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청소년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코넥션즈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다룸으로써 청소년보호정책이 결국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청소년 사업이 되고 있다(윤철경 외, 2005c).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보호정책도 특정 청소년 영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청소년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PA라는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지도자의 양성에 있다. 이 전문지도자는 기존의 청소년지

도자(Youth Worker)와 사회복지사의 양성과정과 분명히 구별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플로마(Diploma)수준의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였고,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하여 청소년보호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지도자의 역할이며, 청소년보호 전문지도자는 그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확실히 해야 하므로 전문지도자가 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윤철경 외, 2005c).

따라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전문지도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이 청소년보호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활동집단, 학교가 모두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넥션즈 사업은 가시화되기까지 3년의 준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쳐 학교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청소년보호정책에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학교에 있던 직업상담사로 하여금 적절한 훈련과정을 거쳐 PA로 전환한 후 적극적으로 코넥션즈 사업에 동참하도록 구조적인 틀도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단체와 지역복지센터에 PA를 배치하여 청소년보호가 단지 학교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청소년보호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제대로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동일한 정보가 학교, 청소년단체, 그리고 코넥션즈 지부에서 공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대한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윤철경 외, 2005c).

따라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활동집단, 학교가 모두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 갈 수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센터(또는 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은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중퇴하고, 실업의 상태로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여 청소년 개인의 삶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코넥션즈 사업이 객관성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갖도록 연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연구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 내용 가운데 코넥션즈 카드(Connexions card) 발급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16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코넥션즈 카드와 같은 청소년 카드를 개발하여 포인트 점수가 쌓이면 제휴업체들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고, 학생증의 대용이나 청소년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데는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법률 중에 아동보호등기부와 긴급아동보호명령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보호가 요구되는 아동과의 정보를 미리 보유하고 청소년과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황이 진전되고 개선될 때까지 청소년과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친부모라할지라도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법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이처럼 국가가 개입하여 위기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킬 수 있는 강한 법률과 위기상황으로부터 격리되었을 때를 대비한 강력한 정책적 장치가 필

요할 것이다. 위기상황으로부터의 격리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경제적 지원도 함께 하도록 하며, 청소년을 위해서는 재활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윤철경 외, 2005c).

마지막으로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보호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관한 지원 법률이 마련되는 과정에 그 특성이 있다. 영국의 백서(White Paper)는 한국의 법안에 해당되는데 제일 먼저 법안으로 제기된 이후에는 녹색(Green Paper)라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마침내 의회에 제안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여 백서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녹색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의 실현가능성, 공정성, 필요성 등을 전문가집단과 일반인으로부터 듣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넥션즈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3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PA라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윤철경 외, 2005c).

따라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정책을 지원하는 법률을 함께 보완해야 하고 그 보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과 청소년의 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도 여러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정책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관련 주요 법제 및 내용

코넥션즈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안 중 하나는 첫째, 사생활과 정보의 보장에 관한 법률인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이다. 이 법은 모든 단계에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코넥션즈 지부에 등록된 청소년에 관한 정보들은 코넥션즈 사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 문서화된 기록들도 철저히 담당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때는 이런 정보들은 청소년 자신의 동의하에 기록되어지고 정보로서 취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계약은 서면계약, 서면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코넥션즈 지부와 PA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PA는 청소년들에게 그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아동보호 이슈와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위기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지는 경우, 그리고 코넥션즈와 함께 일하는 법정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파일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복사본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사생활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s)이다. 이것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긴급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영국 사회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경찰이나 사회복지부에 아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판단이 되어질 경우, 아동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혹은 아동이 학대받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최초 8일 동안 격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조사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대 7일까지 다시 연장될 수 있으며, 경찰이나 사회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원인과 진상을 파악한 후, 다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교육지도명령(Education Supervision Orders)이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제대로 출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사회복지부 관리자와의 특별면담과 학부모, 학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등기부(Child Protection Register)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육기술부(DfES) 산하의 사회복지부에 의해 기록되고 유지되는 개별아동에 대한 기록으로 이 기록에는 위기에 처한 아동의 상황과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기관과의 계획과 아동에 대한 신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 4) 향후 추진계획

코넥션즈 사업은 이미 청소년 사업을 다방면으로 변화시켜왔다. 청소년 보호정책의 개혁을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넥션즈 사업의 고객인 청소년들은 행정적인 편리함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영역에까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향후 3년에 걸쳐 그 계획들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넥션즈 사업의 향후 3년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모든 정책과 집행에서 주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을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이다. 청소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조정할 것이고 청소년들도 코넥션즈 사업의 목적과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코넥션즈 사업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찾고 있으며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ITC 사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진행시키며 16세 이후의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사업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가산점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자원활동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과 상호 공존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의 공공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서비스 분야와 자원활동 분야와 함께 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기관과 팀을 이루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기관들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기존 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하고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지식과 기술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절한 상담가나 조연가들을 연결하여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일본 : 아동학대예방사업

### 1) 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 및 경과

197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평균 가구원수 2.76명, 2003년) 그리고 취업여성의 급격한 증가는 전통적 혈연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해체, 고립감, 양육스트레스 등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아동양육 기능이 점차 저하됨으로써 아동학대, 가출, 비행 등 아동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출생율(합계특수출산율 1.27, 2004년)의 저하로 인한 소자화(小子化)의 진행과 이에 따른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양육환경의 변화 등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다(오정수·이혜원, 정익중, 2005).

그러나 1994년 엔젤플랜의 책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의 가입 그리고 1999년 뉴엔젤플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소위 ‘虐待死’)사건도 증가하였다. 아동상담소에 신고 되지 않은 피학대아동이 사망하거나 아동상담소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대책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sup>13)</sup>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의 신속성·전문성·통합성을 강화

---

13) 후생노동성은 1989년 ‘1.57 쇼크’(합계특수출산율 1.57, 1989년) 이후 종래의 후생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과 노동성(우리나라 노동부에 해당)이 통합된 중앙정부 조직이다. 이 조직은 특히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적 성역할관념의 전환, 직장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풍토의 개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정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아동이 꿈을 갖고 무럭무럭 생활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주택 보급 등 생활환경 정비,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체계의 강화 등

할 수 있는 조치,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가족통합을 위한 학대부모 대상 상담·치료조치,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97년 아동복지법을 50년 만에 대폭 개정하여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상담체계를 확충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의 특별법인 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 5월 제정되었고, 모법인 아동복지법과 연계성을 갖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이 법의 개정은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의 의무, 국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강화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아동을 위한 양육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뉴엔젤플랜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을 배경으로 지역사회 중심 아동학대예방사업이 확충되었다.

## (2) 시행지역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182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아동가정지원센터와 복지사무소 부설 가정아동상담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모든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본 전국에서 시행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 2) 사업 분석

###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학대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 성격형성에 중요

---

을 통한 아동학대의 예방, 모자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뉴엔젤플랜을 기초로 2,469억엔(후생노동성 부분)을 확보하였다.

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아동학대의 금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1조와 제3조 참조).

## (2) 사업 대상과 선정기준

이 사업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네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아동학대방지법 제2조 참조).

- ①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때리기, 차기, 담뱃불로 지지기 등)
- ②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것(아동에게 성교와 성적 행위의 강요, 성기와 성교를 보이는 등의 행위)
- ③ 방임 :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 장시간 동안의 방치 등 보호자로서의 양육을 현저하게 게을리 하는 것(질병과 부상을 당하더라도 시기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영유아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 불결한 환경에서의 생활방치, 동거인에 의한 학대 묵인 등)
- ④ 심리적 학대 : 폭언, 거부, 가족폭력 등 기타 아동에게 현저하게 심리적 외상을 입히는 언행을 행하는 것(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 무시, 형제·자매 간 비교 등)

따라서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대상은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며, 선정기준은 위에서 정의한 네 가지 학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은 아동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대자

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학대자의 행위에 의해 아동이 유해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정되면,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 (3) 사업주체와 전달체계

일본의 아동복지행정은 <그림 IV-1>과 같이 중앙정부(이하 국가) 수준, 광역지방정부(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 수준, 기초지방정부(시정촌) 수준의 크게 세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다<sup>14)</sup>.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즉 경제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책임을 다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공기관에 상담·원조를 요청할 경우와 학대부모와 같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는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 정부는 보호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원에 의해서도 아동의 건강한 양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임을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① 국가

국가는 아동과 가정에 관한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감사, 예산 책정 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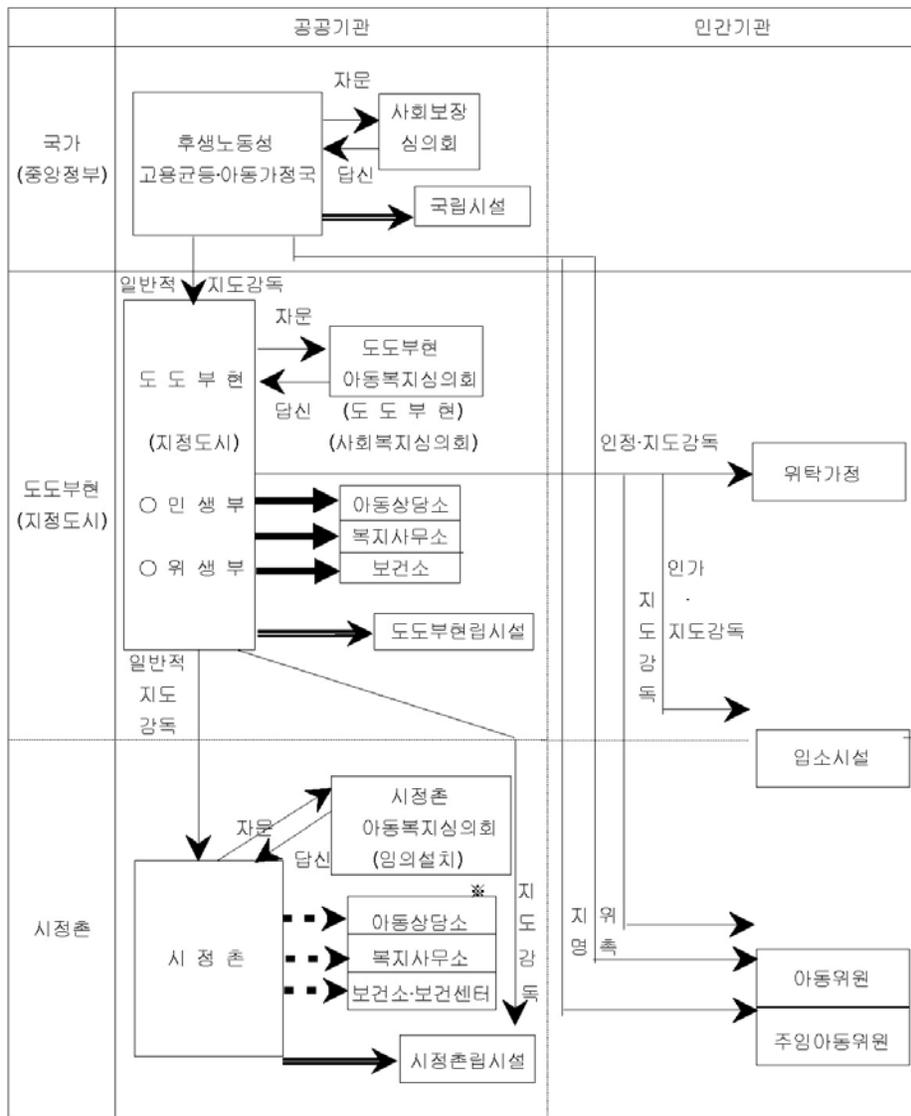
---

14) 일본의 광역지방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 현재 1도(동경도) 1도(홋카이도) 2부(교토부, 오사카부) 43현(아오모리현 등 43)이 있다. 기초지방 행정구역은 시·정·촌(市·町·村)으로서 2006년 3월 1,821개로 통합되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1956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지정도시(현재 13개)로 지정되어 도도부현의 사업과 권한을 이양 받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중핵시도 설치되어 도도부현이나 지정도시와 동일하게 아동복지업무를 시행하고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안에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이 있다. 이 국은 총무과, 고용균등정책과, 직업가정양립과, 단시간·재택노동과, 가정복지과, 육성환경과, 보육과, 모자보건과로 나뉘어 고용균등·아동복지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 ② 도도부현(광역지방정부)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 통일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 시정촌에 관한 연락조정 등을 담당한다.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도도부현 아동복지사업 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 인가 및 지도감독, 아동상담소·복지사무소·보건소 설치운영, 시정촌 원조, 전문성이 높은 아동가정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도부현 외에 삿포로시 등 13개 지정도시와 중핵시는 도도부현과 같은 권한을 갖고,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아동위원 지도감독, 아동양육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보육제공, 모자생활지원시설·어린이집·조산시설 설치인가,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 **→** 표시는 하위행정기관을 나타냄.

**⇒** 표시는 부속기관을 나타냄.

**⋯→** 표시는 전국 시정촌에 설치된 하위 행정기관을 나타냄

\* 정령에서 정한 시는 아동상당소를 설치할 수 있다(2006년 4월 시행).

출처: 新社會福祉學習總書編輯委員會編, 2000. 『兒童福祉論』. 全國社會福祉協議會, p53, 일부 수정.

<그림 VI-1> 일본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 ③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공공행정기관으로서 전국 시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에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4년 현재 182개소가 있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관한 상담을 의뢰받아 보다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운영지침(1990)은 아동학대의 급증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그림 IV-2>.

#### 가. 업무내용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업무는 의뢰된 아동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상담, 필요한 조사와 의료적·심리적·교육적·사회적 판정, 조사와 사정에 근거한 개입, 일시보호, 시설입소조치, 시정촌에 대한 전문적 조언 등이다.

#### 나. 업무절차

■ 상담의 접수 : 아동상담소가 접수하는 상담유형은 크게 피학대아동 등 보호아동의 시설입소 또는 가정위탁상담, 미숙아 등의 보건문제 상담, 장애관련 상담, 비행문제 상담, 일반아동의 성격·행동·적성 등 양육관련 상담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2004년 아동상담소가 접수한 상담건수는 총 345,012건이며, 상담내용은 장애상담 159,787건, 입소·가정위탁상담 67,773건, 양육상담 66,165건, 기타 34,443건, 비행상담 16,844건 순이다(厚生労働省, 2004).

■ 조사·진단과 판정 : 조사는 아동 개인과 가정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동과 보호자에게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방 또는 가정방문에 의한 면접, 전화 또는 문서에 의한 조회 등의 방법을 활

용하고 있다. 접수된 상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정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사·상담원에 의한 사회적 진단, 심리치료사에 의한 심리적 진단, 의사(정신과의, 소아과의)에 의한 의학적 진단, 일시보호를 담당하는 아동지도원·보육사에 의한 행동적 진단, 의학요법사에 의한 기타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직 사례회의를 통해 판정(종합진단)을 하고, 개별 아동에 대한 개입 지침을 작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판정 결과를 감안하여 시정촌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 개입 : 아동상담소가 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결정하는 개입은 사례관리에 의한 재가지도,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친권에 대한 개입, 일시보호, 기타 각종사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상담소 부설 일시보호소,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동을 학대 또는 방임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아동의 일시보호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기타 각종사업은 가정위탁의뢰, 1년 6개월 된 아동과 3세 아동에 대한 정서발달 정밀진단 및 사후지도, 장애아동을 위한 단기입소 등 장애아동 지원, 특별아동부양수당에 관한 판정, 위기 가정지원체계 정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아동숙박지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 ④ 복지사무소 : 부설 가정아동상담실

##### 가. 설치

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공공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서 도·도·부·현·시에는 의무적으로, 정·촌에는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6법’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복지사무소 1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 현재 전국에 1,225개소가 있다.

##### 나. 조직

복지사무소에는 소장과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슈퍼바이저(사회복지주사의 지도감독), 사회복지주사, 신체장애인복지사, 정신장애인복지사, 노인복지지도주사 등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모자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아동·가정복지에 관한 상담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아동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국에 955개소의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아동·가정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주사와 가정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 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

사실 파악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을 파악한다.

상담·조사지도 : 복지사무소는 지역사회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행정

기관임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가장 친근한 창구로서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에 담당 사례를 조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나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지방정부의 아동상담소에 의뢰한다.

조산(助産)·모자보호의 실시 및 기타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조산시설이나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이용·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도도부현에 신청하면, 도도부현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설에서 조산 또는 모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무소는 모자·과부복지자금 대부의 신청 접수,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보장구 교부·신청·수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와의 관계 : 아동상담소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론과 기술에 근거하여 문제의 사정, 개입 등을 수행하는 전문상담기관인 반면, 복지사무소 부설 가정아동상담실은 지역사회에 친근한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서 아동복지에 관한 각종 인테이크 상담 등 일차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 복지사무소는 정보제공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인테이크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상담소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성학대 등 심각한 사례에 개입한다.
- 복지사무소는 어린이회, 자모회 등 지역사회조직을 중심으로 집단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상담소는 아동가정의 개별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⑤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공중위생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지역보건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위생지식, 영양, 모자보건, 정신보건 등의 사업을 광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에 관해서도 주로 모자보건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초래되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진단을 위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의 발생예방, 조기발견, 학대가정에의 원조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2장 7절에서 제시하는 사례2 참조).

보건소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중핵시·기타 정령에서 정한 시와 동경도의 특별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 571개소가 있다. 보건소가 수행하는 아동복지관련 업무는 위생지식의 보급, 모든 보호자의 임신신고 접수와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아동과 임산부의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1997년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시정촌 의무사업), 신생아(특히 체중 250g 이하 저체중아)에 대한 보건사의 방문지도,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와 교육 등이다. 한편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정촌은 시정촌보건센터를 설치하여 건강상담, 보건지도, 건강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⑥ 시정촌(기초지방정부)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 밀착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보육의 실시, 1년 6개월 된 아동의 건강검진, 3세 아동의 건강검진, 아동복지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가. 역할

시정촌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 등 일반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이 점차 약화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녀양육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양육지원센터사업과 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영·유아건강지원사업, 일시보육사업, 특수보육사업 등 자녀양육지원사업이 시정촌의 사무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정촌은 각종 자녀양육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보호자가 의뢰한 문제에 대해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적 충고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알선·조정하고, 자녀양육지원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아동상담소만이 전담하여 왔던 아동상담업무체제가 개편되었다. 즉 시정촌이 지역사회의 일차적 상담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개입과 친권의 개입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전담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었다.

시정촌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필요한 실정을 파악할 것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지도를 실시할 것
- 위의 업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동상담소의 기술적 원조와 조언을 요청할 것
- 위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정신보건상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의 자문을 구할 것
-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할 것

나. 복지사무소와의 관계

시정촌 가운데 시에 있어서는 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

문에 아동상담과 자녀양육지원사업 등의 법정 아동복지업무는 시가 아니라 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촌에 있어서 복지사무소는 임의로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정촌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6법에 관한 종합적인 창구로서의 복지사무소 기능은 도도부현 복지사무소가 담당하게 되며, 아동학대대책을 포함한 아동복지업무는 정촌이 담당하게 된다.

### ⑦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에게 가능한 가족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에 의한 입소조치시설과 아동 및 보호자의 선택에 의한 통원이용시설로 구분된다. 2005년 현재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은 20개 종류(조산시설, 영아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정신장애아동시설, 자폐아동시설, 정신장애아동통원시설, 맹아시설, 농아시설, 난청유아통원시설, 신체장애아동시설, 신체장애아동치료·보호시설, 중증장애아동시설, 정서장애아동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관, 아동유원지, 아동가정지원센터)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최근에 설치된 아동가정지원센터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등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지역사회 안에서 가능한 빨리 발견되고 적절하게 개입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아동상담소만으로는 신속하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어,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래 지역사회의 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아동상담소와 연계되어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창설되었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상담소에서 다루는 문제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아동문제에 개입하

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 아동상담소가 해당 아동의 지속적인 재가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위탁받아 지도·관리한다.
-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모자자립상담원 등 관련 전문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 내 아동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개입하고, 지역 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등에 연락·조정한다.
- 아동가정지원센터는 보통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부설·운영되어 왔으며, 2002년부터는 부설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증설되고 있다. 한편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치료와 적응 그리고 가족통합을 위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아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은 이들의 학대받은 마음의 상처(trauma)에 개입하는 시설 내 가족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신경정신과 의사,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치료하고 있다.

## ⑧ 협력기관으로서의 아동위원·주임아동위원

### 가.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후생노동대신에 의하여 위촉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조직 개편 이후 2001년부터 위촉사무가 지방후생국에 이관됨으로써 실제사무는 지방후생지국에 의하여 행하게 되었다. 아동위원은 민생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시정촌 구역 내 아동·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동위원은 담당구역 내 아동 및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해 항상 생활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주사·아동복지사의 직무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동위원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2에 규정된 아동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아동·임산부의 생활실태와 환경의 상황을 파악한다.
- 아동·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원조를 제공한다.
- 아동·임산부의 복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아동의 건전 육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와 연계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사 또는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주사의 직무에 협력하는 일
-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한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아동위원회는 지역사회 일정 구역에서 위기아동을 발견하여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에 의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01년 12월 전국에서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위원 수는 206,198명이다(주임아동위원 수는 제외됨).

#### 나. 주임아동위원

저출산의 진행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낳고 기르는 환경 만들기’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위원의 자녀양육지원활동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구역을 담당하지 않고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동위원으로서 주임아동위원이 새롭게 배치되어 종래의 구역을 담당하는 아동위원과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전체 주임아동위원 수는 20,497명이다. 주임아동위원제도는 주임아동위원설치운영요강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주임아동위원의 업무가 법제화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임아동위원은 후생노동대신이 아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 주임아동위원은 아동복지조직과 연계하여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⑨ 아동복지 관련 민간단체

아동복지와 관련된 각종 민간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복지사업의 운영,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간 연락조정, 아동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틈새계층 아동을 위한 위기개입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운 접근성에 기반한 사례발굴과 사례관리 등 각 민간단체의 설립이념과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자와 법인격을 갖지 않은 자로 크게 양분된다.

특히 오사카, 동경, 나고야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아동학대방지 민간네트워크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주체와 활동 내용은 각각 특색을 갖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개입을 지원한다. 민간네트워크의 장점은 조직 간 벽을 넘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민간조직의 운영을 위한 재정조달, 법률적 개입권한의 제한, 책임성, 정보 관리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 (4) 사업 내용

#### 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기타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소속된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은 아동 및 보호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5조).

## ② 아동학대 신고의 강화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시정촌 복지사무소 또는 도도부현 아동상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확증은 없더라도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지역에서 보다 가까운 시정촌으로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의 법률적 비밀준수 의무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준수를 가로막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방지법 제6조 제2항)고 언급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신고의무가 비밀준수 의무에 우선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시정촌 복지사무소, 도도부현 아동상담소, 아동위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아동학대방지법 제7조).

## ③ 신고를 받은 경우의 조치

신고를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지역사회 주민,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직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당 아동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담, 일시보호 등을 제공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8조 제1항). 이때 담당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8조 제3항).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와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 ④ 현장조사

도도부현지사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대부모가 거부한다고 하여도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아동의 거주지에 입회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9조). 이때 판단의 객관성을 위해 복수 직원

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시보호여부를 판단한다.

#### ⑤ 경찰과의 연계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확인, 일시보호, 현장조사를 하는 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서장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아동학대방지법 제10조 제1항).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상담소 담당자의 직무를 원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10조 제3항).

#### ⑥ 아동상담소 판정에 의한 처우: 개입 및 지원내용

학대를 받은 아동은 애착장애, 정신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대인불안, 공격성, 폭언, 폭력, 밤에 놀라기 등 내재화 또는 외현화 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친가정 복귀나 자립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은 정서장애아치료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학대아동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다.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10명 이상 입소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비상근 심리치료사를 배치하였다(아동복지법 제41조). 또한 이들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해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의료기관, 학교 간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교육내용의 충실, 거주장소의 확보, 진학 또는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부칙).

아동학대사례에 있어서 개입의 최대목표는 부모자녀관계의 재통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단계적 부모자녀관계의 조정을 시

작으로 학대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2004년 가족사회복지사(family social worker)가 아동양육시설, 정서장애아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 배치되어, 시설입소 전부터 퇴소에 이르는 상담 더 나아가서는 퇴소 후 상담에 이르는 통합적인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가. 재가보호와 지도

학대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친가정에서 생활하게 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족상담, 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가정에서 가까운 지역사회 아동위원이나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받아 재가보호와 지도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때에 보건소의 방문지도, 복지사무소의 생활보호수급, 의료기관의 수진, 어린이집의 이용 등 다양한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 나. 일시보호

현장조사 결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아동을 친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가 일시보호를 제공한다. 친권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일시보호는 가능하다. 이때 친권자가 아동 및 담당자에게 가해할 위험성이 예측되는 경우에 아동상담소는 경찰서장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아동학대방지법 제10조 제1항). 한편 아동의 일시보호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복지법 제33조).

#### 다. 시설입소조치, 가정위탁 등

학대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여 재가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을 친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부모자녀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학대아동을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시킨다. 이러한 조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친권자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이 가정재판소에 해당 아동의 시설입소조치 또는 가정위탁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고, 이 승인에 근거하여 해당 조치가 실시된다. 이때 친권자로부터의 분리보호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도도부현지사·아동상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8조).

#### 라.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히 행적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은 가정재판소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친권자가 아동에게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친권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학대방지법 제15조).

#### 마. 보호자에 대한 지도

부모자녀관계의 회복과 가족의 재통합을 위해 학대자에 대해 아동복지사의 상담치료 등 지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는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며 보호자가 그 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보호자에 대하여 지도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방지법 제11조). 특히 아동의 시설입소 또는 가정위탁의 조치 이후에도 아동상담소는

아동양육시설과 위탁부모, 기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아동의 가정복귀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친가정환경의 조정, 면회, 외박지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가정재판소는 아동 상담소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아동복지사의 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

### (5) 재정

일본의 아동복지사업 재원은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대별된다. 특히 공적 자금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된 아동복지사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가 아동복지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이때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이 구분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10조).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은 정부(국가·도도부현·시정촌)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비용은 설비에 필요한 비용(설비비)과 아동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운영비)으로 대별된다. 비용은 아동의 보호자, 국가, 도도부현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 또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시정촌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국가 50%, 도도부현 25%, 시정촌 25%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와 같이 도도부현이 설치한 경우는 국가 50%, 도도부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福祉士養成講座偏執委員會, 2005).

한편 공적 자금, 즉 국비의 지출은 크게 지방교부세교부금(아동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과 국고부담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비의 지출은 재정법, 회계법, 예산결산 및 회계령,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이들 법률과 연계하여 아동복지법은 각종 아동복지행정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 그 지출의무자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비 가운데 아동보호조치비용 등 국고부담금은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가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때 각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지불한 비용의 총액과 그 실제 지출 비용에서 아동복지조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이 책정되고, 이와 같이 책정된 금액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징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총액의 50%를 국고부담금으로 정한다. 여기서 아동보호조치비용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아동복지예산 가운데 비중이 높은 비용이다. 이 비용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가 취해진 경우, 또는 수양부모에 위탁된 경우 해당 아동의 입소 또는 위탁 후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이 매월 해당 조치의 실시자로부터 조치비 명목으로 지불을 받는 경비이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7항). 그리고 아동복지사업대책비용 등 국고보조금은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 등이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와 회계감사, 한부모가정의 자립촉진,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파견과 생활지도강화, 아동상담소의 특별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의 적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국가가 조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이, 그리고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조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불된 비용을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 능력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 (6) 주요 인력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련되는 주요 전문인력은 <표 V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I-3>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별 아동학대 관련 직무내용과 주요 전문인력

아동복지전문 행정기관	아동학대 관련 직무내용	주요 전문인력
아동상담소 (아동복지법제12 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조사·사정·판정·개입</li> <li>● 아동의 일시보호</li> <li>● 지도·시설입소·가정위탁</li> <li>● 친권상실신고의 청구 등 민법상의 친권제한 권한의 행사</li> <li>● 시정촌지역의 아동상담 등 전문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의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가운데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종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주사)</li> <li>● 심리판정원</li> <li>● 상담원</li> <li>● 심리요법 담당 직원</li> <li>● 교육·훈련·지도 담당 아동복지사(슈퍼바이저)</li> <li>● 의사(정신과, 소아과)</li> <li>● 보건사</li> <li>● 아동지도원</li> <li>● 보육사</li> </ul>
복지사무소 (사회복지법제14 조)*부설 아동가정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호 실시</li> <li>● 한부모가정 등 상담</li> <li>● 아동·임산부의 상담·지도</li> <li>● 일반가정아동의 상담·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주사</li> <li>● 모자자립지도원</li> <li>● 가정상담원</li> </ul>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임산부의 보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li> <li>● 미숙아가정방문지도</li> <li>● 장애아동을 위한 양육의료</li> <li>● 영양개선지도</li> <li>● 신체장애아·장기요양아동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li> <li>● 보건사</li> <li>● 조산사(助産師)</li> <li>● 약제사</li> <li>● 진료방사선기사</li> <li>● 영양사</li> <li>● 임상심리사(촉탁)</li> </ul>

자료 : 福祉士養成講座偏執委員會. 2005. 「兒童福祉論」. 東京: 中央法規, p. 246.

## (7) 사업 평가 : 향후 과제

### ① 아동학대의 발생 예방

학대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부모의 고립에 기인하는 아동양육 불안과 아동양육의 부담감 증대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모의 고립을 예방하고 불안감과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녀양육 지원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족 모임과 자조모임의 확대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전문아동위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등 가정방문형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2002년 시정촌으로 하여금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양육지원사'를 파견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가정방문지원사업을 창설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사의 산모지원사업과 영유아발달상담지도사업과 함께 영유아지원가정방문사업에 통합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방문형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사는 산모의 산후우울, 자녀양육 불안 등으로 인한 고위험 학대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기 쉽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의 조기개입이 요망된다.

### ② 철저한 조기발견과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보호체계의 법적 구속력 강화

아동학대 방지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서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견과 신고가 늦어지면 아동의 생명에 관계되는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수단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5조(요보호아동 발견자의 신고의무)와 아동학대방지

법 제5조와 제6조(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직의 조기발견과 신고)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의무에 관한 전문직과 일반주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서 신고 자체를 주저하거나 문서 등 확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 미국과 같이 전문직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 ③ 개입의 신속성 보완 : 즉각적 대응

아동상담소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적절한 운용에 관하여’, ‘아동상담소에 있어서 즉각적 대응체제의 정비’로서 야간과 휴일의 대응체제의 철저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지역사회아동보호체계의 아동상담기능 강화

도도부현 아동상담소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상담체제를 확보하여 각종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정촌의 역할이 필요하여 이미 2003년부터 자녀양육지원사업, 단기보호, 일시보육,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 등 각종 자녀양육지원이 시정촌의 법정사업으로 규정되었다. 더욱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상담소 중심 집중상담체제를 탈피하여 시정촌이 아동상담의 일차적 창구로서 자리매김되어 가고, 아동상담소는 보다 전문적 상담을 대응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향후 상담창구로서의 시정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주 3회 이상의 정기적인 슈퍼비전 등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상담기능을 구비한 지역사회 가정지원센터와 아동양육시설과의 연계와 협력도 필요하다.

한편 학대받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입소가 급증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피학대아동의 문제행동에의 대응,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 친가정과의 관계조정과 강화,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향후 심리치료사의 배치확대와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 시설 내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전문 슈퍼비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10인 이상 피학대아동들이 입소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비상근 심리치료사를 1999년부터 1명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치료기능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제도도 실시하게 되었다.

#### ⑤ 부모자녀관계의 재구축과 통합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아동학대사례에 있어서 개입의 최대 목표는 가족기능의 재생, 가족관계의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에 의해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의 회복과 아울러 학대를 반복하는 부모의 원조가 불가피하나 실제로는 그 지원내용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학대부모를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 한편 친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입소 조치와 양부모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조치가 취해진 이후의 가정인수의 적부결정은 아동상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상담소 간 대립관계로 인해 부모가 아동상담소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향후 아동상담소 원조에 대한 보호자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정재판소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도 학대를 한 부모들의 자조그룹과 쉼터에서의 동료상담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지금까지 자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스스로 표현(소위 ‘coming out’)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객관화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같은 체험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 의지하면서 학대자라는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학대자의 재교육은 건강한 부모모형을 재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향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는 이에 관한 법제화가 검토되어 학대부모상담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률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의 연계

일본의 아동복지는 헌법을 기본으로 각종 법률, 정령, 성령, 통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아동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모자과부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수당법(소위 ‘아동복지6법’)이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매춘금지법, 소년법, 가정폭력방지법, 육아개호휴업법 등 사회복지일반, 교육, 노동, 사법, 보건의료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있으며, 각 법률은 다시 보다 구체적인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각종 통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본 아동복지법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는 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특별법인 아동학대방지법 간 연계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전체아동의 양육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아동복지조치, 시설, 비용, 잡칙, 부칙 등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아동을 다시 영아(1세 미만)·유아(1세~초등학교 취학 전)·소년(초등학교 취학~18세)으로 세분하고 있다. 한편 보호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아동복지인력과 기관으로서 아동복지사,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보육사, 아동상담소, 지정촌 복지사무소, 보건소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재가복지서비스,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아동학대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25조는 요보호아동, 즉 아동학대방지법에 정의된 학대를 받은 아동 등 보호자가 양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아동을 발견한 자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시정촌 복지사무소 또는 도도부현 아동상담소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과 사회복지사무소가 신고 창구가 되는 것은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기초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대에 관한 현장조사와 일시보호 등 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동상담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 행정기관에 신고 된 대부분의 학대사례들은 복지사무소를 경유하여 아동상담소에 의뢰된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학대방지법 제9조)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대를 한 친권자가 아동의 시설입소 또는 가정위탁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에 시설입소 또는 가정위탁의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승인에 기초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8조).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행위가 현저하게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은 가정재판소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친권자가 해당 아동에게 심각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친권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의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이혜원, 2006:167-195).

아동상담소에 있어서 학대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등, 아동학대문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의 통지나 매뉴얼의 작성 등을 통하여 아동상담소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책의 충실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문제에 보다 적절하고 원만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어, 2000년 5월 의원입법에 의하여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같은 해 11월 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아동학대의 방지에 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책임과 의무, 아동학대의 정의, 관계자에 의한 조기 발견, 아동상담소에 의한 아동의 안전 조기확인 등이 규정되었다. 2004년 4월에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의 의무,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책임과 의무 등을 확대강화시켰으며,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및 재학대의 예방기능, 학대가 발생했던 가족의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기관 간 연계성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 ① 아동학대의 예방, 조기발견,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자립지원, 가족통합을 위한 지도와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성(관련부처)·기관·단체 간 연계강화, 민간단체의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종사자의 연수 등 필요한 지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학대받은 아동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호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 등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아동의 권리,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신고의무, 가족과 지역사회 간 연대의 필요성 등에 관한 홍보와 기타 계발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아동학대 및 재학대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향후 추진 계획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이라고 하는 밀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은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

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하나의 기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하나가 되어 원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松原康雄·山縣文治, 2003).

#### (1) 지역사회 위기가정지원체제 긴급정비촉진사업

아동상담소는 1999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지역사회 내 주임아동위원 등 아동학대 관련 인력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고 그 수료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기가정지원체제를 긴급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학대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의 일부로서 아동학대대응강화사업은 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대응협력원’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기관연계강화 사업은 아동학대 관련기관이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심리상담강화사업은 담당 인력의 심리치료기능을 제고하였다. 향후 이러한 사업 내용은 더욱 심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정촌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 주민이 가까운 시정촌에서 보건·의료·복지·교육·경찰·사법 등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우내용을 검토하는 아동학대방지 시정촌 네트워크사업이 2000년에 창설되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관계기관으로 구성하는 지역사회 아동학대방지협의회(일명 ‘아동학대방지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교환, 상황과약,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분석과 검토를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2004년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방지네트워크를 제25조의2항에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로 규정하고, 협의회의 직무와 권한, 구성기관의 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총괄사무, 관계기관 간 연락조정 위한 요보호아동대책 조정기관의 선정 등 운영지침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 (3) 아동학대 관계자에 대한 기술지원(전문성 향상 지원)

아동학대·사춘기문제정보연수센터가 2002년 4월 설치되었다. 이 센터의 업무는 ① 아동상담소 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관계자에 대한 연수 ②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③ 전문상담 ④ 아동학대와 사춘기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 센터의 목적은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2002년에 연수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는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전문상담 등이 시작되었다. 정서장애아단기 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박명회가 이 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지원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

### 3. 미국 : SafeFutures사업

#### 1) 사업개요

##### (1) 사업추진배경

최근에 미국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인 청소년범죄와 폭력, 약물남용, 갱 집단, 학교중퇴, 학습수행상의 문제 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중 절반 정도가 학업실패, 너무 이른 나이에 성관련 행위에 관여, 알코올과 약물사용, 범죄행동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 수준에서 볼 때 중간 수준에서 높은 위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 예로 구금되어 있는 청소년의 절반 내지는 3/4정도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소년구치소와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자살 건수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약물남용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물관련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여러 연구조사들을 통해서 볼 때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은 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에 비해 기능면에서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수의 시설에서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그의 가족들은 다양한 욕구와 서로 관련된 문제행동들을 안고 있어서 과거에 전형적으로 이루어졌던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개입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행동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함에 따라 점차 서비스 통합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사회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출생할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 또한 구치소 체계들은 매년 청소년을 구금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함은 물론 청소년과 관련하여 경찰보호, 교정 및 사법관련 업무, 그리고 법적 활동을 위해 수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하에서 그동안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전형적인 서비스는 주로 한 가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1990년대에 청소년폭력과 비행에 관한 수 년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폭력과 비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히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소년범죄의 복잡한 본질에 대해 인식되고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 상황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과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자 서비스통합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서비스 통합이란 청소년과 가족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욕구의 다양한 범위를 맞추고자 정책과 구조에 있어서 여러 서비스기관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 약물남용, 십대 임신과 같은 지속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으로서 종합적이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범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Connell, Kubish, Schorr & Weiss, 1995).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증대된 관심이 넓은 범위의 지속적인 보호와 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서비스로의 연계를 수행하는 서비스 통합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는 정책입안자들이 균형 잡힌 서비스, 협력적 인가, 범죄자 책임성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지속성에 관한 치료와 예방요소들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소년사법체계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99년 체포된 청소년에 관한 통계치가 1987년 이래 가장 낮아지고 소년 범죄의 모든 유형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OJJDP)의 담당실무자는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소년폭력과 희생화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에서는 비행청소년과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고자 연구 조사에 기초하여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소년범법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예방에서부터 추후보호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의 지속성을 제시하고 책임감과 적절한 등급별 처벌(graduated sanctions)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SafeFutures는 5년에 걸친 실험 프로젝트로 종합적인 전략에 잘 부합된다. 이 프로젝트는 소년범죄로부터 청소년이 희생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보호의 지속성을 개발하고 실천해 보고자 고안되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SafeFutures 시범사업은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소년범법자들을 위한 OJJDP의 종합적 전략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청소년의 서비스의 지속성의 증진을 지지하고 있다. SafeFutures는 지역사회에서 보호의 지속성(a continuum of care)의 창조를 통해 청소년범죄와 희생당함을 예방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호의 지속성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적절한 예방, 개입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급별 처벌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발달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afeFutures는 청소년비행과 청소년폭력을 줄이고자 만든 프로그램으로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통합된 지역적 접근방법의 모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취지하에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가 지원한 5년간에 걸친 시험적인 사업이다.

## (2) 추진경과, 사업시행지역 등

SafeFutures 시범사업은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결과들에서 얻어진 최신의 지식과 청소년을 위한 위기와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조사 내용을 연계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 사업에서는 보호의 지속성을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예방, 개입, 치료 또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체계를 의미한다.

SafeFutures 지역사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활동은 1996년 늦은 봄/여름에 시작되었다. 6곳의 지역 자치체 후보지가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미국의 인디안 지역사회를 대표하고자 선택되었다. 5년에 걸쳐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즉 대도시로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워싱턴주의 시애틀, 그리고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가 선정되었다. 시골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와 임페이얼 카운티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디안 지역사회의 대표로 몬타나주의 포트 벨크냅 인디안 지역사회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적 평가를 의뢰했고, 아울러 OJJDP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Urban Institute로 하여금 이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규모의 상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 사업 분석

SafeFutures 프로젝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도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청소년과 가족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년 비행과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협력적 노력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중점적인 특징은 종종 사회, 건강, 교육 그리고 소년

사범 서비스의 부분적 세분화와 분열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종합적인 지역사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들이 고안한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태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에 적합한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 간의 협력체제 구축(예: 대인서비스, 소년사범, 그리고 교육체계의 협력)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결집하고 보호의 지속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요구된 자원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이다.

#### (1) 사업대상과 선정 기준

이 프로그램은 OJJDP가 선정한 6곳의 지역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5년간 실제로 실천해본 프로그램이다. Boston, MA; Imperial County, CA; Contra Costa, CA; Seattle, WA; Fort Belknap, MT; St. Louis, MO. 이러한 지역들은 비행과 갱이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이런 만성적인 비행청소년들에 대처하고자 실천하고 있는 노력에 근거하여 도시, 시골지역 및 미원주민지역을 대표하여 선정되었다. 즉 이러한 지역들은 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사회 사정과 전략적 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진행 방향에 근거를 두고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지역 내의 여러 체계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고 지역 내의 자원들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통해 보호의 지속성의 창조 및 개발에 동의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사회 위험요인들의 감소,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들의 증대,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과 비행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지속 및 청소년 범법자를 위해 등급별 처벌(graduated sanctions)의 부과에 의한 청소년폭력과 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수준에서 볼 때, 시범사업의 의도는 강화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촉진하고 이 프로그램 하에서 수행된 노력들을 규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을 수립코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폭력과 비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사회를 원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도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의 욕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보호의 지속성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방, 개입 및 치료의 협력적 접근은 지역사회의 비행소년에게 서비스를 주고자 고안되었고 대인 서비스와 소년사법체계 양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 정신건강, 아동복지, 교육, 경찰, 보호관찰, 법원 및 교정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ntra Costa County는 지역 인구의 73%가 흑인, 11%가 백인, 10%가 라틴계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Iron Triangle로 알려진 Richmond의 여러 이웃 지역에 대부분의 예방과 갱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Boston은 Blue Hill Avenue Corridor로 알려진 이웃에 있는 3곳의 지역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정확하게 56만 명의 거주자가 있고 그 중 31%가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거주지, 상업, 및 운송을 통해 한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있다. 이 Corridor는 높은 비율의 실업과 빈곤을 보이고 있다. 주목표 지역 인구의 26%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구 층의 9.2%가 라틴계이며, 2.8%가 백인계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 카리브지역의 미국인의 유입이 보이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가능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특수한 서비스에 있어서의 커다란 격차를 언급하고 있다.

Seattle은 일차적인 표적 지역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네 곳으로 이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빈곤과 실업률이 세 배이고 이 도시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며 갱 관련 폭력의 주된 장소이다. 이 네 지역의 인구는 다양한데 거주자의 다수는 최근에 이민을 왔거나 언어장벽으로 소

외된 사람들이다. 시애틀은 도시에서 위기에 처한 인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청소년, 위기에 처한 비행청소년, 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소년사법체계에 이미 연루된 청소년들이 주 표적 대상이다.

St. Louis는 사회경제적 위기, 청소년범죄, 갱 집단 참여, 그리고 약물사용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이웃한 세 지역을 선택하였는데 이 지역들은 St. Louis시와 이 시의 공립학교들이 같이 설립한 Community Education Centers와 같은 개조한 세 학교를 포함하여 계획된 시범사업을 지지할 지역사회에 기초한 자원을 갖고 있다. 개조된 세 학교는 두 곳의 초등학교와 한 곳의 중학교로 세 곳 중 두 곳의 거주자는 90%가량이 흑인이고 인근 지역의 아동의 절반 가량이 이 빈곤선 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16-19세의 청소년의 1/4가량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Imperial County는 멕시코 국경근처의 캘리포니아 남동쪽 지역으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SafeFutures 프로젝트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재판이 행해지는 실험지역이다. 1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라틴계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확하게 31%의 청소년이 빈곤선상에서 생활하고 있고 거주자의 24%는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표적은 북쪽 지역으로 이 지역사회들은 거리와 산과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다른 서비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과 지지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

Fort Belknap은 인디언 거주 지역으로 주서비스 구역들과는 격리되어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나가려면 자동차로 2-3시간은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마을의 경우 매우 제한된 사회서비스의 제공만이 가능하다. Fort Belknap은 다른 두 부족으로부터 5,232명의 원주민이 등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3,800명이 거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거주 지역은 4곳의 다른 지역사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부족이다 보니 문화적 차이가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다. 거주자의 45%는 빈곤선상에서 생활하고 있고,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68-72%), 알코올중독은 주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된 표적대상은 거주지역내 또는 그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6-18세의 청소년 1,370명이다.

## (2) 사업대상 유형별 지원서비스 내용

SafeFutures 프로젝트는 지역사회협력체들로 하여금 지역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예방, 개입, 치료 및 등급별 처벌에 맞는 전략을 재단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선정된 6곳의 지역에서는 9가지 요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특수한 요인에 대한 강조로 인해 각 지역 간의 수준과 서비스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의 결과이다.

SafeFuture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9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s : Pathways to Success)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자유 시간을 보내고 또래 및 성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는 지속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이익이 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6-18세의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과 그의 가족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활동들은 방과 후, 주말 또는 여름방학과 같이 학교수업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3-5일간 오후시간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레크리에이션과 tutoring/homework는 물론이고 정형화된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간도 포함된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juvenile mentoring programs : JUMP)으로 OJJDP는 긍정적인 성인역할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서 Big Brothers Big Sisters(BBBS) of America을 모델로 하여 이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서는 멘토로서의 자격을 점검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21세 이상의 성인 멘터를 교육상의 실패, 학교중퇴, 비행활동의 개입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과 짝지워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교육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쉽 하에서 제공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학습능력 증진, 학교중퇴율 감소, 비행행동과 갱 집단에의 참여를 감소시키고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서비스와

지역사회활동의 격려 등이다.

셋째, 가족 강화 및 지지서비스(family strengthening and support services)로 이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지지하고 특히 소년사법체계에 관련된 자녀를 갖고 있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지지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중심의 프로그램과 다른 SafeFures 프로젝트 요소들을 통합하는 집중적인 가족 케이스 매니지먼트체계의 확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요소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의뢰와 상담이다.

넷째, 위기에 처해있고 법원에서 판결 받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for at-risk and adjudicated youth)로, 이 프로그램은 소년 성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소년시설들에 있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용이성, 질 개선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이동식 정신건강서비스, 소년사법 담당자를 위한 자문 서비스, 케이스 매니지먼트, 임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훈련, 그리고 가족을 개별서비스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비행예방 프로그램(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으로,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소년사법체계와 접촉의 경험이 있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학교를 포함한 어느 장소에서나 제공할 수 있는 친사회적 활동(예: 가정교사, 고용가능 기술훈련, 약물남용예방서비스, 리더쉽 개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등)을 장려하고 있다.

여섯째, 갱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확대 접근책(comprehensive community wide approaches to gang-free schools and communities)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 갱 문제를 줄이고자 OJJDP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갱 모델(Comprehensive Gang Model)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접근책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갱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얻는 장점을 예방과 개입을 통한 친사회적 보호요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장점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모델은 갯에 연루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고용이 가능한 훈련과 직업소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아웃리치와 결합시키고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기초한 주간치료 프로그램(Community-based day treatment programs)으로, 이 프로그램은 펜실바니아주의 Bethesda 주간치료센터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교육 세팅에서 학문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별로 교육적 대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여덟째, 위기에 처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지속성 서비스(continuum-of-care services for at-risk and delinquent girls)로, 이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와 추후관리, 기본 교육, 생활 관리, 건강과 상담, 부모교육, 십대부모를 위한 자녀 서비스, 긍정적인 역할모델과의 상호작용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의 지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소년범법자 프로그램(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 programs : with an emphasis on enhancing graduated sanctions)으로 이 프로그램은 특히 소년범법자들을 위한 graduated sanction를 계획하고 실시(즉각적인 개입, 안전한 감금과 추후보호, 가족 개입과 추후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9가지 요소들은 지원받은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 약간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실시된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실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Contra Costa County, CA

이 카운티에서는 SafeFutures 서비스를 제공받는 3곳의 초등학교, 1 곳의 중학교, 2곳의 고등학교에 자원 전문가를 배치하여 이 학교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이슈들(무단결석, 학교 내 폭력, 낮은 학업수준)을 처리하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들이 학교

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갱 집단에 연루되어 있는 청소년들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을 시도하였는데 이 집단은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모여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면서 학교와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심각하고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소년범법자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재정 지원받는 Volunteers in Probation(VIP) 프로그램은 보호관찰부서의 체계개선 노력을 시도하였다. 즉 보호관찰부서는 SafeFutures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된 코오디네이터를 고용하여 보호관찰 담당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개별적 관심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훈련시켰다.

그 밖에도 Summit Center는 SafeFuture 프로젝트로부터 지원되는 예산 외에도 카운티 보호관찰 부서, 카운티 교육부와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예산 등을 통해 재정과 실무자 지원이라는 협력적인 노력의 결실로 문을 열고 한 번에 20명의 청소년을 거주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12-18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개인치료계획에 따라 개별치료, 집단치료, 그리고 가족치료에 참여하고 있고 개인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준에 맞는 개별학습계획과 함께 센터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약물남용집단과 갈등해결, 분노조절 및 생활기술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집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갱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 요소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실시 2년째 되던 해에 보호관찰 중인 갱에 연루된 청소년에 초점을 둔 추후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목장 시설을 떠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환적인 추후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즉 이들이 거주했던 목장을 떠난 후 4-6개월간 정확하게 50명의 청소년 사례를 감독하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배정받은 케이스 매니저를 통해 고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의뢰되고 있다. 아울러 핵심적인 팀 실무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각 청소년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변화를 논의하는데 이러한 모임은 실무자들에게 일반적인  
갱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수한 청소년의 이슈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Boston, MA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Mattapan-Dorchester Churches in Action  
(MDCA)이 운영하고 있는 신앙에 기초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자녀들을 낯선  
사람들이나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멘토로 하여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불편해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일대일로 멘토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MDCA는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만나는 매주 모임에  
부모를 포함시켜 그들로 하여금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또래 리더쉽을 사용하고  
있다. SafeFutures 프로젝트에서는 공공주거지 시설에 위치해 있는 세 곳의  
지역사회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또래 리더들을 위해 훈련과 봉급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또래 리더들은 청소년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워크숍을 주관하여, 청소년 이슈들을 제시하고 가까운 여행을 주선  
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the Youth Advisory Board(YAB)라 불리  
우는 또래 리더쉽 운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또래 훈련자, 연설  
자, 청소년을 위한 홍보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비공식적인 고용 준  
비와 생활기술훈련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Seattle, WA

Juvenile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JRA)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워싱턴주 법전에 의해 선고받은 심각한 범법자들 중 교정시설로부  
터 출소할 예정인 청소년들이다. 이 행정부서에서는 30일 이상 구류된 청

소년을 감독하고 주정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들에게 소년 집행유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afeFutures 프로젝트로부터 재정 지원받아 JRA 청소년과 멘터를 짝짓는 프로그램의 시도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이 출소하기 6-8개월 전에 멘터와 일대일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멘터에게 집중적인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은 주로 이민자와 피난민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주 표적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대일 멘토링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아시아계 집단의 원 문화와는 거리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에게 멘터를 제공하면 청소년이 더 빠른 속도로 미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모와의 사고 차이가 더 커지리라는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SafeFutures 프로젝트의 실무자는 이러한 문화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이들에 대한 가정교사 역할을 시작하고 점차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면 멘토링을 확대하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비행예방 프로그램과 갱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요소와 관련하여 아시안/남태평양 부근의 청소년들에 초점을 둔 SafeFutures Youth Center(SFYC)는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갱집단 구성원, 비행 청소년 또는 학대로 인해 역기능을 보이는 가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SFYC는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 케이스 매니저와 캄보디아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호 관찰 하에 있더라도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자 일대일로 가정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 ④ St. Louis, MO

방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SafeFutures 프로젝트는 기존의 Project

Respond Educational Pilot Program(PREPP)을 지원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비공식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 숙제하는데 도움제공,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담/치료적 접근으로 사회복지와 사회학의 배경을 가진 실무자는 일대일로 또는 집단으로 비공식적 상담, 분노조절훈련, 갈등해소 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족방문과 비공식적으로 부모 상담을 하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접촉하여 신뢰감을 발달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SafeFutures 프로젝트는 시의 Mental Health Board(MHB)를 지지하였다. 처음 2년 동안 MHB는 주로 아동의 정신건강 욕구사정, 전략적 계획의 개발, 초기변화에 대한 자원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3년째에 실시된 정신건강 서비스는 소년사법체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두고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하나는 아동행동프로그램(Child Conduct Programs)으로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7-11세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을 주 대상으로 자녀의 비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는 다 체계적 치료(Multisystemic Therapy)로 이 프로그램은 실무자 팀, 가정에 기초한 치료, 나이 많은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가족개입을 한 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갱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부는 과거에 갱에 연루되었던 경험이 있는 아웃리치 실무자들은 SafeFutures 활동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갱 연루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수퍼바이저를 동반한 아웃리치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주중에 매일같이 청소년들과 접촉하고자 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이들을 주로 직업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뢰하였다.

##### ⑤ Imperial County, CA

SafeFutures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실무자들을 연결시켜 서비스의

“one-stop”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Family Resource Centers를 Brawley 고등학교 내에 설립하였다. 3곳 이상의 서비스에 의뢰된 청소년이나 가족은 이 센터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로 관리되고 이 센터에 의뢰된 모든 청소년의 부모들은 일상적으로 자녀를 위한 인테이크 면접에 포함되며 필요하다면 타 서비스에 의뢰된다. 이 센터의 두 사람의 담당자들은 부모/가족 강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배치된 사회서비스 실무자가 부모에게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센터의 안내자가 제명과 복교에 관련된 학교 절차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

한편 처음으로 경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 등급별 처벌의 대안으로 또래법정을 설립하고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법정 회합은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 열리고 한번 회합에 네 케이스 이상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소년법원 판사나 조정자는 법정을 주관하고 학생들은 배심원, 변호사, 기타 법원 관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래들은 범법자들에게 사과편지를 쓰게 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처벌은 물론 훗날 법정 회합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하도록 결정내리고 있다. 이 또래 법정은 Brawley Union 고등학교에서 학생클럽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인 변호사와 기타 법정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법정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클럽 구성원들은 이러한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아보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봉사 요구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밖에도 비행예방 프로그램과 갱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및 지역사회 요소와 관련하여 두 명의 보호관찰 담당자, 치안보안관, 한 명의 Brawley 경찰이 포함된 법집행팀(Law Enforcement Team)을 경찰서에 배치하고 있다. 이 팀은 초기 단계에서 갱 구성원들에게 개입하였고 함께 가정방문도 하였으며 보호관찰 담당자와 부 보안관에 의한 순찰업무도 실시하였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법집행이나 법정과 관련되었거나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으로 여겨졌던 청소년들에게도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또는 가족과의 일대일 상담, 합동상담/개입 등이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의 의뢰도 제공하고 있다.

#### ⑥ Fort Belknap, MT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하여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숙제를 도와 주는 것 이외에도 종종 부족의 노인들로 구성된 문화 자문위원회 의해 지도받는 문화적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5명의 자문위원들은 Hays center에 있는 8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Northern Plains American Indian 춤을 가르쳐 첫 해에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이들로 구성된 댄스 그룹은 몬타나주 전역에서 춤을 선보였다. 이러한 예술분야 외에도 이러한 문화적 활동들은 어른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약물과 알코올부터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증진시켰다. 그 밖에도 이러한 문화적 활동의 초점은 성인들을 참여케 하고 부족 전통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성인이 특히 조카와 사촌들에게 비공식적인 멘터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어서 공식적인 일대일 멘토링은 낮은 개념이었다. 따라서 SafeFutures 프로젝트는 멘터들이 일대일의 멘토링 외에도 한 번에 4,5명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적 멘토링” 집단을 시도하여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였다. 멘터들은 지속적인 문화교육활동이나 탐사와 같은 한 번의 모임과의 연계 속에서 청소년을 만났고 White Clay 사회의 남자 부족지도자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인들은 부족의 신앙과 전통을 전수하면서 강한 남성의 역할모델로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비행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족 목장에서 일을 하는 경험을 통해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생활경험들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Tribal Ranch Program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것을 선고받은 보호관찰에 놓여있는 주로 초범인 청소년들을 위한 graduated sanction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는 범법자가 아닌 청소년들도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목장에서 다양한 잡일들에 대해 지침을 교육 받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SafeFutures 프로그램 실무자로부터 비공식적인 상담을 제공받고 있다.

### (3) 사업 주체와 전달체계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는 지역사회와 주정부를 도와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974년 의회가 만든 부서로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소년범죄와 비행에 관한 이슈는 물론이고 1984년에 의회가 법적으로 위임한 미아 및 착취당한 아동의 문제들을 발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된 연방정부기관이다.

지난 20여년간 소년비행의 본질과 심각성의 정도는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서는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정부와 지역사회를 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이슈들을 접하고자 전국 규모의 리더쉽, 코오디네이션,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이슈들에는 소년폭력과 비행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비율, 희생당함, 학교중퇴, 십대임신 그리고 불법약물사용,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서에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와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이러한 도전 이슈들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 연구조사와 시범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고,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소년사법 관련 자료들을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4) 사업주체(지자체, 정부, 민간 등)

SafeFutures가 진행되는 6개 지역은 프로그램 참가인원, 참가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의 사업 주체는 지원금을 통한 프로그램 실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운영팀과 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방향을 제공하는데 책임이 있는 정책조언집단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서 지원금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들이다.

- Boston, MA : the Office of Community Partnerships, a dept in Boston's Human Services Cabinet.
- Contra Costa County, CA : The County Administrator's Office
- Fort Belknap, MT : Fort Belknap Community College, a tribally operated college
- Imperial County, CA : The County Office of Education
- Seattle, WA : the Dept of Human Services, a city agency
- St. Louis, MO : the Mayor's Office of Youth Dept

SafeFutures 프로젝트의 수행은 지역사회와 학교, 건강과 대인서비스 기관들, 법집행기관, 보호관찰소 및 소년법원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지역적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욕구사정, 전략계획 및 서비스 협력과 같은 활동들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서비스 유형과 관련된 특수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욕구와 자원들에 적합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적 자유를 가능케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서비스 협력과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학교에 있는 Family Resource Center의 사용을 포함하는 학교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 재원

: 재원규모(전국/지역별), 조달방법 및 분담방법(중앙,지방,민간 등)

OJJDP는 SafeFutures 프로젝트를 위해서 선정된 6곳의 지역에 일 년에 일백사십만 불을 5년간 지급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Boys & Girls Clubs of America, Communities in Schools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천을 돕고 있다. The U.S.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SafeFutures 프로젝트 지역의 공공주택 지역에서 소년비행과 소년폭력의 예방을 돕고자 훈련과 기술 원조를 위해 십만 불을 기부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9가지 프로그램 요소들에 관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 Afterschool programs를 위해 1974년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수정안의 Part C, Title II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 매년 최대한 4만 불의 예산이 배정된다.
- JUMP 프로그램을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수정안의 part C, Title II에 근거하여 6곳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사회에 일 년에 최대한 20만 불의 예산이 지원된다.
- Family Strengthening and Support Services를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수정안의 Part C, Title II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 매년 최대한 20만 불이 지급된다.
- Mental Health Services for At-risk and Adjudicated Youth를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수정안의 Part C, Title II에 근거하여 매년 최대한 15만 불이 지급된다.
-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를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수정안의 Title V를 근거로 매년 최대한 20만 불을 지급하고 있다.
- Comprehensive Communitywide Approaches to Gang-free Schools and Communities를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Part D를 근거로 매년 최대한 40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 Bethesda Day Treatment Center Services를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Part C를 근거로 매년 최대한 3만 불을 지급하고 있다.
- Continuum-of-Care Services for At-risk and Delinquent Girls를 위해 소년사법 및 예방법 Part C를 근거로 하여 매년 최대한 12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VCJO) Programs를 위해 소년사법 및 예방법 Part C를 근거로 매년 최대한 10만 불을 지급하고 있다.

(6) 주요 인력 : 인력규모, 자격, 역할 등

모든 지역에서 프로젝트 director는 지원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상의 주요 담당자가 맡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의 책임 범위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Boston, Fort Belknap, St. Louis 의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책임은 프로그램 코오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고 프로그램 directors는 전반적인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Fort Belknap, Imperial County, 그리고 Seattle의 경우 일부 서비스 전달 담당실무자는 이 시범사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고용되고 이 지역에서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프로젝트 코오디네이터와 프로젝트 director에게 진행상황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가 소개한 SafeFutures 관리팀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었다. 이 팀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director와 프로젝트 coordinator,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2-3명의 실무자로 구성된다.

Boston의 경우 지역 내의 평가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일년 후부터 관리팀 회의에 참석한 반면에, St. Louis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평가자가 처음부터 관리팀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Contra Costa County와 Imperial County는 주요 파트너기관의 대표들이 관리팀의 일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지역 내 정책자문위원회(local policy advisory board)가 있어서 전략적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과 조화로부터 체계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까지 그 책임 범위가 넓다. 이러한 관리팀과 정책위원회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task force를 소집하였는데 Imperial County의 경우 예산과 재정상의 전략에 초점을 둔 workgroup을 구성하여 재정의

우선사용, 자원의 공유, 재원의 혼합 등을 규정하고자 함께 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전국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Urban Institute에게 직접 재정 지원하여 지역의 특수한 노력들의 성공을 결정짓고자 동시에 진행토록 하였다. 이 조직에서는 위기 요인들, 소년범죄비율, 소년사법체계 그리고 초기 관리부터 추후보호에 이르기까지 체계에서의 진행상황 등의 요인을 평가한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SafeFuture 개입의 효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 (7) 사업에 대한 평가 : 문제점과 시사점

이러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자와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역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접근방법에 적응해야 하고 시범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문화적 특징에 대한 세심함과 프로그램의 완성을 경험하기 위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는 다양한 협력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담당자와 주 담당 기관의 행정담당자가 이직한 점은 협력에 대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방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된 3년 간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의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실무자가 진행 중간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OJJDP로부터 훈련과 기술적 원조에 초점을 둔 특별한 지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른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되풀이는 새로운 세팅에서는 반드시 유사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이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점검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를 평가한 후에 타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실시가 중요하다.

SafeFutures 시범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진화되었다. 즉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거나 확대하는 것부터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전달체계를 개발하고 정교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 내의 지도자와 프로그램 매니저는 새로운 기회들과 기존의 어려움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비스 구성, 파트너쉽 및 체계개혁 등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서비스 대상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이 복잡하여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SafeFutures 프로젝트 첫 해에는 단지 세 지역에서만 직접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은 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Contra Costa County와 Fort Belknap 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거주시설을 만들었고, Seattle과 Imperial Country는 정신건강 상담을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Contra Costa County의 경우 실시된 Volunteers in Probation program 은 보호관찰부서와 청소년을 도와주는 업무를 공개함으로써 성공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SafeFutures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비영리 기관의 자격으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음을 내딛었다. 또한 Summit Cente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를 주시하여 주정부에서는 1999년에 제2의 Summit Center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관하였다.

Imperial County의 공무원들은 또래법정 프로그램의 실시를 매우 성공적으로 여겨 3년째에는 다른 두 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또래법정은 체계개혁의 한 예로 이것은 소년사법체계에 있어서 등급별 처벌의 새로운 형태로 덧붙여지고 소년사법과 학교체계간의 다양한 요소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Boston의 the Youth Advisory Board는 첫 해에는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인 구성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3년째에는 담당 행정기관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미국 : 'System of Care'

### 1) 'System of Care'의 개념과 발전과정

미국의 System of Care(이하 SOC)는 원래 심각한 정서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s)를 갖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로서 개발되어졌다. 그러나 이 SOC는 정신건강(mental health)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가능성과 가족단위를 문제해법의 기초단위로 삼는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정서장애 아동에 국한 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체계로 발달하게 되었다.

#### (1) 'System of Care' 개념

System of Care(이하 SOC)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개념은 1986년 Stroul B와 Friedman. R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지역단위의 각종 자원 간에 조직화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및 그의 가족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체계" 15)

(A comprehensive spectrum of mental health and other necessary services which are organized into a coordinated network to meet the multiple and changing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SOC는 하나의 프로그램(program)이나 모델(model)을 말하는 것이 아

---

15) 미국의 "systems of care"는 구체적 사업명칭이 아니다. system of care는 일종의 개념(concept) 또는 원리(principle)를 말하는 것이다. 'system of care'는 미국 내 아동, 청소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기본원리이자 오늘날 다양한 청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Stroul, B.& Friedman, R. (1986). A system of care for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nd youth. Washington, D.C: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니다. 이것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의 가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서비스체계를 디자인 할 때 가져야 할 하나의 접근원리(a guiding approach)이다.

## (2) SOC의 핵심가치

Stroul B와 Friedman. R은 SOC의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SOC는 철저하게 해당 아동에 기반을 두고 가족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child-centered and family-foc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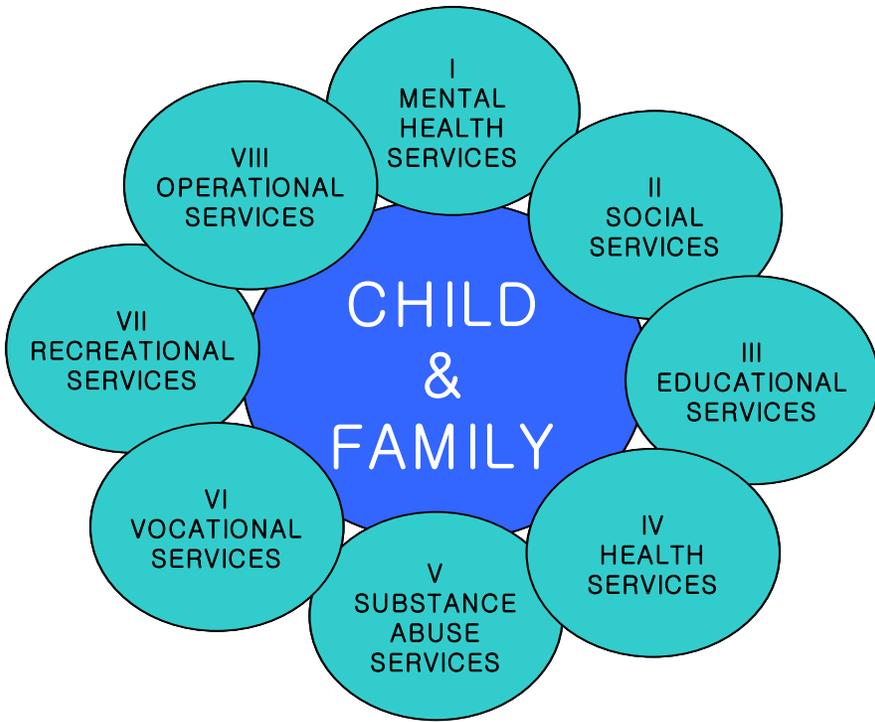
둘째, SOC는 지역단위(community-based)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SOC는 문화적 다양성 즉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가지 핵심가치에 덧붙여 10가지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③ 당해 아동의 주변 환경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④ 전 가족이 참여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문제에 대한 신속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프라이버시 등 아이의 권리가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 ⑦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⑧ 다각적인 서비스를 위해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⑨ 성인으로서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⑩ 서비스 기관과 당해 가족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SOC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community-based)에서 관련 자원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coordinated network)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SOC는 <그림 VI-3>과 같은 8가지 영역의 협력네트워크를 강조 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 간에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느냐에 따라 SOC 성패의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그림 VI-3> SOC의 8대 영역

(3) 'System of Care'의 발전과정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정서장애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 가족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SOC라 할 수 있다. SOC의 발달의 주요한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청소년지원프로그램(CASSP)의 개발(1983년)

1983년 미 의회에 소속된 ‘국립정신건강센터(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는 ‘아동·청소년 지원프로그램(the Child and Adolescent Service System Program)’을 개발·보급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50개 전체 주를 대상으로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갖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바는 아동·청소년문제는 단순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 아동복지기관, 청소년사법기관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기관들의 협력체계망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전미 가족운동의 확산(National Family Voice, 198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내에는 정서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강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마침내 1989년 아동정신건강을 위한 가족연합체(the Federation of Families for Children's Mental)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 ‘정신질환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전국연맹(the National Alliance for the Mentally Ill Child and Adolescent Network (NAMI CAN))’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과 병행하여 미 의회는 1986년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법률(the State Comprehensive Mental Health Services Pla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주정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SOC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SOC 계획수립 단계에 반드시 관계되는 가족 또는 정책고객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종전의 특정 병원이나 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역단위 중심의 SOC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었다.

### ③ 청소년 건강지원 프로그램(MHSPY) 시범사업 실시(1989-1992년)

1989년 '로버트우드존슨재단(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은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the Mental Health Services Program for Youth(MHSPY))”을 시작하였고, 처음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1992년 15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27개 지역으로 동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SOC를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적 원리들을 개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④ 지역정신건강지원사업(CMHS) 시작(1992년)

1992년 미 의회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아동과 그들 가족을 위한 공동체 지원프로그램(the 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ogram)’을 만들어 미국 67개 지역을 대상으로 SOC 사업을 시작 하였다. 이 사업이 현재까지 미국 SOC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SOC의 핵심 가치인 ‘개인적 특수성 반영’, ‘가족치료’, ‘집중관리’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⑤ 도시지역 아동 정신건강 사업(UMHI) 시행(1993년)

1993년 ‘앤 케이스 재단(Anne E. Casey Foundation)’은 “도시지역 아

동의 정신건강 사업(the Mental Health Initiative for Urban Children)"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의 이웃관계에서 정신질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종전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당해 아동에 한해 치료서비스가 지원되었던 것에 비해 질환을 가진 당해 아동은 물론이고 그들 가족 그리고 일반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까지도 포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점이다.

#### ⑥ SOC를 통한 아동복지 성과 극대화 사업(ICWOT)의 시작(2003년)

SOC를 단순 정신건강(Mental Health)문제를 넘어서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정책서비스체계로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 美,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본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ACF)가 실시한 ‘아동복지성과극대화사업(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정신건강(Mental Health)분야에서 가치가 입증된 SOC 모델을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혁신모델로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SOC는 진공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모델이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시스템 혁신모델이다. 따라서 SOC의 구축은 청소년보호 체계에 있어 그 동안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의 비효율성, 그리고 성과의 미흡 등 시스템상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표 VI-4>은 혁신적 측면에서의 SOC의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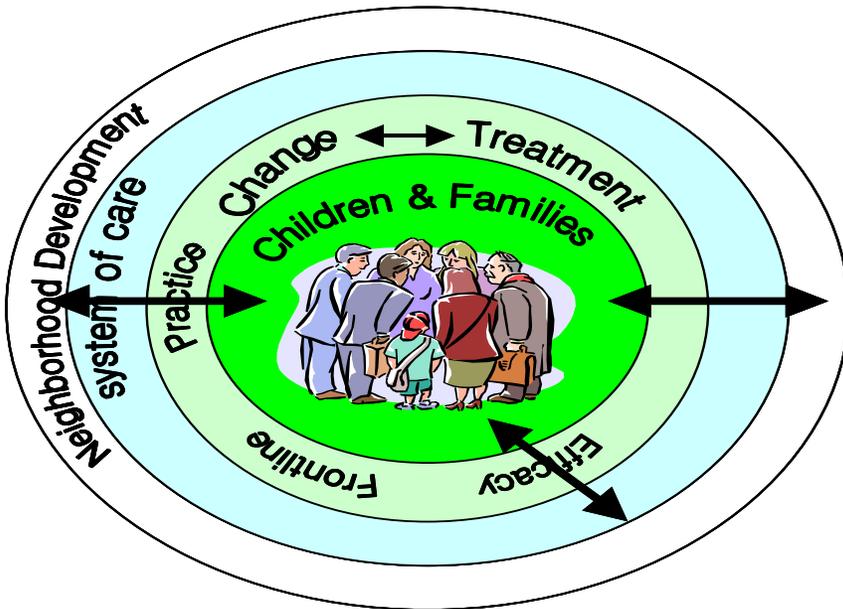
<표 VI-4> 혁신적 측면에서의 SOC의 특징<sup>16)</sup>

중 전	개 선 (SOC모델)
· 독자적 서비스 전달체계	· 협업적 서비스 전달체계
· 분야별 프로그램 및 재원	·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시너지 도모
· 서비스 접근의 제한(타 분야는 지원 안됨)	· 원스톱 서비스 가능
· 위기상황에서 사후 지원	· 예방 중심으로 조기 개입
· 가장 심각한 상황 중심의 제한적 지원	· 지원범위의 광역화
· 행정기관 중심의 지원	·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원
· 의존성 양산	· 자조능력 배양 및 적극적 참여
· 지원대상을 당해 문제 아동에 국한	· 지원대상을 가족단위로 확대
· 요구와 결함(단점) 중심의 분석	· 장점의 발굴
· 가족을 문제의 발원지로 봄	· 가족을 문제해결의 파트너로 봄
· 고도의 전문가 중심의 지원	· 간접적·자발적 지원자들의 협력을 통한 지원
· 문제된 분야에 한해 접근	· 개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감안한 접근
· 투입요소의 강조	· 성과와 결과의 강조
· 예산산출을 프로그램 단위로 책정	· 예산산출을 대상인원 중심으로 책정

SOC의 발전과정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먼저, 서비스 수혜자가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근가능성의 증대, 서비스와 재정지원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직 및 재정체계의 연계성 확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원들의 태도, 지식, 기술 등의 향상 등이다. 또한 이웃이나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상호협력 분위기도 SOC의 성공적 운용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SO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

16) Pires, S.(1996). "Characteristics of systems of care as systems reform initiatives"

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들의 태도나 지식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더라도 실제 서비스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 모르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으로 상호 협력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진다면, SOC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반대로 SOC의 접근성이 높고 상호 연계 된 종합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의 수준이 극히 낮다면 그 또한 성과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항시 위기상태(risk conditions)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OC의 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상의 모든 여건들이 정상적이고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청소년과 그들 가족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그림 VI-4>와 같다.



<그림 VI-4> SOC의 체계

## 2) 사업사례분석 : SOC를 통한 아동복지 성과 극대화 사업(ICWOT)

앞의 SOC 발달과정에서 간략히 소개한 ‘아동복지 성과 극대화 사업(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은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 해 보자는 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안전망(CYS-Net)” 구축사업에 참고할 만하다.

### (1) 추진배경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성과를 검토한 결과 여러 주가 심각한 결점(serious deficiencies)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게 되었다.<sup>17)</sup> 동 평가보고서에 의한 결점의 핵심은 아동·청소년보호 관계기관 간에 상호협력체계 없이 독자적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 보건복지부는 SOC식 접근을 통한 아동복지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기 위해 “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전국에 걸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2) 사업목적 및 실시 현황

동 사업은 위기 아동과 그들 가족(children and families at risk)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보호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SOC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사업의 핵심은 지역단위 서비스기관의 협력체계를

17) HHS Annual Report(2002) “the State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

통해 문제 청소년을 지원해 줌으로써 종전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5년이며, 매년 총404만불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구체적인 실시지역과 지역별 지원 예산은 다음의 <표 VI-5>와 같다.

<표 VI-5> SOC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sup>18)</sup>

사 업 주 체	지역 (市, 州)	지원예산
Contra Costa County Employment and Health	Martinez, CA	\$498,893
Jefferson County	Golden, CO	\$497,898
Kansas Dept. of Social and Rehab. Services	Topeka, KA	\$444,446
Clark Co. Family Services	Las Vega, NV	\$500,000
New York City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New York, NY	\$498,834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aleigh, NC	\$500,000
Native American Training Institute	Bismark, NC	\$500,000
State of Oregon	Salem, OR	\$500,000
Pennsylvania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Harrisburg, PA	\$100,000

(3)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 Colorado)” 사례

여기서는 9개 시범사업 지역 중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 Colorado)”의 예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겠다.

18) [http://www.acf.hhs.gov/news/press/2003/release\\_092603a.htm](http://www.acf.hhs.gov/news/press/2003/release_092603a.htm)

## ① 일반현황

제퍼슨카운티의 총 인구는 530,966명(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이며 이 중 18세 이하의 인구는 약 26%로 138,000명 정도이다. 그리고 소수민족 비율이 약 15%정도이며 이 중 67%가 멕시코와 남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출생지가 미국이 아닌 인구가 총 인구의 5%정도이며, 9%정도의 인구는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퍼슨 카운티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대개 소수민족 출신이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볼 때, 흑인계통의 아동이 0.7%에서 2.6%로, 히스패닉 계통의 아동이 7%에서 12.8%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제퍼슨카운티 내에는 2002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106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6건 정도씩 친권상실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제퍼슨 카운티의 SOC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 ② 조직체계

County 정부 Human Services Department(우리나라의 局단위 조직) 내에 SOC전담조직(Systems of Care Division)을 설치하고, 내·외부에서 충원된 총 9명의 스태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 전담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태프별 직위 및 역할,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표 VI-6>과 같다.

<표 VI-6> SOC사업 조직체계<sup>19)</sup>

직 위	역 할	근무기간/근무시간
Project Director	-사업 총괄	5년간, 전일근무
Planning and Assessment Specialist	-사업계획, 사정, 평가 업무 수행	5년간, 불규칙
Operations Coordinator	-진행상황에 대한 일일체크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동향 파악	5년간, 반일근무
Assistant to the Director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관리 -Director 보조, 홍보 및 보도지원	5년간, 전일근무
Training Coordinator	-교육, 훈련 담당	5년간, 전일근무
Technology and Business Needs Specialist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전산적 기술지원 및 각종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3년간, 1년차 전일, 2년차 반일, 3년차 1/4 근무
Case Managers(3명)	-SOC를 통한 case 관리 (가족, 지역, 멘토와 협력)	2-5년간, 2명은 전일, 1명은 불규칙

### ③ 예산현황

제퍼슨카운티는 연방정부 보조금 총 404백만불 중 매년 \$497,898를 지원받고 있다. 이 예산은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교육비 그리고 평가기관 자문료 등으로 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일반사무비품은 기존 것을 활용하고 동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인건비는 5년 동안 매년 4%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예산산출내역은 <표 VI-7>과 같다.

19) Jefferson County Division of Human Services(2003), "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 in Jefferson County Colorado"

<표 VI-7> 제퍼슨 카운티의 예산산출내역

항 목	소요예산
인건비	· 카운티정부 인건비 지급공식에 준하여 지급 · Planning and Assessment Specialist, Case Managers(3명)의 경우 별도 인건비 미지급
교육비 (\$30,000)	· \$30,000 · 사례관리교육(8회), 능력개발교육(8회), 협력망구축교육(4회), 지역주민교육(4회)
사무용품 및 회의진행비 (\$12,225)	· 컴퓨터구입 \$5,100 (2대×\$1,800+소프트웨어2종×\$750) · 사무용품 \$2,400 (4인×\$50×12개월) · 사진인하비 \$100(년간), 연간 평가보고서 \$125 · 회의진행비\$4,500 (연간10회 기준)
출장비 (\$9,744)	· 4인×2회×\$1,218 ※ 1인당 1회 출장비 : \$1,218 (항공료\$650+호텔\$400(4박기준)+식비\$32/일×4일+육상교통비\$40)
평가기관 비용	·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매년 차별 지원 ※ 1년차 \$120,000, 2-4년차 \$60,000, 5년차 \$80,000

#### ④ 협력네트워크 현황

SOC 성공의 관건은 Systems of Care Division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단위 내·외부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잘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퍼슨 카운티의 협력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콜로라도 주 내의 관련 기관 중에는 사회복지기관, 법원, 검경찰, 청소년교정기관, 아동복지기관, 아동·청소년활동 지원기관, 제퍼슨 정신보건 센터를 대상으로 그리고 외부 민간단체의 경우, 학부모단체, 지역단위 봉사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제퍼슨 카운티정부 내의 협력네트워크로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왔던 “Kids in Crisis”라는 내부 협

의체를 활용하고 있다. “Kids in Crisis”는 제퍼슨카운티 내의 위기 청소년(children and youths in crisis situations)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5개부서<sup>20)</sup>의 관련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콜로라도주립대학(Colorado State University)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VI-8>와 같다.

<표 VI-8> 제퍼슨카운티 SOC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황

총괄	SOC 전담팀
외부기관	사회복지기관, 법원, 감·경찰, 청소년교정기관, 아동복지기관, 아동·청소년활동 지원기관, 제퍼슨 정신보건센터
민간단체	학부모단체, 지역단위 봉사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등
내부부서	Department간 내부협의체 일명 “Kids in Crisis” - Social Services, Probation, Law Enforcement, the Juvenile Assessment Center, Human Services
평가기관 <sup>21)</sup>	콜로라도주립대학(Colorado State University)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 ⑤ 주요 사업내용

동 사업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종전의 각종 서비스들 수혜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SOC(지역자원의 협력망) 접근을 통한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그 효과가 배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사례 관리 및 평가 사업이다.

20) 제퍼슨 카운티내 5개 Department부서로서 구체적으로 Social Services, Probation, Law Enforcement, the Juvenile Assessment Center, Human Services를 말한다.

21) 동 SOC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5년 후 전체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시범사업 주체 별로 별도의 외부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동 평가기관과는 5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퍼슨 카운티는 인근 유력대학인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를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퍼슨 카운티 SOC팀에서는 각 사업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설치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지속적인 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행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SOC 사업내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기관 간 협력분과위원회(interagency collaboration subcommittee)

이 분과위원회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월1회 개최하는 회의체로 한 달간 실제 협력망을 통해 지원한 구체적 사례와 동 사례에 대한 협력도 등에 대한 자체 평가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매달 3번째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 하고 위에서 살펴본 협력체계망 참여기관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 나. 교육 분과 위원회(Training subcommittee)

이 분과위원회는 SOC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훈련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매월 3번째 목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SOC팀에서는 협력망 참여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구체적 행동요령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 가족참여분과위원회(Family Participation Subcommittee)

SOC사업의 핵심은 가족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사례별로 얼마나 가족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가족참여(특히, 당해 아동의 부모)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 분과위원회는 가족참여 사례가 축적되는 시점에 맞춰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라. 평가분과위원회(Evaluation subcommittee)

이 분과위원회는 SOC사업의 기획조정역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SOC사업을 기획, 설계, 수정,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동 분과위원회는 연방정부 뿐 아니라 SOC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8개 지역 담당자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

참고로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측정은 외주를 통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연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 (4) 기대효과

이 사업을 통해 얻어야 하는 제퍼슨 카운티 SOC 당국자가 밝히는 주요 성과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위기 아동과 가족의 안정(Individual child and family outcomes)

우리는 SOC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공적 도움(public supporting)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더 이상 위기상황(risk situations)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②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System-level improvements)

우리는 SOC를 통해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특히 아동복지시스템에 가족이 직접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관련 데이터나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성 있는 서비스를 행하게 됨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SOC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the emphasis on process and outcome evaluation)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체계에 있어 평가문화(evaluation culture)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평가문화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③ 지역사회 역량강화(Increases in community capacity and resources)

우리는 SOC를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보호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 방치된 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호자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치료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건강하고 건실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지역사회내로 파급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는 선순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④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 견인 (Changes in policies related to child welfare)

SOC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인 보호시스템 내로 흡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표 VI-4>에서 제시된 SOC차원의 시스템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지역단위에서 재원조달의 매카니즘(funding mechanism)까지 변화시키게 되어 SOC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게 한다.

## 5. OECD: 청소년 역량강화사업(YEPP) (Youth Empowerment Partnership Programme)

### 1) 사업개요

#### (1) YEPP의 개념과 목적

YEPP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력 사업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위기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위기와 단절은 가정과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YEPP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YEPP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둘째, 전체의 통합을 중시하되 지역사회의 욕구와 필요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셋째, 지역과 국가, 초국가적 협동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social inclusion(사회적 단절 배제), 민주사회,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진작함에 있다.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수동적인 원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즉,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임파워먼트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위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을 물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물리적, 환경적요소를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YEPP이 지향하는 바이다.

YEPP에서 중시하는 Empowerment 모형은 <표 VI-9>과 같다.

<표 VI-9> YEPP의 Empowerment Matrix

관련분야	개인	사회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체성</li> <li>· 자신감과 가치</li> <li>· 사회적 기술</li> <li>· 대인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이미지와 정체성</li> <li>· 사회자본</li> </u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li> <li>· 정치참여에 관한 기술과 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의 자체적인 조직 능력</li> <li>· 참여의 기회</li> <li>· 민간영역의 가시화</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잠재력</li> <li>·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과 훈련의 기회</li> <li>· 경제 개발</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정체성</li> <li>· 가치와 태도</li> <li>· 존중</li> <li>· 이(중)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 간의 통합</li> <li>· 풍부한 문화생활</li> </ul>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부여 및 재능 개발</li> <li>· 공교육과 훈련의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회 증진</li> <li>·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질 향상</li> </ul>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권</li> </ul>
건강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적 신체적건강</li> <li>· 건강에 대한 지식</li> <li>· 자연에 대한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서비스</li> <li>· 오염되지 않은 환경</li> <li>· 환경에 대한 대중의 자각</li> </ul>

## (2) YEPP의 운영 및 추진체계

### ① 초국가적 추진체계

YEPP의 사업진행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2개의 유럽과 미국의재단, 부르셀의 유럽재단센터(European Foundation Centre(EFC), Brussels, 파리의 OECD/CERI, 부뤼셀의 NEF(Network of

European Foundation for innovative Cooperation), 베를린 Freie 대학의 지역교육/국제학연구소가 있다.

## ② 지역별 추진체계

지역별로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으며 중추가 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 그 외에 여러 협력단체가 있다. CHIs 모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의 재단이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단이 공조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전달에 있어서도 허브역할을 하는 단체도 여러 개이며 협력단체 또한 많게는 10개가 넘는 곳도 있다.

## (3) 실시지역

YEPP사업 실시를 위해 사업의 수혜대상인 지역사회(도시)를 선정한다. 유럽과 북미 등에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는 지역을 Centres of High Intensity(이하 CHIs)이라고 부른다. 지역선정 기준은 청소년과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심하게 드러나는 지역이다.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나 지역사회의 개입이 시작된 지역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파트너쉽과 전략이 요구되는 지역이 CHIs로 선정된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제1차 YEPP사업에서 선정된 7개의 CHIs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 : Antwerp-North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Tuzla Simin Han
- 핀란드 : Kristinestad
- 독일 : Mannheim Neckarstadt-West
- 아일랜드 : Dublin North-East Inner City

- 이탈리아 : Turin Mirafiori Sud
- 이탈리아 : Turin Parella
- 남미의 브라질에도 한 개의 CHIs의 설립을 추진 중

YEPP 실시지역은 심각한 문제점과 과제를 지닌 지역으로 강력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CHIs 지역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주로 교육과 훈련의 부재와 높은 실업률이다.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자의나 타의로 교육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청소년 이민자의 통합과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이다. 유럽의 통합과 교류, 동유럽의 붕괴와 난민 이민자의 증가로 문화적 충돌 뿐 아니라 인종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YEPP이 실시되는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이다. 또한 성차별 문제가 심한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러 기회, 즉 교육이나 취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에게도, 사회 부적응, 일탈, 도덕성의 붕괴와 반민주적인 생활양상의 문제들에 노출되게 만든다.

#### (4) 재원 및 인력

YEPP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유럽커미션(European Commission)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단이 있다.

YEPP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인력은 지역별로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지역코디네이터와 지역연구원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연구원은 각 지역이 YEPP의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과정을 모니터링, 자문,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지역별 사업 분석

지역별로 YEPP이라는 운영원리에 기초해 사업을 실시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르다. 각 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1) 벨기에(CHI Antwerp-North)

#### ① ANTWERP-NORTH의 지역적 특성

이 지역은 127개 민족에 4만명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사용되는 언어만 53개이며 불법 이민자 등 새로운 유입인구가 많아 변화가 큰 지역이다. ANTWERP 청소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8%정도이나 ANTWERP-NORTH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35%가 된다. 이들 중 약 18%가 EU권 밖의 민족출신인데 이는 도시전체 인구비율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 지역은 21%의 높은 실업률(도시 전체는 9.76%), 열악한 거주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청소년의 여가시설이 극도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 ② 목적 및 목표

‘따뜻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청소년의 여가와 교육, 취업의 증대를 위해 이미 기존 프로그램과 협력, 또는 지원하고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Antwerp North 지역 내 세부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장소에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나, 공원, 여가 문화 시설의 확충
- 지역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목표로 진행 중인 소규모의 사업 지원

- 청소년 단체나 고용주와의 협력과 네트워킹
- 지역주민 조직의 내부적 외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 특정한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 ③ 주요 사업

주요 사업영역은 직업훈련센터인 CDO Noord와의 협력, 지역적, 초국가적 네트워킹, 팀버랜드사와의 협력, 자원봉사의 증진 등이다.

#### 가. CDO Noord 직업학교와의 협력

YEPP Antwerp-North는 파트타임 직업학교인 CDO Noord와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학업을 중퇴했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민자나 난민출신의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이 학교가 Antwerp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은 시 근교의 타 지역에서도 오고 있다.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이민자나 난민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에서의 결손요인이 향후 청소년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취업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YEPP은 CDO Noord학교와 지역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적인 지원과 훈련의 기회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YEPP사업을 통해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변화를 시도해 온 결과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vens Foundation과 Foundation Bernheim의 도움으로 지역의 Timberland사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었다. 2003년과 2004년에

두 번의 Serv-A-Palooza Day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으로 CDO Noord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 나. 지역적 네트워킹 및 초국가적 네트워킹

관련 조직, 기관과의 원탁회의 개최, 문화적 행사를 조직하거나,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국가 간 교류와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Antwerp North 지역에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요 단체나 재원을 확인하고 이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을 공유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학교와 사회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YEPP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경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에 기초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인 'Can Do'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하였다.

Antwerp의 청소년들은 YEPP 내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국가적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9월, Moving Images, Local Realities'라는 주제하의 Turin 워크숍, 같은 해 10월 Antwerp 워크숍, 2005년 1월, 베를린YEPP 지역컨퍼런스, 2005년 7월에는 Turin에서의 Community Media 훈련코스 등에 참가하였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던 위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교류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기표현, 의사소통, 문화적인 지식 함양 등 여러 부분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다. 팀버랜드사와의 협력

이 지역에 YEPP을 세우면서 초창기에 중요하게 파트너십을 갖게 된 곳은 Evens Foundation과 Foundation Bernheim, stRaten-generaal이며 2003년 이후에는 Timberland와 CDO Noord 학교와의 파트너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공공영역의 대표들과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회의도 갖긴 했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 분위기 때문에 공공영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전략계획을 수립할 만큼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이 크지는 못하다. 그리하여 현재는 YEPP 지역 원조그룹에는 민간이나 공공영역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라. 지역사회봉사

CDO Noord의 청소년들이 조직한 'Matching project'라는 노인을 위한 활동이 있다. Restaurant & meal delivery(식사 배달), 미용, 집안일 돕기로 구성된다. YEPP의 지역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힘을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돕고 작은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소질이 있는지를 계발해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을 더 많이 끌어내고 지역사회의 개발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 ④ 주요 파트너와 사업실행조직

주요 파트너는 CDO Noord 파트타임 직업훈련센터, SPOOR Nord Antwerp North 청소년단체 대표자, 청소년위원회, Antwerp 시, 팀버랜드사, 교육부 등이다.

지역사업의 재원은 Evens Foundation과 Bernheim Foundation에 의해

지원되며 사업실행을 위해서 지역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션팀, 자체평가를 위한 지역연구원이 있다.

Coordination Group(2003년 2월)은 stRaten-general이며 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다. 대개 다른 지역의 CHI 코디네이터는 파트타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게 되나 벨기에 지역의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만한 재정이 형성되지 않아 무보수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다.

벨기에의 CHIs 연구를 담당하는 지역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벨기에 사례의 강점을 묘사한다.

- Coordination Group은 높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
- Coordination Group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료들을 제공한다.
- 또한 이 그룹은 그룹의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 모든 구성원이 비록 자원봉사자들이기는 하나 어느 CHI의 코디네이터 못지않은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프로젝트가 안정화되도록 돕고 있다.
- 특히 이 CHI의 자발적인 업무스타일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처리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아일랜드(CHI North-East Inner City of Dublin 이하 NEIC)

### ① 지역적 특성

아일랜드의 사업대상지역은 North-East Inner City(이하 NEIC)이다. North East Inner City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이익이 만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도시의 이미지는 반달리즘과 고립, 소외, 높은 범죄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결합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과 외국인이주 유도등을 통해 사회인구적으로도 다양화와 개발을 꾀하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는 동유럽으로부터의 피난민, 망명자, 노동자들의 대거유입이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어느 지역보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청소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청소년 실업, 주택, 시설,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이와 더불어 약물과 불안정한 사회 치안 역시 청소년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 ② YEPP의 목적 및 목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YEPP 사업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과 전문 청소년지도자들에 의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공급과 지원,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기간 내의 청소년 클럽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보급하는 계획이다. 또한 취업의 증가와 학교 출석에 대한 모니터링, 취학 전 학교(pre-school)와 무료 탁아시설, 건강증진프로그램, 아동 보호 프로그램, 미혼모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의 YEPP 서비스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위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조직 형성
- 위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

- 위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형성
- 위기 청소년의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지원
- 위기 청소년을 위한 반차별 정책 수립과 지원
- 위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
- 위기 청소년의 의견 수렴
- 운영이 잘 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개입

### ③ 사업내용

YEPP 프로젝트는 이미 ICON(Inner City Organisations Network)에 의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세미나와 워크숍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4년 이래로 NIEC가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과 더불어 YEPP은 Irish Youth Foundation 과 C.S.Mott Foundation으로 부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원 확보와 현황 파악 : 무엇이 이용 가능한 자원이고,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소수 이민자를 포함한 위기 청소년과 아동의 필요와 관심은 무엇인가?
- 개발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점검과 새로 필요한 프로젝트 고안과 그에 필요한 정책 수립
- 관계부처간의 협력체제 구축 : 교육부, 보건부, 사법부, 환경부, 고용부, 민간영역

- 네트워킹 : 위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청소년단체와 연구소, 정부기관간의 네트워킹
- 교육 : 보호와 훈련
- 보건 : 치료, 사회 복귀, 갱생
- 사법 : 법적인 개입
- 국제교류 : YEPP을 실시하는 나라들 간의 참여와 교류 확대

#### ④ 사업실행구조

사업실행주체는 ICON(Inner City Organisation Network)이다. 이 조직은 NEIC의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사회 그룹을 연결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지역 자금 담당 재단으로는 Irish 청소년 재단이며 Weafer Association 이 자체평가기관이다.

NEIC의 사업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CHI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립. 이 운영위원회에는 서비스 과정에서의 주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매주 한번 소집되며 위원장은 ICON의 멤버와 아동보호 매니저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 2004년 2월에는 연구담당 연구원이 선임되어 North-East Inner 시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 아동과 청소년을 0세~5세, 5세~12세, 12세~18세로 나누어 나이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나이별로 운영 그룹을 설립하였고 각각의 그룹에서 2명씩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연구담당 연구원은 그룹 미팅에 참여하며 그룹별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연구한다.
- YEPP의 서비스 과정에서 청소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대규모 포럼은 한 달에 한번 개최되며 지역 개발 원리 안에서 충돌하

지 않도록 통합성을 추구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수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 2004년 6월 파트타임 지역 코디네이터의 임명되었다.

### (3) 핀란드 (Kristinestad)

지방의회의 청소년 관련 계획과 수립에 청소년의회가 참여하고 ‘피드백 데이’를 통하여 그 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하게 된다.

이 지역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Little Parliament(작은 의회) : 2004년 4월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회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로서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내고 선택된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21개의 프로젝트 프로포절 중 6개가 선발되어 재정을 지원
- Cultural Cafe : 이 지역의 몇 개의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먼저 고안하여 다른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 Health and lifestyle :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이벤트와 행사
- Young entrepreneurs in Kristinestad : 2005년 Mannheim과 Turin의 YEPP 견학과 기업 연합회 안에 청소년부서 설립
- Bilingual(S/F) Newspaper : 스웨덴어와 핀란드어 2개 언어로 된 ‘Clamo’라는 청소년 신문을 2005년 7월부터 인터넷에 게시
- Youth Channel(청소년 채널) : 노르웨이에 있는 청소년 전문방송국 견학과 지역 청소년 방송국 설립계획

#### (4) 독일 Mannheim Neckarstadt-West

##### ①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언어 프로그램

- 언어 배우기 프로젝트 : 'backpacker project' 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 개의 유치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Mannheim교육부와 Mannheim대학과 독일어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다.
- Reading centre : 다양한 언어로 된 문헌들을 읽거나 살 수 있는 장소로 2004년 봄에 오픈하였다. 이 센터는 독일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소이다.

##### ② 청소년과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 Service Learning(봉사학습) : 미국에서 고안된 Service learning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노인이나 아동을 돕는 활동이나, 환경운동, 이민자 보호활동들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참여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자하는 시민교육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학생 기업가 만들기 프로젝트 : 청소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학업을 중퇴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생활과 직장에서 필요한 자기주도권이나 술선수범하는 정신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고 일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세를 배우게 하는 프로젝트.

### ③ 지역사회 예술 활동 프로젝트

- 2004년 6월 이후 뮤지컬 'Neckarstadt Westside Stories' 프로젝트 : 청소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바탕을 둔 자신들만의 창조적인 뮤지컬을 고안하였다. 전문 연극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Friendly Monsters : 목판화가의 도움으로 청소년들이 나무 바닥으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냈다.
- Faces and Places : 교외지역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지역의 사진들을 찍는 활동.
- 청소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ProFi Junior' 프로젝트 실시, 'ProFiLeaseOffice' 와 연대(2004/2005)

#### (5) 이탈리아 (Turin- Mirafiori)

이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의 예술과 문화 활동을 위한 센터 건립이다.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영화나 비디오제작을 할 수 있고, 음악활동,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예술 활동, 언론과 문학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6) 이탈리아 (Turin Parella)

- 지역신문(4 FOGLI in Parella 제작) : 신문 제작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웃과 협력하고 공생하는 삶을 다루고 있다. 이에 필요한 신문 제작 기술 등을 배우고 이미 지역신문을 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도 하고 있다. 최근에 첫 신문이 발행되었다.

- 학교 활동 : 민속 춤 배우기, 음악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학부모를 초대하여 그들이 배우고 익힌 활동들을 공연하기도 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 street parties(거리축제) : 5번의 거리축제가 행하여졌고, 지역의 예술가와, 거리의 상점들과, 학부모, 학교들이 거리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

(7) 보스니아 사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Tuzla Simin Han

### ① 지역적 특성

YEPP의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역기반이 파손되었으며, 절대 빈곤의 인구가 많고, 80%에 이르는 높은 실업율이 있다. 약물남용과 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지역의 YEPP프로젝트는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청소년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건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YEPP의 목적과 목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YEPP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태도 이해 및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 습득
-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와 건설적인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 습득
- 청소년 고용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지원- 약물과 알코올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 ③ 프로그램

#### 가. 직업훈련 프로젝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한 개의 학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 나. 리더쉽 훈련

스위덴의 파트너쉽 단체인 Unga Ornar의 협조아래 청소년들이 리더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청소년들은 지금 지역사회 내의 다른 프로젝트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다. 자원봉사활동

독일과 보스니아의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으로는 IT교육과, 신문제작, 언어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Jeusit European Volunteer라는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Agora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 청소, 센터 내 카페운영, 아동을 위한 창작 활동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고 있다.

#### 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 AGORA : 2003년 9월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지역 내 정보제공과 교육, 문화의 장으로서 많은 지역주민에게 환영받고 있는 센터이다. 청소년들

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정기적인 프로그램들도 있고, 환경이나 생태, 시사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다. 소녀들을 위한 에어로빅과 댄스 그룹, 저녁시간을 이용한 게임이나 크고 작은 비형식적인 모임들도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AGORA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환경운동 캠페인과 교통안전 캠페인, 축제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 Community Foundation Tuzla : 지역사회재단으로 2003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의 창시자들은 18명의 Simin Han 지역 주민들로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현재는 AGORA 센터를 인수하여 이 지역 YEPP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중의 하나이다. 교육, 훈련, 문화와 옹호 활동을 전개하며 위원회에는 26세 미만의 젊은층이 3명이나 있으며, 교사, 의사, 여성 운동가, 엔지니어가 포함되었다.

#### 마. 민주주의 함양 프로젝트

- Youth Bank : 유스뱅크는 Tuzla재단의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청소년 박애주의가 그 기본이념이고, 청소년대표들이 재단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결정과 프로젝트선정과정에 참여한다. 최근 유스뱅크 위원회는 25세~26세의 약물 중독자였던 8명을 선임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AGORA 센터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청소년들과 나누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승인하였다.

- 청소년의회
- 어린이 의회

## 바. 경제개발과 기업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 KOOPERATIVA : 2004년 6월 Simin Han 지역사회재단은 KOOPERATIVA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성장을 돕게 하였다. 청소년들이 지역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에 POINT라는 프로젝트는 의학용 허브로 사용될 수 있는 농작물 재배와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한다. YEPP은 4개의 지역학교 설립을 지원하였고, 그 학교들은 각각 경제활동,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사.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

■ 환경훈련과 캠페인 : 2002년에는 30명의 참가자들이 6주간에 걸친 환경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주제는 건강한 음식, 재활용, 깨끗한 물, 의학적 관점에서의 생태환경이었다. 캠페인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진작하고 폐지와 플라스틱 수집, 참가자의 환경에 대한 지식 증가, 활동가의 배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3) 향후 추진계획

YEPP사업은 4년을 1주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1차 사업은 2005년까지 실시되었다. YEPP의 참가자들은 사업종료 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독립영역에서의 새로운 파트너는 물론 유럽과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2차 YEPP 사업은 지역과 국가 내, 그리고 국제적인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며 1차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결과들을 유럽과 그 외의 지역에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1차 사업의 사례연구와 평가보고서 현장 핸드북 등의

최종 평가서는 2006년 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 6.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사업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차원의 협력체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기존의 상담서비스에 지역사회복지를 결합시킨 새로운 사업모형이다. 동반자서비스를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게이트웨이로서 1388 청소년전화의 통합운영,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이다. 코넥션즈는 우리의 청소년동반자와 같은 PA를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서비스 조직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넥션즈다이렉트라는 전화망과 Web망을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고 있으며 47개 파트너십(지부)와 그 이하 지역코넥션즈센터를 전달체계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코넥션즈는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조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13-19세 모든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비학업, 비직업 훈련과정에 있는 청소년, 고위기군 청소년을 중점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PA를 통한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이내로 한다는 제약이 없이 19세까지 제공될 수 있다.

코넥션즈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권

리를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에 기초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해 일반 청소년과 분리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 코넥션즈 사업은 2005년 청소년녹서 ‘Youth Matters’ 로 제도화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전망이다.

코넥션즈 사업은 런던의 1개구에 평균 2개의 코넥션즈센터가 있으며, 약 57명의 PA가 근무하고 있다. 런던 1개구에서 일하는 PA가 서울 전역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동반자 42명보다 많다.

청소년 동반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에게 대단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사업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청소년의 권리적 입장에서 사업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전문가 양성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넥션즈의 PA는 대학의 디플로마 수준의 ‘PA 자격증’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향후 청소년동반자사업의 확대발전과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훈련시킨다.

셋째, 상담지원센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은 상담 기능만을 수행하던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의 코넥션즈 사업은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진로상담센터의 직업상담사를 훈련과정을 통해 PA로 전환하였다.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은 기존 상담실의 기능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상담실 인력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역사회복지를 통합한 조직으로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신규인력뿐 아니라 기존 상담실 인력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넷째, 코넥션즈 카드와 같은 청소년카드를 개발할 필요성이다. 코넥션즈 카드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훈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포

인트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후업체들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신분증과 청소년우대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써 청소년카드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섯째, 위기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동의 위기상황과 보호내용, 보호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는 아동보호등기부제도,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친부모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을 박탈하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명령제, 아동 신상에 관한 정보는 담당자들만 열람이 가능하며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보보호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취해지는 교육지도명령 등을 참고할 만하다.

청소년복지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로서 채택된 미국의 System of Care 역시 한국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성에 주는 함의가 크다. 위기가족과 청소년을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정신건강, 사회복지, 교육, 의료, 약물, 직업, 여가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이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전달체계를 두지 않고 공무원조직 내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사업팀을 두어 지역사회 서비스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기관 간 협력분과, 교육분과, 가족참여분과, 평가분과를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의 점검, 협력망 참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기청소년 가족의 참여에 대한 점검,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SOC는 공무원 사업전담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망 구성을 촉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성과가 배가가 되도록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OC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위기아동과 그 가족까지 사례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안전

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민관 협력망 구성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역량강화사업인 YEPP 역시 위기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간의 협력망 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YEPP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점이다. YEPP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수동적인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역량강화를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YEPP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은 상당히 청소년 참여적이며 긍정적인 자기개발과 청소년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청소년의회, 청소년방송과 같은 창업 및 직업훈련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한 YEPP 청소년들은 국제워크숍 등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성취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YEPP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간 공동사업으로서 이러한 청소년 참여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지역사회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활동을 구상하여 실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의 Safefuture사업은 비행(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단체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부처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가족강화, 정신건강, 비행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Safefuture 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이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방안

1. 문제점
2. 발전방안

## VII.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①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조사, ②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 설문조사, ③ 동반자 설문조사, ④ 5개 지역 상담지원센터 면접조사, ⑤ 위기청소년 상담기록지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현시점에서 발견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문제점

#### 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개념 및 구성상의 문제

1.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이념적 기반이 부족하고 정책초점집단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은 가정과 학교라는 1차적 보호망을 떠난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체계라는 개념 하에 출발하였다. 이러한 사업개념은 정책대상을 위기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정책의 수혜대상을 특정집단으로 부각함으로써 향후 안전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동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상담과 조언, 정보제공 등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보편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특별히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초점 사업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정책초점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예방적 차원의 저위기 청소년이나,

긴급 상황의 고위기 청소년인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쪽 의견은 고위기 청소년은 노력을 많이 요할 뿐 아니라 현재 고용된 인력수준(동반자)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있으므로 같은 노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저위기군 청소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쪽의 의견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특성화되려면 다른 사업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고위기군 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통합지원체계)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 있으며 시군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적 혼선이 있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주체들에게 지역사회 안전망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또는 지역사회기관 간의 협약이라는 아주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5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발하면서 핵심과제로 설정한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절에 입안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그러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확대를 중단하고 이 기능을 청소년상담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주 임무였던 긴급구조기능을 지역사회안전망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약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곧 ‘통합지원체계’에서 통합의 의

미에 대한 혼선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출범시 보호행정과 육성행정을 통합하면서 통합의 의미를 육성과 복지의 통합으로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에서도 시군구상담실을 시군구지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상담 외에 긴급구조사업과 청소년활동과 봉사, 인권 등 육성사업을 병행·지원하는 시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상담업무를 전담해 오던 시군구상담실(곧 시군구 지원센터)이 기존에 수련관 등 타 청소년시설에서 해 오던 업무를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군구 지원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합의 의미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1:1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기관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서비스의 통합이다. 기관과 업무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청소년활동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시군구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시군구 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불일치와 혼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청소년동반자의 위상이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동반자 사업이 통합지원체계사업과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사업 내 구성요소 간 통합이 부족하다.

청소년동반자는 상담과 사회복지업무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역자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혈맥과 같은 위치에 있다. 청소년동반자를 상담이라는 정적 업무와는 다른 동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인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위상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요소인 청소년동반자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통합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출현하고 있다.

4. 사업형태가 정책 수요자, 즉 위기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투입예산 대비 사업범위가 너무 넓어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We Start’는 동 단위 ‘center’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통합지원체계는 ‘시군구’ 단위 센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We Start’ 사업에 비해 청소년의 접근이 훨씬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사업범위는 넓은 데 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더 적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학교당 1-2억원, ‘We Start’ 사업이 마을(동)당 3억원을 투입하나 ‘통합지원체계사업’은 ‘1개 구’당 8천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sup>22)</sup> 타 사업에 비해 사업범위는 ‘구’ 단위로 넓은데 반해 투입예산은 ‘동’ 단위 투입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 2) 허브체계로서 상담지원센터의 문제

1.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간에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06년 5월 현재, 16개 시도,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와 시군구의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22) 여기에 시도당 3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동반자사업 지역인 이 지역인 8개 시도에는 시도 당 2-3억원이 더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시도, 시군구,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투자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직접 시도와 시군구의 대응 투자를 유도하다 보니 시도와 시군구가 각기 중앙정부에 대해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시도와 시군구간의 연계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추진주체인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가 상호연계성 없이 유사한 사업과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부산, 광주, 전라북도 등)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안전망 사업 주체가 긴급지원센터(또는 보호종합지원센터)와 상담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중앙과 시도, 시군구 간의 일원화된 전달체계 확립이 어렵다.

## 2. 지역사회기관으로서 (상담)지원센터의 영향력이 낮다.

시도 및 시군구 (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로 볼 때 (상담)지원센터의 지역사회 기관 중 위세는 중하위 수준에 있다. 이러한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허브기관으로 기능하기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 (상담)지원센터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3. (상담)지원센터에 부과된 기능과 역할이 너무 많다.

시도상담지원센터는 전통적인 상담기능,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기능, 시도차원의 연계협력기관 구축기능, 청소년동반자사업기능 등을 부과 받고 있다. 시군구센터는 전통적인 상담기능에 시군구차원의 연계협력기관 구축, 동반자사업 등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업 기능 외에 활동, 봉사, 인권 등 육성 기능을 부과 받고 있다. (상담)지원센터에 부과된 다양한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 통합하고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기관 실태와 욕구문제

1. 지역자원 확보현황에 있어서 지역별(도시, 농촌) 격차가 크며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보다는 허브기관의 역량에 따른 차이가 크다.

2006년 5월말 현재 확보한 지역자원 현황을 볼 때 농어촌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도시규모보다는 센터의 확보 역량과 의지가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자원 확보현황을 볼 때 발견체계가 학교, 지역이용시설 위주의 1차 안전망 기관과의 연계성은 낮으면서 PC방, 찜질방 등 긴급구조 위주로 치우친 지역이 있다.

지역사회 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견체계와 지원체계, 1,2,3차 기관이 균형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볼 때 대체로 학교, 지역이용시설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해 1차안전망을 통한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발견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긴급구조에 의존한 위기청소년 발견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3.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들이 연계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은 상담지원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기관들이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기관 간의 교류부족과 조직의 폐쇄적 분위기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들은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담지원센터의 허브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지역기관 간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으로는 인력부족이나 서비스자원의 부족 등도 있지만 기관 간 교류의 부족과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기관은 크게 위기청소년 발견체계, 서비스지원 체계로 유형화되지만 해당 조직이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해 허브기관으로부터 자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다.

지역 기관들이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업무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지역이용시설로, 택시·노래방 등 자영업체, 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위기청소년 발견체계로서, 쉼터, 그룹홈,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활동기관·단체 등은 서비스지원체계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지역이용시설, 대안학교, 자활지원관, 쉼터 등은 상담지원센터의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지원센터는 이러한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례발견과 의뢰, 서비스 연계라는 틀을 넘는 조직간 자원의 이전과 지원이라는 다른 형식의 연계망 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쉼터는 발견체계, 보호지원체계로서 뿐 아니라 상담지원센터의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조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조직으로 나타났다.

5. 지역사회안전망에서 상담지원센터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지원과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 보호지원 등이다.

시도상담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외부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기초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쉼터 등 사

회보호 서비스 지원이다. 또한 부모 고용 지원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군구지원센터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외한 전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시도에 비해 지역사회자원이 부족한 시군구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많은 지역자원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 4) 동반자인력 활용문제

1. ‘통합지원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인력을 독립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통합지원체계’ 사업의 개념을 통일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프로젝트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We Start 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조정자 등 사업을 위한 고유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전제로 사업이 계획되어 실행되었으며 광역시도와 시군구(또는 동) 단위로 연계되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통합지원체계사업은 신규인력인 시도와 시군구 지원센터의 직원과 동반자의 역할에 연계성이 없고 시도와 시군구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채 각 센터에 신규업무로 부가되어 기존 직원과 신규직원,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이 혼재되어 사업의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청소년동반자의 위상은 계약직 신분과 짧은 임상경력 등으로 PCM(Primary Case Manager)의 보조인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인력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동반자는 연령은 30대와 40대, 학력은 대졸이상이 주류를 이룬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도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관련 경력

은 3년 이내 이며 동반자의 약 30%는 전일제, 70%정도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중간정도의 업무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불만족 사유는 행정업무의 과다이다.

## 5) 재정적 지원체계의 문제

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투자자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센터가 각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는 현 상태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간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기도 어렵다.

2006년도에 위기청소년안전망 사업 예산은 16개 시도에 3억 6천만원씩 31억원, 시군구지원센터에 8천만원씩 16억원이 지원되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지방비 확보수준에 따라 총 32억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었다.

지방비 확보수준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대응투자방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 사전준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통합지원체계사업은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원 규모가 작아 사업의 실질적 임팩트를 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첫해에는 전액 국고로 사업을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을 줄이고 지방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유도한 후 국고를 다른 지역으로 순환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고로 확보한 일정 사업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성과를 유도

한 후 다른 지역에 순환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 발전방안

### 1)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이념적 기초 및 사업구성에 대한 제언

1.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이념적 기초는 청소년 인권에 있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이며 안전망 사업은 이들의 역량강화에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하되 청소년이 위기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만든다.

모든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축되는 제반 서비스는 어느 청소년이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위기청소년을 정책초점대상으로 하여 지원한다. 즉, 모든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하되 청소년의 위기수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든다.

청소년 동반자사업은 위기청소년에게 대단히 필요한 서비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사업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청소년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2.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들어온 청소년의 정보관리, 제공된 서비스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카드제를 도입한다.

코넥션즈 카드와 같은 청소년카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코넥션즈

카드를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훈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포인트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업체들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신분증과 청소년우대제, 청소년활동 및 직업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청소년카드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 및 현금 공여 등 복지지원서비스 관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3. 청소년동반자사업과 통합지원체계사업 실시지역을 일치시킨다.

지역사회 안전망의 인적 자원인 청소년 동반자와 지역기관 연계망 사업인 통합지원체계사업이 시군구 단위로 분리되어 예산 배정됨으로써 안전망 사업이 지역적으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와 통합지원체계 예산항목을 통합하고 이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 단위 대응투자 예산을 유도함으로써 안전망 사업의 내적 구조를 통합한다.

4. 위기청소년 지원과 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한다.

위기청소년의 발견과 관리, 정보보호, 서비스지원 등을 위해 위기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규를 마련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거나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현재 위기청소년 발견은 시도상담지원센터에 설치된 일시보호와 긴급 구조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발견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발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차적 안전망인 학교를 통한 발견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적 발견을 위해 정규학교 15일 이상 장기 결석자에 대한 학교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한다. 아

일랜드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정부차원의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규학교에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비행청소년 보호처분제도의 하나로서 ‘청소년상담의무제’를 새로 도입하고 ‘소년원 퇴소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무제를 도입한다. 상담지원센터와 지역 사법시설 간 연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 위기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지원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등기부제도, 청소년 신상에 관한 정보는 담당자들만 열람이 가능하며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 2) 허브체계로서 상담지원센터 개선방안

1.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 간 기능을 차별화하고 시도와 시군구간 명확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시도상담지원센터의 기능
  - 직접적 서비스 제공기능은 하지 않으며 시군구지원센터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 광역시도단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 확충을 예산 확보 및 지원
    -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안전망에서 부족한 지역자원 및 서비스 개발
    -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안전망을 권역화하여 공유시키는 기능과 전국단위의 자원 및 서비스 연계 기능 수행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지역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에 대한 도 단위

### 지원 강화

- 사업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의 위상 확립
- 청소년동반자 연수훈련 및 관리
- 시군구 지원센터의 기능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 시군구 단위 위기청소년 발견체계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사정 및 사례관리
  - 청소년 동반자 고용 및 관리
  - 시군구단위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 기관 지원 및 공동사업 개발

2.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를 지역사회 안전망 허브기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안전망 사업은 기존의 상담실 기능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상담실 인력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역사회복지를 통합한 조직으로서의 리모델링, 즉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 신규인력뿐 아니라 기존 상담실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수훈련이 필요하다.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의 부과와 더불어 복잡해진 시도와 시군구(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직함으로써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 시도센터의 기능을 단순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일시보호기능을 쉼터

로 이관한다.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쉼터에 이 기능을 부과하면서 1388 전화를 쉼터로 연결할 수 있다.

- 시군구센터의 경우, 봉사, 인권 등 청소년 활동지원 기능은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시군구센터가 정보를 제공하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해당 지역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3.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의 허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의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야 한다. 상담지원센터의 조직규모는 지역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인지되기는 쉽지 않다. 상담지원센터는 ① 지역사회 조직화 역량과 ② 전문성 강화, ③ 홍보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로 된다.

- 지역별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청소년분야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해 나간다.
- (상담)지원센터의 명칭과 로고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 지역기관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청소년동반자를 지역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4. 시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자원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개발, 지원되어야 한다. 상담지원센터는

단순히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위기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 실행한다.
  -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문제행동을 수반한 개인적 위기가 많고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가족위기, 주거위기가 많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따른 차이는 서비스 욕구에도 반영되어 대도시 지역은 부모 상담 등에 대한 요구가 많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지역 지원센터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기관이 공동으로 모여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지역사회기관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역량강화 사업인 YEPP는 지역사회 기관간의 협력망 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관들이 모여 공동으로 논의하여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참여적이며 긍정적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창업 및 직업훈련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업비에 지역기관과의 공동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1. 시군구를 안전망 구축의 기본단위로 하되 인접지역끼리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의 권역화,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로 부족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지원센터는

자기 지역 뿐 아니라 교통망이 발달한 인접지역과 자원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접 시군구 또는 광역시와 연계한 안전망의 권역화가 필요하다. 안전망 권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권역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간에는 연계기관을 공동 이용한다.

2. 지역사회 안전망 참여 기관의 사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평가 항목에 사례의뢰 및 재배치 실적 및 사례 공동 관리실적을 삽입한다.

지역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가 지적되었다. 안전망 참여기관 간에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관 간 협의회를 아무리 많이 개최한다고 하여도 교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협력이 촉진되지 않는다. 기관시설 평가항목에 타 기관과의 사례교환 및 사례 공동관리 실적을 삽입한다. 기관 간 사례교환 및 사례공동관리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 4) 청소년동반자 양성 활용방안

1. 청소년동반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소년동반자를 위기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시설로 배치·활용한다.

청소년동반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해야 한다. 청소년동반자를 상담지원센터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실업계 학교, 대안학교 등)등에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한다.

영국 커백션즈 사업, 경기도 'We Start' 사업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례는 해당 시설에 있되 동반자가 가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

다. 이러한 조치는 조직 간의 연계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동반자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시간적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기는 스케줄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동반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청소년동반자를 전문성과 직업적 지위를 가진 청소년분야의 신규 전문인력으로서 고용, 양성,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동반자의 현재 신분은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전문상담가인 상담원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상담원의 수퍼비전을 받는 상담업무의 보조자, 또는 준전문가로 위치지워져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분야에서 새로 창출된 인력자원이다. 일반상담원에 비해 동반자가 담당하는 사례는 더 어려운 사례로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동반자는 사례관리자이며 청소년상담자이자 청소년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사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적 활동을 개발하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 커넥션즈 사업의 경우,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후 1년간의 PA degree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진로상담센터를 커넥션즈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적 자원의 통일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상담실 내 일부 사업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기존 인적 자원과 동반자라는 새로운 인적 자원이 동일조직 내에서 위계화 되어 편입됨으로써 동반자들의 사기저하,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유발시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반자 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동반자의 충원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동반자의 현장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직업집단으로서 이들이 직업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반자 연수과정과 경력에 따라 직업적 지위를 발전시켜나

갈 수 있는 승진제와 임금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동반자의 사례관리 할당 기준을 일정 숫자로 고정시키지 말고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반자의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 전일제 12사례, 시간제 6사례 등의 기준이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사례의뢰가 들어와도 의뢰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발생한다. 매뉴얼은 참고기준 일 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입장에서 지역 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a).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개발연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b).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c).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 구본용(2005). 위기청소년 지원모델. 수원시 위기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수원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구인회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PP. 7-30.
- 김광역·김대일·서이중·이창용(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성이 외 2인(2004). 청소년 복지학. 집문당
- 김재엽·이익섭·박수경(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제6권. PP. 54-82.
- 박기성·송병호(2002). 한국 근로자의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2호. PP.39-75.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PP. 195-216.
- 방하남·김기남(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권 제4호. PP. 31-65.
- 방하남·김기남(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PP. 193-222.
- 방하남·김기남(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PP. 1-30.
- 보건복지부(2005). 아동백서 :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5).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5).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 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유성경·이소래, 안희정(2000).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철경(2005a).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지역사회협력체제, OECD 3차회의 자료
- 윤철경 외(2005b).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005c).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봉주(2004). 참여정부의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제163권. PP. 37-47.
- 이봉주·양수·김명순(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길잡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혜원(2006).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67-195.
- 장상수(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4권 제3호. PP. 671-708.
- 정경배·박찬용(1998).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공동모임 편. 국정개혁대토론회 자료집.
- 조흥식 외(2000).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전략. 청소년보호위원회.
- 지승희·이은경·이지은·최수미·정찬석(2001).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 I. 한국청소년상담원.
- Barnett. W.S(1996). Lives in the balance : age-27 benefit-cost analysis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High/Scope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Monograph* Vol. 11. Ypsilanti. Mich.:High Scope Press.
- Barnett. W.S.(1992). Benefits of compensatory preschool educ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7, No.2, pp. 279-312.
- Becker, G.S.(1993).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S.(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 70. pp. 8-49.
- Borum, R.(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10. pp. 1263-1288.

- Blum, R. W. & Ireland, M.(2004). Reducing risk, increasing protective factor : finding from the Caribbean youth health surve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5. pp. 493-500.
- Brener, N. Kann, L. McManus, T. Kinchen, S. A., Sundberg, E. C, Ross, J. G.(2002). Reliability of the 1999 youth risk behavior survey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1. pp. 336-342.
- Brooks-Gunn, J. and Duncan,G. J.(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 children and poverty*, vol. 7, No.2. pp. 55-71.
- Burt, M. R, Resnick, G. & Novick, E. R.(1998). Build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t-risk 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puzzi, D. & Gross, D. R(2004). Defining youth at risk. In D. Capuzzi & D. R.Gross (Eds.), *Youth at risk : A Prevention Resource for counselors, teachers, and parents* (pp.1-19).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Carneiro, P. and Heckman, J. (2003). Human capital policy. In Heckman, J. and Krueger, A. (eds.) *Inequality in America: what role for human policy?* Massachusetts: MIT Press.
- Corcoran, M.,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Vol.21, No. 2. pp. 16-20.
- Cotton, S. Larkin, E. Hoopes, A. Cromer & B. Rosenthal, S.L.The impact of adolescent spirituality on depressive symptoms and health 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No.36. pp.7-14.
- Connexions(2001), *Introduction to Connexions :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 Currie, J. and D. Thomas.(1995). Does head start make a diffe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3. pp. 341-364.
- Davis, C, Tang, C. & Ko J.(2004). The impact of peer, family and school on delinquency : A study of at-risk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International Social Work*. 47(4). 489-502.
- Dobizl, J. K.(2002). Understanding at-risk youth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help them succeed in school, A Research Paper.

- Dryfoos, J. G.(1990). *Adolescent at risk : Prevalence and Preven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uncan, G.J. and R. Dunifon.(1998). Soft-skills' and long-run labor market succes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No. 17. pp. 123-149.
- Ellwood, D. and T. Kane.(2000). Who is getting a college education? : family background and the growing gaps in enrollment. In *Securing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Sheldon Danziger and Jane Waldfogel(eds.). New York: Russell Sage.
- ERIC Digest(2003). *Who is at risk and at risk of what?* No. 248.
- Fellin, P.(1995).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Itasca, IL : F. E. Peacock.
- Gilbert, N. Specht, M. & Terrell, P.(199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Ginzberg, E. Berliner, H. & Ostow, M.(1988). *Young people at risk : Is prevention possible?*, Boulder, CO : Westview Press.
- Graces, E., D. Thomas, and J. Currie.(2002).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4. pp. 999-1012.
- Homan, M. S.(1994). *Promoting Community Chang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eckman, J. J.(2000).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Vo. 54, No.1. pp. 3-56.
- Heckman, J. J. and L. Lochner.(2000). Rethinking myth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In *Securing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Sheldon Danziger and Jane Waldfogel(eds.), New York: Russell Sage.
- Heckman, J. J., L. Lochner, Smith, J., and Taber, C..(1997).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on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Chicago Policy Review*. Vol.1, No.2. pp. 1-40.
- Jefferson County Division of Human Services(2003a), 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 in Jefferson County Colorado.

- Jefferson County Division of Human Services(2003b). Systems of care literature review. Systems of care project. Produced by colorado institute of public policy.
- Johnson, G. M.(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Vol. 42, No.1. pp. 19-27.
- Kemper, A. Spitler, H, Williams, E. & Rainey, C.(1999). Youth service agencies : promoting success for at-risk African American youth, *Family and community Health*, Vol. 22, No. 2.
- Kramer, R. M.(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hav, Chaim(2005). Children and youth at risk in Israel. *Building a Community-based Net for Youths at Risk: International Trends of Youth Policies and the Policy Tasks in Korea*(pp.134-146). Seoul: National Youth Commission.
- Lipsey, M. W. & Derzon, J. H.(1998).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A synthesis of longitudinal research.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 and successful intervention*. Thousand Oaks, CA: Sage.
- Martin, P. Y. and O'Connor, G. G.(1989). *The Social Environment*. New York & London: Longman Inc.
- Mayer, S(1997). *What money can't bu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McGuirk, J.(2001) *Youth at-risk : is technology an answer?* Sydney.
- McLoyd, V.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53, No.2. pp. 185-204.
- McWhiter, J.J, McWhiter, B.T, McWhiter, E.H. & McWhiter, R.J.(2004).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 Michaud, P.(2006). Adolescents and risks: Why not change our paradigm?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8. pp. 481-483.
- Murnane, R. J. Willett, J. Braatz, and Y. Duhaldeborde.(1997). *Does the self-esteem of high-school-aged males predict labor market*

- success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LSY.*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Nopes, D. R.(2004). *Motivating change in high risk adolescents : An intervention focus on the deviant friendship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OECD(1996). *Integrating Services for Children at Risk.*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5). *Our children at risk.* Author.
- Osborne, M.(2000). *The power of personality : labor market rewards and the transmission of earnings.* Ph.D. dis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Persico, N. A. Postlewaite, and Siverman, D.(2004). The effects of adolescent experience on labor market outcomes : the case of he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12, No.5. pp. 1019-1053.
- Pires, S. (1996). Characteristics of systems of care as systems reform initiatives.
- Pires, Sheila A.(2002). *Building Systems of Care, A Primer.* Washington, DC: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children's mental health,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Ramey, C., D. Bryant, F. Campbell, J. Sparling, and B. Wasik(1988). Early intervention for high-risk children : the Carolina Early Intervention Program. In *14 Ounces of prevention: a case-book for practitioners,* R. Price, E. Cowen, R. Lorion, and J. Ramos-McKay(ed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onert-Reichl, K.A.(2000). *Children and Youth at Risk :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Paper prepared for the Pan-Canadian education research agenda symposium.
- Schultz, T.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 Smith, T.J.(2004). Guide for the Journey : Supporting high-risk youth with paid mentors and counselors.
- Stroul, B. & Friedman, R(1986). *A system of care for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nd youth.* Washington, D.C :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 Stroul, B. & Friedman, R.(1996). The system of care concept and philosophy. In B.A. Stroul and R.M. Friedman (Eds.), *Systems of Care for Children's Mental Health*. pp. 3-16. Baltimore :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U.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2003). *Improving Child Welfare Outcomes Through Systems of Care*. Prepared by CALIBER.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3). *HHS News*. HHS Awards Funds to Develop Child Welfare Systems of Care.
- Weiss, A.(1995).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4. pp. 133-154.
- Wilensky, H. & Lebeaux, C(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l Sage.
- Youth at-risk Commission(2000). *Final Report to the Illinois General Assembly*.
- Youngblade, L. M., Curry, L. A., Novak, M., Vogel, B. and Shenkman, E. A (2006). The Impact of community risks and resources on adolescent risky behavior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No.38. pp. 486-494.

厚生統計協會(2004). 國民の福祉の動向.

厚生勞動省 雇傭機會均等・兒童家庭局 總務課. 各年度. 福祉行政報告書.

東京都 福祉局 兒童家庭部(2001). 兒童虐待白書.

新社會福祉學習總書編輯委員會編(2000). 兒童福祉論. 日本全國社會福祉協議會.

松原康雄・山縣文治(2003). 兒童福祉論. 東京: ミネルブア書房.

庄司洋子・松原康雄・山縣文治(2004). 家族・兒童福祉. 東京: 有斐閣.

川村匡由・米山岳廣(2005). 兒童福祉論. 東京: ミネルブア書房.

福祉士養成講座偏執委員會(2005). 兒童福祉論. 東京: 中央法規.

[www.hourei.mhlw.go.jp](http://www.hourei.mhlw.go.jp).

[www.acf.hhs.gov/news/press/2003/release\\_092603a.htm](http://www.acf.hhs.gov/news/press/2003/release_092603a.htm)

[www.aecf.org/kidscount/databook/essay2.htm](http://www.aecf.org/kidscount/databook/essay2.htm)

[www.bostonyouthnet.org/network](http://www.bostonyouthnet.org/network)

[www.cdc.gov](http://www.cdc.gov).

[www.centerforyouth.org](http://www.centerforyouth.org)

[www.co.thurston.wa.us/juvenilecourt/civil/at\\_risk.htm](http://www.co.thurston.wa.us/juvenilecourt/civil/at_risk.htm)

## 부 록

### 1. 부 표

### 2. 설문지

- ① 청소년 위기요인 및 위기내용  
조사(청소년용)
- ②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요구조사 (기관용)
- ③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 지역 현황 조사(공무원용)
- ④ 청소년 동반자용 설문지

<부표 IV-1> 위기청소년 의뢰과정

구분	세부 항목	단위: 빈도 (%)													
		학교	공부방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기관	사범 기관	상담 센터	부모	경찰서	종교 기관	1388 전화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청소년 거주시설	기타	무응답	계
성별	남자	85 (29.5)	26 (9.0)	33 (11.5)	33 (11.5)	24 (8.3)	20 (6.9)	18 (6.3)	8 (2.8)	12 (4.2)	10 (3.5)	8 (2.8)	11 (3.4)	0 (0.0)	288 (100.0)
	여자	50 (26.3)	44 (23.2)	19 (10.0)	9 (4.7)	10 (5.3)	12 (6.3)	7 (3.7)	9 (4.7)	3 (1.6)	4 (2.1)	4 (2.1)	17 (0.9)	2 (1.1)	190 (100.0)
학교 관계	제학생	121 (30.0)	68 (16.9)	51 (12.7)	20 (5.0)	20 (5.0)	28 (6.9)	22 (5.5)	16 (4.0)	13 (3.2)	14 (3.5)	6 (1.5)	22 (5.5)	2 (0.5)	403 (100.0)
	학교 밖 청소년	14 (18.7)	2 (2.7)	1 (1.3)	22 (29.3)	14 (18.7)	4 (5.3)	3 (4.0)	1 (1.3)	2 (2.7)	0 (0.0)	6 (8.0)	6 (8.0)	0 (0.0)	75 (100.0)
학 령 별	초등생	26 (20.5)	43 (33.9)	22 (17.3)	0 (0.0)	4 (3.1)	7 (5.5)	0 (0.0)	2 (1.6)	5 (3.9)	6 (4.7)	3 (2.4)	8 (6.3)	1 (0.8)	127 (100.0)
	중학생	71 (35.7)	22 (11.1)	29 (14.6)	11 (5.5)	9 (4.5)	12 (6.0)	8 (4.0)	10 (5.0)	6 (3.0)	7 (3.5)	3 (1.5)	10 (5.0)	1 (0.5)	199 (100.0)
	고등학생	24 (31.2)	3 (3.9)	0 (0.0)	9 (11.7)	7 (9.1)	9 (11.7)	14 (18.2)	4 (5.2)	2 (2.6)	1 (1.3)	0 (0.0)	4 (5.2)	0 (0.0)	77 (100.0)
위기 수준	저	45 (20.3)	51 (23.0)	22 (9.9)	20 (9.0)	16 (7.2)	16 (7.2)	9 (4.1)	5 (2.3)	12 (5.4)	7 (3.2)	4 (1.8)	14 (6.3)	1 (0.5)	222 (100.0)
	중	66 (33.5)	17 (8.6)	29 (14.7)	16 (8.1)	15 (7.6)	11 (5.6)	12 (6.1)	7 (3.6)	3 (1.5)	6 (3.0)	5 (2.5)	9 (4.6)	1 (0.5)	197 (100.0)
	고	24 (40.7)	2 (3.4)	1 (1.7)	6 (10.2)	3 (5.1)	5 (8.5)	4 (6.8)	5 (8.5)	0 (0.0)	1 (1.7)	3 (5.1)	5 (8.5)	0 (0.0)	59 (100.0)
계	135 (28.2)	70 (14.6)	52 (10.9)	42 (8.8)	34 (7.1)	32 (6.7)	25 (5.2)	17 (3.6)	15 (3.1)	14 (2.9)	12 (2.5)	28 (5.9)	2 (0.4)	478 (100.0)	

<부표 IV-2> 위기청소년- 재학생의 학교위기(중복응답)

단위: 빈도 (%)

구분	세부 항목	맞은 결석 혹은 장기 결석	지각 조퇴	자퇴생각	교사와의 갈등	급작스런 성적하락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 경험 중	학교에 괴롭힘 피해 중	학습 의욕 전혀 없음	기타 또래관계 문제	기타	계
성별	남자	65 (27.4)	74 (31.2)	29 (12.2)	68 (28.7)	17 (7.2)	54 (22.8)	30 (12.7)	36 (15.2)	8 (3.4)	7 (3.0)	20 (8.4)	237 (100.0)
	여자	41 (24.7)	40 (24.1)	17 (10.2)	44 (26.5)	10 (6.0)	54 (32.5)	25 (15.1)	14 (8.4)	2 (1.2)	8 (4.8)	13 (7.8)	166 (100.0)
학 령 별	초등생	15 (11.8)	24 (18.9)	2 (1.6)	30 (23.6)	3 (2.4)	24 (18.9)	22 (17.3)	20 (15.7)	8 (6.3)	7 (5.5)	11 (8.7)	127 (100.0)
	중학생	64 (32.2)	58 (29.1)	25 (12.6)	57 (28.6)	19 (9.5)	65 (32.7)	28 (14.1)	26 (13.1)	2 (1.0)	6 (3.0)	15 (7.5)	199 (100.0)
	고교생	27 (35.1)	32 (41.6)	19 (24.7)	25 (32.5)	5 (6.5)	19 (24.7)	5 (6.5)	4 (5.2)	0 (0.0)	2 (2.6)	7 (9.1)	77 (100.0)
위기 수준	저	18 (9.0)	20 (10.1)	7 (3.5)	27 (13.6)	6 (3.0)	42 (21.1)	15 (7.5)	8 (4.0)	6 (3.0)	9 (4.5)	20 (10.1)	199 (100.0)
	중	57 (35.2)	59 (36.4)	21 (13.0)	54 (33.3)	16 (9.9)	56 (34.6)	34 (21.0)	31 (19.1)	3 (1.9)	6 (3.7)	10 (6.2)	162 (100.0)
	고	31 (73.8)	35 (83.3)	18 (42.9)	31 (73.8)	5 (11.9)	10 (23.8)	6 (14.3)	11 (26.2)	1 (2.4)	0 (0.0)	3 (7.1)	42 (100.0)
계	106 (26.3)	114 (28.3)	46 (11.4)	112 (27.8)	27 (6.7)	108 (26.8)	55 (13.6)	50 (12.4)	10 (2.5)	15 (3.7)	33 (8.1)	403 (100.0)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위기 청소년 남자 237명)에 대한 비율이며, 계는 재학생 전체 403명중의 비율임.

<부표 IV-3> 위기청소년의 정서 및 정신건강문제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무기치감 및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정신건강문제	낮은 지능	PTSD	기타
성별	남자	148 (51.4)	100 (34.7)	129 (44.8)	182 (63.2)	47 (16.3)	26 (9.0)	22 (7.6)	17 (5.9)
	여자	91 (47.9)	80 (42.1)	84 (44.2)	104 (54.7)	17 (8.9)	13 (6.8)	20 (10.5)	8 (4.2)
학교 관계	재학생	206 (51.1)	151 (37.5)	176 (43.7)	235 (58.3)	56 (13.9)	36 (8.9)	35 (8.7)	23 (5.7)
	학교 밖 청소년	33 (44.0)	29 (38.7)	37 (49.3)	51 (68.0)	8 (10.7)	3 (4.0)	7 (9.3)	2 (2.7)
학령별	초등생	66 (52.0)	51 (40.2)	53 (41.7)	67 (52.8)	20 (15.7)	10 (7.9)	9 (7.1)	9 (7.1)
	중학생	104 (52.3)	72 (36.2)	87 (43.7)	115 (57.8)	29 (14.6)	19 (9.5)	19 (9.5)	11 (5.5)
	고등학생	36 (46.8)	28 (36.4)	36 (46.8)	53 (68.8)	7 (9.1)	7 (9.1)	7 (9.1)	3 (3.9)
위기수준	저	80 (36.0)	54 (24.3)	68 (30.6)	100 (45.0)	21 (9.5)	12 (5.4)	8 (3.6)	9 (4.1)
	중	118 (59.9)	102 (51.8)	105 (53.3)	131 (66.5)	25 (12.7)	21 (10.7)	21 (10.7)	13 (6.6)
	고	41 (69.5)	24 (40.7)	40 (67.8)	55 (93.2)	18 (30.5)	6 (10.2)	13 (22.0)	3 (5.1)
계		239 (50.0)	180 (37.7)	213 (44.6)	286 (59.8)	64 (13.4)	39 (8.2)	42 (8.8)	25 (5.2)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위기 청소년 남자 288명)에 대한 비율이며,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중의 비율임.

<부표 IV-4> 성문제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혼숙경험	성관계 경험	성매매 경험	성폭력 경험	성매매 사이트 접속	임신 경험	성추행	성병경험	미혼모	성희롱	기타
성별	남자	36 (12.5)	25 (8.7)	0 (0.0)	4 (1.4)	13 (4.5)	0 (0.0)	1 (0.3)	0 (0.0)	0 (0.0)	1 (0.3)	2 (0.7)
	여자	41 (21.6)	30 (15.8)	8 (4.2)	7 (3.7)	6 (3.2)	5 (2.6)	4 (2.1)	4 (2.1)	1 (0.5)	0 (0.0)	4 (2.1)
학교 관계	재학생	52 (12.9)	28 (6.9)	3 (0.7)	9 (2.2)	13 (3.2)	1 (0.2)	5 (1.2)	0 (0.0)	0 (0.0)	1 (0.2)	6 (1.5)
	학교 밖 청소년	25 (33.3)	27 (36.0)	5 (6.7)	2 (2.7)	6 (8.0)	4 (5.3)	0 (0.0)	4 (5.3)	1 (1.3)	0 (0.0)	0 (0.0)
학령 별	초등생	1 (0.8)	0 (0.0)	0 (0.0)	2 (1.6)	1 (0.8)	0 (0.0)	1 (0.8)	0 (0.0)	0 (0.0)	0 (0.0)	1 (0.8)
	중학생	34 (17.1)	19 (9.5)	2 (1.0)	6 (3.0)	9 (4.5)	0 (0.0)	3 (1.5)	0 (0.0)	0 (0.0)	1 (0.5)	4 (2.0)
	고등학생	17 (22.1)	9 (11.7)	1 (1.3)	1 (1.3)	3 (3.9)	1 (1.3)	1 (1.3)	0 (0.0)	0 (0.0)	0 (0.0)	1 (1.3)
위기 수준	저	7 (3.2)	4 (1.8)	0 (0.0)	2 (0.9)	1 (0.5)	0 (0.0)	2 (0.9)	1 (0.5)	0 (0.0)	1 (0.5)	3 (1.4)
	중	32 (16.2)	21 (10.7)	3 (1.5)	2 (1.0)	8 (4.1)	4 (2.0)	2 (1.0)	2 (1.0)	1 (0.5)	0 (0.0)	2 (1.0)
	고	38 (64.4)	30 (50.8)	5 (8.5)	7 (11.9)	10 (16.9)	1 (1.7)	1 (1.7)	1 (1.7)	0 (0.0)	0 (0.0)	1 (1.7)
계	77 (16.1)	55 (11.5)	8 (1.7)	11 (2.3)	19 (4.0)	5 (1.0)	5 (1.0)	5 (1.0)	4 (0.8)	1 (0.2)	1 (0.2)	6 (1.3)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며,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5> 행동문제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인터넷 중독	부랑	어린 시절 도벽	절도	금품 갈취	방화	오토바이 폭주	사범문체
성별	남자	92 (31.9)	25 (8.7)	44 (15.3)	51 (17.7)	44 (15.3)	1 (0.3)	35 (12.2)	54 (18.8)
	여자	27 (14.2)	13 (6.8)	19 (10.0)	22 (11.6)	26 (13.7)	0 (0.0)	2 (1.1)	18 (9.5)
학교 관계	재학생	94 (23.3)	25 (6.2)	55 (13.6)	52 (12.9)	49 (12.2)	0 (0.0)	20 (5.0)	40 (9.9)
	학교 밖 청소년	25 (33.3)	13 (17.3)	8 (10.7)	21 (28.0)	21 (28.0)	1 (1.3)	17 (22.7)	32 (42.7)
학령별	초등생	26 (20.5)	6 (4.7)	25 (19.7)	3 (2.4)	9 (7.1)	0 (0.0)	1 (0.8)	1 (0.8)
	중등생	50 (25.1)	15 (7.5)	27 (13.6)	32 (16.1)	30 (15.1)	0 (0.0)	9 (4.5)	24 (12.1)
	고등학생	18 (23.4)	4 (5.2)	3 (3.9)	17 (22.1)	10 (13.0)	0 (0.0)	10 (13.0)	15 (19.5)
위기 요인	저	32 (14.4)	3 (1.4)	8 (3.6)	11 (5.0)	3 (1.4)	0 (0.0)	6 (2.7)	17 (7.7)
	중	60 (30.5)	16 (8.1)	32 (16.2)	32 (16.2)	32 (16.2)	0 (0.0)	10 (5.1)	29 (14.7)
	고	27 (45.8)	19 (32.2)	23 (39.0)	30 (50.8)	35 (59.3)	1 (1.7)	21 (35.6)	26 (44.1)
계	119 (24.9)	38 (7.9)	63 (13.2)	73 (15.3)	70 (14.6)	1 (0.2)	37 (7.7)	72 (15.1)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6> 기타 가족적 특징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학교 중퇴 형제	재혼가족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음	조부모 가족	새터민 가족	외국인 노동자 가족	소년소녀 가족	기타
성별	남자	10 (3.5)	31 (10.8)	98 (34.0)	28 (9.7)	1 (0.3)	1 (0.3)	10 (3.5)	11 (3.8)
	여자	8 (4.2)	26 (13.7)	63 (33.2)	20 (10.5)	0 (0.0)	0 (0.0)	3 (1.6)	15 (7.9)
학교 관계	재학생	14 (3.5)	40 (9.9)	129 (32.0)	45 (11.2)	1 (0.2)	1 (0.2)	9 (2.2)	23 (5.7)
	학교 밖 청소년	4 (5.3)	17 (22.7)	32 (42.7)	3 (4.0)	0 (0.0)	0 (0.0)	4 (5.3)	3 (4.0)
	초등생	3 (2.4)	11 (8.7)	45 (35.4)	18 (14.2)	1 (0.8)	1 (0.8)	3 (2.4)	4 (3.1)
학령별	중학생	10 (5.0)	24 (12.1)	69 (34.7)	24 (12.1)	0 (0.0)	0 (0.0)	4 (2.0)	12 (6.0)
	고교생	1 (1.3)	5 (6.5)	15 (19.5)	3 (3.9)	0 (0.0)	0 (0.0)	2 (2.6)	7 (9.1)
	저	1 (0.5)	6 (2.7)	55 (24.8)	21 (9.5)	0 (0.0)	0 (0.0)	2 (0.9)	9 (4.1)
위기 수준	중	13 (6.6)	36 (18.3)	80 (40.6)	23 (11.7)	1 (0.5)	1 (0.5)	10 (5.1)	9 (4.6)
	고	4 (6.8)	15 (25.4)	26 (44.1)	4 (6.8)	0 (0.0)	0 (0.0)	1 (1.7)	8 (13.6)
	계	18 (3.8)	57 (11.9)	161 (33.7)	48 (10.0)	1 (0.2)	1 (0.2)	13 (2.7)	26 (5.4)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7> 부모의 결혼상태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좋은 관계	부부불화	별거	이혼	인급 없음	사별	무응답	계
성별	남자	65 (22.6)	45 (15.6)	22 (7.6)	94 (32.6)	52 (18.1)	1 (0.3)	9 (3.1)	288 (100.0)
	여자	32 (16.8)	30 (15.8)	13 (6.8)	64 (33.7)	41 (21.6)	2 (1.1)	8 (4.2)	190 (100.0)
학교관계	재학생	84 (20.8)	61 (15.1)	28 (6.9)	137 (34.0)	78 (19.4)	3 (0.7)	12 (3.0)	403 (100.0)
	학교 밖	13	14	7	21	15	0	5	75
	청소년	17 (17.3)	18 (18.7)	9 (9.3)	51 (28.0)	25 (20.0)	2 (0.0)	5 (6.7)	127 (100.0)
학령별	초등생	17 (13.4)	18 (14.2)	9 (7.1)	51 (40.2)	25 (19.7)	2 (1.6)	5 (3.9)	127 (100.0)
	중학생	44 (22.1)	28 (14.1)	15 (7.5)	68 (34.2)	37 (18.6)	1 (0.5)	6 (3.0)	199 (100.0)
	고등학생	23 (29.9)	15 (19.5)	4 (5.2)	18 (23.4)	16 (20.8)	0 (0.0)	1 (1.3)	77 (100.0)
위기수준	저	65 (29.3)	24 (10.8)	13 (5.9)	57 (25.7)	52 (23.4)	1 (0.5)	10 (4.5)	222 (100.0)
	중	26 (13.2)	35 (17.8)	15 (7.6)	78 (39.6)	35 (17.8)	2 (1.0)	6 (3.0)	197 (100.0)
	고	6 (10.2)	16 (27.1)	7 (11.9)	23 (39.0)	6 (10.2)	0 (0.0)	1 (1.7)	59 (100.0)
계		97 (20.3)	75 (15.7)	35 (7.3)	158 (33.1)	93 (19.5)	3 (0.6)	17 (3.6)	478 (100.0)

<부표 IV-8>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대상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부모간	부모와 청소년	대상청소년과 형제간	대상청소년 아닌 형제간	불분명함	기타 친척	무응답	계
성별	남자	19 (20.2)	30 (31.9)	13 (13.8)	2 (2.1)	22 (23.4)	7 (7.4)	1 (1.1)	94 (100.0)
	여자	11 (15.3)	29 (40.3)	1 (1.4)	0 (0.0)	24 (33.3)	5 (6.9)	2 (2.8)	72 (100.0)
학교 관계	재학생	27 (19.6)	42 (30.4)	14 (10.1)	2 (1.4)	39 (28.3)	11 (8.0)	3 (2.2)	138 (100.0)
	학교 밖 청소년	3 (10.7)	17 (60.7)	0 (0.0)	0 (0.0)	7 (25.0)	1 (3.6)	0 (0.0)	28 (100.0)
학령별	초등생	9 (21.4)	12 (28.6)	6 (14.3)	2 (4.8)	8 (19.0)	3 (7.1)	2 (4.8)	42 (100.0)
	중학생	16 (21.6)	22 (29.7)	6 (8.1)	0 (0.0)	23 (31.1)	6 (8.1)	1 (1.4)	74 (100.0)
	고등학생	2 (9.1)	8 (36.4)	2 (9.1)	0 (0.0)	8 (36.4)	2 (9.1)	0 (0.0)	22 (100.0)
위기 수준	저	3 (7.7)	10 (25.6)	3 (7.7)	0 (0.0)	20 (51.3)	2 (5.1)	1 (2.6)	39 (100.0)
	중	16 (20.3)	31 (39.2)	6 (7.6)	2 (2.5)	17 (21.5)	5 (6.3)	2 (2.5)	79 (100.0)
	고	11 (22.9)	18 (37.5)	5 (10.4)	0 (0.0)	9 (18.8)	5 (10.4)	0 (0.0)	48 (100.0)
계		30 (18.1)	59 (35.5)	14 (8.4)	2 (1.2)	46 (27.7)	12 (7.2)	3 (1.8)	166 (100.0)

<부표 IV-9> 가족원간 폭언과 욕설의 구체적인 대상 (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부모간	부모와 청소년	대상청소년과 형제간	대상청소년 아님 형제간	부분명함	기타 친척	무응답	계
성별	남자	26 (21.7)	55 (45.8)	21 (17.5)	3 (2.5)	28 (23.3)	14 (11.7)	0 (0.0)	120 (100.0)
	여자	22 (26.5)	41 (49.4)	9 (10.8)	0 (0.0)	27 (32.5)	7 (8.4)	0 (0.0)	83 (100.0)
학교 관계	재학생	43 (25.3)	77 (45.3)	26 (15.3)	3 (1.8)	48 (28.2)	16 (9.4)	0 (0.0)	170 (100.0)
	학교 밖 청소년	5 (15.2)	19 (57.6)	4 (12.1)	0 (0.0)	7 (21.2)	5 (15.2)	0 (0.0)	33 (100.0)
학령별	초등생	13 (24.1)	19 (35.2)	13 (24.1)	1 (1.9)	10 (18.5)	7 (13.0)	0 (0.0)	54 (100.0)
	중학생	24 (28.2)	41 (48.2)	9 (10.6)	0 (0.0)	29 (34.1)	6 (7.1)	0 (0.0)	85 (100.0)
	고등학생	6 (19.4)	17 (54.8)	4 (12.9)	2 (6.5)	9 (29.0)	3 (9.7)	0 (0.0)	31 (100.0)
위기수준	저	10 (21.7)	19 (41.3)	3 (6.5)	0 (0.0)	19 (41.3)	3 (6.5)	0 (0.0)	46 (100.0)
	중	27 (26.0)	42 (40.4)	16 (15.4)	2 (1.9)	31 (29.8)	9 (8.7)	0 (0.0)	104 (100.0)
	고	11 (20.8)	35 (66.0)	11 (20.8)	1 (1.9)	5 (9.4)	9 (17.0)	0 (0.0)	53 (100.0)
계		48 (23.6)	96 (47.3)	30 (14.8)	3 (1.5)	55 (27.1)	21 (10.3)	0 (0.0)	203 (100.0)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가족원간 폭언, 욕설이 있다고 답한 남자청소년 120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가족원간 폭언과 욕설이 있다고 답한 전체 청소년 203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0> 보호요인- 개인의 성격 및 태도 (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낙천적 성격	유머감각	책임의식	변화동기	자기 통제성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유능감	(1)	(2)	목표의식	기타
성별	남자	118 (41.0)	77 (26.7)	91 (31.6)	107 (37.2)	59 (20.5)	33 (11.5)	53 (18.4)	55 (19.1)	85 (29.5)	146 (50.7)	3 (1.0)
	여자	73 (38.4)	41 (21.6)	67 (35.3)	81 (42.6)	52 (27.4)	30 (15.8)	35 (18.4)	44 (23.2)	66 (34.7)	115 (60.5)	4 (2.1)
학교 관계	재학생	158 (39.2)	97 (24.1)	134 (33.3)	155 (38.5)	100 (24.8)	56 (13.9)	74 (18.4)	88 (21.8)	138 (34.2)	204 (50.6)	6 (1.5)
	학교 밖 청소년	33 (44.0)	21 (28.0)	24 (32.0)	33 (44.0)	11 (14.7)	7 (9.3)	14 (18.7)	11 (14.7)	13 (17.3)	57 (76.0)	1 (1.3)
	초등생	51 (40.2)	24 (18.9)	39 (30.7)	37 (29.1)	30 (23.6)	12 (9.4)	19 (15.0)	33 (26.0)	50 (39.4)	37 (29.1)	3 (2.4)
학령별	중학생	77 (38.7)	46 (23.1)	66 (33.2)	85 (42.7)	55 (27.6)	31 (15.6)	38 (19.1)	37 (18.6)	69 (34.7)	118 (59.3)	3 (1.5)
	고등학생	30 (39.0)	27 (35.1)	29 (37.7)	33 (42.9)	15 (19.5)	13 (16.9)	17 (22.1)	18 (23.4)	19 (24.7)	49 (63.6)	0 (0.0)
위기수준	저	88 (39.6)	54 (24.3)	89 (40.1)	86 (38.7)	67 (30.2)	31 (14.0)	52 (23.4)	52 (23.4)	86 (38.7)	114 (51.4)	2 (0.9)
	중	75 (38.1)	42 (21.3)	59 (29.9)	79 (40.1)	41 (20.8)	21 (10.7)	29 (14.7)	39 (19.8)	59 (29.9)	107 (54.3)	3 (1.5)
	고	28 (47.5)	22 (37.3)	10 (16.9)	23 (39.0)	3 (5.1)	11 (18.6)	7 (11.9)	8 (13.6)	6 (10.2)	40 (67.8)	2 (3.4)
계	191 (40.0)	118 (24.7)	158 (33.1)	188 (39.3)	111 (23.2)	63 (13.2)	88 (18.4)	99 (20.7)	151 (31.6)	261 (54.6)	7 (1.5)	

\* (1): 학업 등 성취 영역에서의 성공경험; (2):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위기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1> 지역별 위기청소년년의 의뢰과정

단위: 빈도(%)

구분	학교	공부방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기관	사범기관	상담 센터	부모	경찰서	종교기관	1388전화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청소년 거주시설	기타	무응답	계
지역별	서울	7 (7.9)	9 (10.1)	1 (1.1)	4 (4.5)	1 (1.1)	0 (0.0)	3 (3.4)	0 (0.0)	5 (5.6)	0 (0.0)	7 (7.9)	1 (1.1)	89 (100.0)
	광주	11 (11.1)	24 (24.2)	12 (12.1)	4 (4.0)	8 (8.1)	2 (2.0)	13 (13.1)	0 (0.0)	1 (1.0)	6 (6.1)	6 (6.1)	0 (0.0)	99 (100.0)
	안산	26 (25.0)	10 (9.6)	1 (1.0)	15 (14.4)	10 (9.6)	14 (13.5)	16 (15.4)	1 (1.0)	1 (1.0)	5 (4.8)	0 (0.0)	5 (4.8)	0 (0.0)
권역별	수원	28 (28.9)	5 (5.2)	1 (1.0)	14 (14.4)	12 (12.4)	7 (7.2)	0 (0.0)	14 (14.4)	3 (3.1)	6 (6.2)	2 (2.1)	0 (0.0)	97 (100.0)
	기타	19 (21.3)	24 (27.0)	29 (32.6)	0 (0.0)	4 (4.5)	4 (4.5)	0 (0.0)	0 (0.0)	0 (0.0)	0 (0.0)	8 (9.0)	1 (1.1)	89 (100.0)
	대도시	62 (33.0)	31 (16.5)	21 (11.2)	13 (6.9)	8 (4.3)	9 (4.8)	2 (1.1)	16 (8.5)	0 (0.0)	6 (3.2)	6 (3.2)	13 (6.9)	1 (0.5)
계	중소 도시	54 (26.9)	15 (7.5)	2 (1.0)	29 (14.4)	19 (9.5)	23 (11.4)	1 (0.5)	15 (7.5)	8 (4.0)	6 (3.0)	7 (3.5)	0 (0.0)	201 (100.0)
	농어촌	19 (21.3)	24 (27.0)	29 (32.6)	0 (0.0)	4 (4.5)	4 (4.5)	0 (0.0)	0 (0.0)	0 (0.0)	0 (0.0)	8 (9.0)	1 (1.1)	89 (100.0)
	계	135 (28.2)	70 (14.6)	52 (10.9)	42 (8.8)	34 (7.1)	32 (6.7)	25 (5.2)	17 (3.6)	15 (3.1)	14 (2.9)	12 (2.5)	28 (5.9)	2 (0.4)

<부표 IV-12> 위기청소년특징별 지원기대(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교육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취업연결 법률지원			문화·활동지원			기타		무응답	
		방과후 개별학습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학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심리 상담	친구들과 심리교육 의 상담 서비스	심리 정신장애 치료지원	신체적 상해질병 치료지원	기초생활 비 지원	교육문화 의료비 지원	교육문화 활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지원	그룹홈	법률상담	문화 동아리	스포츠 활동 시설이용 지원	관람기회 제공	부모교육		부모상담
성별	남자	62 (21.5)	16 (5.6)	18 (6.3)	191 (66.3)	27 (9.4)	63 (21.9)	32 (11.1)	13 (4.5)	11 (3.8)	7 (2.4)	45 (15.6)	10 (3.5)	29 (10.1)	17 (5.9)	6 (2.1)	10 (3.5)	7 (2.4)	7 (2.4)	39 (13.5)	13 (4.5)	40 (13.9)	79 (27.4)	27 (9.4)	71 (24.7)	
	여자	49 (25.8)	7 (3.7)	113 (59.5)	14 (7.4)	47 (24.7)	82 (42.7)	34 (17.9)	11 (5.8)	15 (7.9)	8 (4.2)	27 (14.2)	8 (4.2)	15 (7.9)	12 (6.3)	5 (2.6)	4 (2.1)	3 (1.6)	3 (1.6)	21 (11.1)	5 (2.6)	32 (16.8)	59 (31.1)	15 (7.9)	50 (26.3)	
학급별	초등	102 (25.3)	3 (0.7)	6 (1.5)	244 (60.5)	38 (9.4)	82 (20.3)	51 (12.7)	17 (4.2)	21 (5.2)	10 (2.5)	62 (15.4)	14 (3.5)	35 (8.7)	23 (5.7)	12 (3.0)	4 (1.0)	4 (1.5)	6 (2.1)	6 (1.5)	54 (13.4)	16 (4.0)	60 (14.9)	115 (28.5)	28 (6.9)	112 (27.8)
	중·고등	9 (12.0)	20 (26.7)	19 (25.3)	60 (80.0)	3 (4.0)	28 (37.3)	15 (20.0)	7 (9.3)	5 (6.7)	5 (6.7)	7 (9.3)	10 (13.3)	4 (5.3)	18 (24.0)	19 (25.3)	7 (9.3)	10 (13.3)	4 (5.3)	6 (8.0)	6 (8.0)	2 (2.7)	12 (16.0)	23 (30.7)	14 (18.7)	9 (12.0)
학령별	초등	47 (37.0)	0 (0.0)	0 (0.0)	78 (61.4)	22 (17.3)	21 (16.5)	21 (16.5)	0 (0.0)	5 (3.9)	1 (0.8)	21 (16.5)	1 (0.8)	9 (7.1)	0 (0.0)	0 (0.0)	0 (0.0)	1 (0.8)	1 (0.8)	16 (12.6)	4 (3.1)	18 (14.2)	39 (30.7)	8 (6.3)	34 (26.8)	
	중·고등	51 (25.6)	1 (0.5)	6 (3.0)	125 (62.8)	15 (7.5)	49 (24.6)	25 (12.6)	14 (7.0)	13 (6.5)	5 (2.5)	30 (15.1)	10 (5.0)	19 (9.5)	11 (5.5)	4 (2.0)	1 (0.5)	4 (2.0)	4 (2.0)	29 (14.6)	10 (5.0)	29 (14.6)	33 (25.6)	59 (45.8)	17 (13.2)	56 (43.1)
위기사	초	4 (5.2)	2 (2.6)	0 (0.0)	41 (53.2)	1 (1.3)	12 (15.6)	5 (6.5)	3 (3.9)	3 (3.9)	4 (5.2)	11 (14.3)	3 (3.9)	7 (9.1)	12 (15.6)	8 (10.4)	3 (3.9)	0 (0.0)	1 (1.3)	9 (11.7)	2 (2.6)	9 (11.7)	17 (22.1)	3 (3.9)	22 (28.6)	
	중	57 (25.7)	6 (2.7)	3 (1.4)	133 (59.9)	20 (9.0)	40 (18.0)	25 (11.3)	6 (2.7)	8 (3.6)	2 (0.9)	23 (10.4)	3 (1.4)	10 (4.5)	12 (5.4)	6 (2.7)	1 (0.5)	1 (0.5)	3 (1.4)	13 (5.9)	5 (2.3)	28 (12.6)	57 (45.8)	7 (5.5)	60 (47.0)	
위기사	중	49 (24.9)	11 (5.6)	14 (7.1)	126 (64.0)	12 (6.1)	44 (22.3)	23 (11.7)	10 (5.1)	12 (6.1)	8 (4.1)	37 (18.8)	7 (3.6)	25 (12.7)	17 (8.6)	18 (9.1)	8 (4.1)	2 (1.0)	8 (4.1)	33 (16.8)	8 (4.1)	30 (15.2)	54 (42.4)	16 (12.6)	49 (38.1)	
	고	5 (8.5)	6 (10.2)	8 (13.6)	45 (76.3)	9 (15.3)	26 (44.1)	18 (30.5)	8 (13.6)	6 (10.2)	5 (8.5)	12 (20.3)	8 (13.6)	7 (11.9)	12 (20.3)	7 (11.9)	4 (6.8)	5 (8.5)	5 (8.5)	14 (23.7)	5 (8.5)	14 (23.7)	27 (45.8)	19 (32.2)	12 (20.3)	
계	합계	111 (23.2)	23 (4.8)	25 (5.2)	304 (63.6)	41 (8.6)	110 (23.0)	66 (13.8)	24 (5.0)	26 (5.4)	15 (3.1)	72 (15.1)	18 (3.8)	42 (8.8)	41 (8.6)	31 (6.5)	14 (2.9)	14 (2.9)	10 (2.1)	60 (12.6)	18 (3.8)	72 (15.1)	138 (28.9)	42 (8.8)	121 (25.3)	

\* 본 표의 모든 각 항목별 사례 수에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며, 개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표 IV-58> 위기청소년특징 별 지원현황(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 항목	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쉼터연결		법률 지원		문화·활동 지원		가족지원		기타	무응답
		방과후 개별학습 지원	감정고시 지원	진학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친구들과 과의 면담	심리 교육 서비스	담임과 교육 의 면담	신체적 상해질병 치료지원	심리 장애훈련 치료지원	신체적 장애 치료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교육 문화활동비 지원	교육 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신체적 재활 지원		
성별	남자	84 (29.2)	11 (3.8)	17 (5.9)	242 (84.0)	42 (14.6)	132 (45.8)	50 (17.4)	16 (5.6)	17 (5.9)	6 (2.1)	6 (2.1)	24 (8.3)	24 (8.3)	61 (21.2)	9 (3.1)	28 (9.7)	11 (3.8)	6 (2.1)	6 (2.1)	13 (4.5)	6 (2.1)	6 (2.1)	60 (20.8)	61 (21.2)	149 (51.7)	6 (2.1)	37 (12.8)	20 (6.9)		
	여자	58 (30.5)	4 (2.1)	8 (4.2)	167 (87.9)	18 (9.5)	84 (44.2)	51 (26.8)	20 (10.5)	4 (2.1)	6 (3.2)	6 (3.2)	17 (8.9)	17 (8.9)	38 (20.0)	8 (4.2)	12 (6.3)	4 (2.1)	5 (2.6)	5 (2.6)	5 (2.6)	4 (2.1)	4 (2.1)	32 (16.8)	41 (21.6)	89 (46.8)	5 (2.6)	14 (7.4)	5 (2.6)		
학급	초등	132 (32.8)	1 (0.2)	6 (1.5)	341 (84.6)	54 (13.4)	177 (43.9)	27 (6.7)	27 (6.7)	21 (5.2)	8 (2.0)	8 (2.0)	39 (9.7)	39 (9.7)	92 (22.8)	12 (3.0)	20 (5.0)	5 (1.2)	5 (1.2)	5 (1.2)	2 (0.5)	2 (0.5)	7 (1.7)	83 (20.6)	88 (21.8)	214 (53.1)	11 (2.7)	35 (8.7)	22 (5.5)		
	중등	10 (13.3)	14 (18.7)	19 (25.3)	68 (90.7)	6 (8.0)	39 (52.0)	16 (21.3)	9 (12.0)	0 (0.0)	4 (5.3)	4 (5.3)	2 (2.7)	2 (2.7)	7 (9.3)	5 (6.7)	20 (26.7)	10 (13.3)	6 (8.0)	6 (8.0)	3 (4.0)	3 (4.0)	9 (12.0)	14 (18.7)	14 (18.7)	24 (32.0)	0 (0.0)	16 (21.3)	3 (4.0)		
학령	초등	67 (52.8)	0 (0.0)	0 (0.0)	112 (88.2)	33 (26.0)	44 (34.6)	29 (22.8)	4 (3.1)	6 (7.1)	1 (0.8)	1 (0.8)	14 (11.0)	14 (11.0)	36 (28.3)	2 (1.6)	0 (0.0)	0 (0.0)	1 (0.8)	1 (0.8)	0 (0.0)	0 (0.0)	2 (1.6)	31 (24.4)	30 (23.6)	75 (59.1)	5 (3.9)	12 (9.4)	5 (3.9)		
	중등	61 (30.7)	0 (0.0)	5 (2.5)	168 (84.4)	19 (9.5)	100 (50.3)	45 (22.6)	16 (8.0)	12 (6.0)	6 (3.0)	6 (3.0)	21 (10.6)	21 (10.6)	41 (20.6)	9 (4.5)	11 (5.5)	11 (5.5)	1 (1.5)	3 (3.5)	7 (8.5)	5 (5.5)	5 (5.5)	38 (19.1)	42 (21.1)	104 (52.3)	5 (2.5)	17 (8.5)	12 (6.0)		
고등	4 (5.2)	1 (1.3)	1 (1.3)	61 (79.2)	2 (2.6)	33 (42.9)	11 (14.3)	7 (9.1)	0 (0.0)	3 (3.9)	1 (1.3)	4 (5.2)	4 (5.2)	15 (19.5)	1 (1.3)	9 (11.7)	4 (5.2)	4 (5.2)	1 (1.3)	2 (2.6)	2 (2.6)	0 (0.0)	14 (18.2)	16 (20.8)	35 (45.5)	1 (1.3)	6 (7.8)	5 (6.5)			
	저	67 (30.2)	3 (1.4)	2 (0.9)	182 (82.0)	28 (12.6)	87 (39.2)	34 (15.3)	6 (4.1)	6 (2.7)	10 (4.5)	10 (4.5)	10 (4.5)	10 (4.5)	33 (14.9)	4 (1.8)	9 (4.1)	3 (1.4)	0 (0.0)	0 (0.0)	1 (0.5)	1 (0.5)	0 (0.0)	27 (12.2)	39 (17.6)	99 (44.6)	3 (1.4)	14 (6.3)	15 (6.8)		
위기 수준	중	66 (33.5)	9 (4.6)	13 (6.6)	173 (87.8)	25 (12.7)	96 (48.7)	40 (20.3)	17 (8.6)	14 (7.1)	3 (1.5)	3 (1.5)	22 (11.2)	22 (11.2)	55 (27.9)	6 (3.0)	19 (9.6)	9 (4.6)	3 (3.8)	3 (3.8)	9 (4.6)	9 (4.6)	3 (3.8)	50 (25.4)	42 (21.3)	101 (51.3)	6 (3.0)	19 (9.6)	8 (4.1)		
	고	9 (15.3)	3 (5.1)	10 (16.9)	54 (91.5)	7 (11.9)	33 (55.9)	27 (45.8)	10 (16.9)	1 (1.7)	6 (10.2)	6 (10.2)	9 (15.3)	9 (15.3)	11 (18.6)	7 (11.9)	12 (20.3)	3 (5.1)	3 (3.8)	8 (13.6)	8 (13.6)	5 (8.5)	5 (8.5)	15 (25.4)	21 (35.6)	38 (64.4)	2 (3.4)	18 (30.5)	2 (3.4)		
계	142 (29.7)	15 (3.1)	25 (5.2)	409 (85.6)	60 (12.6)	216 (45.2)	101 (21.1)	36 (7.5)	21 (4.4)	28 (5.9)	28 (5.9)	41 (8.6)	41 (8.6)	99 (20.7)	17 (3.6)	40 (8.4)	15 (3.1)	15 (3.1)	11 (2.3)	11 (2.3)	18 (3.8)	18 (3.8)	92 (19.2)	102 (21.3)	238 (49.8)	11 (2.3)	51 (10.7)	25 (5.2)			
	3 (0.6)	0 (0.0)	0 (0.0)	3 (0.8)	0 (0.0)	3 (3.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위기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3> 위기 청소년 특장별 특장별 필요하지만 지원 안 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세부항목	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지원			기타	무응답
		개입상담	상담	상담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		
성별	남자	9 (3.1)	7 (2.4)	25 (8.7)	10 (3.5)	14 (4.9)	19 (6.6)	20 (6.9)	37 (12.8)	8 (2.8)	10 (3.5)	8 (2.8)	6 (2.1)	6 (2.1)	40 (13.9)	20 (6.9)	22 (7.6)	37 (12.8)	11 (3.8)	7 (2.4)	35 (12.2)	159 (55.2)		
	여자	4 (1.4)	6 (2.1)	25 (13.2)	19 (10.1)	20 (10.5)	16 (8.4)	23 (12.1)	24 (12.6)	5 (2.6)	2 (1.1)	5 (2.6)	6 (3.2)	6 (3.2)	16 (8.4)	10 (5.3)	19 (10.0)	38 (20.0)	5 (2.6)	7 (3.7)	16 (8.4)	84 (44.2)		
학교관계	재학생	12 (13.9)	13 (3.2)	44 (10.9)	27 (6.7)	28 (6.9)	31 (7.7)	36 (8.9)	51 (12.7)	11 (2.7)	11 (2.7)	8 (2.0)	6 (1.5)	6 (1.5)	49 (12.2)	26 (6.5)	35 (8.7)	58 (14.4)	15 (3.7)	13 (3.2)	38 (9.4)	199 (49.4)		
	학교밖	4 (5.3)	1 (0.0)	6 (8.0)	2 (2.7)	6 (8.0)	4 (5.3)	7 (9.3)	10 (13.3)	1 (1.3)	1 (1.3)	5 (6.7)	6 (8.0)	6 (8.0)	7 (9.3)	4 (5.3)	6 (8.0)	17 (22.7)	1 (1.3)	1 (1.3)	13 (17.3)	44 (58.7)		
학년	초등	14 (11.0)	1 (0.8)	15 (11.8)	7 (5.5)	3 (2.4)	4 (3.1)	7 (5.5)	8 (6.3)	4 (3.1)	0 (0.0)	0 (0.0)	0 (0.0)	0 (0.0)	12 (9.4)	4 (3.1)	8 (6.3)	18 (14.2)	5 (3.9)	3 (2.4)	10 (7.9)	67 (52.8)		
	중등	30 (15.1)	9 (4.5)	21 (10.6)	12 (6.0)	20 (10.1)	20 (10.1)	21 (10.6)	31 (15.6)	4 (2.0)	3 (1.5)	1 (0.5)	1 (0.5)	1 (0.5)	29 (14.6)	17 (8.5)	19 (9.5)	28 (14.1)	9 (4.5)	8 (4.0)	20 (10.1)	101 (50.8)		
성취수준	고등	12 (15.6)	3 (3.9)	8 (10.4)	8 (10.4)	5 (6.5)	7 (9.1)	8 (10.4)	12 (15.6)	4 (5.2)	8 (10.4)	7 (9.1)	5 (6.5)	5 (6.5)	8 (10.4)	5 (6.5)	8 (10.4)	12 (15.6)	1 (1.3)	2 (2.6)	8 (10.4)	31 (40.3)		
	저	28 (12.6)	6 (3.6)	25 (11.3)	10 (4.5)	6 (7.6)	13 (5.9)	9 (4.1)	21 (9.5)	5 (2.3)	3 (1.4)	3 (1.4)	2 (0.9)	2 (0.9)	27 (12.2)	14 (6.3)	21 (9.5)	30 (13.5)	2 (0.9)	2 (0.9)	9 (4.1)	125 (56.3)		
위험수준	중	26 (13.2)	5 (2.5)	21 (10.7)	15 (7.6)	18 (9.1)	15 (7.6)	27 (13.7)	31 (15.7)	4 (2.0)	5 (2.5)	6 (3.0)	8 (4.1)	8 (4.1)	20 (10.2)	11 (5.6)	18 (9.1)	34 (17.3)	12 (6.1)	10 (5.1)	25 (12.7)	91 (46.2)		
	고	6 (10.2)	0 (0.0)	4 (6.8)	4 (6.8)	10 (16.9)	7 (11.9)	7 (11.9)	9 (15.3)	4 (6.8)	4 (6.8)	4 (6.8)	2 (2.5)	2 (2.5)	9 (15.3)	5 (8.5)	2 (3.4)	11 (18.6)	2 (3.4)	2 (3.4)	17 (28.8)	27 (45.8)		
계		60 (12.6)	13 (2.7)	50 (10.5)	29 (6.1)	34 (7.1)	35 (7.3)	43 (9.0)	61 (12.8)	13 (2.7)	12 (2.5)	13 (2.7)	12 (2.5)	12 (2.5)	56 (11.7)	30 (6.3)	41 (8.6)	75 (15.7)	16 (3.3)	14 (2.9)	51 (10.7)	243 (50.8)		

\* 본 표의 숫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남자의 경우 전체 288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4>지역별 권역별 위기청소년 지원기대(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법률 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 지원			
	방과후 개별 학습 지원	검정 고시 지원	진학 지원	심리 상담 지원	친구들과의 만남	심리 교육 서비스	정신 장애 치료 지원	심리 신체적 상해 질병 치료 지원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문화 스포츠 시설이용 지원	동아리 활동 시설이용 지원	관람 기회 제공	기타	
지역별	서울	20 (22.5)	2 (2.2)	5 (5.6)	16 (18.0)	9 (10.1)	6 (6.7)	5 (5.6)	20 (22.5)	9 (10.1)	9 (10.1)	5 (5.6)	2 (2.2)	0 (0.0)	2 (2.2)	0 (0.0)	19 (21.3)	3 (3.4)	38 (42.7)	37 (41.6)	7 (7.9)	13 (14.6)	
	광주	33 (33.3)	7 (7.1)	10 (10.1)	34 (34.3)	10 (10.1)	1 (1.0)	2 (2.0)	3 (3.0)	0 (0.0)	11 (11.1)	6 (6.1)	10 (10.0)	12 (12.1)	3 (3.0)	4 (4.0)	4 (4.0)	0 (0.0)	4 (4.0)	42 (42.4)	14 (14.1)	1 (1.0)	
	안산	12 (11.5)	2 (1.9)	4 (3.8)	31 (29.8)	12 (11.5)	5 (4.8)	7 (6.7)	5 (4.8)	22 (21.2)	5 (4.8)	5 (4.8)	5 (4.8)	0 (0.0)	6 (5.8)	19 (18.3)	9 (8.7)	23 (22.1)	29 (27.9)	9 (8.7)	9 (8.7)	45 (43.3)	
	수원	9 (9.3)	11 (11.3)	6 (6.2)	43 (44.3)	7 (7.2)	1 (1.0)	5 (5.2)	2 (2.1)	7 (7.2)	0 (0.0)	16 (16.5)	2 (2.1)	7 (7.2)	0 (0.0)	2 (2.1)	0 (0.0)	2 (2.1)	0 (0.0)	0 (0.0)	11 (11.3)	6 (6.2)	33 (34.0)
	기타	37 (41.6)	1 (1.1)	0 (0.0)	49 (55.1)	3 (3.4)	0 (0.0)	7 (7.9)	1 (1.1)	20 (22.5)	4 (4.5)	10 (11.2)	10 (11.2)	4 (4.5)	1 (1.1)	16 (18.0)	6 (6.7)	7 (7.9)	6 (6.7)	7 (7.9)	19 (21.3)	6 (6.7)	29 (32.6)
권역별	대도시	53 (28.2)	9 (8.0)	15 (13.3)	63 (33.5)	19 (10.1)	7 (3.7)	7 (3.7)	11 (5.9)	23 (12.2)	9 (4.8)	23 (12.2)	14 (7.4)	5 (2.7)	3 (1.6)	23 (12.2)	3 (1.6)	42 (22.3)	79 (42.0)	21 (11.2)	14 (7.4)	14 (7.4)	
	중소 도시	21 (10.4)	13 (6.5)	10 (5.0)	38 (20.0)	13 (6.5)	5 (2.5)	7 (3.5)	21 (10.4)	5 (4.4)	19 (9.5)	29 (14.4)	6 (3.0)	6 (3.0)	6 (3.0)	21 (10.4)	9 (4.5)	23 (11.4)	40 (19.9)	15 (7.5)	15 (7.5)	78 (38.8)	
	농어촌	37 (41.6)	1 (1.1)	0 (0.0)	49 (55.1)	3 (3.4)	0 (0.0)	7 (7.9)	1 (1.1)	20 (22.5)	4 (4.5)	10 (11.2)	10 (11.2)	4 (4.5)	1 (1.1)	16 (18.0)	6 (6.7)	7 (7.9)	6 (6.7)	7 (7.9)	19 (21.3)	6 (6.7)	29 (32.6)
	계	111 (23.2)	23 (4.8)	25 (5.2)	304 (63.6)	66 (23.0)	24 (5.0)	26 (5.4)	15 (3.1)	72 (15.1)	18 (3.8)	42 (8.8)	42 (8.8)	14 (2.9)	10 (2.1)	60 (12.6)	18 (3.8)	72 (15.1)	138 (28.9)	42 (8.8)	121 (25.3)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89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5> 지역별 권역별 위기청소년 지원현황(중복 응답)

단위: 빈도(%)

구분	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쉽터연결		법률·활동지원		가족지원			무응답	
	방과후 개별 합승 지원	검정 고시 지원	진학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친구들과 의 만남	심리 상담과 교육 서비스	심리 담임과의 면담	심리적 상해 장애 치료 지원	기초 생활비 지원	교육 문화 활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그룹 홈	법률 상담	문화·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	관람 기회 제공	부모 교육 부모 상담	가사 도움 활동	기타			
																							부모 교육 부모 상담		가사 도움 활동
서울	20 (22.5)	2 (2.2)	9 (10.1)	81 (91.0)	7 (7.9)	48 (53.9)	22 (24.7)	4 (4.5)	0 (0.0)	5 (5.6)	5 (5.6)	4 (4.5)	20 (22.5)	7 (7.9)	10 (11.2)	1 (1.1)	4 (4.5)	2 (2.2)	1 (1.1)	18 (20.2)	49 (55.1)	42 (47.2)	0 (0.0)	5 (5.6)	3 (3.4)
광주	34 (34.3)	6 (6.1)	9 (9.1)	86 (86.9)	16 (16.2)	25 (25.3)	38 (38.4)	14 (14.1)	0 (0.0)	4 (4.0)	1 (1.0)	4 (4.0)	2 (2.0)	6 (6.1)	2 (2.0)	3 (3.0)	15 (15.2)	3 (3.0)	3 (3.0)	9 (9.1)	4 (4.0)	50 (50.5)	0 (0.0)	14 (14.1)	4 (4.0)
안산	21 (20.2)	2 (1.9)	4 (3.8)	95 (91.3)	7 (6.7)	63 (60.6)	20 (19.2)	10 (9.6)	0 (0.0)	7 (6.7)	3 (2.9)	4 (3.8)	5 (4.8)	12 (11.5)	5 (4.8)	2 (1.9)	1 (1.0)	1 (1.0)	3 (2.9)	29 (27.9)	40 (38.5)	58 (55.8)	4 (3.8)	19 (18.3)	5 (4.8)
수원	13 (13.4)	5 (5.2)	3 (3.1)	71 (73.2)	1 (1.0)	47 (48.5)	2 (2.1)	0 (0.0)	0 (0.0)	2 (2.1)	1 (1.0)	11 (11.3)	9 (9.3)	1 (1.0)	7 (7.2)	1 (1.0)	0 (0.0)	0 (0.0)	0 (0.0)	7 (7.2)	3 (3.1)	33 (34.0)	2 (2.1)	7 (7.2)	11 (11.3)
기타	54 (60.7)	0 (0.0)	0 (0.0)	76 (85.4)	29 (32.6)	33 (37.1)	19 (21.3)	8 (9.0)	21 (23.6)	10 (11.2)	2 (2.2)	31 (34.8)	3 (3.4)	18 (20.2)	2 (2.2)	0 (1.1)	0 (0.0)	1 (1.1)	3 (3.4)	29 (32.6)	6 (6.7)	55 (61.8)	5 (5.6)	6 (6.7)	2 (2.2)
대전	54 (28.7)	8 (4.3)	18 (9.6)	167 (88.8)	23 (12.2)	73 (38.8)	60 (31.9)	18 (9.6)	0 (0.0)	9 (4.8)	6 (3.2)	24 (12.8)	9 (4.8)	9 (4.8)	16 (8.5)	3 (1.6)	17 (9.0)	4 (2.1)	4 (2.1)	27 (14.4)	53 (28.2)	92 (48.9)	0 (0.0)	19 (10.1)	7 (3.7)
소도시	34 (16.9)	7 (3.5)	7 (3.5)	166 (82.6)	8 (4.0)	110 (54.7)	22 (10.9)	10 (5.0)	0 (0.0)	9 (4.5)	4 (2.0)	44 (21.9)	5 (2.5)	22 (10.9)	12 (6.0)	3 (1.5)	1 (0.5)	3 (1.5)	3 (1.5)	36 (17.9)	43 (21.4)	91 (45.3)	6 (3.0)	26 (12.9)	16 (8.0)
농어촌	54 (60.7)	0 (0.0)	0 (0.0)	76 (85.4)	29 (32.6)	33 (37.1)	19 (21.3)	8 (9.0)	21 (23.6)	10 (11.2)	2 (2.2)	31 (34.8)	3 (3.4)	18 (20.2)	2 (2.2)	0 (1.1)	0 (0.0)	3 (3.4)	6 (6.7)	29 (32.6)	6 (6.7)	55 (61.8)	5 (5.6)	6 (6.7)	2 (2.2)
계	142 (29.7)	15 (3.1)	25 (5.2)	409 (85.6)	60 (12.6)	216 (45.2)	101 (21.1)	36 (7.5)	21 (4.4)	28 (5.9)	12 (2.5)	99 (20.7)	17 (3.6)	41 (8.6)	40 (8.4)	15 (3.1)	18 (3.8)	10 (2.1)	10 (2.1)	92 (19.2)	102 (21.3)	238 (49.8)	11 (2.3)	51 (10.7)	25 (5.2)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89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V-16> 지역별 권역별 필요하지만 지원 안 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교육 지원		심리상담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지원			기타	무응답
	방과후 개별 학습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친구들과의 면담	심리 교육 서비스	심리 장애 지원	심리 진료 지원	기초 생활 지원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지원	문화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	동아리 활동 시설 이용	관람 기회 제공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고용 지원	가사 도움 활동			
서울	13 (14.6)	2 (2.2)	6 (6.7)	5 (5.6)	6 (6.7)	17 (19.1)	9 (10.1)	11 (12.4)	8 (9.0)	5 (5.6)	5 (5.6)	3 (3.4)	3 (3.4)	12 (13.5)	6 (6.7)	7 (7.9)	18 (20.2)	3 (3.4)	6 (6.7)	10 (11.2)	40 (44.9)		
광주	7 (7.1)	1 (1.0)	4 (4.0)	13 (13.1)	5 (5.1)	4 (4.0)	1 (1.0)	1 (1.0)	1 (1.0)	2 (2.0)	3 (3.0)	3 (3.0)	0 (0.0)	13 (13.5)	5 (5.1)	4 (4.0)	12 (12.1)	0 (0.0)	0 (0.0)	4 (4.0)	61 (61.6)		
안산	19 (18.3)	4 (3.8)	0 (0.0)	12 (11.5)	15 (14.4)	4 (3.8)	11 (10.6)	4 (3.8)	11 (10.6)	1 (1.0)	4 (3.8)	3 (2.9)	4 (3.8)	5 (4.8)	6 (5.8)	5 (4.8)	17 (16.3)	3 (2.9)	1 (1.0)	14 (13.5)	55 (52.9)		
수원	15 (15.5)	6 (6.2)	2 (2.1)	10 (10.3)	0 (0.0)	7 (7.2)	9 (9.3)	16 (16.5)	31 (32.0)	3 (3.1)	3 (3.1)	2 (2.1)	1 (1.0)	5 (5.2)	18 (18.6)	8 (8.2)	17 (17.5)	17 (17.5)	4 (4.1)	3 (3.1)	15 (15.5)	43 (44.3)	
기타	6 (6.7)	0 (0.0)	1 (1.1)	10 (11.2)	3 (3.4)	2 (2.2)	5 (5.6)	11 (12.4)	10 (11.2)	2 (2.2)	0 (0.0)	1 (1.1)	0 (0.0)	0 (0.0)	8 (9.0)	5 (5.6)	11 (12.4)	6 (6.7)	4 (4.5)	8 (9.0)	44 (49.4)		
대도시	20 (10.6)	3 (1.6)	10 (5.3)	18 (9.6)	11 (5.9)	21 (11.2)	10 (5.3)	12 (6.4)	9 (4.8)	7 (3.7)	6 (3.2)	8 (4.3)	3 (1.6)	3 (1.6)	25 (13.3)	11 (5.9)	30 (16.0)	3 (1.6)	6 (3.2)	14 (7.4)	101 (53.7)		
소도시	34 (16.9)	10 (5.0)	2 (1.0)	22 (10.9)	15 (7.5)	11 (5.5)	20 (10.0)	20 (10.0)	42 (20.9)	4 (2.0)	6 (3.0)	4 (2.0)	9 (4.5)	9 (4.5)	23 (11.4)	14 (7.0)	34 (16.9)	7 (3.5)	4 (2.0)	29 (14.4)	98 (48.8)		
농어촌	6 (6.7)	0 (0.0)	1 (1.1)	10 (11.2)	3 (3.4)	2 (2.2)	5 (5.6)	11 (12.4)	10 (11.2)	2 (2.2)	0 (0.0)	1 (1.1)	0 (0.0)	0 (0.0)	8 (9.0)	5 (5.6)	11 (12.4)	6 (6.7)	4 (4.5)	8 (9.0)	44 (49.4)		
계	60 (12.6)	13 (2.7)	13 (2.7)	50 (10.5)	29 (6.1)	34 (7.1)	35 (7.3)	43 (9.0)	61 (12.8)	13 (2.7)	12 (2.5)	13 (2.7)	12 (2.5)	12 (2.5)	56 (11.7)	30 (6.3)	75 (15.7)	16 (3.3)	14 (2.9)	15 (10.7)	243 (50.8)		

\* 본 표의 %는 각 항목 전체 사례 수(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89명)에 대한 비율이고 계는 전체 청소년 478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V-1> 연령과 근무기간의 지역별, 권역별 현황

단위: 명(%), 개월

구분	세부항목	연령				관련분야 근무기간 (개월)	현기관 근무기간 (개월)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지역별	A	1(12.5)	3(37.5)	4(50.0)	0(0.0)	88.4	45.9	8(100.0)
	B	4(16.7)	10(41.7)	4(16.7)	6(25.0)	107.6	85.6	24 (100.0)
	C	1(7.7)	5(38.5)	5(38.5)	2(15.4)	58.1	70.9	13 (100.0)
	D	2(20.0)	2(20.0)	4(40.0)	2(20.0)	75.4	65.4	10 (100.0)
	K도	0(0.0)	5(83.3)	1(16.7)	0(0.0)	75.4	60.2	6 (100.0)
권역별	대도시	5(15.6)	13(40.6)	8(25.0)	6(18.8)	101.7	75.7	32 (100.0)
	중소도시	3(13.0)	7(30.4)	9(39.1)	4(17.4)	65.9	68.4	23 (100.0)
	농어촌	0(0.0)	5(83.3)	1(16.7)	0(0.0)	75.4	60.2	6 (100.0)
전체		8(13.1)	25(45)	18(29.5)	10(16.4)	85.1	71.5	61 (100.0)

<부표 V-2> 학력의 지역별, 권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항목	고졸	대졸	석사졸	무응답	전체
지역별	A	0(0.0)	2(25.0)	6(75.0)	0(0.0)	8(100.0)
	B	0(0.0)	13(54.2)	11(45.8)	0(0.0)	24(100.0)
	C	1(7.7)	5(38.5)	6(46.2)	1(7.7)	13(100.0)
	D	1(10.0)	4(40.0)	5(50.0)	0(0.0)	10(100.0)
	K도	0(0.0)	2(33.3)	4(66.7)	0(0.0)	6(100.0)
권역별	대도시	0(0.0)	15(46.9)	17(53.1)	0(0.0)	32(100.0)
	중소도시	2(8.7)	9(39.1)	11(47.8)	1(4.3)	23(100.0)
	농어촌	0(0.0)	2(33.3)	4(66.7)	0(0.0)	6(100.0)
전체		2(3.3)	26(42.6)	32(52.5)	1(1.6)	61(100.0)

<부표 V-3> 전공의 지역별, 권역별 현황(중복응답)

단위: 명(%)

구 분	세부항목	사회복지학	교 육 학	심리상담학	청소년학	기 타
지역별	A	5(62.5)	0(0.0)	2(25.0)	0(0.0)	1(12.5)
	B	7(29.2)	5(20.8)	2(8.3)	1(4.2)	10(41.7)
	C	5(41.7)	1(8.3)	0(0.0)	2(16.7)	6(50.0)
	D	6(66.7)	0(0.0)	1(11.1)	1(11.1)	1(11.1)
	K도	2(33.3)	1(16.7)	3(50.0)	0(0.0)	2(33.3)
권역별	대도시	12(37.5)	5(15.6)	4(12.5)	1(3.1)	11(34.4)
	중소도시	11(52.4)	1(4.8)	1(4.8)	3(14.3)	7(33.3)
	농어촌	2(33.3)	1(16.7)	3(50.0)	0(0.0)	2(33.3)
전체		25(42.4)	7(11.9)	8(13.6)	4(6.8)	20(34.0)

<부표 V-4> 자격증 종류의 지역별, 권역별 현황(중복응답)

단위: 명(%)

구 분	세부항목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기 타	없 음	무응답
지역별	A	5(62.5)	3(37.5)	3(37.5)	1(12.5)	0(0.0)
	B	10(41.7)	10(41.7)	12(50.0)	3(12.5)	1(4.2)
	C	6(46.2)	2(15.4)	7(53.8)	1(7.7)	3(23.1)
	D	7(70.0)	1(10.0)	7(70.0)	0(0.0)	1(10.0)
	K도	4(66.7)	4(66.7)	1(16.7)	1(16.7)	0(0.0)
권역별	대도시	15(46.9)	13(40.6)	15(46.9)	4(12.5)	1(3.1)
	중소도시	13(56.5)	3(13.0)	14(60.9)	1(4.3)	4(17.4)
	농어촌	4(66.7)	4(66.7)	1(16.7)	1(16.7)	0(0.0)
전체		32(52.5)	20(32.8)	20(32.8)	6(9.8)	5(8.2)

<부표 V-5> 협력 담당자의 기관 내에서의 직책

단위: 명(%)

구 분	세부항목	최고책임자	관리책임자	일반직원	무응답	전 체
지역별	A	0(0.0)	6(75.0)	2(25.0)	0(0.0)	8(100.0)
	B	5(20.8)	11(45.8)	8(33.3)	0(0.0)	24(100.0)
	C	2(15.4)	6(46.2)	4(30.8)	1(7.7)	13(100.0)
	D	3(30.0)	5(50.0)	2(20.0)	0(0.0)	10(100.0)
	K도	0(0.0)	2(33.3)	4(66.7)	0(0.0)	6(100.0)
권역별	대도시	5(15.6)	17(53.1)	10(31.3)	0(0.0)	32(100.0)
	중소도시	5(21.7)	11(47.8)	6(26.1)	1(4.3)	23(100.0)
	농어촌	0(0.0)	2(33.3)	4(66.7)	0(0.0)	6(100.0)
전체		10(16.4)	30(49.2)	20(32.8)	1(1.6)	61(100.0)

<부표 V-6> 교육훈련참여정도 및 비공식인맥의 지역별, 권역별 현황

단위: 회, 개소

구 분	세부항목	교육 훈련 참여	비공식 인맥
지역별	A	3.4	64.0
	B	2.0	21.5
	C	1.2	11.4
	D	1.7	25.1
	K도	1.5	18.8
권역별	대도시	2.3	31.1
	중소도시	1.4	18.6
	농어촌	1.5	18.8
전 체		1.9	26.1

<부표 V-7>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단위: 개소(%)

	구분	교육기관 (n=11)	지역 이용시설 (n=8)	자영 업체 (n=1)	상담 센터 (n=2)	공공 기관 (n=1)	상담 지원센터 (n=10)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8(72.7)	5(62.5)	1(100.0)	1(50.0)	1(100.0)	9(90.0)
	위기청소년의뢰	6(54.5)	4(50.0)	0(0.0)	2(100.0)	1(100.0)	9(90.0)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8(72.7)	7(87.5)	0(0.0)	0(0.0)	0(0.0)	3(30.0)
	검정고시지원	1(9.1)	0(0.0)	0(0.0)	0(0.0)	0(0.0)	2(20.0)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3(27.3)	0(0.0)	0(0.0)	0(0.0)	0(0.0)	5(50.0)
심리 상담	개인상담	11(100.0)	7(87.5)	0(0.0)	2(100.0)	1(100.0)	10(100.0)
	집단상담	9(81.8)	3(37.5)	0(0.0)	2(100.0)	1(100.0)	10(100.0)
	심리검사	7(63.6)	1(12.5)	0(0.0)	2(100.0)	1(100.0)	10(100.0)
	친구들과의 면담	6(54.5)	3(37.5)	0(0.0)	2(100.0)	0(0.0)	9(90.0)
	심리교육서비스	8(72.7)	4(50.0)	0(0.0)	1(50.0)	1(100.0)	9(90.0)
	기타심리상담	2(18.2)	1(12.5)	0(0.0)	1(50.0)	0(0.0)	1(10.0)
의료 지원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3(27.3)	3(37.5)	0(0.0)	1(50.0)	0(0.0)	5(50.0)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1(9.1)	1(12.5)	0(0.0)	0(0.0)	0(0.0)	4(40.0)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3(27.3)	3(37.5)	0(0.0)	0(0.0)	1(100.0)	0(0.0)
	교육및 문화활동비지원	5(45.5)	3(37.5)	0(0.0)	0(0.0)	0(0.0)	4(40.0)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2(18.2)	1(12.5)	0(0.0)	1(50.0)	0(0.0)	6(60.0)
진로,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2(18.2)	0(0.0)	0(0.0)	0(0.0)	0(0.0)	4(40.0)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2(18.2)	0(0.0)	0(0.0)	0(0.0)	0(0.0)	4(40.0)
	직업훈련지원	1(9.1)	0(0.0)	0(0.0)	1(50.0)	0(0.0)	2(20.0)
사회적 보호	단기쉼터	1(9.1)	0(0.0)	0(0.0)	0(0.0)	1(100.0)	0(0.0)
	장기쉼터6개월이상	1(9.1)	0(0.0)	0(0.0)	0(0.0)	0(0.0)	0(0.0)
	그룹홈	0(0.0)	0(0.0)	0(0.0)	0(0.0)	0(0.0)	0(0.0)
	위탁가족 연결	1(9.1)	0(0.0)	0(0.0)	0(0.0)	0(0.0)	1(10.0)
법률 자문	법률소송지원	0(0.0)	0(0.0)	0(0.0)	0(0.0)	0(0.0)	2(20.0)
	법률상담	0(0.0)	1(12.5)	0(0.0)	1(50.0)	1(100.0)	2(20.0)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문화,예술스포츠험활동 공간 및시설이용지원	3(27.3)	3(37.5)	0(0.0)	0(0.0)	0(0.0)	4(40.0)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5(45.5)	2(25.0)	0(0.0)	0(0.0)	0(0.0)	3(30.0)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2(18.2)	6(75.0)	0(0.0)	1(50.0)	0(0.0)	5(50.0)
가족 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모상담	8(72.7)	4(50.0)	0(0.0)	2(100.0)	1(100.0)	9(90.0)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0(0.0)	0(0.0)	0(0.0)	0(0.0)	0(0.0)	0(0.0)
	가사도움활동	0(0.0)	0(0.0)	0(0.0)	0(0.0)	0(0.0)	1(10.0)
기타	기타서비스	0(0.0)	0(0.0)	1(100.0)	0(0.0)	0(0.0)	1(10.0)

<부표 V-7>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단위: 개소(%)

	구분	학습 지원기관 (n=3)	직업훈련 고용지원기관 (n=2)	보호시설 (n=10)	의료기관 (n=5)	법률기관 단체 (n=1)	활동기관 단체 (n=7)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2(66.7)	1(50)	5(50.0)	3(60.0)	0(0.0)	2(28.6)
	위기청소년의뢰	1(33.3)	1(50.0)	5(50.0)	4(80.0)	0(0.0)	3(42.9)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3(100.0)	2(100.0)	4(40.0)	0(0.0)	0(0.0)	2(28.6)
	검정고시지원	2(66.7)	0(0.0)	5(70.0)	0(0.0)	0(0.0)	0(0.0)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1(33.3)	0(0.0)	5(50.0)	0(0.0)	0(0.0)	0(0.0)
심리 상담	개인상담	3(100.0)	2(100.0)	9(90.0)	3(60.0)	1(100.0)	5(71.4)
	집단상담	2(66.7)	0(0.0)	7(70.0)	3(60.0)	0(0.0)	1(14.3)
	심리검사	1(33.3)	0(0.0)	9(90.0)	1(20.0)	0(0.0)	1(14.3)
	친구들과의 면담	2(66.7)	1(50.0)	5(50.0)	0(0.0)	0(0.0)	2(28.6)
	심리교육서비스	1(33.3)	1(50.0)	7(70.0)	3(60.0)	0(0.0)	1(14.3)
	기타심리상담	0(0.0)	0(0.0)	0(0.0)	1(20.0)	0(0.0)	0(0.0)
의료 지원	심리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0(0.0)	0(0.0)	6(60.0)	2(40.0)	0(0.0)	0(0.0)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1(33.3)	0(0.0)	7(70.0)	2(40.0)	0(0.0)	0(0.0)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0(0.0)	5(50.0)	0(0.0)	0(0.0)	0(0.0)	3(27.3)
	교육및 문화활동비지원	0(0.0)	0(0.0)	9(90.0)	0(0.0)	0(0.0)	0(0.0)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1(33.3)	1(50.0)	8(80.0)	0(0.0)	0(0.0)	3(42.9)
진로,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0(0.0)	1(50.0)	5(50.0)	0(0.0)	1(100.0)	2(28.6)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0(0.0)	1(50.0)	5(50.0)	0(0.0)	1(100.0)	2(28.6)
	직업훈련지원	0(0.0)	2(100.0)	6(60.0)	0(0.0)	0(0.0)	0(0.0)
사회적 보호	단기쉼터	0(0.0)	0(0.0)	6(60.0)	0(0.0)	0(0.0)	0(0.0)
	장기쉼터6개월이상	1(33.3)	0(0.0)	1(10.0)	0(0.0)	0(0.0)	0(0.0)
	그룹홈	0(0.0)	0(0.0)	3(30.0)	0(0.0)	0(0.0)	0(0.0)
	위탁가족 연결	0(0.0)	0(0.0)	0(0.0)	0(0.0)	0(0.0)	0(0.0)
법률 자문	법률소송지원	1(33.3)	0(0.0)	2(20.0)	0(0.0)	0(0.0)	0(0.0)
	법률상담	1(33.3)	0(0.0)	0(0.0)	0(0.0)	0(0.0)	0(0.0)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문화,예술 스포츠활동 공간 및시설이용지원	1(33.3)	1(50.0)	5(50.0)	0(0.0)	0(0.0)	1(14.3)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1(33.3)	0(0.0)	1(10.0)	1(20.0)	0(0.0)	2(28.6)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1(33.3)	1(50.0)	7(70.0)	0(0.0)	0(0.0)	0(0.0)
가족 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1(33.3)	1(50.0)	6(60.0)	4(80.0)	0(0.0)	3(42.9)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0(0.0)	1(50.0)	0(0.0)	0(0.0)	0(0.0)	2(28.6)
	가사도움활동	0(0.0)	0(0.0)	1(10.0)	0(0.0)	0(0.0)	1(14.3)
기타	기타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부표 V-8> 조직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단위: 개소(%)

	구분	교육기관 (n=11)	지역 이용시설 (n=8)	자영 업체 (n=1)	상담 센터 (n=2)	공공 기관 (n=1)	상담 지원센터 (n=10)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2(18.2)	3(37.5)	0(0.0)	0(0.0)	0(0.0)	6(60.0)
	위기청소년의뢰	3(27.3)	4(50.0)	0(0.0)	1(50.0)	1(100.0)	5(50.0)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1(9.1)	3(37.5)	0(0.0)	0(0.0)	0(0.0)	6(60.0)
	검정고시지원	0(0.0)	2(25.0)	0(0.0)	0(0.0)	0(0.0)	9(90.0)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1(9.1)	3(37.5)	0(0.0)	0(0.0)	0(0.0)	7(70.0)
심리 상담	개인상담	0(0.0)	1(12.5)	0(0.0)	0(0.0)	1(100.0)	0(0.0)
	집단상담	3(27.3)	6(75.0)	0(0.0)	0(0.0)	1(100.0)	0(0.0)
	심리검사	2(18.2)	7(87.5)	0(0.0)	0(0.0)	0(0.0)	0(0.0)
	친구들과의 면담	1(9.1)	4(50.0)	0(0.0)	0(0.0)	0(0.0)	1(10.0)
	심리교육서비스	4(36.4)	3(37.5)	0(0.0)	1(50.0)	1(100.0)	4(40.0)
의료 지원	기타심리상담	0(0.0)	0(0.0)	0(0.0)	0(0.0)	0(0.0)	0(0.0)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7(63.6)	6(75.0)	0(0.0)	0(0.0)	1(100.0)	6(60.0)
경제적 지원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7(63.6)	3(37.5)	0(0.0)	0(0.0)	0(0.0)	7(70.0)
	기초생활비 지원	7(63.6)	2(25.0)	0(0.0)	1(50.0)	0(0.0)	9(90.0)
	교육 및 문화활동비 지원	4(36.4)	3(37.5)	0(0.0)	0(0.0)	0(0.0)	7(70.0)
진로, 취업 지원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6(54.5)	2(25.0)	0(0.0)	0(0.0)	0(0.0)	8(80.0)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5(45.5)	2(25.0)	0(0.0)	0(0.0)	1(100.0)	8(80.0)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5(45.5)	3(37.5)	0(0.0)	0(0.0)	1(100.0)	8(80.0)
사회적 보호	직업훈련지원	5(45.5)	3(37.5)	0(0.0)	0(0.0)	0(0.0)	10(100.0)
	단기쉼터	3(27.3)	2(25.0)	0(0.0)	0(0.0)	1(100.0)	8(80.0)
	장기쉼터6개월이상	3(27.3)	1(12.5)	0(0.0)	0(0.0)	1(100.0)	9(90.0)
	그룹홈	2(18.2)	1(12.5)	0(0.0)	0(0.0)	1(100.0)	8(80.0)
법률 자문	위탁가족 연결	4(36.4)	1(12.5)	0(0.0)	0(0.0)	1(100.0)	8(80.0)
	법률소송지원	5(45.5)	2(25.5)	0(0.0)	0(0.0)	0(0.0)	8(80.0)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법률상담	5(45.5)	3(37.5)	0(0.0)	0(0.0)	0(0.0)	9(90.0)
	문화, 예술스포츠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4(36.6)	4(50.0)	0(0.0)	0(0.0)	0(0.0)	7(70.0)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5(45.5)	4(50.0)	0(0.0)	0(0.0)	0(0.0)	7(70.0)
가족 지원 서비스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4(36.4)	3(37.5)	0(0.0)	0(0.0)	1(100.0)	8(80.0)
	부모교육 및 모상담	2(18.2)	2(25.0)	0(0.0)	0(0.0)	1(100.0)	3(30.0)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3(27.3)	2(25.0)	0(0.0)	0(0.0)	1(100.0)	9(90.0)
기타	가사도우미활동	3(27.3)	2(25.0)	0(0.0)	0(0.0)	0(0.0)	8(80.0)
	기타서비스	1(1.6)	0(0.0)	0(0.0)	0(0.0)	0(0.0)	0(0.0)

<부표 V-8> 조직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단위: 개소(%)

	구분	학습 지원기관 (n=3)	직업훈련 고용지원기관 (n=2)	보호 시설 (n=10)	의료 기관 (n=5)	법률기관 단체 (n=1)	활동기관 단체 (n=7)
발견 및 의뢰	위기청소년발견	0(0.0)	0(0.0)	3(30.0)	2(40.0)	0(0.0)	0(0.0)
	위기청소년의뢰	1(33.3)	0(0.0)	5(50.0)	2(40.0)	0(0.0)	1(14.3)
학업 지원	방과후 개별학습지원	0(0.0)	1(50.0)	3(30.0)	2(40.0)	0(0.0)	1(14.3)
	검정고시지원	0(0.0)	1(50.0)	4(40.0)	3(60.0)	0(0.0)	0(0.0)
	대안학교 등의 진학지원	1(33.3)	1(50.0)	1(10.0)	2(40.0)	0(0.0)	1(14.3)
심리 상담	개인상담	0(0.0)	0(0.0)	0(0.0)	1(20.0)	0(0.0)	0(0.0)
	집단상담	0(0.0)	0(0.0)	4(40.0)	1(20.0)	0(0.0)	1(14.3)
	심리검사	3(100.0)	2(100.0)	3(30.0)	2(40.0)	0(0.0)	2(28.6)
	친구들과의 면담	0(0.0)	0(0.0)	0(0.0)	2(40.0)	0(0.0)	0(0.0)
	심리교육서비스	2(66.7)	1(50.0)	3(30.0)	1(20.0)	0(0.0)	0(0.0)
	기타심리상담	0(0.0)	0(0.0)	1(10.0)	0(0.0)	0(0.0)	0(0.0)
의료 지원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지원	1(33.3)	1(50.0)	5(50.0)	2(40.0)	0(0.0)	1(14.3)
	신체적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지원	2(66.7)	1(50.0)	5(50.0)	1(20.0)	0(0.0)	0(0.0)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2(66.7)	1(50.0)	4(40.0)	2(40.0)	0(0.0)	1(14.3)
	교육및 문화활동비지원	3(100.0)	1(50.0)	3(30.0)	2(40.0)	0(0.0)	2(28.6)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1(33.3)	1(50.0)	3(30.0)	3(60.0)	0(0.0)	0(0.0)
진로,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포함정보제공	0(0.0)	0(0.0)	2(20.0)	2(20.0)	0(0.0)	1(14.3)
	취업아르바이트포함알선	1(33.3)	0(0.0)	4(40.0)	2(40.0)	0(0.0)	0(0.0)
	직업훈련지원	1(33.3)	1(50.0)	5(50.0)	2(40.0)	1(100.0)	0(0.0)
사회적 보호	단기쉼터	1(33.3)	0(0.0)	0(0.0)	2(40.0)	0(0.0)	0(0.0)
	장기쉼터6개월이상	1(33.3)	0(0.0)	4(40.0)	2(40.0)	0(0.0)	1(14.3)
	그룹홈	1(33.3)	0(0.0)	2(20.0)	1(20.0)	0(0.0)	1(14.3)
	위탁가족 연결	2(66.7)	0(0.0)	2(20.0)	1(20.0)	0(0.0)	0(0.0)
법류 자문	법률소송지원	0(0.0)	0(0.0)	6(60.0)	2(40.0)	0(0.0)	1(14.3)
	법률상담	0(0.0)	0(0.0)	7(70.0)	2(40.0)	0(0.0)	1(14.3)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 공간 및시설이용지원	2(66.7)	1(50.0)	4(40.0)	2(40.0)	1(100.0)	1(14.3)
	동아리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지원	2(66.7)	0(0.0)	3(30.0)	1(20.0)	0(0.0)	1(14.3)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2(66.7)	1(50.0)	3(30.0)	1(20.0)	0(0.0)	2(28.6)
가족 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3(100.0)	0(0.0)	2(20.0)	0(0.0)	0(0.0)	1(14.3)
	부모고용지원 직장알선	2(66.7)	0(0.0)	3(30.0)	1(20.0)	0(0.0)	0(0.0)
	가사도움활동	1(33.3)	0(0.0)	2(20.0)	1(20.0)	0(0.0)	0(0.0)
기타	기타서비스	0(0.0)	0(0.0)	1(10.0)	0(0.0)	0(0.0)	0(0.0)

<부표 V-9> 지역 기관 연계필요성, 연계정도,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정도 평가

단위: 개소(%)

구 분		연계의 필요성	연계 정도평가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정도	
발견 의뢰 체계	교육기관	학교	4.8	3.6	3.5
	지역이용 시설	어린이집	4.0	2.0	3.0
		지역아동센터	5.0	3.0	3.3
		사회복지관	4.3	3.3	2.7
	자영업체	택시, 찜질방, 노래방, PC방 협회	5.0	3.0	4.0
	상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가족관련상담소	5.0	3.0	3.4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5.0	4.0	4.0
공공기관	소년분류심사원	4.0	5.0	5.0	
허브 체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5.0	4.3	3.0
		시군구지원센터	4.8	4.0	3.0
서비스 지원 체계	학습지원 기관	대안학교	4.0	2.0	3.0
		공부방	5.0	3.0	4.0
	직업훈련	자활지원관	5.0	3.0	4.0
	보호시설	쉼터	5.0	3.4	3.6
		그룹홈	4.5	3.5	3.0
		육아원(보육원)	5.0	4.0	4.0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5.0	2.5	3.0
		공공치료시설	5.0	4.0	4.0
		의료관련 단체	4.0	2.0	2.0
		일반병원	5.0	3.0	2.0
	법률기관	범죄예방위원	5.0	4.0	4.0
	활동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5.0	4.0	4.0
		청소년단체	4.0	4.0	5.0
		자원봉사관련시설	4.3	2.7	2.7
일반시민단체		4.5	2.0	3.0	
계		117.2	82.3	86.2	

<부표 V-10> 연계가 필요한 기관 우선순위(중복응답)

단위 : 개소(%)

구분	상담 지원 센터	쉼터	의료 기관	직업 훈련 기관	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대안 학교	경찰서	사회 봉사 시설	법률 구조 기관	직업 알선 기관	기타
교육	학교	10 (90.9)	3 (27.3)	3 (27.3)	0 (0.0)	0 (0.0)	6 (54.5)	1 (9.1)	3 (27.3)	3 (27.3)	1 (9.1)	1 (9.1)
지역 시설	어린이집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25.0)
	지역아동센터	4 (100.0)	1 (25.0)	2 (50.0)	0 (0.0)	0 (0.0)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사회복지관	3 (100.0)	3 (10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영업체	택시, 노래방, PC방 협회	1 (100.0)	0 (0.0)									
상담 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공공	소년부류심사원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시도상담지원센터	0 (0.0)	2 (50.0)	2 (50.0)	3 (75.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2 (50.0)
	시군구지원센터	0 (0.0)	3 (50.0)	4 (66.7)	3 (50.0)	2 (33.3)	0 (0.0)	0 (0.0)	0 (0.0)	2 (33.3)	0 (0.0)	3 (50.0)
학습 지원	대안학교	1 (5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공부방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직업 훈련	자활지원관	2 (100.0)	0 (0.0)	0 (0.0)	2 (10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호 시설	쉼터	4 (57.1)	3 (42.9)	4 (57.1)	4 (57.1)	0 (0.0)	0 (0.0)	1 (14.3)	1 (14.3)	0 (0.0)	0 (0.0)	2 (28.6)
	그룹홈	2 (100.0)	0 (0.0)	0 (0.0)	0 (0.0)	1 (5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육아원 (보육원)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의료 기관	정신보건센터	1 (50.0)	1 (50.0)	2 (10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공공치료기관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의료관련 단체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일반병원	1 (10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법률	범죄예방위원회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활동 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단체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자원봉사관련시설	2 (66.7)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2 (66.7)	0 (0.0)	2 (66.7)
	일반시민단체	0 (0.0)	1 (50.0)	1 (50.0)	1 (50.0)	1 (50.0)	0 (0.0)	2 (100.0)	0 (0.0)	0 (0.0)	1 (50)	0 (0.0)
계	38 (62.3)	21 (34.4)	21 (34.4)	16 (26.2)	15 (24.6)	14 (23.0)	9 (14.8)	8 (13.1)	8 (13.1)	7 (11.5)	7 (11.5)	10 (16.5)

## <청소년 위기요인 및 위기내용 조사>

### 1. 일반적 사항

1. 사례 ID			이 칸은 비워둠
			지역별로 연번 적음
<b>조사 영역</b>	<b>조사내용 구분</b>		<b>조사결과</b>
2. 지역구분	① 대도시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소도시		
	③ 농어촌		
3. 의뢰과정	① 학교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부모		
	③ 거리에서 발견		
	④ 1388 전화		
	⑤ 보호관찰소		
	⑥ 타 기관( ) 의뢰		
	⑦ 기타 ( )		
4. 현재 서비스 상태	①개입초기(평가 및 지원 단계, 1-3회기) --> 현재 총( )회기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개입 중(3회기 이상 지원 중)-->현재 총 ( )회기		
	③계획된 종결 --> 총 ( )회기로 종결		
	④조기종결 --> 총 ( )회기, 혹은 평가만 함 ( )		
	⑤기타 ( )		
5. 성별	① 남		항목 중 한가지선택
	② 여		
학교관계 학업관련 현재신분	① 재학생-초등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재학생-중등		
	③ 재학생-고등		
	④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 중		
	⑤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혹은 직업학교 재학 중		
	⑥ 학교 밖 청소년- 실업상태		
	⑦ 기타 ( )		

7. 재학생 학년	① 초등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8. 재학생 학교 위기요인	8-1. 잦은 결석 혹은 장기결석		각 요인별 유무에 대해 O, X로 표시 8-9도 표시 있는 경우, ( )에 내용 기재
	8-2. 지각조퇴 나타남		
	8-3. 자퇴생각		
	8-4. 교사와의 갈등 에피소드		
	8-5. 급작스런 성적하락 에피소드		
	8-6.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		
	8-7.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를 겪는 중		
	8-8. 학교에 괴롭힘 가해 중		
	8-9. 기타 ( )		
9. 성적	① 높은 성적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중간 성적		
	③ 학습 부진		
	④ 성적에 대한 언급 없음		
	⑤ 기타 ( )		
10. 학교밖 청소년 최종학력 (공교육)	① 초등 졸업		항목 중 한가지 선택
	② 초등자퇴		
	③ 중학교 졸업		
	④ 중학교 자퇴		
	⑤ 고등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자퇴		
친구관계	11. 동성친구	11-1.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움 줄 동성친구가 있다	해당 유무를 O, X로 표시
		11-2. 비행과 연결된 동성친구 있다.	
		11-3.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다.	
	12. 이성친구	12-1. 비행과 관련없는 이성친구 있다.	O, X로 표시
12-2. 비행과 연결된 이성친구 있다.			

## 2. 개인위기 영역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표시하고, ( )에 해당되는 내용 기록

조사영역	조사내용 구분	조사결과	분석내용
13. 정서 및 정신건강문제	13-1. 무가치감 및 낮은 자존감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13-2. 우울		
	13-3. 불안		
	13-4. 충동적 행동		
	13-5. 정신건강문제(내용: ( ) )		
	13-6. 낮은 지능(정신지체나 경계선 지능)		
	13-7. 기타( ( ) )		
14. 약물문제	14-1. 술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14-2. 담배		
	14-3. 본드, 가스, 향정신성의약품		
	14-4. 기타 ( ( ) )		
15. 성문제	15-1. 혼숙경험(성행동과 무관)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15-2. 성관계 경험		
	15-3. 성매매 경험		
	15-4. 성폭력 경험		
	15-5. 성매매사이트에 접속		
	15-6. 임신경험		
	15-7. 미혼모		
	15-8. 성병 경험		
	15-9. 기타 ( ( ) )		
16. 폭력문제	16-1. 조직가담 경험 혹은 현재 가담 중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16-2. 폭력피해 경험(이중 학교폭력피해인 경우)		
	16-3. 폭력가해 경험(이중 학교폭력가해인 경우)		
	16-4. 기타 ( ( ) )		
17. 자살문제	17-1. 자살계획 혹은 자살기도 경험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17-2. 가족 중 자살한 사람 있음		
	17-3. 기타 ( ( ) )		
학대피해	18. 신체적 학대경험	18-1. 학대피해 경험 있음/ 학대자 ( ( ) )	해당유무를 ○, X로 표시/ ○로 표시된 경우( )에 내용 적음
		18-2. 학대로 입원경험 있음	
	19. 성적 학대경험	19-1. 학대피해 경험 있음/ 학대자 ( ( ) )	
		19-2. 학대로 치료경험 있음	

20. 행동문제	20-1. 인터넷 중독 (심리적 의존,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음)		해당유무를 ○,X로 표시  20-8 20-9는 ○로 표시된 경우 ( ) 에 ✓표
	20-2. 부랑		
	20-3. 어린 시절 도벽(초등학교 시절까지)		
	20-4. 절도 (중학교 입학 이후)		
	20-5. 금품갈취		
	20-6. 방화		
	20-7. 오토바이 폭주		
	20-8. 사범문제: 현재 진행 중( )/과거 있었음 ( )		
	20-9. PTSD 경험: 사고( )/ 화재( )/ 강도( )재해, 재난( )/폭행( )/ 부모나 형제의 사망사고에 대한 충격경험( )		
21. 가출문제	21-1. 가출경험(과거)		해당유무를 ○,X로 표 시
	21-2. 현재 가출 중		
	21-3. 가출 시 보호시설(쉼터 등) 이용한 적 있음		

### 3. 가정 및 지역사회 영역 위기

\* 각 항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 ) 에 있음을 표시한 후 대상 등에 대해서도 표시.

조사영역	조사내용 구분	조사결과	분석내용
22. 가정특기사항	22-1. 부모감독 결여		해당유무를 ○,X로 표시
	22-2. 부모의 실직 상태		
	22-3. 부모의 질병		
	22-4. 학교중퇴 형제		
	22-5. 재혼가정		
	22-6. 부모 중 사별경험		
	22-7.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음		
	22-8. 부모의 외도경험		
	22-9. 조부모 가정		
	22-10. 새터민 가정		
	22-11. 외국인 노동자 가정		
	22-12. 소년소녀가정		
	22-13. 기타 특기사항 ( )		

23. 부모의 결혼상태		① 좋은 관계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② 부부불화		
		③ 별거		
		④ 이혼		
		⑤ 언급 없음		
24. 가정경제		① 안정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② 빈곤		
		③ 언급 없음		
		④ 기타 ( )		
25. 가족원간 신체적 폭력 있음 ( )	26. 구체적인 대상	① 부모 간		25. 는 ○, X로 표시 26. 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② 부모와 청소년		
		③ 대상청소년과 형제 간		
		④ 대상청소년이 아닌 형제 간		
		⑤ 불분명함		
		⑥ 기타 ( )		
27. 가족원간 폭언과 욕설 있음 ( )	28. 구체적인 대상	① 부모 간		27. 는 ○, X로 표시 28. 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② 부모와 청소년		
		③ 대상청소년과 형제 간		
		④ 대상청소년이 아닌 형제 간		
		⑤ 불분명함		
		⑥ 기타 ( )		
29. 가족원중 범법자 있음 ( )	30. 구체적인 대상	① 부		상동
		② 모		
		③ 형제		
		④ 기타 ( )		
31. 주거환경		31-1. 안정된 편		○, X로 표시
		31-2. 혼자 쓰는 방 있음		
		31-3. 비위생적이거나 협소함		
		31-4. 기타 ( )		
32. 주거지역		① 주택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
		② 유해환경지역(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음)		
		③ 빈곤지역		
		④ 범죄지역		
		⑤ 기타 ( )		

#### 4. 보호요인

조사영역	조사내용 구분	조사결과	분석내용	
33. 개인 요인	33-1. 낙천적인 성격		○, X로 표시	
	33-2. 유머 감각			
	33-3. 책임의식			
	33-4. 변화동기			
	33-5. 자기통제성			
	33-6.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33-7. 사회적 유능감			
	33-8. 학업 등 성취 영역에서의 성공경험			
	33-9.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			
	33-10. 기타 ( )			
	목표의식	33-11. 진학욕구		
		33-12. 취업에 대한 욕구		
		33-13.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구		
34. 환경요인	34-1. 부모의 정서적 지지		○, X로 표시	
	34-2.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			
	34-3. 가정의 경제적 여유			
	34-4. 도움을 주는 교사			
	34-5. 도움을 주는 친구			
	34-6. 기타 ( )			

#### 5. 서비스 영역에서의 욕구과 지원 내용

\* 해당 칸에 ✓ 표.

서비스 영역	서비스 종류	청소년의 서비스 욕구	지원된 서비스	필요하지만 지원 안된 서비스
학업지원	1. 방과후 개별학습 지원			
	2. 검정고시 지원			
	3. 대안학교 등의 진학 지원			
심리상담	4. 개인상담			
	5. 집단상담			
	6. 심리검사			
	7. 친구들과의 면담			
	8. 성교육, 약물남용예방교육, ( ) 등 심리교육서비스			
	9. 기타( )			

의료지원	10.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 지원			
	11. 신체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지원			
경제적 지원	12. 기초생활비 지원			
	13. 교육 및 문화활동비 지원			
	14.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진로·취업 지원	15.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정보제공			
	16.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알선			
	17. 직업훈련지원			
사회적 보호	18. 단기쉼터			
	19. 장기쉼터(6개월 이상)			
	20. 그룹홈			
	21. 위탁가정 연결			
법률자문	22. 법률소송 지원			
	23. 법률 상담			
여가문화 활동지원	24.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공간 및 시설 이용지원			
	25.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 지원			
	26.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가족지원 서비스	27. 부모 교육 및 부모 상담			
	28. 부모고용지원(직장알선)			
	29. 가사도움활동			
기 타	30.			

사례분석자 성명 : \_\_\_\_\_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요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각종 청소년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현황 및 요구'를 조사하여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감일 : 2006년 7월 5일

◇ 보내실 곳 :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윤 철경 연구위원

※ 전송하실 경우 Fax) 02-2188-8849

◇ 참고사항 :

▶ 응답자

성 명: \_\_\_\_\_

주 소: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은행명(계좌번호): \_\_\_\_\_

2006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의 및 연락처: 윤 철경

Tel : 02 - 2188-8804 / 8837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기관의 조직간 협력담당 주 책임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1. 기관명은?  
\_\_\_\_\_

2. 기관의 소재지는?

\_\_\_\_\_도(광역시) \_\_\_\_\_시(군, 구)

3. 귀 기관의 운영주체는?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영
- 2) 사회복지법인
- 3) 사단법인
- 4) 재단법인
- 5) 종교법인
- 6) 학교법인
- 7) 등록된 사회단체
- 8) 임의단체
- 9) 영리 기관·단체
- 10) 개인
- 11) 기타 \_\_\_\_\_

4. 귀 기관이 위기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5. 귀기관의 인력은 어떻습니까?

- 1) 정규상근직원 : \_\_\_\_\_명
- 2) 정규직원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 : \_\_\_\_\_명
- 3) 계약직 인원(예: 청소년동반자 등) : \_\_\_\_\_명
- 3) 자원봉사자 : \_\_\_\_\_명

6. 귀 기관의 주변환경은 어떠합니까?

- 1) 일반주택지역
- 2) 일반아파트 단지
- 3) 저소득 주택지역
- 4)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 5) 상업지역
- 6) 공단, 공업지역
- 7) 농촌, 어촌, 산간지역
- 8) 기타

7. 귀 기관의 지난 2005년 총결산액은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원

8. 지난 6개월 상반기(2006년 1월~6월)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은 총 몇 명입니까? (생활시설: 6개월 동안 입소 아동 총인원, 이용시설: 6개월 이용인원)

연령대	생활시설인원	서비스 이용인원 (생활시설인원제외)
9세 미만	명	명
9세 이상	명	명
총		명

9. 다음은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모두 V하여 주십시오.

9-1.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9-2. 귀 기관이 지역사회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서비스 영역	서비스 종류	8-1. 귀 기관이 제 공하는 서비스	8-2. 귀 기관이 다른 기관 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위기청소년 발견 및 의뢰	1. 위기청소년 발견		
	2. 위기청소년 의뢰		
학업지원	1. 방과후 개별학습 지원		
	2. 검정고시 지원		
	3. 대안학교 등의 진학 지원		
심리상담	4. 개인상담		
	5. 집단상담		
	6. 심리검사		
	7. 친구들과의 면담		
	8. 성교육, 약물남용예방교육, ( ) 등 심리교육서비스		
의료지원	9. 기타( )		
	10. 심리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 지원		
	11. 신체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지원		
경제적 지원	12. 기초생활비 지원		
	13. 교육 및 문화활동비 지원		
	14.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약품비 등) 지원		
진로·취업 지원	15.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정보제공		
	16.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알선		
	17. 직업훈련지원		

사회적 보호	18. 단기쉼터		
	19. 장기쉼터(6개월 이상)		
	20. 그룹홈		
	21. 위탁가정 연결		
법률자문	22. 법률소송 지원		
	23. 법률 상담		
여가문화 활동지원	24.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공간 및 시설 이용자		
	25.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시설이용 지원		
	26. 영화, 음악회 등 관람기회 제공		
가족지원 서비스	27. 부모 교육 및 부모 상담		
	28. 부모고용지원(직장알선)		
	29. 가사도움활동		
기 타	30.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간 협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10. 지난 5개월 상반기(2006년 1월~5월)동안, 귀 기관이 협력(아동·청소년 배치, 서비스교환, 정보교환)을 위하여 관련 아동·청소년 서비스 기관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경찰, 공공기관, 서비스 기관, 교육단체, 민간단체, 등)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만난 회수는 총 몇 회입니까? \_\_\_\_\_ 회
11. 귀 기관에는 주로 다른 조직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업무량의 50% 이상)가 몇 명입니까? \_\_\_\_\_명
12. 현재, 아동·청소년의 의뢰, 또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교환, 공동사업,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공식 계약하거나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서비스 기관이나 지역사회 조직(경찰, 공공기관, 서비스 기관, 교육단체, 민간단체, 등)들은 어느 조직들입니까? 조직의 이름을 모두 적어주세요.

**\*참고\***  
- 서비스나 프로그램 교환은 협력적 차원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관의 직원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모두가 해당됩니다.  
- 공동사업은 나들이, 캠프, 체험학습, 상담, 연구, 연수사업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 실비로 이루어지는 사설학원의 교육과 사설병원의 치료는 제외됩니다.

---



---



---



---

13. 아동·청소년 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 조직들은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관리를 의뢰합니다.

13-1. 지난 상반기 6개월(2006. 1~6)동안,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을 보다 적합한 다른 기관에 관리담당을 의뢰하여 재배치시킨 경우는 총 몇 명입니까?

	재배치한 조직 명	인원수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8		명
9		명
총 계 :		명

13-2. 지난 상반기 6개월(2006. 1~6) 동안,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귀 기관의 소속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구분		인원
경찰의 의뢰로 온 경우		명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전화하여 온 경우		명
지역사회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온 경우		명
다른기관 소개로부터 온 경우	조직명:	명
	조직명:	명
총 계 :		명

14. 아동청소년 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 조직들은 협력적 차원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을 받고 다른 기관 실무자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14-1. 지난 상반기 6개월 (2006. 1~6)동안, 귀 기관이 타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 도움을 받은 경우, 타기관의 이름과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세요. (타 기관이 방문하여 실시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조직명	프로그램
총 계	개

14-2. 지난 상반기 6개월 (2006. 1~6) 동안, 귀 기관이 타 기관에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타 기관의 이름과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세요.(타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조직명	프로그램
총 계	개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17. 귀 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이 귀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명을 아는 정도일 것이다.  
 2) 업무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3)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4)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18.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 기관과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되고 있다                      2) 잘되고 있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잘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 귀 기관은 위기 아동·청소년을 다른 기관에 연계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근황 등을 그 기관의 실무담당자에 문의하십니까?  
 1)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한다                      2) 대체로 하는 편이다  
 3) 대체로 하지 않는다                      4) 전혀 하지 않는다
21. 귀 기관은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간 서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1) 문서화된 협약                      2) 기관장간 구두 합의                      3) 실무자간 구두 합의

다음은 지역사회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22.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면 귀 기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를 참조하시어 우선 순위별로 적어 주십시오.

(예) 쉼터, 경찰서, 학교, 대안학교,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직업훈련기관, 직업알선기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지원센터 등

- 22-1. 1순위 \_\_\_\_\_  
 22-2. 2순위 \_\_\_\_\_  
 22-3. 3순위 \_\_\_\_\_

23. 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연계조정기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예를 참조하여 우선 순위별로 적어주십시오.

- (예)
- 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 배치, 사후 관리 등 사례관리
  - ② 정보공유, 자원개발, 전문성 향상 등 실질적 지원
  - ③ 공동사업 개발
  - ④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의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공동대응
  - ⑤ 연계기관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 ⑥ 연계기관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 ⑦ 기타 ( )

- 23-1. 1순위 \_\_\_\_\_
- 23-2. 2순위 \_\_\_\_\_
- 23-3. 3순위 \_\_\_\_\_

24. 조직간 협력을 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

-----

-----

25. 대상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간 연계협력을 하는데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

-----

26. 지역사회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개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제안하여 주십시오.

-----

-----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십시오. 귀 기관의 직원 모두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_\_\_\_세

28. 귀하의 학력을 체크해주시고 전공을 기입해주시십시오.

1. 고졸 2. 대졸(전공:       ) 3. 석사졸업(전공:       ) 4. 박사졸업(전공:       )

29. 귀하가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예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_\_\_\_\_

30. 귀하가 아동·청소년 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한 총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31.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32.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최고책임자(시설장, 기관장 등)
2. 관리책임자(국장, 실장, 부장, 팀장 등)
3. 일반 직원

33. 귀하는 지난 5개월 상반기(2006년 1월~5월)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귀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의,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등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몇 회 참여하셨습니까?

프로그램 개최한 조직명	프로그램명	회수
		회
		회
		회
		회
		회

34. 현재, 귀하가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 참여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분야 조직의 수는 몇입니까?

총 \_\_\_\_\_ 개

※ 다음은 상담지원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역사회 조직에 묻는 질문입니다. 상담지원센터 이외의 조직들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5. 귀 기관은 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1) 기관명을 아는 정도이다.
  - 2) 업무내용을 알고 있다.
  - 3)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 4)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36.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잘되고 있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잘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7. 귀 기관이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함
  - 2)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원을 지원 받음  
(프로그램, 전문인력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
  - 4) 위기청소년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홍보, 실시
  - 5) 위기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함
  - 6) 해당되는 사항 없음
38. 위기청소년을 위해 향후 귀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

-----

-----

※ 다음은 상담지원센터(시, 군, 구 지원센터 포함)에 묻는 질문입니다. 상담지원센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5. 귀 센터는 광역시·도 상담지원센터(또는 시, 군, 구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

-----

-----

-----

36. 귀 센터의 예산 중 위기 청소년업무와 관련하여 증가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 총 \_\_\_\_\_ 원
- 국고보조 \_\_\_\_\_ 원
  - 지방비 \_\_\_\_\_ 원

37. 귀 센터가 위기청소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화된 조직체계와 담당업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팀 명	인 원 (청소년 동반자 별도 표기)	담당 업무

<감사합니다>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 지역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각종 청소년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감일 : 2006년 7월 25일

◇ 보내실 곳 :

- E-mail: [chyoon@youthnet.re.kr](mailto:chyoon@youthnet.re.kr)
- Fax : 02-2188-8849

▶ 응답자 (응답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성 명: \_\_\_\_\_  
주 소: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은행명(계좌번호): \_\_\_\_\_

2006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의 및 연락처: 윤 철경 / 유 선정

Tel : 02 - 2188-8804 / 8837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 문 1) 행정구역명 : \_\_\_\_\_
- 문 2) 귀하의 연령 : 만\_\_\_\_\_세
- 문 3) 귀하의 성별 : ① 남 ② 여
- 문 4) 2006년 현재, 소속 지역의 전체 인구는 몇 명입니까 ? \_\_\_\_\_ 명
- 문 5) 2006년 현재, 소속 지역은 몇 개의 구와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  
 \_\_\_\_\_ 도 \_\_\_\_\_ 시 \_\_\_\_\_ 동(시, 군, 구)
- 문 6) 2006년 현재, 관내에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몇 입니까 ? \_\_\_\_\_ 개
- 문 7) 지역사회의 성격은 어디에 해당 합니까 ? 해당되는 사항 모두에 √해 주십시오.  
 일반주택지역\_\_\_\_, 영구임대아파트지역\_\_\_\_, 농어촌 산간지역 \_\_\_\_,  
 일반아파트 지역\_\_\_\_, 빈민주택지역\_\_\_\_, 상업지역\_\_\_\_\_
- 문 8) 2006년 현재, 관내 청소년관련 서비스 시설의 종류와 수는 몇 입니까 ?  
 \_\_\_\_\_ 개
- 문 9) 2006년 현재, 관내 기업의 수는 몇 개 입니까 ? \_\_\_\_\_ 개
- 문 10) 2006년 현재, 지역사회 내 가구당 소득은 평균 얼마 입니까 ? \_\_\_\_\_ 원
- 문 11) 2006년 현재, 관내 청소년 인구는 몇 명입니까 ? \_\_\_\_\_ 명
- 문 12) 2006년 현재, 귀 부서에서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 문 13) 2006년 상반기 동안, 귀 부서는 관내 위기청소년 관련조직의 모임을 몇 회 개최했습니까 ?
- 문 14) 2006년 상반기 동안, 귀 부서는 관내 위기청소년 관련조직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 \_\_\_\_\_ 회
- 문 15) 귀 부서의 2005년 위기청소년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  
 총 \_\_\_\_\_ 원  
 · 국고 보조 :  
 · 도비 :  
 · 사·군비 :

## <동반자용 설문지>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반자 모두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_\_\_\_세
- 문2) 귀하의 학력을 체크해주시고 전공을 기입해주시시오.  
 1. 고졸 2. 대졸(전공: ) 3. 석사졸업(전공: ) 4. 박사졸업(전공: )
- 문3) 귀하가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예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 \_\_\_\_\_
- 문4) 귀하가 아동·청소년 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한 총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 년 \_\_\_\_ 개월
- 문5)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 년 \_\_\_\_ 개월
- 문6)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1. 전일제 동반자  
 2. 시간제 동반자  
 3. 기타( )
- 문7) 귀하는 지난 5개월 상반기(2006년 1월~5월)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귀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의,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등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몇 회 참여하셨습니다?

프로그램 개최한 조직명	프로그램명	회수
		회
		회
		회
		회
		회

문8) 현재, 귀하가 학연, 지연, 이전 직장경험, 프로그램이나 모임 참여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분야 조직의 수는 몇입니까?

총 \_\_\_\_\_ 개

문9) 현재, 귀하는 동반자로서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10) 만족하신다면 (혹은,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문11) 귀하는 동반자의 업무와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해당 칸에 v표 하세요)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청소년과 효과적인 업무협력관계 구축					
② 청소년에게 전문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③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동료와 공조업무 수행					
④ 청소년에 대한 사정 및 계획, 실행, 및 평가					
⑤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 수집, 검토					
⑥ 부모, 보호자 및 가족과의 협력					
⑦ 청소년에게 기회의 균등 및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					
⑧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수준 평가					
⑨ 연계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점 파악					
⑩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기평가					

문12) 위기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헌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임지연·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상욱·김신영·박승호·유성렬·임지연·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문수준 실태연구 - 청소년인문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해연·조정문·김이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량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마츠다 시게끼·무꾸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운·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안드레아스헤네커·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윤옥경·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방은령·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황진구·한도희·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김영희·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이혜연·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박영신·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오해섭·이장현·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김경준·최창욱·황진구·성운숙·오승근·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김경준·박병식·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이경상·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김신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 필 진 ◆

- 남형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본부장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교수  
**전연진**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 ◆ 자 문 진 ◆

- 김광수**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분과위원장  
**김광수** 서울특별시 청소년보호팀장  
**김석병**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장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찬호** 한양대학교 교수  
**남미애** 대전대학교 교수  
**박병훈** 광주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송복순** 경상남도청 상담지원센터 체육청소년과  
**이광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홍봉선** 신라대학교 교수,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

연구보고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인 쇄 2006년 11월 10일

발 행 2006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27-X(93330)